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종은운전자상해보험(TM)2210





약관 이용 가이드

1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한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약관 이용 가이드	약관을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의 구성, 쉽게 찾는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침서
 약관 요약서	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시각적 방법 을 이용하여 약관을 간단 요약
 보험약관	보통약관 : 기본계약을 포함한 공통 사항을 정한 기본약관 특별약관 : 보통약관에 정한 사항 외 선택가입한 보장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
 인용법규 및 색인 등	약관 이해를 돕기 위한 어려운 법률·보험용어 의 해설 , 가나다 順특약 색인 , 관련 법규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

3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이용

QR(Quick Response)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해설 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약관해설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4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찾기(보통약관기준)

보험약관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쪽수 및 영상자료** 등을 안내드리오니, 회사로부터 약관을 수령한 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속지**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험금 지급	p43,p44 p63,p64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특약별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				
2	청약철회	(청약의 철회)	 2. 청약철회	p49,p69
3	계약 취소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3. 계약취소	p50,p70
4	계약 무효	(계약의 무효)	 4. 계약무효	p51,p71
5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 효과	(계약 전 알릴 의무),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5. 계약전알림의무	p46,p48 p66,p68

6	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위반 효과	(계약 후 알릴 의무),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6. 계약후알림의무	p47,p48 p67,p68
7	보험료 연체 및 해지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7. 보험료연체해지	p54,p74
8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	 8. 부활	p55,p75
9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해지환급금)	 9. 해지환급금	p56, p76
10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대출)	 10. 보험계약대출	p58,p77

5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아래 7가지 방법을 활용하시면 약관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활용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시 유의사항, 민원 사례 등 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p17
2. **'약관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를 이용하시면 약관내용 중 핵심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p4
3. **'가나다 順 색인'**을 활용하시면 본인이 실제 가입한 특별약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p14
4. 약관 내용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약관 본문 Box안 예시** 등을 참고하시면 약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p35
5.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약관해설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등을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p3
6.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를 활용하시면 약관에서 인용한 법률 조항 및 규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p526
7. 약관조항 등이 **음영-컬러화** 되거나 **진하게** 된 경우 보험금 지급 등 약관 주요 내용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6 기타문의 사항

-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idbins.com)**, 고객 콜센터(**1588-0100**)로 문의 가능
- ※ 보험상품 거래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심정보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FINE, 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

목차

약관 요약서 17

I.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18

II. 계약의 일반사항 22

III. 보험금 청구시 준비하셔야 할 서류 25

IV. 자주 발생하는 민원 예시 31

V.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33

VI.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35

VII. 프로미라이프 지식백과 38

* 해당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보통약관 - 1종(연만기) 및 2종(세만기) 운전자 가입시

(운전자 :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제 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42

 1. 목적 42

 2. 용어의 정의 42

제 2관 보험금의 지급 43

 3. 보험금의 지급사유 43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43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44

 6.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44

 7. 보험금의 청구 44

 8. 보험금의 지급절차 44

 9. 만기환급금의 지급 45

 10.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45

 11. 주소변경통지 46

 12. 보험수익자의 지정 46

 13. 대표자의 지정 46

제 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46

 14. 계약 전 알릴 의무 46

 15. 계약 후 알릴 의무 47

 16.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48

 17. 사기에 의한 계약 48

제 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48

 18. 보험계약의 성립 48

 19. 청약의 철회 49

 20.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50

 21. 계약의 무효 51

 22. 계약내용의 변경 등 51

 23. 보험나이 등 52

 24. 계약의 소멸 52

제 5관 보험료의 납입 53

 25.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53

 26.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53

 26-1. 보험료 납입면제 53

27.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54
28.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54
29.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55
30.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55
제 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56
31.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56
32.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56
33.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56
34. 위법계약의 해지	56
35. 해지환급금	56
36.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57
37. 중도인출금	57
38. 보험계약대출	58
39. 배당금의 지급	58
제 7관 분쟁조정 등	58
40. 분쟁의 조정	58
41. 관할법원	58
42. 소멸시효	58
43. 약관의 해석	58
44.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58
45.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58
46. 개인정보보호	59
47. 준거법	59
48.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59

보통약관 - 1종(연만기) 및 2종(세만기) 비운전자 가입시

(비운전자 :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제 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62
1. 목적	62
2. 용어의 정의	62
제 2관 보험금의 지급	63
3. 보험금의 지급사유	63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63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64
6.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64

7. 보험금의 청구	64
8. 보험금의 지급절차	64
9. 만기환급금의 지급	65
10.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65
11. 주소변경통지	66
12. 보험수익자의 지정	66
13. 대표자의 지정	66

제 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66
14. 계약 전 알릴 의무	66
15. 계약 후 알릴 의무	67
16.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68
17. 사기에 의한 계약	68

제 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68
18. 보험계약의 성립	68
19. 청약의 철회	69
20.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70
21. 계약의 무효	71
22. 계약내용의 변경 등	71
23. 보험나이 등	72
24. 계약의 소멸	72

제 5관 보험료의 납입	72
25.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72
26.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73
26-1. 보험료 납입면제	73
27.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74
28.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74
29.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75
30.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75

제 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76
31.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76
32.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76
33.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76
34. 위법계약의 해지	76
35. 해지환급금	76
36.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77
37. 중도인출금	77

38. 보험계약대출	77
39. 배당금의 지급	77
제 7관 분쟁조정 등	78
40. 분쟁의 조정	78
41. 관할법원	78
42. 소멸시효	78
43. 약관의 해석	78
44.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78
45.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78
46. 개인정보보호	78
47. 준거법	79
48.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79

특별약관 - 1종(연만기) 및 2종(세만기) 공통

제 1장 상해관련 특별약관

1.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82
1-1. 운전자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82
1-2. 비운전자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84
2.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86
2-1. 운전자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86
2-2. 비운전자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87
3. 교통상해사망유족자금(매월5년간지급) 특별약관	88
3-1. 운전자 교통상해사망유족자금(매월5년간지급) 특별약관	88
3-2. 비운전자 교통상해사망유족자금(매월5년간지급) 특별약관	90
4.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특별약관	91
4-1. 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특별약관	91
4-2. 비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특별약관	93
5.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매월5년간지급) 특별약관	94
5-1. 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매월5년간지급) 특별약관	94
5-2. 비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매월5년간지급) 특별약관	96
6.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매월7년간지급) 특별약관	97
6-1. 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매월7년간지급) 특별약관	97
6-2. 비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매월7년간지급) 특별약관	99

7.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매년5%체증형)(매월5년간지급) 특별약관	101
7-1. 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매년5%체증형)(매월5년간지급) 특별약관	101
7-2. 비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매년5%체증형)(매월5년간지급) 특별약관	103
8.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특별약관	106
8-1. 운전자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특별약관	106
8-2. 비운전자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특별약관	107
9.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매월5년간지급) 특별약관	109
9-1. 운전자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매월5년간지급) 특별약관	109
9-2. 비운전자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매월5년간지급) 특별약관	110
10. 상해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112
11. 상해후유장해(20-100%) 특별약관	113
12. 상해사망 특별약관	115
13. 상해사망유족자금(매월5년간지급) 특별약관	115
14. 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특별약관	116
15. 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매월5년간지급) 특별약관	117
16. 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매월7년간지급) 특별약관	118
17. 상해80%미만후유장해 특별약관	119
18. 상해5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특별약관	121
19. 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매월5년간지급) 특별약관	122
20.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123
21.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124
22. 신주말운전중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125
23. 자전거탑승중 상해사망 특별약관	126
24. 자전거탑승중 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특별약관	127
25. 골절진단비(치아제외) 특별약관	128
26. 골절진단비(치아포함) 특별약관	129
27. 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	129
28. 척추골절진단비 특별약관	130
29. 골절부목치료비 특별약관	130
30.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	131
30-1. 운전자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	131
30-2. 비운전자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	132
31. 안면·두개골특정골절진단비 특별약관	133
32. 외상성머리손상진단비 특별약관	133
33. 주요상해뇌출혈진단비 특별약관	134
34. 화상진단비 특별약관	135

35. 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특별약관	135	58. 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177
36. 상해1-5중수술비Ⅱ(동일사고당 1회지급) 특별약관	137	59.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0일한도) 특별약관	179
37. 상해1-8중수술비(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 특별약관	138	60.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80
38. 교통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특별약관	142	60-1.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80
38-1. 운전자 교통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특별약관	142	60-2.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82
38-2. 비운전자 교통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특별약관	144	60-3.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83
39. 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특별약관	145	61. 상해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15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85
40. 5대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특별약관	146	62. 자동차부상치료비Ⅱ 특별약관	186
41. 교통상해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특별약관	147	62-1. 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Ⅱ 특별약관	186
41-1. 운전자 교통상해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특별약관	147	62-2. 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Ⅱ 특별약관	187
41-2. 비운전자 교통상해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특별약관	149	63. 자동차부상치료비Ⅲ(연간3회한) 특별약관	188
42. 화상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특별약관	150	63-1. 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Ⅲ(연간3회한) 특별약관	188
43.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 특별약관	151	63-2. 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Ⅲ(연간3회한) 특별약관	190
44.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최초1회한) 특별약관	152	64. 자동차부상치료비Ⅳ(단독사고제외) 특별약관	191
45. 뇌·내장손상수술비(최초1회한) 특별약관	154	64-1. 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Ⅳ(단독사고제외) 특별약관	191
46. 척추상해수술비(관혈/비관혈)(연간1회한,동일사고당1회지급) 특별약관	155	64-2. 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Ⅳ(단독사고제외) 특별약관	192
47. 창상봉합술치료비(1일1회한,연간3회한) 특별약관	157	65. 자동차부상치료비Ⅴ 특별약관	193
48. 창상봉합술치료비(안면부,1일1회한,연간3회한) 특별약관	158	65-1. 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Ⅴ 특별약관	193
49.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159	65-2. 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Ⅴ 특별약관	194
50.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160	66. 자동차부상치료비(1-11급) 특별약관	195
50-1. 운전자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160	66-1. 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11급) 특별약관	195
50-2. 비운전자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161	66-2. 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11급) 특별약관	196
51. 자동차사고 입원일당(1-14급,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163	67. 자동차부상치료비(8-11급) 특별약관	197
51-1. 운전자 자동차사고 입원일당(1-14급,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163	67-1. 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8-11급) 특별약관	197
51-2. 비운전자 자동차사고 입원일당(1-14급,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164	67-2. 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8-11급) 특별약관	198
52. 자동차사고 입원일당(1-11급,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165	68. 낙하물및로드킬사고부상치료비(1-10급,자가용운전자용) 특별약관	199
52-1. 운전자 자동차사고 입원일당(1-11급,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165	69. 골절철심제거수술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202
52-2. 비운전자 자동차사고 입원일당(1-11급,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167	70. 자동차사고치아보철지원금 특별약관	203
53. 교통사고통원일당(1-11급,연간10회한,1일1회한) 특별약관	168	71. 강력범죄피해보험금 특별약관	204
53-1. 운전자 교통사고통원일당(1-11급,연간10회한,1일1회한) 특별약관	168	72. 고속도로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205
53-2. 비운전자 교통사고통원일당(1-11급,연간10회한,1일1회한) 특별약관	170	73. 고속도로2차사고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206
54.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171	74. 탈구염좌및과긴장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특별약관	207
55.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173	75. 응급실내원보험금(상해) 특별약관	208
56. 상급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174	76. 적립보험료 납입대체(자동차부상등급(1-7급),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시) 특별약관	210
57. 상해동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20회한도) 특별약관	176	77. 자동차부상치료(1-7급) 및 상해50%이상후유장해(폐이백 만기확장형)보장 특별약관	211

77-1. 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1-7급) 및 상해50%이상후유장해
(폐이백 만기확장형)보장 특별약관 211

77-2. 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1-7급) 및 상해50%이상후유장해
(폐이백 만기확장형)보장 특별약관 212

78.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특별약관 214

79. 상해MRI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15

80. 상해CT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16

81. 중증외상치료비(권역외상센터)(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17

82. PM 운전중 교통상해사망(영업목적 제외) 특별약관 219

83. PM 운전중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영업목적 제외) 특별약관 220

84. PM 운전중 교통상해 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영업목적 제외) 특별약관 222

85. PM 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4일이상180일한도)(영업목적 제외) 특별약관 223

86. PM 운전중 교통상해 부상치료비(1-3급)(영업목적 제외) 특별약관 225

87. PM 운전중 교통상해 부상치료비(1-10급)(영업목적 제외) 특별약관 226

제 2장 질병관련 특별약관

1. 응급실내원보험금(질병) 특별약관 230

제 3장 질병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1. 김스치료비(상해및질병) 특별약관 234

2. 관절증(영양, 무릎)수술비(이차성 및 상세불명 제외) 특별약관 234

3. 추간판탈출증수술비 특별약관 235

4.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비(급여, 연간1회한) 특별약관 236

5. 인공관절치환수술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237

6. 등급별 골절 및 특경외상진단비 I (1-6급, 연간1회한) 특별약관 239

7. 등급별 골절 및 특경외상진단비 II (1-6급, 연간1회한) 특별약관 241

8. 등급별 골절 및 특경외상수술비 I (1-6급, 연간1회한)
(동일사고당1회지급) 특별약관 244

9. 등급별 골절 및 특경외상수술비 II (1-6급, 연간1회한)
(동일사고당1회지급) 특별약관 246

10. 신김스치료비(상해및질병) 특별약관 249

제 4장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1. 자동차사고 벌금 II (실손) 특별약관 252

2. 자동차사고 벌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실손)
특별약관 254

3. 자동차사고벌금(대물, 실손) 특별약관 256

4.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III (실손) 특별약관 258

5.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IV (실손) 특별약관 260

6.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경찰조사포함)(실손) 특별약관 261

7.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경찰조사포함)(기가입자용)(실손) 특별약관 263

8. 교통사고처리지원금 IV (실손) 특별약관 265

8-1.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IV (실손) 특별약관 265

8-2.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IV (실손) 특별약관 268

9. 교통사고처리지원금 VII (실손) 특별약관 271

9-1.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VII (실손) 특별약관 271

9-2.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VII (실손) 특별약관 274

10. 교통사고처리지원금 VIII (실손) 특별약관 277

10-1.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VIII (실손) 특별약관 277

10-2.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VIII (실손) 특별약관 279

11. 교통사고처리지원금통합형(2억원한도)(실손) 특별약관 282

11-1.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통합형(2억원한도)(실손)
특별약관 282

11-2.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통합형(2억원한도)(실손)
특별약관 285

12. 교통사고처리지원금(기가입자용 VI) (실손) 특별약관 287

12-1.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기가입자용 VI) (실손) 특별약관 287

12-2.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기가입자용 VI) (실손) 특별약관 291

13. 교통사고처리지원금(기가입자용 VII) (실손) 특별약관 294

13-1.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기가입자용 VII) (실손) 특별약관 294

13-2.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기가입자용 VII) (실손) 특별약관 297

14. 교통사고처리지원금 IV (중대법규위반, 6주미만) (실손) 특별약관 299

14-1.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IV (중대법규위반, 6주미만) (실손)
특별약관 299

14-2.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IV (중대법규위반, 6주미만) (실손)
특별약관 302

15. 면허취소보험금(영업용) 특별약관 304

16. 면허정지일당 II (영업용) 특별약관 306

17.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실손) 특별약관 307

18. 자전거벌금(실손) 특별약관 309

19. 화재벌금(실손) 특별약관 311

20. 가족화재벌금(실손) 특별약관 312

21.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실손) 특별약관 313

22. 행정소송법률비용손해(실손) 특별약관 317

23. (가족)과실치사상벌금(실손) 특별약관 321

24.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실손, 형법 제 268조 관련) 특별약관 323

25. 혼유사고처리비용(경유차량)(실손)(갱신형) 특별약관 324

26. 보복운전피해위로금 특별약관 326

27. 보복운전피해(인적물적)위로금 특별약관 327

28. 버스택시운전자폭행피해위로금(영업용) 특별약관 329

29. 홀인원비용(갈대기출제외)(정규출, 실손)(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30

30. 알바트로스비용(깎때기출제외)(정규출 실손)(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31
31. 타이어파손교체비용(수리제외,연간1회한)보장(자가용)(실손)(갱신형) 특별약관	332
32. 원격지사고시운반비용(자가용)(실손)(갱신형) 특별약관	335
33. 차대차사고 시세차락 위로금(자가용) 특별약관	337
34. 운전중 포트홀 국도교통사고 피해위로금(연간1회한)(실손) 특별약관	340
35. 외제차와 사고시 자기차량수리비용(연간1회한)(자가용)(실손) 특별약관	341
36. 낙하물및로드킬사고차량손해위로금(연간1회한,자가용운전자용) 특별약관	343
37.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특별약관	346
38. 신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특별약관	349
39.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특별약관	352
40. 신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Ⅱ(실손)(컴퓨터 등) 특별약관	356
41. 신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컴퓨터 등) 특별약관	359
42. 18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특별약관	363
43. 주택화재임시거주비(1일이상)(실손) 특별약관	367
44. 전기통신금융사기(메신저피싱포함)피해보장(피해환급금제외)(실손) 특별약관	370
45. 임대인의(화재)임대료손실(실손) 특별약관	373
46. PM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동승자제외)(영업목적 제외) 특별약관	377

제 5장 재물손해관련 특별약관

1. 골프용품손해(실손)(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82
2. 화재손해(실손) 특별약관	385
3.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실손) 특별약관	390
4. 도난손해(실손) 특별약관	391
5. 주택급배수시설누출손해(실손) 특별약관	392
6. 특수건물 풍수재손해(실손) 특별약관	394
7.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실손) 특별약관	395
8. 주택건물(화재)건물재조달차액지원(실손) 특별약관	395

제 6장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1.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실손)(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98
2.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실손)(화재배상책임가입자용)(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04
3.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특별약관	410
4. 임차자(화재, 폭발, 파열, 소요, 노동쟁의)배상책임(비례보상) 특별약관	415
5. 임대인배상책임Ⅱ(실손) 특별약관	420
6. 골프활동중배상책임(실손) 특별약관	425

제도성 특별약관

1. 보험료자동납입 특별약관	432
2. 선지급서비스 특별약관	432
3.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434
4.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435
5. 단체취급 특별약관	436
6. 전자서명 특별약관	437
7.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전중 사고 보험금 추가지급 특별약관	438
8.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439
9. 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441
10. 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약관	442
10-1.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약관	442
10-2.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약관	445
11. 장기보장성보험 적립부분 만기유지 특별약관	448

【별표 1】장해분류표 451

【별표 2】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466

【별표 3】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466

【별표 4-1】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 467

【별표 4-2】부목치료 대상 수가코드 467

【별표 4-3】골절철심제거술 대상 수가코드 468

【별표 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468

【별표 6】5대골절 분류표 475

【별표 7】화상분류표 476

【별표 8】응급의료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분류표 476

【별표 9】안면·두개골 특정골절 분류표 477

【별표10】뇌·내장손상 분류표 477

【별표11】탈구,관절 및 인접근육의 염좌 및 과긴장 분류표 479

【별표12】골절분류표 479

【별표13】1-5중수술 분류표 480

【별표14】관절증(영양, 무릎) 분류표 483

【별표15】추간판탈출증 분류표 484

【별표16】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급여) 대상 수가코드 484

【별표17-1】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비용 485

【별표17-2】「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 486

【별표17-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송달료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486

【별표18-1】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비용 486

【별표18-2】「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 487

【별표18-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송달료
(행정소송법률비용손해) 487

【별표19】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487

【별표20】인공관절치환수술 대상질환 분류표 488

【별표21】골절 및 특정외상 분류표 489

【별표22】골절 및 특정외상 등급분류기준표 490

【별표23】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의 후유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의 한도 491

【별표24】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의 부상등급별 보험금액의 한도 495

【별표25】외상성머리손상 분류표 498

【별표26】주요상해뇌출혈 분류표 499

【별표27】척추골절 분류표 499

【별표28】1-8중 수술 및 시술 분류표 500

【별표29】척추상해 분류표 520

【별표30】급여 창상봉합술 대상 수가코드 521

【별표31】급여 안면부창상봉합술(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
대상 수가코드 522

【별표32】급여 상해 CT검사 분류표 523

참고.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 526

※ 보험계약시 보통약관 및 선택하여 가입하신 특별약관에 한하여 보장(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나다順 색인

(1)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특별약관 352
 18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특별약관 363

(5)
 5대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특별약관 146
 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 129

(6)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특별약관 346

(ㄱ)
 (가족)과실치사상벌금(실손) 특별약관 321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실손)(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98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Ⅲ(실손)(화재배상책임가입자용)(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04
 가족화재벌금(실손) 특별약관 312
 간병인사용 손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80
 강력범죄피해보험금 특별약관 204
 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441
 고속도로2차사고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206
 고속도로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205
 골절부목치료비 특별약관 130
 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특별약관 145
 골절진단비(치아제외) 특별약관 128
 골절진단비(치아포함) 특별약관 129
 골절철심제거수술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202
 골프용품손해(실손)(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82
 골프활동중배상책임(실손) 특별약관 425
 관절증(엉덩, 무릎)수술비(이차성 및 상세불명 제외) 특별약관 234
 교통사고처리지원금(기가입자용Ⅶ)(실손) 특별약관 287
 교통사고처리지원금(기가입자용Ⅷ)(실손) 특별약관 294
 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약관 442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실손) 특별약관 265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 특별약관 299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Ⅷ(실손) 특별약관 271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Ⅷ(실손) 특별약관 277
 교통사고처리지원금통합형(2억원한도)(실손) 특별약관 282
 교통사고통원일당(1-11급,연간10회한,1일1회한) 특별약관 168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특별약관 106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매월5년간지급) 특별약관 109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 131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특별약관 91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매년5%체증형)(매월5년간지급) 특별약관 101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매월5년간지급) 특별약관 94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매월7년간지급) 특별약관 97
 교통상해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특별약관 147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86
 교통상해사망유족자금(매월5년간지급) 특별약관 88
 교통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특별약관 142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160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82
 갑스치료비(상해및질병) 특별약관 234

(ㄴ)
 낙하물및로드킬사고부상치료비(1-10급,자가용운전자용) 특별약관 199
 낙하물및로드킬사고차량손해위로금(연간1회한,자가용운전자용) 특별약관 343
 뇌내장손상수술비(최초1회한) 특별약관 154

(ㄷ)
 단체취급 특별약관 436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124
 도난손해(실손) 특별약관 391
 등급별 골절 및 특경외상수술비Ⅰ(1-6급,연간1회한)(동일사고당1회지급) 특별약관 244
 등급별 골절 및 특경외상수술비Ⅱ(1-6급,연간1회한)(동일사고당1회지급) 특별약관 246
 등급별 골절 및 특경외상진단비Ⅰ(1-6급,연간1회한) 특별약관 239
 등급별 골절 및 특경외상진단비Ⅱ(1-6급,연간1회한) 특별약관 241

(ㄹ)
 면허정지일당Ⅱ(영업용) 특별약관 306

면허취소보험금(영업용) 특별약관 304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실손) 특별약관 313

(나)

버스·택시운전자폭행피해위로금(영업용) 특별약관 329
 보복운전피해(인적물적)위로금 특별약관 327
 보복운전피해위로금 특별약관 326
 보험료자동납입 특별약관 432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실손) 특별약관 390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실손) 특별약관 395

(나)

상급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174
 상해1-5종수술비Ⅱ(동일사고당 1회지급) 특별약관 137
 상해1-8종수술비(급여, 시술포함, 연간1회한) 특별약관 138
 상해5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특별약관 121
 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매월5년간지급) 특별약관 122
 상해80%미만후유장해 특별약관 119
 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특별약관 116
 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매월5년간지급) 특별약관 117
 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매월7년간지급) 특별약관 118
 상해사망 특별약관 115
 상해사망유족자금(매월5년간지급) 특별약관 115
 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특별약관 135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0일한도) 특별약관 179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159
 상해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한, 연간15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85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173
 상해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20회한도) 특별약관 176
 상해후유장해(20-100%) 특별약관 113
 상해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112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 특별약관 151
 상해CT검사지원비(급여, 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16
 상해MRI검사지원비(급여, 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15
 선지급서비스 특별약관 432
 신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컴퓨터 등) 특별약관 359
 신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특별약관 349

신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Ⅱ(실손)(컴퓨터 등) 특별약관 356
 신김스치료비(상해및질병) 특별약관 249
 신주말운전중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125

(다)

안면·두개골특정골절진단비 특별약관 133
 알바트로스비용(칼때기흡제외)(정규휴, 실손)(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31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별금(실손, 형법 제 268조 관련) 특별약관 323
 외상성머리손상진단비 특별약관 133
 외제차와 사고시 자기차량수리비용(연간1회한)(자가용)(실손) 특별약관 341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123
 운전중 포트홀 국도교통사고 피해위로금(연간1회한)(실손) 특별약관 340
 원격지사고시운반비용(자가용)(실손)(갱신형) 특별약관 335
 응급실내원보험금(상해) 특별약관 208
 응급실내원보험금(질병) 특별약관 230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434
 인공관절치환수술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237
 임대인배상책임Ⅱ(실손) 특별약관 420
 임대인의(화재)임대료손실(실손) 특별약관 373
 임차자(화재, 폭발, 파열, 소요, 노동쟁의)배상책임(비례보상) 특별약관 415

(라)

자동차부상치료(1-7급) 및 상해50%이상후유장해(페이백 만기확장형)보장 특별약관 211
 자동차부상치료비(1-11급) 특별약관 195
 자동차부상치료비(8-11급) 특별약관 197
 자동차부상치료비Ⅱ 특별약관 186
 자동차부상치료비Ⅱ(단독사고제외) 특별약관 191
 자동차부상치료비Ⅱ(연간3회한) 특별약관 188
 자동차부상치료비Ⅲ 특별약관 193
 자동차사고 벌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실손) 특별약관 254
 자동차사고 벌금Ⅱ(실손) 특별약관 252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경찰조사포함)(기기입자용)(실손) 특별약관 263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경찰조사포함)(실손) 특별약관 261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Ⅲ(실손) 특별약관 258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Ⅳ(실손) 특별약관 260

자동차사고 입원일당(1-11급,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165
자동차사고 입원일당(1-14급,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163
자동차사고벌금(대물, 실손) 특별약관	256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특별약관	214
자동차사고치아보철지원금 특별약관	203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171
자전거벌금(실손) 특별약관	309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실손) 특별약관	307
자전거탑승중 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특별약관	127
자전거탑승중 상해사망 특별약관	126
장기보장성보험 적립부분 만기유지 특별약관	448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439
적립보험료 납입대체(자동차부상등급(1-7급),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시) 특별약관	210
전기통신금융사기(메신저피싱포함)피해보장(피해환급금제외)(실손) 특별약관	370
전자서명 특별약관	437
중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177
주요상해뇌출혈진단비 특별약관	134
주택건물(화재)건물재조달차액지원(실손) 특별약관	395
주택급배수시설누출손해(실손) 특별약관	392
주택화재임시거주비(1일이상)(실손) 특별약관	367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최초1회한) 특별약관	152
중증외상치료비(권역외상센터)(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17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435

(ㄷ)	
차대차사고 시세하락 위로금(자가용) 특별약관	337
창상봉합술치료비(1일1회한,연간3회한) 특별약관	157
창상봉합술치료비(안면부,1일1회한,연간3회한) 특별약관	158
척추골절진단비 특별약관	130
척추상해수술비(관혈/비관혈)(연간1회한,동일사고당1회지급) 특별약관	155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전중 사고 보험금 추가지급 특별약관	438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비(급여, 연간1회한) 특별약관	236
추간판탈출증수술비 특별약관	235

(ㄹ)	
타이어파손교체비용(수리제외,연간1회한)보장(자가용)(실손)(갱신형) 특별약관	332
탈구염좌및과간장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특별약관	207
특수건물 풍 수재손해(실손) 특별약관	394

(ㅎ)	
행정소송법률비용손해(실손) 특별약관	317
혼유사고처리비용(경유차량)(실손)(갱신형) 특별약관	324
홀인원비용(갈때기출제외)(정규홀,실손)(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30
화상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특별약관	150
화상진단비 특별약관	135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특별약관	410
화재벌금(실손) 특별약관	311
화재손해(실손) 특별약관	385

(A-Z)

PM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동승자제외)(영업목적 제외) 특별약관	377
PM 운전중 교통상해사망(영업목적 제외) 특별약관	219
PM 운전중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영업목적 제외) 특별약관	220
PM 운전중 교통상해 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영업목적 제외) 특별약관	222
PM 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4일이상180일한도)(영업목적 제외) 특별약관	223
PM 운전중 교통상해 부상치료비(1-3급)(영업목적 제외) 특별약관	225
PM 운전중 교통상해 부상치료비(1-10급)(영업목적 제외) 특별약관	226

약관 요약서

이 요약서는 그림·도표·아이콘·삽화 등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및 약관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요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I.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1.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기간**

면책기간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설정된 담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책기간 적용 담보 예시]

구분	담보명	면책기간
암진단특약	암 진단비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치매진단특약	경증이상 치매 진단비	가입 후 1년간 보장 제외

사례

A씨는 암보험 가입 후 2개월이 지나서 위암을 판정받아 보험회사에 암진단비를 청구

▶ 회사는 보험가입 후 90일이 경과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 **감액지급**

감액지급

50%
[1년 이내]

일정기간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감액지급)되는 담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액지급 적용 담보 예시]

구분	담보명	감액 기간 및 비율
급성심근경색 진단특약	급성심근경색 증 진단비	가입 후 1년간 보험금 50% 지급

■ **보장한도**

보장한도

최초 1회한

보험금 지급 한도가 설정된 담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장한도 적용 담보 예시]

구분	담보명	보장한도
뇌출혈진단특약	뇌출혈 진단비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질병입원특약	질병입원일당	1일 이상 180일 한도로 보장 (퇴원없이 계속 입원시 180일간 보장 제외)

보장한도

보험금 지급한도 적용

■ 자기부담금 차감

자기부담금

차감 후
지급

보장대상 의료비에 대해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의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을 차감하는 담보 예시]

구분	담보명	자기부담금 차감 금액
실손 의료 보험	상해급여 질병급여	통원 1회당 병원별 공제금액(1~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상해비급여 질병비급여	통원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3대비급여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2.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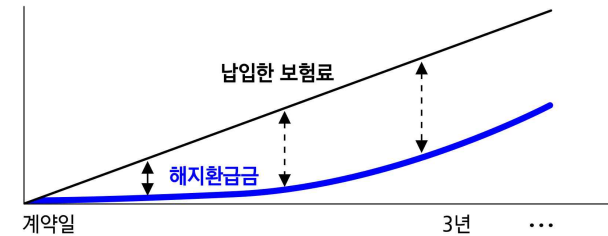
없음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지환급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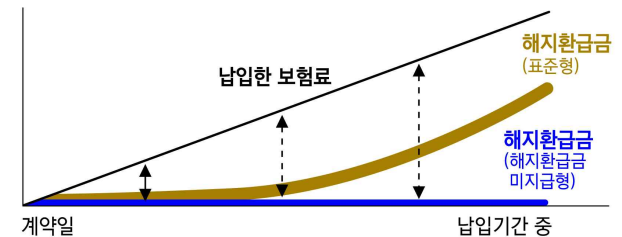
적음
[납입기간
중 해지시]

- ①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 보장애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 ②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③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표준형 보다 해지환급금이 적습니다. (해지환급금 저지급형)

(표준형)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3. 갱신 시 보험료인상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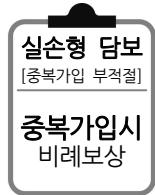
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계약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갱신형 계약은 갱신할 때 **마다** 연령의 증가, 위험률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실손보상형 담보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실손보상)하는 담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①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계약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비용)를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중복 가입 시 비례보상)
- ②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여러 개의 실손보상형 담보 가입하여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손보상형 담보]

자동차사고 벌금, 자동차사고 벌금(대물),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등

5.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 보장성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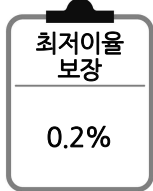
- ① 상해, 질병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이며, **저축이나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②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 저축성보험



- ①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적금 및 펀드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 ② 중도에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연동형 보험



- ① **적립환급금 산출**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됩니다.
- ② 동 **이율**은 납입한 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③ 보장성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2%**입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가입후 경과기간이 5년 이하는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하는 1.0%, 10년 초과는 0.2%로 합니다)
*공시이율이 하락하는 경우 회사가 보증하는 적용이율의 최저한도

■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 ① 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 ②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유병력자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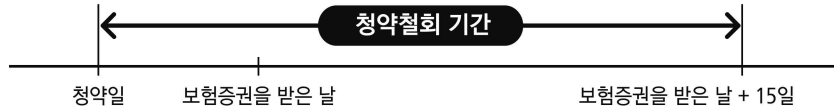


- ①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거 병력이 있는 고객**이 간단한 심사절차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② **일반보험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므로 건강한 일반인이 가입하는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II. 계약의 일반사항

1. 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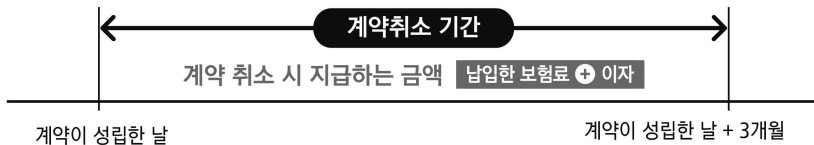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 ① 청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②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 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2. 계약의 취소

- 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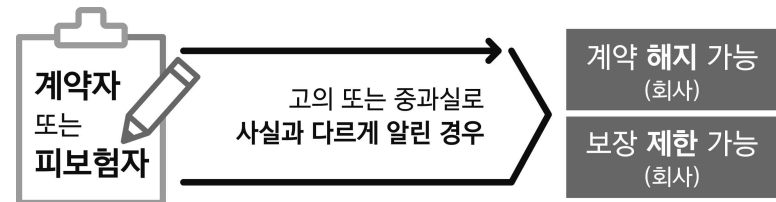


3. 계약의 무효

-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 포함)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피보험자 지정)로 한 경우
 -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4. 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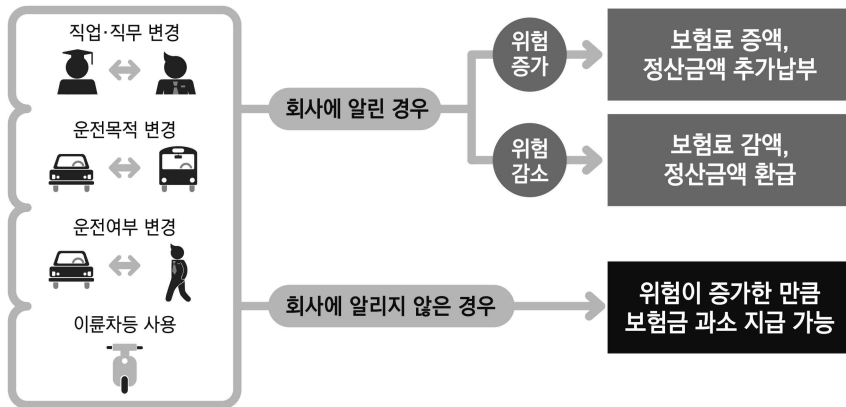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 ①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②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위반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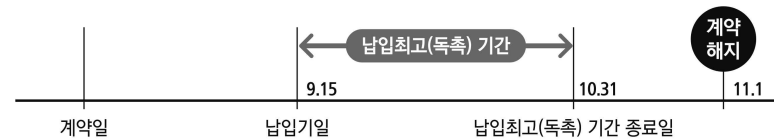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직업·직무변경이 발생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②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또는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 ③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셔야 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

-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됩니다.
- *납입최고(독촉)기간 : 14일 이상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7. 해지된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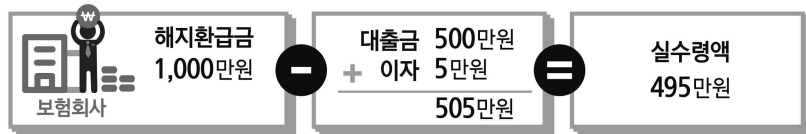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보험계약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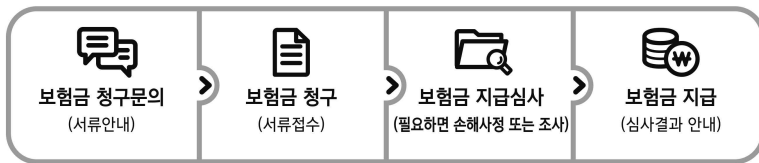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상환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이자는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②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계약자는 대출신청 전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9. 보험금청구절차

- 보험금 청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액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 청구서류가 간소화되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금청구 전에 보험회사에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II. 보험금 청구시 준비하여야 할 서류

1. 보험계약관련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필요서류	비고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금청구서(계좌번호 포함)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배우자, 자녀 등을 보장하는 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카드사본 등 ※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상해사고 청구시 - 사고 입증서류(별표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사 - 관공서
입원 실손 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 [단, 청구금액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대체가능]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상세)내역서(비급여 존재시) 	- 병원

구분	필요서류	비고	
입원 일당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예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 병원	
통원 실손 의료비	10만원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비계산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가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이 포함된 서류 (예시) 진단서·통원확인서·처방전·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 등 - 처방전 - 약제비계산서(영수증) 	- 병원 - 약국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비계산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가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단, 특정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처방전 - 약제비계산서(영수증) 	
	3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비계산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가 없는 경우, 생략 가능) [단, 특정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구분	필요서류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처방전 - 약제비계산서(영수증) 	
골절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 (예시) 통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X-ray 결과지,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 병원
수술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예시) 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진단서 등	- 병원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 - 조직검사 결과지 - 백혈병 :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 결과지 - 뇌/폐/췌장암 :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 못할 경우) - 간 :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 못할 경우) 및 혈액검사 결과지 	-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 - 각종 검사결과지 (예시) 관상동맥 조영술, 심전도, 심초음파 검사결과지, 심장효소 혈액검사결과지 등 	-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 - CT, MRI 등 방사선 판독결과지 	-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 - 진단사실 확인서류 	- 병원
장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유장애진단서 ※ 발급 전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 병원

구분	필요서류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 비장, 신장적출(적출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가 첨부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 수익자 미지정시 - 상속관계 확인서류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1인의 상속인이 전액 수령을 원하는 경우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인감도장(또는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병원 - 가족관계증명서는 사례별로 다르므로 사전 문의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병원
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 [단, 청구금액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대체가능] - 입퇴원확인서(인큐베이터 사용시 해당기간 명시)* * 진단서에 입원기간(인큐베이터 사용기간)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 	-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유산), 사산증명서(사산) 	- 병원

구분	필요서류	비고
응급비용	- 119 또는 129 구급구조증명서	- 소방서/ 구급대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별표> 상해사고 입증서류 예시

구분	필요서류	비고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공공기관 - 보험사/공제조합
산재사고	- 요양급여신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근로복지공단
군복무중 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군부대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법원
기타 상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공공기관
사고확인서류 발급불가시	- 병원초진차트 등 상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사고내용 기재(6하원칙에 따라 상세기재)	- 병원

2. 자동차운행관련 사고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필요서류	비고
공통	- 보험금청구서(계좌번호 포함)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사고입증서류 ※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보험사 - 관공서
긴급비용	- 견인비 영수증 - 수리비 견적서	- 수리업체
벌금	- 벌금영수증 - 법원 판결문 또는 약식 명령문	- 법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판결문, 구속영장(재소·출소증명서) - 공소장(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의 경우 약식기소 제외) -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 법원 - 법원
면허정지/취소	- 운전경력증명서 -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통지서(교육수로 후) 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확인서 -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또는 면허취소 확인원	- 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 피해자진단서, 공소장 - 경찰서에 제출된 형사합의서(합의금액 명시) - 피해자 공탁금 출금 확인서(미합의시) 및 공탁서 - 형사합의금이 입금된 내역	- 경찰서/법원 - 법원 - 법원 - 해당 금융기관

구분	필요서류	비고
자동차보험 할증지원금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결의서	- 보험사
자동차 부상치료비	- 사고증명서 1.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 : 해당 자동차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 2.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 (1) 자동차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차량피해 견적서, 차량피해사진 등) (2)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 보험사 - 병원 - 경찰서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 진단서 또는 소견서(진단명, 성형수술 부위와 크기, 수술내용 포함)	- 병원

3. 치아건강보험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필요서류	비고
공통	- 보험금청구서(계좌번호 포함)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보험사 - 관공서
영구치 발거치료비	- 치과치료 진료확인서(아래 내용 반드시 포함) · 발거한 영구치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해당 영구치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 병원

구분	필요서류	비고
	· 직접적인 영구치 발거원인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 치과진료기록 사본 - 치료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필요시 추가요청)	
영구치 보존치료비	- 치과치료 진료확인서(아래 내용 반드시 포함) · 치료한 치아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해당 치아의 내원 당시의 상태 · 직접적인 치아치료원인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 치과진료기록 사본 - 치료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필요시 추가요청)	- 병원
영구치 보철치료비	- 치과치료 진단서(아래 내용 반드시 포함) · 발거한 영구치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해당 영구치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 직접적인 영구치 발거원인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 치과진료기록 사본 - 치료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필요시 추가요청)	- 병원

4. 소득보장보험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필요서류	비고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금청구서(계좌번호 포함)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사 - 관공서
상해·질병 구직급여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수급자격증 - 실업급여지급결정통지서(직업안정기관의 長 발행) - 병가신청서 - 의사소견서(상해, 질병으로 인하여 고용업체에 서의 업무수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소견서) 	
구직급여일당 /장기구직급여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수급자격증 - 실업급여지급결정통지서(직업안정기관의 長 발행) 	

5. 재물·배상책임 보험

가. 재물보험

※ 사고에 따라 담당자가 추가서류 또는 원본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필요서류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증명원(화재사고인 경우) - 도난신고접수확인원(도난사고인 경우) - 사고증명서(기타 사고) - 보험금청구서(계좌번호 포함)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등기부등본(등기소) - 건축물관리대장 - 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기계비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기구 명세서 - 구입영수증 - 상품가격 견적서 - 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 감정평가서 - 리스계약서(리스물건)
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고 및 손해명세서 - 재고장부 - 원가계산서 - 거래명세서 - 임가공계약서, 작업지시서 - 수불대장

구분	필요서류
가재도구	- 가재도구명세서(구입연월일 명기) - 신품가격 견적서(구입처) - 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나. 배상책임보험

※ 사고에 따라 담당자가 추가서류 또는 원본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필요서류
피보험자(고객)가 준비하는 서류	- 피보험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고경위서(6하 원칙에 의거하여 작성) - 사고현장의 사진 - 사고보증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 합의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보험금 청구서(송금요청서)
손해액을 평가하는 서류	- 손해품목 명세서 - 견적서, 영수증(세금계산서) - 피해품 사진 - 차량등록증 사본 - 치료비 영수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후유장애진단서(후유장애가 있는 경우)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임금대장, 소득세 납세증명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	- 피해자의 신분증(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물등기부등본(피해목적물이 건물인 경우) - 차량등록증 사본(피해목적물이 차량인 경우) - 건설기계등록증 사본(피해목적물이 중기인 경우)



6. 홀인원비용, 알바트로스비용 보험

※ 사고에 따라 담당자가 추가서류 또는 원본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필요서류
피보험자(고객)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	-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 신분증 사본
피보험자(고객)가 준비하는 서류	- 보험금 청구서(송금요청서) - 사고경위서(6하 원칙에 의거하여 작성) - 스코어 카드 - 동반자 확인서(홀인원/알바트로스 증명서) (동반 경기자, 동반 캐디, 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의 공동서명·날인이 있어야 함) -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 만찬 비용, 축하 라운드 등 비용 지출 명세서(선불카드, 상품권 등의 물품전표 제외)



7. 당부의 말씀

- 경우에 따라 위 서류들은 다른 서류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자와 필요 서류에 대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보상상담 1588-0100으로 문의바랍니다.

IV.
자주
발생하는
민원 예시

☞ 사례1. 가입초기 환급률 과소 관련

- 사례 : A씨는 보험가입 6개월 후 개인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 유의사항 : 보험계약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사례2. 적립부분 환급률 관련

- 사례 : A씨는 보험가입 3년 후 콜센터를 통하여 가입한 상품의 환급률을 확인해 보았으며, 최초 가입시 가입설계서에서 안내받은 3년시점의 환급률보다 낮은 것에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 유의사항 :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중지표금리에 연동되며, 공시이율의 변경에 따라 적립부분 적립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례3. 실손의료비 공제금액 관련

- 사례 : A씨는 병원 치료 후 급여의료비 및 비급여의료비를 실손의료비 보험금으로 청구하였으나, 각각 공제금액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 유의사항 : 실손의료비는 급여의료비와 비급여의료비로 구분되어 있고, 공제금액을 각각 적용하고 있습니다.

☰ 사례4. 실손의료비 한방 비급여 면책관련

- 사례 : A씨는 치료목적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비급여부분이 보상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 유의사항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따라,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밖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
신용정보
제공 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가. 금융서비스 이용범위

고객의 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이용목적만으로 사용되며, 보험관련 금융서비스는 제휴회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신상품서비스 등은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해당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ICE신용평가정보(주)	02-3771-1000	www.nicecredit.com
서울신용평가정보(주)	1577-1006	www.sci.co.kr
코리아크레딧뷰로(주)	02-708-6000	www.koreacb.com

다. 고객불편사항 연락처

● 고객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중단 신청

고객은 가입신청 시 동의한 본인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또는 당사의 보험·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제공활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 인프라를 해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업무위탁회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동의철회는 제한됩니다.

본인정보 활용의 제한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연락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080-323-0100
- 홈페이지 : www.idbins.com
- 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대치동, DB금융센터)
DB손해보험주식회사 소비자보호파트

※ 단, 신규거래 고객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의 신청과 관련한 불편과 애로가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당사 개인신용정보 고충처리담당자	손해보험협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연락처	(02) 3011-4992	(02) 3702-8500	1332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대치동, DB금융센터) DB손해보험주식회사 소비자보호파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6층 (수송동, 코리안리빌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VI.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의무라고도 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체결시에 보험자에 대해서 고지사항을 부실하게 알려서는 안될 의무를 지는데 이것을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한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하였거나 보험계약자의 책임개시 이후 2년이 경과(건강진단을 받은 경우는 1년 경과, 상법에서는 3년)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위험이 증가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이다. 우리 상법 제652조와 제653조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통지를 받은 보험회사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현행 손해보험표준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 위험의 변경사항 발생시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변경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변경 전 보험요율의 변경 후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는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와는 달리 보험계약 안에서 인정되는 의무이다.

만기환급금

장기의 적립형보험에 있어서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사고가 없는 경우 납입보험료중 일정률의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이다.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 포함된 적립보험료를 운용한 예정이자와 원리금의 합계액에 상당한다.

미경과보험료 [Unearned Premium]

미경과보험료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영업보험료 중에서 아직 당해 보험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료를 말한다. 가령 보험자가 1년치 보험료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했다면, 받은 보험료의 1/2은 나머지 6개월(미경과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미경과보험료라 한다. 미경과보험료는 보험자가 향후 제공할 보장서비스에 대응하여 미리 수취한 금액에 해당되므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부채로 계상된다. 즉 보험자는 연1회의 결산시에 그 연도중에 수입보험료의 전부를 이익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기 수취한 보험료 가운데 차기로 이월하는 미경과분을 미경과보험료준비금의 과목으로 계상하게 된다.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보험가액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의 최고한도액을 말하며 손해보험에만 존재하는 개념이다. 보험금액이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약정한 금액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자가 지급할 금액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이같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이유는 계약체결시에 보험자의 보상한도를 명확히 함으로서 합리적이고 정확한 보험료율을 산출하기 위함이다. 보험가액의 경우 때와 장소에 따라 변동 할 가능성이 있고, 책임보험이나 인보험 등은 평가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자의 보상한도를 구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보험가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보험계약대출 [Policy Loan]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하는 계약이다. 보험기간 중 사정변경으로 보험료 지급의 계속이 곤란하거나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해지 대신 보험계약 해지시 지급하여야 할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대출을 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유지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의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

보험계약일

계약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료 [Premium]

보험계약에서는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보험자가 위험부담이라는 급부를 제공하는 데 대응해서, 다른 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이 보수를 보험료라고 하는 것이다. 보험료의 액수는 통상 보험금액에 따라, 그리고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 1) 보장보험료 :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보험료
- 2) 적립보험료 : 보험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 3) 적립부분 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신체 및 비용관련 손해에 한하며, 재산손해 및 배상책임관련 손해는 제외) 또는 만기환급금 지급시기에 만기환급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보험안내자료 [Insurance Guide Materials]

보험상품의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료로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을 하는 자의 명칭,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기타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에 제출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경우 외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등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부담보기간

부담보(특별조건부 인수특약)기간이란 보험사에서 표준미달체의 보험계약시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가입이 제한되는 피보험자의 계약을 조건부로 승낙하는 경우, 혹은 도덕적 해이 등에 의한 보험사기가 우려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청약시 피보험자가 병력에 대해 보험회사에 고지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해당 질병 및 부위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인수할 때 발생한다. 부담보기간은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 치료기간, 치료부위 등에 따라 상이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기간 전기간에 걸쳐 부담보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하기도 한다. 암보험에서 계약체결 이후 90일간 암 담보를 하지 않는 것은 대표적인 부담보 사례라 할 수 있다.

자동갱신제도

보험계약기간의 만료시점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갱신하고 싶지 않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자동으로 동일한 계약내용을 동일 기간동안 연장하는 제도이다. 계약자가 갱신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거나, 보험료 수준 변동내역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만료 전에 계약 만료시점과 보험료 변동내역을 유선 혹은 문서로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동 사항을 안내받은 보험계약자가 갱신거절을 보험회사에 통보할 경우 보험계약은 갱신되지 않으며, 총 보험금 지급금액 등 보험회사가 정한 일정한 조건에 부합될 경우 보험회사가 자동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다. 자동갱신제도의 적용은 1년 만기 일반보험 상품이나 장기보험 의료비 특약 등에서 이루어진다.

책임준비금 [Policy Reserve]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부채로서 보험료 중 예정기초율에 따라 비용(예정사업비, 위험보험료)을 지출하고 계약자에 대한 채무(사망보험금, 중도급부금, 만기보험금 등)를 이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이 법규에 의해 적립을 강제한 법정준비금이며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보험료적립금이 책임준비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험료적립금이란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또한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받고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들은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험료의 납입의무가 없으나, 다만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동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목적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향유한 자이어야 한다.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재산손해 및 배상책임관련 손해의 경우에는 사고의 발생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해당 보험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해지환급금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해약 및 해제 등의 경우에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해지환급금은 책임준비금에서 해약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국내에서는 해약시점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해약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두 가지에 기인하게 되는데 첫째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 부분에 의해 발생되며, 둘째는 평균보험료방식 때문에 발생된다. 평균보험료방식에서는 계약초기에 피보험자의 위험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적립되어 향후에 위험수준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시기에 사용된다.

휴면보험금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만기되어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보험계약자가 이를 3년 동안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이 실효된 뒤 3년이 경과된 계약의 환급금, 만기가 지난 뒤에도 찾아가지 않은 만기 보험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휴면보험금은 청구권이 소멸된 금액으로서 상법상으로는 보험회사에 귀속되나, 당연히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기 때문에 휴면보험금이 확인될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환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이 자신의 휴면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을 설치·운영('06.4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험계약자가 생·손보험회 홈페이지를 통해 휴면보험금을 포함한 손보험회사의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10.7월)하였다. 한편, 보험회사는 휴면보험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서민금융진흥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6.9.23))에 출연하고 동 재단에서 휴면보험금 관리·환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Ⅶ. 프로미라이프 지식백과

아래의 내용은 금융감독원에서 발간한 「보험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핸드북 내용을 요약한 자료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상품 내용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듣기

1. 반드시 설명을 들어야 할 사항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상법 제638조의3, 보험업법 제95조의 2)

‘중요한 내용’이란 보험료와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사유 등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 통념상 그 사항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해석되는 사유를 말합니다.

2. 설명의무 위반의 입증책임 및 효과

보험약관의 교부와 중요한 내용을 설명했다는 증명은 보험회사가 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등의 사유로 설명의무가 면제될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도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보험회사가 약관 교부·설명무리를 위반한 경우 해당 약관 조항을 보험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약관규제법 제3조), 상법상 보험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8조의3 제2항)

2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이행하기

1. 고지의무의 내용

보험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고지의무 이행 방법

‘중요한 사항’의 내용은 대부분 보험사가 동일하며, 주로 현재 및 과거의 질병이나 장애, 직업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발생 개연성을 측정하여 보험계약 체결여부와 보험료 등을 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상법은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 이내의 진단·치료”에 대한 부분은 가장 많은 다툼의 여지가 되는 항목이므로, 청약서에 있는 (병력사항)질문표에 기재함으로써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고지의 상대방은 보험회사 등 고지수령권이 있는 자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나 계약대리점은 고지수령권이 있지만,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청약서에 서면으로 기재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고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3. 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그 위반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1조) 보험약관에는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날부터 1개월,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난 경우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보험회사의 권리행사기간을 더욱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청약철회제도

1. 청약철회의 개념 및 대상

보험을 계약한 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거나 변심에 의한 경우도 일정한 기간 내에는 위약금이나 손해 없이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 상품인 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가입여부를 다시 한 번 신중히 재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 보험종목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중 가입기간 1년 이상 가계성 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자동차보험·화재보험·배상책임보험 등은 제외됩니다.

2. 청약철회 방법 및 효과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기납입 보험료를 반환하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경우 일정한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에 기간별 가산이율을 더한 이율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4 계약취소와 품질보증제도

1. 계약취소의 개념과 요건

보험 계약취소 제도는 보험 품질보증제도라고도 하며, 청약철회와 달리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사유라 함은 ①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주지 않거나, ②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③계약자가 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를 의미하며, 이를 '3대 기본지키기'라고도 합니다.

'3대 기본지키기'를 위반한 계약에 대하여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취소사유와 내용을 기재한 계약취소 청구서를 작성하여 내 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회사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2. 계약취소의 효과

보험 계약취소 요청이 접수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하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약관

1종(연만기) 및
2종(세만기)

운전자 가입시

운전자 :
자동차부상
치료비
(1~7급)

어려운 용어는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참고	35
인용 법규는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 참고	526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상해 등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2.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관계 관련 용어

용어	정의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② 지급사유 관련 용어

용어	정의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장해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에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부호 체계

【별표】에서 사용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질병의 원인과 증상 두 가지 모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진단을 위해 아래 두 가지 분류부호가 사용됩니다.

또한 원인과 질환에 따라 동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검표(+): 원인이 되는 질환에 대한 질병분류코드
- 별표(*): 원인(검표)으로 인한 발현증세에 대한 질병분류코드

③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용어	정의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보장부분 적용이율	보장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④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용어	정의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⑤ 보험료 관련 용어

“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납입기간동안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료로서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3.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의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또는 7급에 해당하는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보통약관의 가입금액을 운전

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으로 지급합니다.

-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③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7급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인용 문구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보험금 지

- 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③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6.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3.(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7.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인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인용 문구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8.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7.(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위 ①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7.(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

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① 소송제기
 - ② 분쟁조정 신청
 - ③ 수사기관의 조사
 - ④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⑤ 아래 ⑥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⑥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③ 위 ②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 ④ 위 ②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 ⑤ 회사는 위 ①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위 ②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9】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16.(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위 ②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회사는 위 ⑥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9. (만기환급금의 지급)

-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절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기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공시이율이 보험기간 중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36.(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2%로 합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위 ①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④ 회사는 위 ①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9】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에 따릅니다.



용어
풀이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외부지표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0.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0.2%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2%)로 적립됩니다.

10.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 1년 후 : 100원 + (100원 × 10%) = 110원
- 2년 후 : 110원 + (110원 × 10%) = 121원

11. (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위 ①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12. (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며, 그 밖의 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13.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예시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로 합니다.

연대

2인 이상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되(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 다름), 다만 어느 1인의 이행으로 나머지 사람들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14.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인용 문구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예시

보험청약시 보험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작성하는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질문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①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용어 풀이

직업

- ①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서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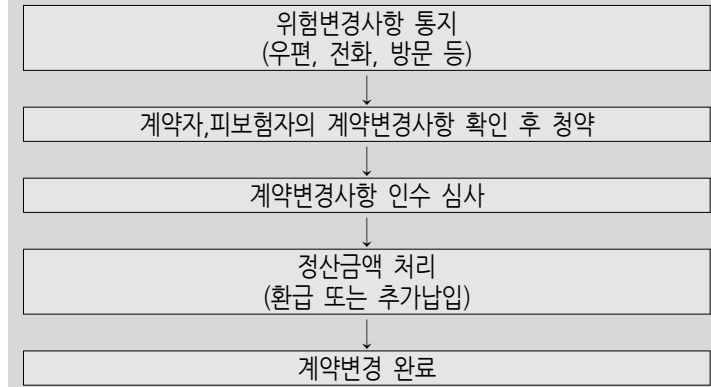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 ②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 ③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 ④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22.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 지식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소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위 ①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①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위 ④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치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16.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4.(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15.(계약 후 알릴 의무) ①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② 위 ①.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가 최초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④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위 ①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35.(해지환급금) ①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위 ①.①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⑤ 위 ①.②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15.(계약 후 알릴 의무) ④ 또는 ⑤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위 ①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④ 및 ⑤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⑧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위 ②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17.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18. (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특별보험료를 추가로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 1년 후 : 100원 + (100원 × 10%) = 110원
 - 2년 후 : 110원 + (110원 × 10%) = 121원

- ⑤ 회사가 위 ②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

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⑥ 위 ⑤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28.(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⑦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위 ⑤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19.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할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위 ①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20.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① 서면교부
- ② 우편 또는 전자우편
- ③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위 ①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①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②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
지식**

약관의 중요한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 2(설명 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 2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용어
풀이**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사가 위 ①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인용
문구**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 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가. 서명자의 신원
-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용어
풀이**

자필서명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란에 사인(signature)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②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②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⑤ 위 ③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

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21.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②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심신상실자
의식은 있으나 정신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

심신박약자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

- ③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위 ②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2. (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① 보험종목
 - ② 보험기간
 - ③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 ④ 계약자, 피보험자
 - ⑤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예시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가 위 ①.⑤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35.(해지환급금) ①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감액
보험료, 보험금,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입금액을 계약시 선택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줄이는 것 (이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 및 적립액(해지환급금)도 줄어듭니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 ⑤ 계약자가 위 ②의 규정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⑥ 회사는 위 ①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⑦ 위 ①에 따라 계약의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의 변경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⑧ 위 ①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만기(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지)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23. (보험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21.(계약의 무효) ②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청약서류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 지식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계약해당일 계산 예시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계약일 : 2016년 2월 29일 ⇒ 계약해당일 : 2017년 2월 28일

24. (계약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용어 풀이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실종의 선고(민법 제27조)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

- ④ 위에 따라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8.(보험금의 지급절차)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8.(보험금의 지급절차)에 따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9】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을 따릅니다.
- ⑤ 위 ③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두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32.(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 ①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경우
 -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제5관 보험료의 납입

25.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② 위 ①의 보험료는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손해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이하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 ③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보험
지식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④ 회사는 위 ③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① 14.(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② 16.(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③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할 때 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26.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

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용어
풀이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26-1. (보험료 납입면제)

- ①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중 피보험자에게 운전자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의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의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또는 7급에 해당하는 부상등급을 받거나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③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 4 위 1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위 3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 5 회사는 위 1에 따라 피보험자의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하여 드립니다.
- 6 위 1에도 불구하고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위 1에서 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의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또는 7급에 해당하는 부상등급을 받거나 장애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7 위 1에서 정한 장애상태에 대한 판정기준은 [제1장 손해관련 특별약관, 7-1. 운전자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특별약관]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을 따릅니다.
- 8 위 1에서 정한 부상등급에 대한 세부규정은 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을 따릅니다.

27.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1 계약자는 28.(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8.(보험계약대출) 1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2 계약자는 아래 1의 금액이 2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 1 위 1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
 - 2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
- 3 위 1 및 2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1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4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35.(해지환급금) 1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5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용어
풀이

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약자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해당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이를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8.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1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 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납입최고(독촉)

용어 풀이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의 납입을 재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회사가 위 ①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위 ①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 인용 문구**
-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 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가. 서명자의 신원
 -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 ③ 위 ①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35.(해지환급금) ①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9.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28.(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내

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부활(효력회복)

용어 풀이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 ② 위 ①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14.(계약 전 알릴 의무), 16.(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7.(사기에 의한 계약), 18.(보험계약의 성립) 및 25.(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 ③ 위 ①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14.(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6.(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평균공시이율

용어 풀이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22.(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위 ①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위 ①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위 ①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위 ①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31.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5.(해지환급금) ①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21.(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35.(해지환급금) ①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2.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위 ①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35.(해지환급금) ①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33.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위 ①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위 ①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위 ②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35.(해지환급금) ①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4. (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①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위 ① 및 ③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35. (해지환급금) ⑤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위 ①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5.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이 계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기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공시이율이 보험기간 중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36.(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2%로 합니다.
- ③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9】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⑤ 34.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용어 풀이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외부지표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0.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0.2%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2%)로 적립됩니다.

36.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계약에서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일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여기서 공시이율은 「보장성 공시이율1701.(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공시이율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등의 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계산)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최저보증이율은 0.2%로 합니다.
- ④ 회사는 위 ②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37. (중도인출금)

- ① (수시중도인출)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에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계약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매 보험년도마다 4회에 한하여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시점의 보통약관 해지환급금과 보통약관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의 80%이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보험년도

보험계약일로부터 다음 해의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17년 2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2월 15일부터 다음 해 2월 14일까지의 1년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중도인출금의 한도 예시

중도인출을 요청하는 시점에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한 보통약관 해지환급금과 보통약관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 80% = 80만원
-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30만원인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 30만원) × 80% = 56만원

- ② (정기중도인출) 계약체결시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매년 계약 해당일에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이후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지급시기를 매년 계약 해당일이 아닌 별도의 날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정기적인 중도인출금은 매년 일정금액의 중도인출이 가능한 1종(연만기) 계약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1종(연만기) 계약이란 보통약관 보험기간 10, 15, 20년 만기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중도인출가능금액은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보통약관 해지환급금과 보통약관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그 원금과 이자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의 80%를 한도로 합니다. 보험료의 지연 납입 또는 공시이율의 변동 등에 따라 매년 계약 해당일 시점에 계산된 정기적인 중도인출금액이 매년 정해진 일정금액보다 적을 경우 정기적인 중도인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③ 위 ②의 정기중도인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위 ①의 수시중도인출에 의한 중도인출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위 ②의 중도인출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①의 수시중도인출에 의한 중도인출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④ 중도인출시 만기(해지)환급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만기(해지)환급금이 감소합니다.

38. (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위 ①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위 ②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28.(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39.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관 분쟁조정 등

40. (분쟁의 조정)

-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41.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42. (소멸시효)

- ①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② 제 ①의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소멸시효 예시

예시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7년 1월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3.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44.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의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용어 풀이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45.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

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용어 풀이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 이라면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46. (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 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47.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48.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보험 지식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약관

1종(연만기) 및
2종(세만기)

비운전자 가입시

비운전자 :
자동차부상
치료비
(1~7급)

어려운 용어는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참고	35
인용 법규는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 참고	526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상해 등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2.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관계 관련 용어

용어	정의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② 지급사유 관련 용어

용어	정의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장해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이 거절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부호 체계

보험
지식

【별표】에서 사용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질병의 원인과 증상 두 가지 모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진단을 위해 아래 두 가지 분류부호가 사용됩니다.

또한 원인과 질환에 따라 동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검표(+): 원인이 되는 질환에 대한 질병분류코드
- 별표(*): 원인(검표)으로 인한 발현증세에 대한 질병분류코드

③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용어	정의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보장부분 적용이율	보장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④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용어	정의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⑤ 보험료 관련 용어

“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납입기간동안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료로서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3.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의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또는 7급에 해당하는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보통약관의 가입금액을 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으로 지급합니다.

-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7급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

②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인용
문구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 ③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⑤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6.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3.(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7.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인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인용
문구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8.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7.(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위 ①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 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7.(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① 소송제기

- ② 분쟁조정 신청
 - ③ 수사기관의 조사
 - ④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⑤ 아래 ⑥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⑥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③ 위 ②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합니다.
- ④ 위 ②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 ⑤ 회사는 위 ①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위 ②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9】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16.(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위 ②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회사는 위 ⑥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9. (만기환급금의 지급)

-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기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 경우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공시이율이 보험기간 중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36.(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2%로 합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위 ①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④ 회사는 위 ①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9】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에 따릅니다.



용어
풀이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 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외부지표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0.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0.2%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2%)로 적립됩니다.

10.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 1년 후 : 100원 + (100원 × 10%) = 110원

- 2년 후 : 110원 + (110원 × 10%) = 121원

11. (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위 ①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12. (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며, 그 밖의 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13.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예시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로 합니다.

연대

2인 이상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되(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 다름), 다만 어느 1인의 이행으로 나머지 사람들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14.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인용 문구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예시

보험청약시 보험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작성하는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질문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①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용어 풀이

직업

- ①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서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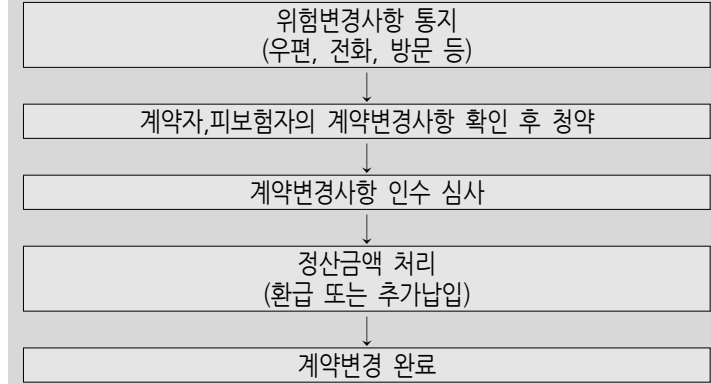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 ②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 ③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 ④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의 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22.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 지식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위 ①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①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위 ④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치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16.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4.(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15.(계약 후 알릴 의무) ①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② 위 ①.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가 최초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④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위 ①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35.(해지환급금) ①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위 ①.①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⑤ 위 ①.②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15.(계약 후 알릴 의무) ④ 또는 ⑤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위 ①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④ 및 ⑤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⑧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위 ②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17.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18. (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특별보험료를 추가로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 1년 후 : 100원 + (100원 × 10%) = 110원
 - 2년 후 : 110원 + (110원 × 10%) = 121원

- ⑤ 회사가 위 ②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

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⑥ 위 ⑤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28.(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⑦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위 ⑤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19.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위 ①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20.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① 서면교부
- ② 우편 또는 전자우편
- ③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위 ①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①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②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
지식**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 2(설명 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 2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용어
풀이**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사가 위 ①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인용
문구**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 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가. 서명자의 신원
 -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용어
풀이**

자필서명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란에 사인(signature)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②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②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⑤ 위 ③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21.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②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용어
풀이

심신상실자

의식은 있으나 정신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

심신박약자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

- ③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위 ②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2.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① 보험종목

- ② 보험기간
- ③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 ④ 계약자, 피보험자
- ⑤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예시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가 위 ① ⑥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35.(해지환급금) ①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감액

보험료, 보험금,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입금액을 계약시 선택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줄이는 것 (이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 및 적립액(해지환급금)도 줄어듭니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 ⑤ 계약자가 위 ②의 규정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⑥ 회사는 위 ①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⑦ 위 ①에 따라 계약의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의 변경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⑧ 위 ①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만기(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지)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23. (보험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21.(계약의 무효) ②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청약서류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보험
지식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계약해당일 계산 예시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계약일 : 2016년 2월 29일 ⇒ 계약해당일 : 2017년 2월 28일

24. (계약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용어
풀이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실종의 신고(민법 제27조)

인용
문구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

용어
풀이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

- ④ 위에 따라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8.(보험금의 지급절차)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8.(보험금의 지급절차)에 따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9】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을 따릅니다.
- ⑤ 위 ③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두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32.(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경우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제5관 보험료의 납입

25.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

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차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차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② 위 ①의 보험료는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손해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이하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 ③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보험
지식**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④ 회사는 위 ③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① 14.(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② 16.(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③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할 때 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26.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용어
풀이**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26-1. (보험료 납입면제)

- ①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중 피보험자에게 비운전자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의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의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또는 7급에 해당하는 부상등급을 받거나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 1. 덤프트럭
 - 2. 타이어식 기중기
 - 3. 콘크리트믹서트럭
 -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6. 타이어식 굴착기
 -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 ③ 위 ①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

레일

- ②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위 ②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위 ①에 따라 피보험자의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하여 드립니다.
- ⑤ 위 ①에도 불구하고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위 ①에서 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5)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의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또는 7급에 해당하는 부상등급을 받거나 장애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⑥ 위 ①에서 정한 장애상태에 대한 판정기준은 [제1장 손해관련 특별약관, 7-2. 비운전자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특별약관]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을 따릅니다.
- ⑦ 위 ①에서 정한 부상등급에 대한 세부규정은 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을 따릅니다.

27.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① 계약자는 28.(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8.(보험계약대출) ①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② 계약자는 아래 ①의 금액이 ②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 ① 위 ①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
 - ②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
- ③ 위 ① 및 ②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로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①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35.(해지환급금) ①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자동대출납입

용어
풀이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약자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해당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이를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8.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 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납입최고(독촉)

용어
풀이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의 납입을 재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회사가 위 ①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위 ①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 인용문구**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 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가. 서명자의 신원
 -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③ 위 ①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35.(해지환급금) ①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9.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28.(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리 연동형보험은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부활(효력회복)

용어 풀이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 ② 위 ①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14.(계약 전 알릴 의무), 16.(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7.(사기에 의한 계약), 18.(보험계약의 성립) 및 25.(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 ③ 위 ①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14.(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6.(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평균공시이율

용어 풀이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22.(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위 ①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위 ①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위 ①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위 ①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용어 풀이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31.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5.(해지환급금) ①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21.(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35.(해지환급금) ①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2.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위 ①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35.(해지환급금) ①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33.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위 ①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위 ①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위 ②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35.(해지환급금) ①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4. (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범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

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①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위 ① 및 ③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35. (해지환급금) ⑤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위 ①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5.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이 계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기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공시이율이 보험기간 중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36.(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2%로 합니다.
- ③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9】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⑤ 34.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용어
풀이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외부지표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0.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0.2%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2%)로 적립됩니다.

36.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계약에서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여기서 공시이율은 「보장성 공시이율1701」(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공시이율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등의 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계산)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최저보증이율은 0.2%로 합니다.
- ④ 회사는 위 ②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37. (중도인출금)

- ① (수시중도인출)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에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계약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매 보험년도마다 4회에 한하여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시점의 보통약관 해지환급금과 보통약관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그 원금과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의 80%이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보험년도

보험계약일로부터 다음 해의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17년 2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2월 15일부터 다음 해 2월 14일까지의 1년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중도인출금의 한도 예시

중도인출을 요청하는 시점에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한 보통약관 해지환급금과 보통약관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 80% = 80만원
-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30만원인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 30만원) × 80% = 56만원

- ② (정기중도인출) 계약체결시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매년 계약 해당일에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이후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지급시기를 매년 계약 해당일이 아

닌 별도의 날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정기적인 중도인출금은 매년 일정금액의 중도인출이 가능한 1종(연만기) 계약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1종(연만기) 계약이란 보통약관 보험기간 10, 15, 20년 만기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중도인출가능금액은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보통약관 해지환급금과 보통약관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그 원금과 이자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의 80%를 한도로 합니다. 보험료의 지연 납입 또는 공시이율의 변동 등에 따라 매년 계약 해당일 시점에 계산된 정기적인 중도인출금액이 매년 정해진 일정금액보다 적을 경우 정기적인 중도인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③ 위 ②의 정기중도인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위 ①의 수시중도인출에 의한 중도인출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위 ②의 중도인출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①의 수시중도인출에 의한 중도인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중도인출시 만기(해지)환급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만기(해지)환급금이 감소합니다.

38. (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위 ①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위 ②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28.(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39.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관 분쟁조정 등

40. (분쟁의 조정)

-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41.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42. (소멸시효)

- ①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② 제 ①의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소멸시효 예시

예시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7년 1월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3.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44.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할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에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용어
풀이

계약의 청약에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45.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용어
풀이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 이라면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46. (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 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47.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48.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보험
지식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별약관

1종(연만기) 및

2종(세만기) 공통

제1장 상해관련

어려운 용어는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참고	35
인용 법규는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 참고	526

1 |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1-1 운전자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 운전자 교통상해로 장애분류표(별표1)장애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애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운전자 교통상해후유장해(3-100%)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위 운전자 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③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 ④ 위 ①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위 ③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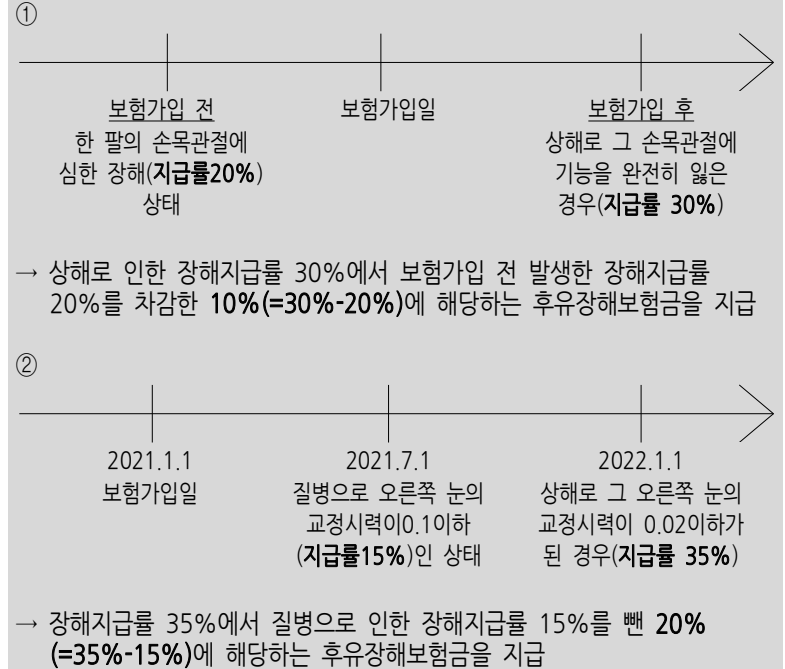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애지급률이 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애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에 장애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장애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애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장애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

- 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운전자 교통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운전자 교통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⑥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해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는 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로 봅니다.
 -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예시

보험금 지급 예시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2 비운전자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 비운전자 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비운전자 교통상해후유장해(3-100%)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위 비운전자 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 ③ 위 ①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위 ②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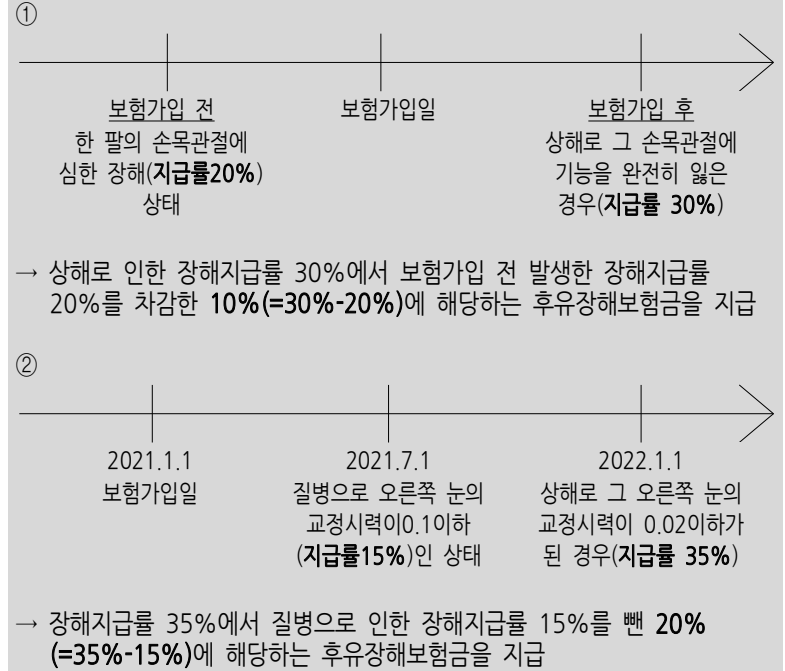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비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비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비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될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비운전자 교통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비운전자 교통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⑥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해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는 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로 봅니다.
-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예시

보험금 지급 예시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 |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2-1 운전자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운전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운전자 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위 운전자 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③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 ④ 위 ①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위 ③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른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운전자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용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④ 위 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32.(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2 비운전자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비운전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비운전자 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위 비운전자 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

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 1. 덤프트럭
- 2. 타이어식 기중기
- 3. 콘크리트믹서트럭
-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6. 타이어식 굴착기
-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 ③ 위 ①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②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④ 위 ②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비운전자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④ 위 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32.(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 | 교통상해사망유족자금(매월5년간지급) 특별약관

3-1 운전자 교통상해사망유족자금(매월5년간지급)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운전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년 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보험수익자에게 운전자 교통상해사망유족자금으로 확정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영업일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 합니다.
위 운전자 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③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구 분	지급금액(1회 지급액)	지급방법
운전자 교통상해사망유족자금 (매월5년간지급)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년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확정지급(총60회)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 ④ 위 ①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위 ③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④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운전자 교통상해사망유족자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운전자 교통상해사망유족자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④ 위 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32.(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비운전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년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보험수익자에게 비운전자 교통상해사망유족자금으로 확정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영업일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 합니다.

위 비운전자 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구 분	지급금액(1회 지급액)	지급방법
비운전자 교통상해사망유족자금 (매월5년간지급)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년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확정지급(총60회)

② 위 ①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 ③ 위 ①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위 ②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④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비운전자 교통상해사망유족자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비운전자 교통상해사망유족자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④ 위 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32.(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 |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특별약관

4-1 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운전자 교통상해로 장애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애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위 운전자 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③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 1. 덤프트럭
- 2. 타이어식 기중기
-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 ④ 위 ①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위 ③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운전자 교통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운전자 교통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⑥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해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는 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로 봅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합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2 비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비운전자 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비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위 비운전자 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 ③ 위 ①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위 ②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비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비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비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비운전자 교통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비운전자 교통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⑥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해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는 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로 봅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비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5 |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 (매월5년간지급) 특별약관

5-1 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 (매월5년간지급)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운전자 교통상해로 장애분류표(별표1)장애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애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년 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에 보험수익자에게 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으로 확정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영업일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 합니다.
위 운전자 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③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구 분	지급금액(1회 지급액)	지급방법
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 (매월5년간지급)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년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확정지급(총60회)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 ④ 위 ①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함)
 - ④ 위 ③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운전자 교통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운전자 교통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⑥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해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는 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로 봅니다.
- ⑧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평균공시이율

용어 풀이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5-2 비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매월5년간지급)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비운전자 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년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보험수익자에게 비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으로 확정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영업일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 합니다.
위 비운전자 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구 분	지급금액(1회 지급액)	지급방법
비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 (매월5년간지급)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년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확정지급(총60회)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 ③ 위 ①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위 ②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비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비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비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비운전자 교통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비운전자 교통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⑥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해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는 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로 봅니다.
 - ⑧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비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평균공시이율

용어 풀이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비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6 |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 (매월7년간지급) 특별약관

6-1 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 (매월7년간지급)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운전자 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7년 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에 보험수익자에게 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으로 확정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영업일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 합니다.

위 운전자 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③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구 분	지급금액(1회 지급액)	지급방법
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 (매월7년간지급)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7년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확정지급(총84회)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추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 ④ 위 ①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위 ③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애지급률이 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애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에 장애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장애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애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장애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

는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운전자 교통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운전자 교통상해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애가 이미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애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애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애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⑥에 규정하는 후유장애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애에 대한 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애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애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애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애는 위의 후유장애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애로 봅니다.
- ⑧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애생활자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평균공시이율

용어 풀이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애생활자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6-2

비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애생활자금(최초1회한) (매월7년간지급)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비운전자 교통상해로 장애분류표(별표1)장애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애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7년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보험수익자에게 비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애생활자금으로 확정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영업일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 합니다.
위 비운전자 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구 분	지급금액(1회 지급액)	지급방법
비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 (매월7년간지급)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7년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확정지급(총84회)

② 위 ①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스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③ 위 ①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위 ②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비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비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비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비운전자 교통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비운전자 교통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⑥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해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는 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로 봅니다.
- ⑧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비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

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평균공시이율

용어 풀이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비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 |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
(매년5%체증형)(매월5년간지급) 특별약관**

**7-1 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
(매년5%체증형)(매월5년간지급)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운전자 교통상해로 장애분류표(별표1)장애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애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지급대상금액”을 5년 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에 보험수익자에게 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생활자금(매년5%체증형)으로 확정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영업일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 합니다. 위 운전자 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③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구분	지급금액(1회 지급액)	지급방법
운전자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 (매년5%체증형) (매월5년간지급)	사고 발생시점의 “지급대상금액”	5년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확정지급(총60회)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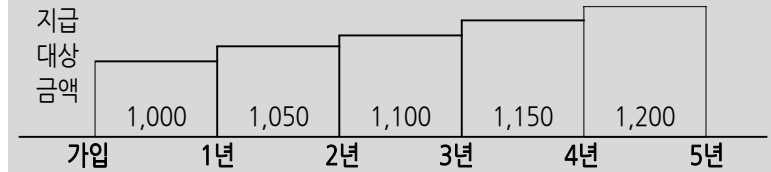
- 4 위 1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위 3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 5 위 1에서 “지급대상금액”이라 함은 보험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최대 20년까지 매년 이 특별약관의 최초 보험가입금액의 5%씩 증액하는 금액을 말하며, 최초 보험가입금액의 2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6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가입금액을 위 5의 최초 보험가입금액으로 봅니다.
- 7 위 1 및 5의 “지급대상금액”은 가입시점부터 사고일이 속한 날까지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험
지식

<보상예시1> 5년만기 가입시 “지급대상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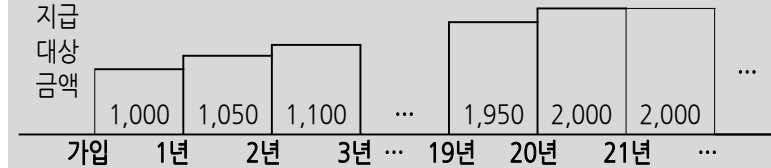
기준 : 최초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단위 : 만원



보험
지식

<보상예시2> 20년초과만기 가입시 “지급대상금액”

기준 : 최초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단위 : 만원



보험
지식

<보상예시3> 보험금 예시

최초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가정 : 가입 후 2년 6개월째 보험사고 발생
 보험금 : 사고시점의 “지급대상금액”인 1,100만원을 1에서 정한 지급방법에 따라 확정지급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2 위 1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운전자 교통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운전자 교통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⑥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해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는 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로 봅니다.
- ⑧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평균공시이율

☞ 용어 풀이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매년 5%체증형)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절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2 비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매년5%체증형)(매월5년간지급)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비운전자 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지급대상금액”을 5년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보험수익자에게 비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매년5%체증형)으로 확정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영업일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 합니다.
 위 비운전자 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구분	지급금액(1회 지급액)	지급방법
비운전자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 (매년5%체증형) (매월5년간지급)	사고 발생시점의 “지급대상금액”	5년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확정지급(총60회)

② 위 ①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③ 위 ①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위 ②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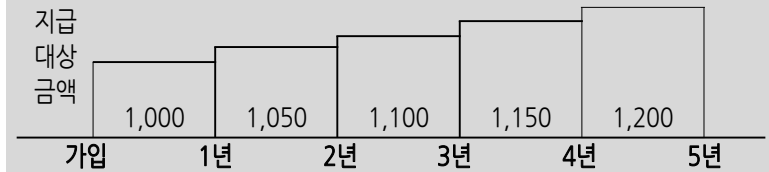
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에서 “지급대상금액”이라 함은 보험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최대 20년까지 매년 이 특별약관의 최초 보험가입금액의 5%씩 체증하는 금액을 말하며, 최초 보험가입금액의 2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가입금액을 위 ④의 최초 보험가입금액으로 봅니다.
- ⑥ 위 ① 및 ④의 “지급대상금액”은 가입시점부터 사고일이 속한 날까지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상예시1> 5년만기 가입시 “지급대상금액”

기준 : 최초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단위 : 만원



<보상예시2> 20년초과만기 가입시 “지급대상금액”

기준 : 최초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단위 : 만원



<보상예시3> 보험금 예시

최초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가정 : 가입 후 2년 6개월째 보험사고 발생
 보험금 : 사고시점의 “지급대상금액”인 1,100만원을 ①에서 정한 지급방법에 따라 확정지급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비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비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비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비운전자 교통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비운전자 교통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⑥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해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는 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로 봅니다.
- ⑧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비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

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평균공시이율

용어
풀이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비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매년5%체증형)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8 |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특별약관

8-1 | 운전자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운전자 교통상해로 장애분류표(별표1)장애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애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운전자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위 운전자 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③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 ④ 위 ①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위 ③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애지급률이 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애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에 장애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장애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애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장애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

- 는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운전자 교통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운전자 교통상해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애가 이미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애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애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애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⑥에 규정하는 후유장애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애에 대한 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애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애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애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애는 위의 후유장애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애로 봅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합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8-2

비운전자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애(최초1회한)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비운전자 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비운전자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애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위 비운전자 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 ③ 위 ①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②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④ 위 ②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비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위 ①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비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비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비운전자 교통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비운전자 교통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⑥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해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는 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로 봅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합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9 |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
(매월5년간지급) 특별약관**

**9-1 운전자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
(매월5년간지급)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운전자 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년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보험수익자에게 운전자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으로 확정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영업일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 합니다.
위 운전자 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③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구 분	지급금액(1회 지급액)	지급방법
운전자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 (매월5년간지급)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년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확정지급(총60회)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 ④ 위 ①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위 ③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

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운전자 교통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운전자 교통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⑥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해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는 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로 봅니다.
- ⑧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운전자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평균공시이율

용어 풀이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9-2

비운전자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 (최초1회한)(매월5년간지급)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비운전자 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년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보험수익자에게 비운전자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으로 확정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영업일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 합니다.
위 비운전자 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구 분	지급금액(1회 지급액)	지급방법
비운전자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 (매월5년간지급)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년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확정지급(총60회)

② 위 ①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③ 위 ①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위 ②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비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비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비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비운전자 교통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비운전자 교통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⑥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해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는 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로 봅니다.
- ⑧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비운전자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

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평균공시이율

용어
풀이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0 | 상해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해후유장해(3-100%)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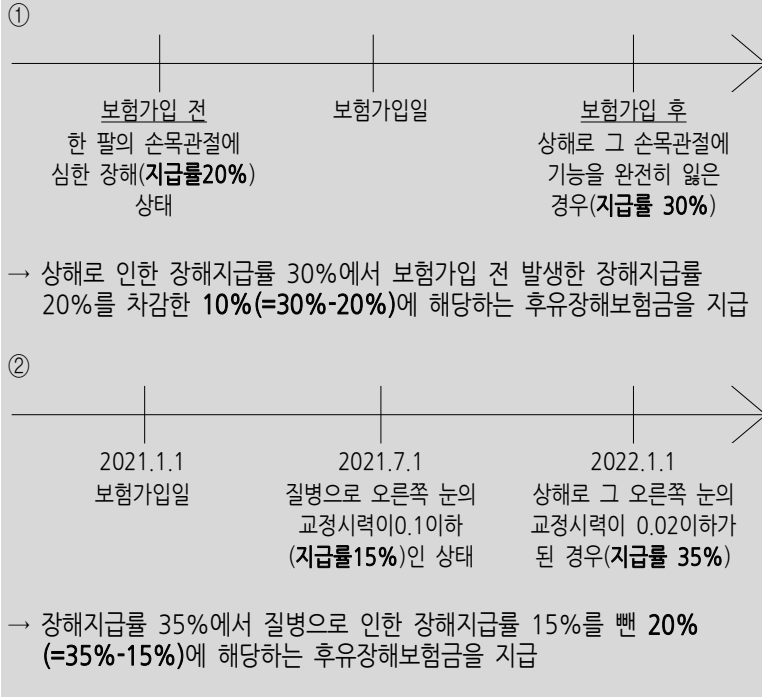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⑥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해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는 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로 봅니다.
-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예시

보험금 지급 예시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1 | 상해후유장애(20-100%)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애지급률이 20-100%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해후유장애(20-100%)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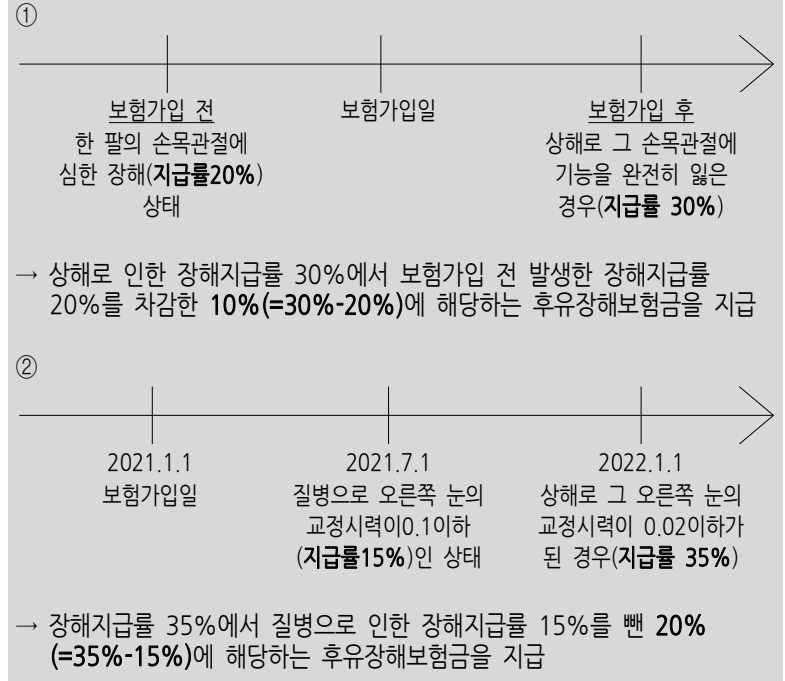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애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애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장애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애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⑥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해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는 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로 봅니다.
-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2 | 상해사망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④ 위 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32.(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3 | 상해사망유족자금(매월5년간지급)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년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보험수익자에게 상해사망유족자금으로 확정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영업일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 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1회 지급액)	지급방법
상해사망유족자금 (매월5년간지급)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년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확정지급(총60회)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④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사망유족자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평균공시이율

용어
풀이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사망유족자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④ 위 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32.(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4 | 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로 장애분류표(별표1)장애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애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애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애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에 장애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장애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애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장애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⑥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해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는 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로 봅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5 | 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
(매월5년간지급)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년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보험수익자에게 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으로 확정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영업일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 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1회 지급액)	지급방법
상해80%이상후유장해 생활자금(최초1회한) (매월5년간지급)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년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확정지급(총60회)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⑥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해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는 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로 봅니다.
- ⑧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평균공시이율

용어
풀이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용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6 | 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 (매월7년간지급)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7년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보험수익자에게 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으로 확정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영업일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 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1회 지급액)	지급방법
상해80%이상후유장해 생활자금(최초1회한) (매월7년간지급)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7년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확정지급(총84회)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애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애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장애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애가 이미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애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애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애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⑥에 규정하는 후유장애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애에 대한 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애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애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애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애는 위의 후유장애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애로 봅니다.
- ⑧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80%이상후유장애생활자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평균공시이율

용어
풀이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80%이상후유장애생활자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절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7 | 상해80%미만후유장애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로 장애분류표(별표1)장애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애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해80%미만후유장애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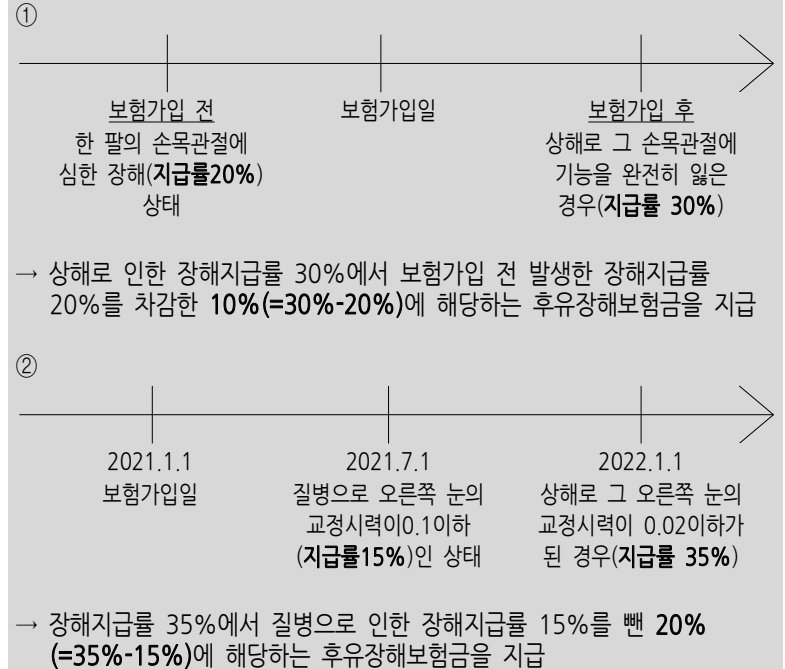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애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애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에 장애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장애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애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애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장애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애가 이미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애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애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애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⑥에 규정하는 후유장애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애에 대한 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애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애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애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애는 위의 후유장애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애로 봅니다.



예시

보험금 지급 예시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8 | 상해5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로 장애분류표(별표1)장애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애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50%이상후유장해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애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애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에 장애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장애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될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애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장애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⑥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해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는 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로 봅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5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 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 (매월5년간지급)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년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보험수익자에게 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으로 확정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영업일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 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1회 지급액)	지급방법
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 (최초1회한)(매월5년간지급)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년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확정지급(총60회)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위 ①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⑥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해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는 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로 봅니다.
-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평균공시이율

용어
풀이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절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6. 타이어식 굴착기
 -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20 |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운전중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위 운전중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 1. 덤프트럭
- 2. 타이어식 기중기
- 3. 콘크리트믹서트럭
-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④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는 『제도성 특별약관 [7.첨단안전장치 장착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전중 사고 보험금 추가지급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 ⑤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동차라 함은 『제도성 특별약관 [7.첨단안전장치 장착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전중 사고 보험금 추가지급 특별약관]』 3.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동차의 정의)를 따릅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용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④ 위 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32.(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1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의 직접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위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①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②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차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 ③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 ② 위 ①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 ① 여객수송용 항공기
 - ②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 ③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 ④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⑤ 여객수송용 선박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용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④ 위 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32.(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2 | 신주말운전중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신주말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신주말운전중 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위 신주말운전중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 신주말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신주말

용어 풀이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신주말운전중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의 경우 상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는 『제도성 특별약관 [7.첨단안전장치 장착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전중 사고 보험금 추가지급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⑥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동차라 함은 『제도성 특별약관 [7.첨단안전장치 장착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전중 사고 보험금 추가지급 특별약관]』 3.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동차의 정의)를 따릅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신주말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발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④ 위 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32.(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에서 “자전거탑승중”이라 함은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이거나, 운행중의 자전거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②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전거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④ 위 ①, ② 및 ③ 에서 자전거라 함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및 제1호의 2 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하며, 그 부속품(적재물 포함)도 포함합니다. 단,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7호 가목 3)에서 정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레일에 의해 운전하는 차, 신체장애자용 휠체어 및 유아용 3륜 이상의 차는 제외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산악지대를 오르내리는 행위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23 | 자전거탑승중 상해사망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자전거탑승중상해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의 직접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자전거탑승중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위 자전거탑승중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탑승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전거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② 자전거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③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자전거탑승중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용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④ 위 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32.(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4 | 자전거탑승중 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자전거탑승중상해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함(이하 “상해”)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자전거탑승중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위 자전거탑승중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탑승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함(이하 “사고”)으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에서 “자전거탑승중”이라 함은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이거나, 운행중의 자전거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②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전거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④ 위 ①, ② 및 ③ 에서 자전거라 함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및 제1호의 2 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하며, 그 부속품(적재물 포함)도 포함합니다. 단,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7호 가목 3)에서 정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레일에 의해 운전하는 차, 신체장애자용 휠체어 및 유아용 3륜 이상의 차는 제외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자전거탑승중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전거탑승중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자전거탑승중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자전거탑승중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될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자전거탑승중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자전거탑승중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⑥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

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애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애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애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애는 위의 후유장애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애로 봅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산악지대를 오르내리는 행위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전거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② 자전거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③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자전거탑승중 상해80%이상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5 | 골절진단비(치아제외)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로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별표4-1)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 참조)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시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진단비(치아제외)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골절진단비(치아제외)는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작간접 원인을 묻지 않고 치아골절(파절)손해 또는 치아골절(파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고로 골절(치아제외)이 치아골절(파절)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보장합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6 | 골절진단비(치아포함)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골절 분류표(별표12)골절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진단비(치아포함)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골절진단비(치아포함)는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

27 | 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로 5대골절 분류표(별표6)5대골절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대골절진단비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5대골절진단비는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5대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8 | 척추골절진단비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척추골절 분류표(별표27)척추골절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척추골절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척추골절진단비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척추골절진단비는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척추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9 | 골절부목치료비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별표4-1)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 참조)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고 “부목(Splint 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부목치료비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골절부목치료비는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진단 후, 다수의 “부목(Splint Cast)치료”를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부목(Splint 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부목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부목(Splint Cast)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부목(Splint Cast)치료”라 함은 「부목치료 대상 수가코드(별표 4-2)부목치료 대상 수가코드 참조)에 해당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위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부목(Splint Cast)치료”에 대해 치료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치료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의 “부목(Splint Cast)치료”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0 |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

30-1 운전자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운전자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5대골절분류표(별표6) 5대골절분류표 참조)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운전자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로 지급합니다.
 -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③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 ④ 위 ①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위 ③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운전자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는 동일한 운전자 교통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위 ①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③ 위 ①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위 ③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비운전자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는 동일한 비운전자 교통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비운전자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5대골절분류표(별표6) 5대골절분류표 참조)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비운전자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로 지급합니다.
 -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1 | 안면·두개골 특정골절진단비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안면·두개골 특정골절 분류표(별표9)안면·두개골 특정골절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시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안면·두개골 특정골절진단비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안면·두개골 특정골절 진단비는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안면·두개골 특정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직간접 원인을 묻지 않고 치아골절(파절)손해 또는 치아골절(파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고로 골절(치아제외)이 치아골절(파절)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보장합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2 | 외상성머리손상진단비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외상성 머리손상 분류표(별표25)외상성머리손상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외상성머리손상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외상성머리손상진단비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3.("외상성머리손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에서 정한 사망 후 "외상성머리손상"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5.(특별약관의 소멸) ③에서 정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3. ("외상성머리손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외상성머리손상"이라 함은 「외상성머리손상 분류표」(별표25)외상성머리손상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외상성머리손상을 말합니다.
- ② "외상성머리손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컴퓨터단층촬영(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외상성머리손상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외상성머리손상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외상성머리손상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 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3 | 주요상해뇌출혈진단비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3.("주요상해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주요상해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주요상해뇌출혈진단비"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3.("주요상해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에서 정한 사망 후 주요상해뇌출혈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5.(특별약관의 소멸) ③에서 정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3. ("주요상해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주요상해뇌출혈"이라 함은 주요상해뇌출혈 분류표(별표26)주요상해뇌출혈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상병을 말합니다.
- ② 주요상해뇌출혈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고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컴퓨터 단층촬영(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주요상해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주요상해뇌출혈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주요상해뇌출혈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4 | 화상진단비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로 화상분류표(별표7)화상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진단비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화상이라 함은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 ②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5 | 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수술비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상해수술비는 동일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③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④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⑤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 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6 | 상해1-5종수술비Ⅱ(동일사고당 1회지급) 특별약관

1.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5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상해1-5종수술비Ⅱ(1종,동일사고당 1회지급) 보장
2. 상해1-5종수술비Ⅱ(2종,동일사고당 1회지급) 보장
3. 상해1-5종수술비Ⅱ(3종,동일사고당 1회지급) 보장
4. 상해1-5종수술비Ⅱ(4종,동일사고당 1회지급) 보장
5. 상해1-5종수술비Ⅱ(5종,동일사고당 1회지급) 보장

2.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별표13) 1-5종수술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해1-5종수술비를 지급합니다.

세부보장 구분	지급금액
1종	상해1-5종수술비Ⅱ(1종,동일사고당 1회지급) 보험가입금액
2종	상해1-5종수술비Ⅱ(2종,동일사고당 1회지급) 보험가입금액
3종	상해1-5종수술비Ⅱ(3종,동일사고당 1회지급) 보험가입금액
4종	상해1-5종수술비Ⅱ(4종,동일사고당 1회지급) 보험가입금액
5종	상해1-5종수술비Ⅱ(5종,동일사고당 1회지급) 보험가입금액

② 위 ①에서 정한 상해1-5종수술비는 동일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1-5종수술비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에서 이미 지급한 수술비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또는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③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④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⑤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5.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 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7 | 상해1-8종수술비(급여, 시술포함, 연간1회한) 특별약관

1.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8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상해1-8종수술비(1종, 급여, 시술포함, 연간1회한) 보장
2. 상해1-8종수술비(2종, 급여, 시술포함, 연간1회한) 보장
3. 상해1-8종수술비(3종, 급여, 시술포함, 연간1회한) 보장
4. 상해1-8종수술비(4종, 급여, 시술포함, 연간1회한) 보장
5. 상해1-8종수술비(5종, 급여, 시술포함, 연간1회한) 보장
6. 상해1-8종수술비(6종, 급여, 시술포함, 연간1회한) 보장
7. 상해1-8종수술비(7종, 급여, 시술포함, 연간1회한) 보장
8. 상해1-8종수술비(8종, 급여, 시술포함, 연간1회한) 보장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별표28】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및 시술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해1-8종수술비(연간1회한)를 지급합니다. 다만, 1회의 입원당 또는 1회의 통원당 1회의 수술 및 시술에 한하여 보장하며, 하나의 수술시술코드당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세부보장 구분	지급금액
1종	상해1-8종수술비(1종,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 보험가입금액
2종	상해1-8종수술비(2종,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 보험가입금액
3종	상해1-8종수술비(3종,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 보험가입금액
4종	상해1-8종수술비(4종,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 보험가입금액
5종	상해1-8종수술비(5종,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 보험가입금액
6종	상해1-8종수술비(6종,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 보험가입금액
7종	상해1-8종수술비(7종,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 보험가입금액
8종	상해1-8종수술비(8종,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 보험가입금액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3. (“수술 및 시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 및 시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하며, 한의사는 제외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별표28】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시술코드(이하 “수술시술코드”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시술코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 “의료급여”라 합니다)의 절차를 거쳐 처치 및 수술료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하고,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분류체계에 따라 부여된 “ADRG(Adjacent DRG)”중 회사가 정한 코드를 말합니다.



【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발·관리하는 한국형 입원환자분류체계로서, 진단과 시술명, 연령 등에 따라 입원환자를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은 KDRG 버전 4.4(2021.1.1 시행)의 ADRG 분류체계를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 ADRG(Adjacent DRG) 】

환자의 주진단 범주(Major Diagnostic Category, MDC)와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외과계 그룹”과 “내과계 그룹”으로 분류한 후 의료행위^{주1)}와 진단명^{주2)}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주1) 의료행위 : 의료행위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말합니다.

주2) 진단명 : 진단명이란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분류번호를 말합니다.

【 주진단 범주(Major Diagnostic Category, MDC) 】

신체부위나 질병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질병군의 대분류를 말합니다.

- ④ 위 ③의 “수술시술코드”에서 향후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 개정으로 동일한 수술 및 시술에 대해 “수술시술코드”가 변경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의 체결시점에서 정한 “수술시술코드”를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ADRG”가 신규 추가되는 경우 회사는 【별표28】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수술시술코드를 결정합니다.



예시

- 회사는 피보험자가 수술 및 시술 받은 시점에서 부여된 의료행위, 진단명 및 주진단범주(MDC) 등을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의 “KDRG”기준에 적용합니다.
 - 신의료수술 도입 등의 이유로 급여항목이 신규 추가되고 피보험자가 그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 회사는 주진단범주(MDC)와 의료행위를 확인한 후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에 정한 수술시술코드를 기준으로 수술비(시술 포함)를 지급합니다.

【예시】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에 간이식에 해당하는 수술시술코드는 A010(KDRG 버전 4.4)이었으나, 피보험자가 간이식수술을 받은 시점의 수술시술코드가 A080(KDRG 버전5.0)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A010(KDRG 버전4.4)에 해당하는 수술비(시술 포함)를 지급합니다.

- ⑤ 위 ③ 및 ④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에 급여항목으로 분류된 수술 및 시술이 향후 비급여항목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수술 및 시술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⑥ 위 ①의 수술 및 시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호, 2021.1.22.)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 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2장(검사료) 및 제3장(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에서 정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방사선 치료 대상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제3장(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의 사이버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감마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선형가속기(LINAC) 정위적 방사선 치료, 양성자치료는 수술 및 시술에 포함하여 보장합니다.

수가코드	내용
HD111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1회당]-선형가속기이용
HD112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1회로 치료종결]-선형가속기이용
HD113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HD114	뇌정위적방사선수술-사이버나이프
HD115	뇌정위적방사선수술-선형가속기
HD121	양성자치료[1회당]
HD211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1회당]-사이버나이프이용
HD212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1회로 치료종결]-사이버나이프이용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바에 따릅니다.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1회의 입원 또는 1회의 통원 중에 2가지 이상의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 퇴원일 또는 통원일을 기준으로 진단서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에서 확인되는 하나의 수술시술코드에 한하여 수술비(시술 포함)를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퇴원없이 계속입원 중에 2가지 이상의 수술시술코드가 부여되는 경우 또는 1일 2회 이상 통원하여 2가지 이상의 수술시술코드가 부여된 경우에는 수술시술종류가 높은 하나의 수술시술코드에 한하여 해당 종의 수술비(시술 포함)를 지급합니다.



예시

ADRG는 1회의 입원 또는 1회의 통원에 대하여 2가지 이상의 수술 및 시술을 받더라도 “KDRG”에서 정한 외과적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만 생성됩니다. 이 경우 외과적 우선순위는 【별표28】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의 수술시술종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피보험자가 입원을 하고 “유방재건술(J051)”(3종)과 “유방절제술(J061)”(7종)을 동시에 받은 후 퇴원할 경우 생성되는 ADRG는 “유방재건술(J051)”입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②에 따라 “유방절제술(J061)”에 해당하는 7종의 수술비(시술 포함)를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전하여 입원하거나 동일한 의료기관에 퇴원 후 다른 일자에 재입원하여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보고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상해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계속입원 중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피보험자의 퇴원일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에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 1-8종 수술비(연간1회한)를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고로 인하여 수술 및 시술한 경우, 진단서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을 통해 주민단범주(MDC)와 의료행위 등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수술시술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제3조(수술 및 시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 및 시술에 포함하여 보장합니다.



예시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 등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고로 인하여 아래의 진단명 및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 회사는 ⑤에 따라 “슬관절 및 하퇴골 골절 수술(I283)”에 해당하는 수술비(시술 포함)를 지급합니다.

·진단명 : 경골 하단의 기타 골절(S82.38)
 ·의료행위 :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하퇴골-경골(N1604)

- ⑥ 위 ②에도 불구하고 ⑤에서 해당 입원기간 또는 통원일에 추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급여항목이 발생하는 다른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 회사는 이 수술시술코드에 해당하는 수술비(시술 포함)와 ⑤의 수술시술코드에 해당하는 수술비(시술 포함)를 각각 지급합니다.
- ⑦ “복강경을 이용한 단순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N031)”, “개복에 의한 단순 자궁 수술(악성종양 제외)(N032)”, “분만및유산후관련장에(수술시행)(O110)”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는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또는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 ③ 정상임신, 출산(제왕절개 제외),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
 - ④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한 경우
 - ⑤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 ⑥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으로 인한 경우
- ② 회사는 【별표28】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의 주2)에 해당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수술 및 시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6.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진단명, 진단코드, 수술명, 수술일자 포함), 진료비세부내역서(급여수가코드(EDI코드 포함)), 수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진료기록부 등(단,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에서 급여수가코드(EDI코드 포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 청구시 급여수가코드(EDI코드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용어 풀이

급여수가코드
 급여수가코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 등을 포함한 코드를 말합니다.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8 | 교통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특별약관

38-1 운전자 교통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운전자 교통상해사고(“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운전자 교통상해수술비로 지급합니다.
 -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③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 ④ 위 ①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위 ③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⑤ 위 ①의 교통상해수술비는 동일한 운전자 교통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교통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③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옹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④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⑤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

는 등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 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비운전자 교통상해사고(「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의 직접 결과로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비운전자 교통상해수술비로 지급합니다.
-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 ③ 위 ①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위 ②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교통상해수술비는 동일한 비운전자 교통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교통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 촉진과 관련된 수술
 - ③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옹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과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④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⑤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 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9 | 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로 골절분류표(별표12)골절 분류표 참조)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수술비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골절수술비는 동일한 상해사고(골절)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장합니다.)
 - ②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 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0 | 5대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사고로 5대골절분류표【별표6】5대골절 분류표 참조)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대골절 수술비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5대골절수술비는 동일한 상해사고(골절)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5대골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장합니다.)
 - ②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 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1 | 교통상해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특별약관

41-1 | 운전자 교통상해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운전자 교통상해사고(「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골절 분류표(별표12)골절 분류표 참조)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운전자 교통상해골절 수술비로 지급합니다.
 -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③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 ④ 위 ①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위 ③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⑤ 위 ①의 교통상해골절수술비는 동일한 운전자 교통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교통상해골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장합니다)
 - ②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 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1-2 비운전자 교통상해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비운전자 교통상해사고(「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골절분류표(「별표12」골절 분류표 참조)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비운전자 교통상해골절수술비로 지급합니다.
 -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 1. 덤프트럭
 - 2. 타이어식 기중기
 - 3. 콘크리트믹서트럭
 -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6. 타이어식 굴착기
 -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 ③ 위 ①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위 ②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교통상해골절수술비는 동일한 비운전자 교통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교통상해골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장합니다)
- ②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 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2 | 화상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로 화상분류표(별표7)화상분류표 참조)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수술비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화상수술비는 동일한 상해사고(화상)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화상이라 함은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장합니다.)
 - ②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3 | 상해흉터복원수술비II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등을 포함합니다)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상해흉터복원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을 상해흉터복원수술비II로 지급합니다. 다만, 사고발생시점 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진단으로 위의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② 위 ①의 상해흉터복원수술이란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애,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가입금액 15만원]

구 분	안면부	상지·하지
지급액	수술 1cm당 30만원	수술 1cm당 15만원 (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단, 길이측정이 불가능한 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 수술cm는 최장직경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흉터복원수술비^{II}는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최고 5,0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안면부, 상지, 하지란 다음을 말합니다.
 - ①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
 - ②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
 - ③ 하지란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 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용어 풀이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4 |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최초1회한)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 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지급사유가 두 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 가지 사유에 의한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만을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뇌손상”이라 함은 두부(頭部)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 손상(【별표3】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참조)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위 ①에서 “내장손상”이라 함은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장(심장, 폐, 위, 장, 간장, 췌장, 비장, 신장, 방광)의 기관에 기질적 손상(【별표3】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참조)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위 ①에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이라 함은 각각 아래의 수술을 말하며,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은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로 보지 않습니다.
 - ① “개두(開頭)수술”이라 함은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 ② “개흉(開胸)수술”이라 함은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경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흉수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갈비뼈), 흉골(복장뼈)의 절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개복(開腹)수술”이라 함은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내에 조작을 가할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수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노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노도적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⑤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⑥ 위 ⑤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⑦ 위 ⑤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 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절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5 | 뇌·내장손상수술비(최초1회한)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 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뇌·내장손상수술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뇌·내장손상수술비 지급사유가 두 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 가지 사유에 의한 뇌·내장손상수술비만을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뇌손상”이라 함은 두부(頭部)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 손상(별표10) 뇌·내장손상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위 ①에서 “내장손상”이라 함은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장(심장, 폐, 위, 장, 간장, 췌장, 비장, 신장, 방광)의 기관에 기질적 손상(별표10) 뇌·내장손상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위 ①에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이라 함은 각각 아래의 수술을 말하며,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은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로 보지 않습니다.
 - ① “개두(開頭)수술”이라 함은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 ② “개흉(開胸)수술”이라 함은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격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흉수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갈비뼈), 흉골(복장뼈)의 절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개복(開腹)수술”이라 함은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내에 조작을 가할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수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요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도노적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⑤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

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⑥ 위 ⑤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⑦ 위 ⑤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내장손상수술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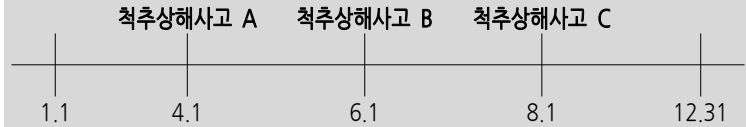
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 ③ 위 ①의 척추상해수술비는 동일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척추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④ 위 ③에서 동일한 상해사고를 직접원인으로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을 각각 받은 경우에는 관혈수술비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비관혈수술비를 먼저 지급한 때에는 관혈수술비에서 이미 지급한 비관혈수술비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단, 관혈수술이 연간 1회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관혈수술비를 지급하며, 비관혈수술도 연간 1회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척추상해수술비(관혈/비관혈)(연간1회한, 동일사고당 1회지급) 보장 예시

- 가입예시 • 최초계약의 계약일 : 2017년 1월 1일
- 연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례1)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③, ④의 보상 예시
 상해사고 A를 원인으로 관혈수술 4.15일, 비관혈수술 4.30일 시행시
 → A 사고 관혈수술 4.15일 : 지급, 비관혈수술 4.30일 : 부지급

(사례2)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③, ④의 보상 예시
 상해사고 A를 원인으로 관혈수술 4.15일, 비관혈수술 4.30일 시행시
 상해사고 B를 원인으로 관혈수술 6.15일, 비관혈수술 6.30일 시행시
 상해사고 C를 원인으로 관혈수술 8.15일, 비관혈수술 8.30일 시행시
 → A 사고 관혈수술 4.15일 : 지급, 비관혈수술 4.30일 : 부지급
 B 사고 관혈수술 6.15일 : 부지급, 비관혈수술 6.30일 : 지급
 C 사고 관혈수술 8.15일 : 부지급, 비관혈수술 8.30일 : 부지급

**46 | 척추상해수술비(관혈/비관혈)
(연간1회한, 동일사고당 1회지급)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척추상해 분류표(별표29) 척추상해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척추상해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관혈수술, 비관혈수술을 각각 연간 1회 한도로 다음과 같이 척추상해수술비를 지급합니다.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척추상해수술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관혈수술시 가입금액의 50% 비관혈수술시 가입금액의 25%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관혈수술시 가입금액의 100% 비관혈수술시 가입금액의 50%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③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유방수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④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⑤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

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용어
풀이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 비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을 말합니다.
 - ① “내시경수술”이라 함은 인체 내부를 특수의료기구를 이용한 영상을 통하여 보면서 시행하는 직접 치료목적의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 ② “카테터수술”이라 함은 인체의 일부(주로 혈관)와 외부를 연결해주는 도관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직접 치료목적의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단,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도관을 이용한 약물주입”과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제외합니다.
 - ③ “신의료수술”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어 있고 해당 부위에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행위를 말하며, 상해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적 방사선 조사”를 포함합니다. 단,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도관을 이용한 약물 또는 방사성물질 주입”과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제외합니다.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관혈수술”이라 함은 위 ②의 “비관혈수술” 이외의 수술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④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⑤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7 | 창상봉합술(1일1회한,연간3회한)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창상봉합술 치료비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창상봉합술 치료비는 연간 3회한도로 보장합니다.
- ③ 위 ②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구 분	창상봉합술(안면 또는 경부)	창상봉합술(안면과 경부 이외)
지급기준	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	5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



안면부

이마를 포함하여 경부(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급여 창상봉합술”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여 창상봉합술”이라 함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창상봉합술”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창상봉합술”이라 함은 「급여 창상봉합술 대상 수가코드」(【별표30】급여 창상봉합술 대상 수가코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말하며 해당 진료행위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개정으로 “급여 창상봉합술”의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급여 창상봉합술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개정으로 급여치료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급여 창상봉합술”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 :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 필수 기재), 진료기록부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 ② 위 ①,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인용문구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8 | 창상봉합술(안면부, 1일1회한, 연간3회한)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

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안면부창상봉합술(3cm이상)”를 받은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안면부창상봉합술(3cm이상) 치료비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안면부창상봉합술(3cm이상) 치료비는 연간 3회한도로 보장합니다.
- ③ 위 ②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안면부

용어 풀이

이마를 포함하여 경부(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급여 안면부창상봉합술(3cm이상)”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여 안면부창상봉합술(3cm이상)”이라 함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창상봉합술”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창상봉합술”이라 함은 「급여 안면부창상봉합술(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 대상 수가코드」(별표31) 급여 안면부창상봉합술(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 대상 수가코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말하며 해당 진료행위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개정으로 “급여 안면부창상봉합술(3cm이상)”의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급여 안면부창상봉합술(3cm이상)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

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개정으로 급여치로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급여 안면부창상봉합술(3cm이상)”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 :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기록부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 ② 위 ①,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인용
문구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9 |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①을 적용합니다.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등의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50 |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50-1 운전자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운전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첫날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운전자 교통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위 운전자 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③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 1. 덤프트럭
- 2. 타이어식 기중기
-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 ④ 위 ①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위 ③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운전자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운전자 교통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①을 적용합니다.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운전자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운전자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등의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운전자 교통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50-2 비운전자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비운전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첫날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을 비운전자 교통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위 비운전자 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 1. 덤프트럭
 - 2. 타이어식 기중기
 - 3. 콘크리트믹서트럭
 -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6. 타이어식 굴착기
 -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 ③ 위 ①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위 ②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비운전자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비운전자 교통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①을 적용합니다.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비운전자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비운전자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비운전자 교통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51 | 자동차사고 입원일당(1-14급, 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51-1 | 운전자 자동차사고 입원일당(1-14급, 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아래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의 부상등급을 받고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첫날부터 부상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4급, 1일이상 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부상등급	지급금액	예시 [보험가입금액 7만원 기준]
1-7급	보험가입금액 지급	7만원
8-11급	보험가입금액의 2/7 지급	2만원
12-14급	보험가입금액의 1/7 지급	1만원

-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③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4급, 1일이상18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①을 적용합니다.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4급, 1일이상18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4급, 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운전자 교통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51-2 비운전자 자동차사고 입원일당(1-14급, 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아래에서 정한 비운전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의 부상등급을 받고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첫날부터 부상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운전자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4급, 1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부상등급	지급금액	예시 [보험가입금액 7만원 기준]
1-7급	보험가입금액 지급	7만원
8-11급	보험가입금액의 2/7 지급	2만원
12-14급	보험가입금액의 1/7 지급	1만원

위 비운전자 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등 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인용
문구

- 1. 덤프트럭
- 2. 타이어식 기중기

- 3. 콘크리트믹서트럭
 -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6. 타이어식 굴착기
 -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비운전자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4급, 1일이상18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비운전자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①을 적용합니다.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비운전자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4급, 1일이상18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비운전자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4급, 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비운전자 교통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52 자동차사고 입원일당(1-11급, 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52-1 운전자 자동차사고 입원일당(1-11급, 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아래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의 부상등급을 받고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첫날부터 부상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1급, 1일이상

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부상등급	지급금액	예시 [보험가입금액 7만원 기준]
1-7급	보험가입금액 지급	7만원
8-11급	보험가입금액의 2/7 지급	2만원

-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③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1급, 1일이상18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①을 적용합니다.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1급, 1일이상18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1급, 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운전자 교통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52-2 비운전자 자동차사고 입원일당(1-11급, 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아래에서 정한 비운전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의 부상등급을 받고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첫날부터 부상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운전자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1급, 1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부상등급	지급금액	예시 [보험가입금액 7만원 기준]
1-7급	보험가입금액 지급	7만원
8-11급	보험가입금액의 2/7 지급	2만원

위 비운전자 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을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② 위 ①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비운전자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1급, 1일이상18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비운전자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①을 적용합니다.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비운전자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1급, 1일이상18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비운전자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1급, 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비운전자 교통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고 부상등급표(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의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또는 11급에 해당하는 부상등급을 받고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운전자 교통사고 통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단, 운전자 교통사고 통원일당의 지급횟수는 통원당 1일 1회, 연간 10회에 한합니다.

-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③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④ 위 ① 및 ③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53 | 교통사고 통원일당(1-11급, 연간10회한, 1일1회한) 특별약관

53-1 운전자 교통사고 통원일당 (1-11급, 연간10회한, 1일1회한)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인용
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 ⑤ 위 ①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위 ③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③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4. (“통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인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53-2

비운전자 교통사고 통원일당 (1-11급, 연간10회한, 1일1회한)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의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또는 11급에 해당하는 부상등급을 받고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비운전자 교통사고 통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단, 비운전자 교통사고 통원일당의 지급횟수는 통원당 1일 1회, 연간 10회에 한합니다.
 -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 ④ 위 ①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위 ③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첫날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위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 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①을 적용합니다.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운전자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운전자 교통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55 |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이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인용문구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의 중환자실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라. 병상 1개당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신생아중환자실”이라한다)의 병상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연평균 1일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①을 적용합니다.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56 | 상급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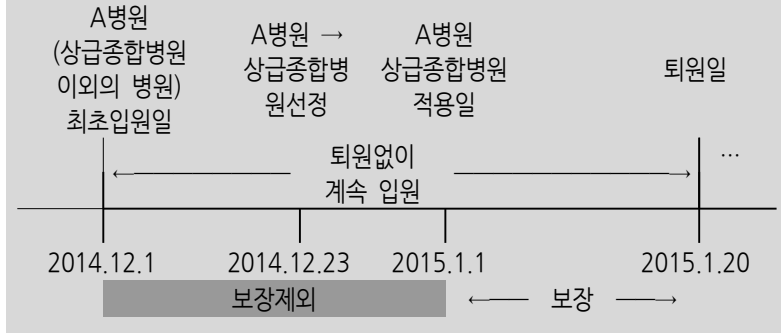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위 ①을 적용합니다.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①,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5.(“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을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5.(“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을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5.(“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입원 중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보장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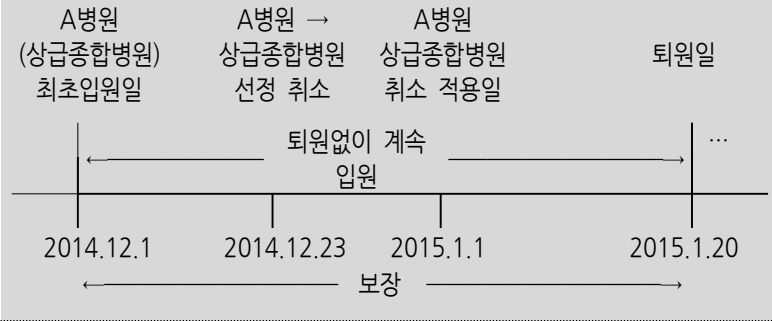


- ⑧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5.(“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①,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보험
지식

상급종합병원 입원 중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보장에서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는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를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5.(“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입원개시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종합병원 입원” 및 “상급종합병원 입원”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5.(“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

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 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합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57 | 상해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20회한도)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경우에는 통원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통원비로 지급합니다. 단, 상해통원비의 지급횟수는 통원당 1일 1회, 연간 20회에 한합니다.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 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하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적용일 부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인용
문구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 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

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를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4.("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통원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상급종합병원 통원"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4.("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통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8 | 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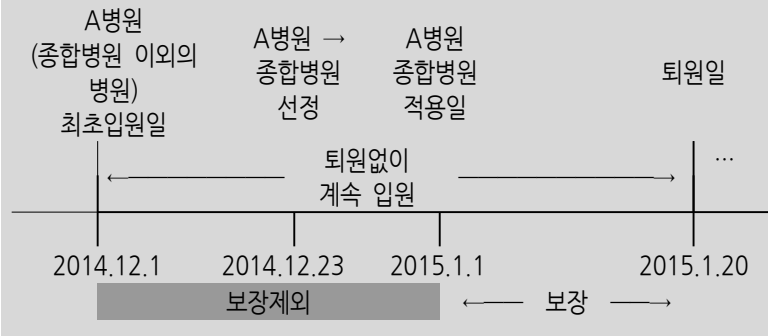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위 ①을 적용합니다.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①,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5.(“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을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5.(“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을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4.(“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보험 지식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입원 중에 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보장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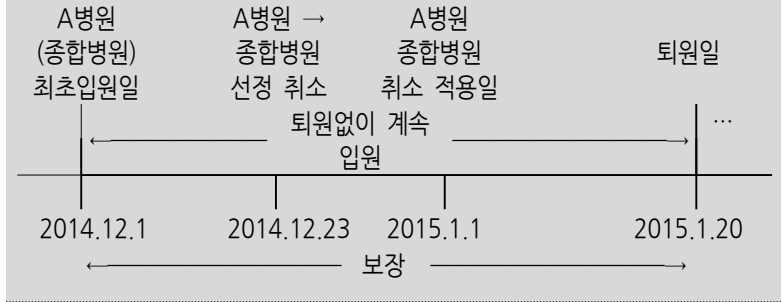
-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4.(“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①,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상해입원일

당(1일이상18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보험 지식

종합병원 입원 중에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보장예시



-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등의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종합병원”의 정의)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것
 -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6.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5.(“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입원개시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종합병원 입원”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5.(“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 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59 |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0일한도)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이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①을 적용합니다.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60 |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3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60-1.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 60-2.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 60-3.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60-1 |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이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6.(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지급기준	지급금액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② 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지급기준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간병인 사용일의 연속여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간병 사용 시작일자와 간병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에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 때, 간병인을 사용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을 사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우 간병인 사용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
지식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 보장사례 (가입금액 2만원 기준)

- 입원기간 : 2021년 10월 1일 ~ 10월 30일 (30일)
 - 간병인 사용일 및 사용금액
 - 2021년 10월 11일 ~ 10월 17일 (사용일수 7일), 총77만원 (일당 평균 11만원 사용, 7만원 이상에 해당)
→ 가입금액(2만원) × 7일 = 14만원 지급
 - 2021년 10월 21일 ~ 10월 24일 오전, 10월 24일 오후, 10월 25일 오후 ~ 10월 27일 (사용일수 7일), 총42만원 (일당 평균 6만원 사용, 7만원 미만에 해당)
→ 가입금액(2만원) × 50% × 7일 = 7만원 지급
- ⇒ 총 지급 보장금액 : 14만원 + 7만원 = 21만원

- 2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1.(보험금의 지급사유) 1을 적용합니다.
- 3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5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지급일수는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6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1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1 및 2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1.(보험금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한다)등의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요양병원"의 정의)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3호 라목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6. (간병인의 정의)

- 1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간병인"이라 함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사업자 등록된 업체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한 자에 한합니다.
- 2 1의 사업자는 간병 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제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간병인의 주요업무 예시

용어 풀이
침대 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 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7.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 (회사 양식)
- 2 사고증명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④ 6.(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 나.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 ⑤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9. 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1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0-2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6.(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1일 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 ② 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을 적용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지급일수는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1.(보험금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1일 이상180일한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

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요양병원”의 정의)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3호 라목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6. (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간병인"이라 함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사업자 등록된 업체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한 자에 한합니다.
- ② ①의 사업자는 간병 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간병인의 주요업무 예시

용어 풀이 침대 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 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7.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 (회사 양식)
- ② 사고증명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④ 6.(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나.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 ⑤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9. 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1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0-3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이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한방 병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 ② ①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을 적용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지급일수는 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의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요양병원”의 정의)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3호 라목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6.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 함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4조의 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7.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 (회사 양식)
- ② 사고증명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

단, 6.(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위의 사고증명서는 서비스 사용여부 및 사용일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합니다.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9. 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1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1 | 상해 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한, 연간15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입원 중에 “상해 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이하 “입원 상해 재활치료(급여)”라 합니다) 또는 통원하여 “상해 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이하 “통원 상해 재활치료(급여)”라 합니다)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입원 상해 재활치료(급여)”와 “통원 상해 재활치료(급여)”를 합산하여 연간 15회한도로 보장합니다.

- ③ 위 ②의 “연간”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일자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입원” 및 “통원”의 정의 및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상해 재활치료(급여)”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 재활치료(급여)”라 함은 상해로 인한 구조적 손상과 기능적 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7장(이학요법료)에서 정한 급여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

- 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상해 재활치료(급여)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의 “상해 재활치료(급여)”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시 상해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상해 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6.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료확인서(“재활치료의 원인”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기록부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9. 갱신형 계약 자동차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이 특별

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2 | 자동차부상치료비II 특별약관

62-1 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II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③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부상등급	지급금액	예시 [보험가입금액 400만원 기준]
1급	보험가입금액 지급	400만원
2급	보험가입금액의 1/2 지급	200만원
3-4급	보험가입금액의 3/8 지급	150만원
5급	보험가입금액의 3/16 지급	75만원
6급	보험가입금액의 1/10 지급	40만원
7급	보험가입금액의 1/20 지급	20만원
8-11급	보험가입금액의 1/40 지급	10만원
12-14급	보험가입금액의 1/80 지급	5만원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62-2 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II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을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부상등급	지급금액	예시 [보험가입금액 400만원 기준]
1급	보험가입금액 지급	400만원
2급	보험가입금액의 1/2 지급	200만원
3-4급	보험가입금액의 3/8 지급	150만원
5급	보험가입금액의 3/16 지급	75만원

부상등급	지급금액	예시 [보험가입금액 400만원 기준]
6급	보험가입금액의 1/10 지급	40만원
7급	보험가입금액의 1/20 지급	20만원
8-11급	보험가입금액의 1/40 지급	10만원
12-14급	보험가입금액의 1/80 지급	5만원

② 위 ①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63 | 자동차부상치료비II(연간3회한) 특별약관

63-1 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II(연간3회한)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단, 부상등급이 1-14급에 해당하는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연간 3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③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부상등급	지급금액	예시 [보험가입금액 400만원 기준]
1급	보험가입금액 지급	400만원
2급	보험가입금액의 1/2 지급	200만원
3-4급	보험가입금액의 3/8 지급	150만원
5급	보험가입금액의 3/16 지급	75만원
6급	보험가입금액의 1/10 지급	40만원
7급	보험가입금액의 1/20 지급	20만원
8-11급	보험가입금액의 1/40 지급	10만원
12-14급	보험가입금액의 1/80 지급	5만원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차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④ 위 ①에서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단, 부상등급이 1-14급에 해당하는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연간 3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부상등급	지급금액	예시 [보험가입금액 400만원 기준]
1급	보험가입금액 지급	400만원
2급	보험가입금액의 1/2 지급	200만원
3-4급	보험가입금액의 3/8 지급	150만원
5급	보험가입금액의 3/16 지급	75만원
6급	보험가입금액의 1/10 지급	40만원
7급	보험가입금액의 1/20 지급	20만원
8-11급	보험가입금액의 1/40 지급	10만원
12-14급	보험가입금액의 1/80 지급	5만원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③ 위 ①에서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64 | 자동차부상치료비II(단독사고제외) 특별약관

64-1 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II(단독사고제외)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단독사고를 제외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단독사고를 제외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③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부상등급	지급금액	예시 [보험가입금액 400만원 기준]
1급	보험가입금액 지급	400만원
2급	보험가입금액의 1/2 지급	200만원
3-4급	보험가입금액의 3/8 지급	150만원
5급	보험가입금액의 3/16 지급	75만원
6급	보험가입금액의 1/10 지급	40만원
7급	보험가입금액의 1/20 지급	20만원
8-11급	보험가입금액의 1/40 지급	10만원
12-14급	보험가입금액의 1/80 지급	5만원

- ② 위 ①에서 단독사고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① 운전자가 상대방 없이(상대방을 명확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포함) 단독으로

발생시킨 자동차사고 : 추락, 전도, 도로 외 이탈, 과속방지턱, 급브레이크, 미 접촉 사고 등

단, 상대방이란 다른 자동차 운전자 및 탑승자, 보행자 등 다른 사람을 말하며, 동승자는 제외합니다.

- ② 주차차량, 물건 및 기타 도로시설물 등과의 충돌, 접촉 등 인적 피해없이 물적 손해만 발생한 자동차사고
단, 피보험자 및 동승자로 한정된 인적피해를 동반한 경우는 단독사고에 포함합니다.
- ③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④ 위 ① 내지 ③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64-2 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II(단독사고제외)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단독사고를 제외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부상등급	지급금액	예시 [보험가입금액 400만원 기준]
1급	보험가입금액 지급	400만원
2급	보험가입금액의 1/2 지급	200만원
3-4급	보험가입금액의 3/8 지급	150만원
5급	보험가입금액의 3/16 지급	75만원
6급	보험가입금액의 1/10 지급	40만원
7급	보험가입금액의 1/20 지급	20만원
8-11급	보험가입금액의 1/40 지급	10만원
12-14급	보험가입금액의 1/80 지급	5만원

- ② 위 ①에서 단독사고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① 운전자가 상대방 없이(상대방을 명확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포함) 단독으로 발생시킨 자동차사고 : 추락, 전도, 도로 외 이탈, 과속방지턱, 급브레이크, 미접촉 사고 등
단, 상대방이란 다른 자동차 운전자 및 탑승자, 보행자 등 다른 사람을 말하며, 동승자는 제외합니다.
 - ② 주차차량, 물건 및 기타 도로시설물 등과의 충돌, 접촉 등 인적 피해없이 물적 손해만 발생한 자동차사고
단, 피보험자 및 동승자로 한정된 인적피해를 동반한 경우는 단독사고에 포함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 1. 덤프트럭
- 2. 타이어식 기중기
-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65 | 자동차부상치료비Ⅲ 특별약관

65-1 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Ⅲ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자동차부상치료비Ⅲ로 지급합니다.
 -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③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14급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65-2 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Ⅲ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자동차부상치료비Ⅲ로 지급합니다.
 -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14급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②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66 | 자동차부상치료비(1-11급) 특별약관

66-1 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11급)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③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부상등급	지급금액	예시 [보험가입금액 400만원 기준]
1급	보험가입금액 지급	400만원
2급	보험가입금액의 1/2 지급	200만원
3-4급	보험가입금액의 3/8 지급	150만원
5급	보험가입금액의 3/16 지급	75만원
6급	보험가입금액의 1/10 지급	40만원
7급	보험가입금액의 1/20 지급	20만원
8-11급	보험가입금액의 1/40 지급	10만원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66-2 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11급)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부상등급	지급금액	예시 [보험가입금액 400만원 기준]
1급	보험가입금액 지급	400만원
2급	보험가입금액의 1/2 지급	200만원
3-4급	보험가입금액의 3/8 지급	150만원
5급	보험가입금액의 3/16 지급	75만원
6급	보험가입금액의 1/10 지급	40만원
7급	보험가입금액의 1/20 지급	20만원
8-11급	보험가입금액의 1/40 지급	10만원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67 | 자동차부상치료비(8-11급) 특별약관

67-1 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8-11급)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③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부상등급	지급금액
8급 ~11급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67-2 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8-11급)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부상등급	지급금액
8급 ~11급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68 | 낙하물 및 로드킬사고 부상치료비(1-10급, 자가용 운전자용)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국내의 도로에서 발생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의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또는 10급에 해당하는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낙하물 및 로드킬사고 부상치료비(1-10급, 자가용 운전자용)로 지급합니다.
 - ① 도로상의 다른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낙하물과의 직접적인 충돌, 접촉으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단, 영상기록 및 사진 등으로 다른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한 사고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 ② 동물(단, 인간을 제외한 포유류 및 조류 동물에 한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과의 직접적인 충돌, 접촉으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단, 영상기록 및 사진 등으로 동물과의 사고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에서 “낙하물”이라 함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단, 엔진 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로 삽입되어 자동차에 손상을 주는 물체는 제외합니다.
- ④ 위 ① 내지 ③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⑤ 위 ①의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 ⑥ 위 ①에서 도로는 도로법 제10조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도로를 말하며,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포함합니다. 이 때, 동법 제2조에서 정한 도로의 부속물(주차장, 휴게시설, 통행로 징수시설 등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시설 또는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인용
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인용
문구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③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⑤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⑥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인용
문구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①.②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동물과의 충돌, 접촉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의 방향을 틀거나 자동차를 정차하는 과정에서 다른 물체와 충돌한 사고
- ② 자동차의 차체에 동물의 사체, 혈액 등이 묻은 단순 오염으로 세척 또는 광택 작업만 한 경우
- ③ 자동차의 내부(자동차의 엔진룸, 트렁크를 포함합니다)에 있던 동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
- ④ 동물과의 충돌, 접촉에 대한 영상기록 및 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거나 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영상기록 및 사진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4.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 ③ 낙하물이나 동물과의 충돌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기록이나 사진
 - ④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보험회사(공제조합을 포함합니다)에서 발급한 사고처리 관련서류 등 객관적으로 낙하물이나 동물과의 충돌 사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⑤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인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⑥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69 | 골절철심제거수술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체내에 삽입한 철심을 제거하는 “골절철심제거술”을 받은 경우 연간 1회 한도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철심제거수술비(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골절(치아파절제외)”라 함은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별표4-1)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상병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골절철심제거술”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골절철심제거술”이라 함은 「골절철심제거술 대상 수가코드」(별표4-3)골절철심제거술 대상 수가코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말하며 해당 진료행위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개정으로 “골절철심제거술”의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골절철심제거술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개정으로 급여치료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골절철심제거술”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회사는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장합니다.)
 - ②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5.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 :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

- (EDI)" 필수기재), 진료기록부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 ② 위 ①,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인용 문구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0 | 자동차사고치아보철지원금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이하 「자동차사고」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 경우 치아 1개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자동차사고치아보철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③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고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 사고
- ② 위 ①에서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라 함은 【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중 5급 32항, 6급 31항, 7급 26항, 8급 25항, 9급 19항, 10급 9항, 11급 5항, 12급 7항, 13급 4항, 14급 4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위 ①에서 보철치료라 함은 치아의 일부분이 없어지거나 기능을 상실했을 때 치아를 대체하여 주는 치료방법으로 크라운, 브릿지, 완전의치 및 임플란트 등을 말합니다.
- ④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⑤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 인용 문구**
- 1. 덤프트럭
 - 2. 타이어식 기중기
 - 3. 콘크리트믹서트럭
 -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6. 타이어식 굴착기
 -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2 위 1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형법 제38장에서 정하는 강도죄

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 등의 죄

- 2 위 1에도 불구하고 위 1에 정한 ①의 살인, ②의 상해와 폭행 및 ⑤의 폭력 등으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장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사망’의 원인 및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처법」 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2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 3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 4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손해

4. (보험금의 청구)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경찰서 사건신고확인원(관할경찰서장 발행)
 - 2 의사진단서 등
- 2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등을 대상으로 사고상황을 조사하고 이들에게 자세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1 | 강력범죄피해보험금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강력범죄피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1 형법 제24장에서 정하는 살인죄
 - 2 형법 제25장에서 정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 3 형법 제32장에서 정하는 강간죄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2 | 고속도로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의 고속도로상에서 아래에서 정한 교통사고(「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의 직접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운전자 고속도로 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③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 ④ 위 ①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위 ③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⑤ 위 ①에서 고속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0조 제1호에서 정한 고속국도로서 동법 제 11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도로를 말합니다. 이 때, 동법 제2조에서 정한 도로의 부속물(주차장, 휴게시설, 통행로, 징수시설 등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이 고속국도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고속도로로 봅니다. 또한 IC(인터체인지, 나들목)의 경우 고속도로에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운전자 고속도로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용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④ 위 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의 32.(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차사고로 아래에서 정한 교통사고(「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함이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운전자 고속도로2차사고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③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73 | 고속도로2차사고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의 고속도로상에서

- ④ 위 ①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위 ③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⑤ 위 ①에서 고속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0조 제1호에서 정한 고속국도로서 동법 제 11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도로를 말합니다. 이 때, 동법 제2조에서 정한 도로의 부속물(주차장, 휴게시설, 통행로 징수시설 등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이 고속국도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고속도로로 봅니다. 또한 IC(인터체인지, 나들목)의 경우 고속도로에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 ⑥ 위 ①에서 2차사고라 함은 고장 또는 사고로 차량이나 사람이 멈춰있는 상태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충돌해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⑦ 단, 위 ①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상의 2차사고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2차사고 발생전 '사고'임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운전자 고속도로2차사고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④ 위 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의 32.(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4 | 탈구·염좌 및 과긴장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서 "탈구, 염좌 및 과긴장"으로 진단확정되고 그에 대한 직접적 치료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탈구·염좌 및 과긴장수술비로 지급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탈구, 염좌 및 과긴장"이라 함은 탈구, 관절 및 인접근육의 염좌 및 과긴장 분류표【별표 11】탈구, 관절 및 인접근육의 염좌 및 과긴장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탈구·염좌 및 과긴장수술비는 동일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탈구·염좌 및 과긴장수술비만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 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5 | 응급실내원보험금(상해)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 ②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2. ("응급실"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실, 종합병원에 설치된 응급실을 말합니다. 단,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인용 문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 ①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다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3. (“응급환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응급환자”라 함은 상해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별표8)응급의료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참조)에서 정하는 자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②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치료
 - ③ 아래에 열거된 치료
 -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

- 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④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옹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마. 그 외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 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⑥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Z00~Z99)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6 | 적립보험료 납입대체(자동차부상등급(1-7급),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시) 특별약관

1.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동일합니다.

2. (보험료 납입면제 및 적립보험료 납입대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26-1.(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정한 납입면제 사유 발생시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 된 경우, 차회 이후의 보통약관 보험계약의 적립보험료를 이 특별약관에서 납입대체하여 드립니다.

3. (보험료 납입면제의 청구)

- ①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④ 기타 계약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4. (보험료 납입면제의 절차)

- ① 회사는 3.(보험료 납입면제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계약자와 회사가 위 ①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회사가 위 ①의 보험료 납입면제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위 ①의 납입면제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보험료 납입면제예정일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납입

면제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보험료 납입면제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① 소송제기
- ② 분쟁조정 신청
- ③ 수사기관의 조사
- ④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⑤ 아래 ⑤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⑥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④ 회사는 위 ①의 규정에 정한 납입면제기일내에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았을 때(위 ③에서 정한 납입면제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납입면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9】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납입면제가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16.(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위 ②의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료 납입면제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위 ⑤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5. (특별약관의 내용의 변경)

- ① 이 특별약관의 내용의 변경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22.(계약내용의 변경 등)을 준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계약의 보통약관 적립보험료를 변경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동일하게 변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을 변경할 때에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을 동일하게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어 이 특별약관에서 이 계약의 보통약관 적립보험료가 납입대체되는 경우, 이 계약의 보통약관 적립보험료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3.(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7 | 자동차부상치료(1-7급) 및 상해50%이상후유장해(페이백 만기확장형)보장 특별약관

77-1 | 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1-7급) 및 상해50%이상후유장해(페이백 만기확장형)보장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운전자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의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의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또는 7급에 해당하는 부상등급을 받거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자동차부상치료(1-7급) 및 상해50%이상후유장해(페이백 만기확장형)보장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③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 1. 덤프트럭
 - 2. 타이어식 기중기
 - 3. 콘크리트믹서트럭
 -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6. 타이어식 굴착기
 -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될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장애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애가 이미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애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애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애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⑥에 규정하는 후유장애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애에 대한 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애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애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애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애는 위의 후유장애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애로 봅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7-2

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1-7급) 및 상해50%이상후유장애(페이백 만기확장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비운전자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의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의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또는 7급에 해당하는 부상등급을 받거나 상해로 장애분류표(별표1)장애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애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자동차부상치료(1-7급) 및 상해50%이상후유장애(페이백 만기확장형)보장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될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⑥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해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는 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로 봅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8 |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자가용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의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사고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용어
풀이

자동차사고성형수술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받은 성형수술을 말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같은 사고로 위 ①에서 정한 성형수술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③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차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④ 위 ① 및 ③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또는 아래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을 때
 -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③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 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9 | 상해MRI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3.(“급여 상해 MRI검사”의 정의 및 장소)에서 정한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 연간 1회한도로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3.(“급여 상해 MRI검사”의 정의 및 장소)에서 정한 “급여 상해 MRI검사”를 받은 연, 월, 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3.(보험금 지급사유)의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에서 확인되는 총 촬영 의료행위의 횟수에 대하여 촬영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급여 상해 MRI검사”의 정의 및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급여 상해 MRI검사”라 함은 1.(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정한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을 사용하는 촬영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강한 자기장 내에서 인체에 고주파를 전사해서 반향 되는 전자기파를 측정하여 영상을 얻어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

의료행위
 의료행위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따릅니다.

- ② 위 ①의 “급여 상해 MRI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 ‘의료급여’라 합니다)의 절차를 거쳐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위 ①의 “급여 상해 MRI검사”는 진료비세부내역서 상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급여 자기

- 공명영상진단 분류번호 및 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이 계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 및 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촬영 의료행위 당시의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⑤ 위 ④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자기공명영상(MRI)을 사용하는 촬영 의료행위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촬영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9. 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80 | 상해CT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3. (“급여 상해 CT검사”의 정의 및 장소)에서 정한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 연간 1회한도로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3. (“급여 상해 CT검사”의 정의 및 장소)에서 정한 검사를 받은 연, 월, 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급여 상해 CT검사”의 정의 및 장소)

- ① 이 보장에서 “급여 상해 CT검사”라 함은 1.(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정한 의사에 의하여 상해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급여 상해 CT검사 분류표」【별표32】 급여 상해 CT검사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X-ray를 이용하여 인체의 횡단면상의 영상을 획득하여 진단하는 검사

의료행위

의료행위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따릅니다.

- ② 위 ①의 “급여 상해 CT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

81 | 중증외상치료비(권역외상센터)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급여'라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 '의료급여'라 합니다)의 절차를 거쳐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로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이 계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의료행위 당시의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검사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9. 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하여 “중증외상환자”로 분류되어 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중증외상치료비(권역외상센터)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권역외상센터” 도착 전 사망한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의 중증외상치료비(권역외상센터)는 동일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위 ①의 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권역외상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권역외상센터”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권역외상센터의 지정)」에 근거하여 선정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인용문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1. 외상환자의 진료
 - 2. 외상의료에 관한 연구 및 외상의료표준의 개발
 - 3. 외상医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의 교육훈련
 - 4. 대형 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외상의료 관련 업무
- ② 권역외상센터는 외상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외상환자 전용 중환자 병상 및 일반 병상
2.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 및 치료실
3.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
4. 외상환자 전용 영상진단장비 및 치료장비
5. 그 밖에 외상환자 진료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③ 그 밖에 권역외상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중증외상환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중증외상환자”라 함은 3. (“권역외상센터”의 정의)에서 정한 권역외상센터의 외상센터(외상소생구역) 또는 응급의료센터(응급실)를 통하여 내원한 외상환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최종 손상중증도 점수(ISS)가 15점 초과인 환자를 말한다.



손상중증도점수(ISS)

용어
풀이

신체를 6개의 부위(두경부, 안면부, 흉부, 복부, 사지, 신체표면)로 나누어서 각 신체 부위의 손상별 중증도를 Abbreviate InjuryScale(AIS)로 점수화하고, 6개 부위 중 중증도가 심한 상위 3개 부위의 AIS점수의 제곱 합

Abbreviate InjuryScale(AIS)

외상환자의 중증도 평가도구로서, 신체를 6개 부위로 나누어 손상정도를 최소 1점(경증)에서 최대 6점(중증)까지 수치화한 점수

5.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3. (“권역외상센터”의 정의)의 권역외상센터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하여 “중증외상환자”로 분류되어 치료를 받은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권역외상센터 내원”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권역외상센터”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권역외상센터”제도의 변경으로 3. (“권역외상센터”의 정의)의 권역외상센터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중증외상환자”의 분류가 폐지되는 경우
- ④ ①, ② 및 ③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또는 납입보험료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사항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⑥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손상중증도 점수(ISS) 산정 방식 또는 “중증외상환자”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하여 “중증외상환자”로 분류되어 치료를 받은 당시의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⑦ 위 ⑥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하여 “중증외상환자”로 분류되어 치료를 받은 당시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하여 “중증외상환자”로 분류되어 치료를 받은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6.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9. 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82 | PM 운전중 교통상해사망(영업목적 제외) 특별약관

※ 이 특별약관은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제도성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퍼스널모빌리티(이하 “PM”이라 합니다)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PM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위 PM 운전중 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PM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상해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에서 『PM을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장치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PM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2인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는 조향장치 또는 제동장치를 직접적으로 조작한 1인에 한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PM,』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 나목의 원동기

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단,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의2에서 정한 전기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어린이용 장난감, 전동 휠체어 등은 제외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으로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으로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으로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PM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동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에 의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PM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③ PM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⑤ PM을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⑥ 불법개조 등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PM을 운전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PM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④ 위 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32.(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83 | PM 운전중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영업목적 제외) 특별약관

※ 이 특별약관은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제도성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퍼스널모빌리티(이하 “PM”이라 합니다) 운전중 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PM 운전중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위 PM 운전중 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PM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상해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에서 「PM을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장치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PM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2인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는 조향장치 또는 제동장치를 직접적으로 조작한 1인에 한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PM,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단,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의2에서 정한 전기자전거 및 전기자동차, 어린이용 장난감, 전동 휠체어 등은 제외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PM 운전중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PM 운전중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PM 운전중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PM 운전중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장애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PM 운전중 교통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PM 운전중 교통상해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애가 이미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애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애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애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⑥에 규정하는 후유장애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애에 대한 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애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애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애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애는 위의 후유장애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애로 봅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 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PM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

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에 의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PM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③ PM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⑤ PM을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⑥ 불법개조 등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PM을 운전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PM 운전중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84 | PM 운전중 교통상해 골절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지급)(영업목적 제외) 특별약관

※ 이 특별약관은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제도성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퍼스널모빌리티(이하 “PM”이라 합니다)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 분류표(별표12)골절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PM 운전중 교통상해 골절수술비로 지급합니다.
위 PM 운전중 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PM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상해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에서 「PM을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장치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PM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2인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는 조향장치 또는 제동장치를 직접적으로 조작한 1인에 한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PM」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단,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의2에서 정한 전기자전거 및 전기자동차, 어린이용 장난감, 전동 휠체어 등은 제외합니다.
- ④ 위 ①의 PM 운전중 교통상해 골절수술비는 동일한 상해사고(PM 운전중 교통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PM 운전중 교통상해 골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PM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에 의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의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PM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할 때
 -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③ PM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⑤ PM을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⑥ 불법개조 등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PM을 운전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④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강촉진과 관련된 수술
 - ③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

- 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④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⑤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85 | PM 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4일이상180일한도) (영업목적 제외) 특별약관

※ 이 특별약관은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제도성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퍼스널모빌리티(이하 "PM"이라 합니다)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PM 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4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 위 PM 운전중 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PM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상해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에서 「PM을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장치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PM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

에 있는 것을 말하며, 2인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는 조향장치 또는 제동장치를 직접적으로 조작한 1인에 한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PM』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 나목의 원동기 장치차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단,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의2에서 정한 전기자전거 및 전기자동차, 어린이용 장난감, 전동 휠체어 등은 제외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PM 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4일이상180일한도) 지급 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PM 운전중 교통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 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 기 ①을 적용합니다.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 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PM 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4일이상18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 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PM 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4일이상180일한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 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

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PM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 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 다.)에 의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PM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③ PM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⑤ PM을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⑥ 불법개조 등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 용품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PM을 운전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 다. 이하 같습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PM 운전중 교통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 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

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86 | PM 운전중 교통상해 부상치료비(1-3급) (영업목적 제외) 특별약관

※ 이 특별약관은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제도성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퍼스널모빌리티(이하 “PM”이라 합니다)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PM 운전중 교통상해 부상치료비(1-3급)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위 PM 운전중 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PM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상해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 3급	보험가입금액

- ② 위 ①에서 『PM을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장치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PM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2인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는 조향장치 또는 제동장치를 직접적으로 조작한 1인에 한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PM,』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단,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의2에서 정한 전기자전거 및 전기자동차, 어린이용 장난감, 전동 휠체어 등은 제외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PM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에 의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PM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③ PM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⑤ PM을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⑥ 불법개조 등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PM을 운전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87 | PM 운전중 교통상해 부상치료비(1-10급) (영업목적 제외) 특별약관

※ 이 특별약관은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제도성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퍼스널모빌리티(이하 “PM”이라 합니다)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위 PM 운전중 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PM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상해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부상등급	지급금액	예시 [보험가입금액 150만원 기준]
1급	보험가입금액 지급	150만원
2-4급	보험가입금액의 1/2 지급	75만원
5급	보험가입금액의 1/4 지급	37만 5천원
6급	보험가입금액의 2/15 지급	20만원
7급	보험가입금액의 1/15 지급	10만원
8-10급	보험가입금액의 1/30 지급	5만원

- ② 위 ①에서 「PM을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장치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PM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2인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는 조향장치 또는 제동장치를 직접적으로 조작한 1인에 한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PM」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단,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의2에서 정한 전기자전거 및 전기자동차, 어린이용 장난감, 전동 휠체어 등은 제외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PM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에 의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PM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③ PM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⑤ PM을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⑥ 불법개조 등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PM을 운전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별약관

1종(연만기) 및

2종(세만기) 공통

제2장 질병관련

어려운 용어는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참고	35
인용 법규는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 참고	526

1 | 응급실내원보험금(질병)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 ②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질병으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응급실”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실, 종합병원에 설치된 응급실을 말합니다. 단,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인용
문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

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 ①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다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4. (“응급환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별표8)응급의료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참조)에서 정하는 자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②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②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 ③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및 통원한 경우(O00~O99)
 - ④ 선천성 뇌질환(Q00~Q04)
 - ⑤ 비만(E66)
 - ⑥ 요실금(N39.3, N39.4, R32)
 - ⑦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K64)
 - ⑧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⑨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치료.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⑩ 아래에 열거된 치료
 -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⑪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옹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마. 그 외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 ⑫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⑬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Z00~Z99)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별약관

1종(연만기) 및

2종(세만기) 공통

제3장 질병 및
상해관련

어려운 용어는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참고	35
인용 법규는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 참고	526

1 | 김스치료비(상해및질병)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김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매 사고시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김스치료비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김스(Cast)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단,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김스(Cast)치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김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 | 관절증(엉덩, 무릎)수술비 (이차성 및 상세불명 제외)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관절증(엉덩, 무릎)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절증(엉덩, 무릎)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관절증(엉덩, 무릎)수술비(이차성 및 상세불명 제외)로 지급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관절증(엉덩, 무릎)”이라 함은 「관절증(엉덩, 무릎)분류표」(별표14)관절증(엉덩, 무릎)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상병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상병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기타 양쪽 이차성 고관절증(M16.6)
 - ② 기타 이차성 고관절증(M16.7)
 - ③ 상세불명의 고관절증(M16.9)

- ④ 기타 양쪽 이차성 무릎관절증(M17.4)
- ⑤ 기타 이차성 무릎관절증(M17.5)
- ⑥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M17.9)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 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 | 추가판탈출증수술비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판탈출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추가판탈출증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추가판탈출증수술비로 지급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추가판탈출증”이라 함은 「추가판탈출증분류표」(별표15)추가판탈출증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상병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

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 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합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 |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비(급여, 연간1회한)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급여)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비(급여)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추간판탈출증”이라 함은 「추간판탈출증분류표」【별표15】추간판탈출증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상병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급여)”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급여)” 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진단확정 된 “추간판탈출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신경차단술”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급여 신경차단술”이라 함은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급여) 대상 수가코드」【별표16】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급여) 대상 수가코드 참조)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말하며 해당 진료행위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 지침」의 개정으로 “급여 신경차단술”의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

- 용합니다.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급여)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개정으로 급여치료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 :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인용문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5 | 인공관절치환수술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인공관절치환수술 대상질환」(【별표20】(인공관절치환수술 대상질환 분류표)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공관절치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 한도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인공관절치환수술비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피보험자의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4. ("인공관절치환수술"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인공관절치환수술"이라 함은 견관절(어깨관절), 슬관절(무릎관절) 또는 고관절(엉덩이관절)이 파괴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관절(의학적으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 대해 손상된 관절을 제거하고 「인공적으로 만든 관절」(특수 소재를 사용한 인공적 신체의 관절로 이하 "인공관절"이라 합니다)을 삽입하여 관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치환하여 줌으로써 원래의 관절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인공관절치환수술"에서 관절을 성형하는 수술 및 처치 또는 인공관절이 아닌 금속내고정술, 외고정술 등은 모두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5.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 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용어
풀이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6 | 등급별 골절 및 특정외상진단비 I (1-6급, 연간1회한)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골절 및 특정외상 분류표(별표21)「골절 및 특정외상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골절 및 특정외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골절 및 특정외상 등급분류기준표(별표22)「골절 및 특정외상 등급분류기준표」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등급에 따라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별 골절 및 특정외상진단비 I 로 지급합니다.

부상등급	지급금액	예시 [보험가입금액 50만원 기준]
1급	보험가입금액 지급	50만원
2급	보험가입금액의 4/5 지급	40만원
3급	보험가입금액의 3/5 지급	30만원
4급	보험가입금액의 2/5 지급	20만원
5급	보험가입금액의 1/5 지급	10만원
6급	보험가입금액의 1/5 지급	10만원

- ② 위 ①에서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등급별 골절 및 특정외상진단비 I 는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또는 특정외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 또는 특정외상을 기준으로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2.(보험금의 지급사유) ②에서 정한 “연간”에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등급이 있는 경우, 그 보험금이 지급된 등급을 제외 하고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 및 특정외상을 기준으로 등급별 골절 및 특정외상진단비 I 를 지급 합니다.
- ②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해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이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해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④ 위 ③의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28.(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⑤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위 ③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
지식

등급별 골절 및 특정외상진단비 | (1-6급, 연간1회한) 보장예시
[가입금액 50만원 예시]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지급금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10만원

사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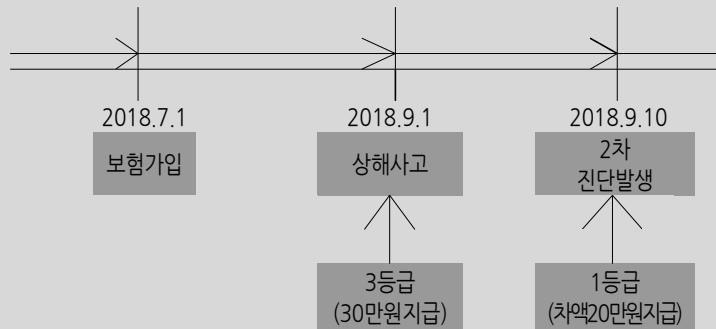
- 하나의 상해사고로 다음과 같이 진단을 받은 경우
S42.2, S82.0

진단	진단명 및 골절등급
S42.2	상완골 상단의 골절 (3등급)
S82.0	무릎뼈의 골절 (4등급)

→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3등급 보험금 지급 (30만원 지급)

사례2)

- 상해사고로 3등급인 S02.2(비골의 골절) 진단시
3등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30만원 지급)
- 같은 상해사고로 1등급인 S06.4(경막외출혈) 2차 진단시
1등급에 해당하는 보험금과 3등급 보험금의 차액지급
(50만원 - 30만원 = 20만원)



보험
지식

사례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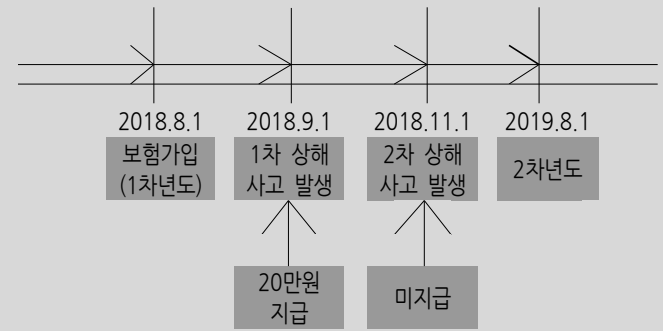
- 첫 해 상해사고로 S92.5(기타 발가락의 골절) 진단시
5등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10만원 지급)
- 다음 해 상해사고로 T02.4(양쪽 팔의 여러부위를침범한 골절) 진단시
5등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10만원 지급)



보험
지식

사례4)

- 첫 해 상해사고로 S22.3(늑골골절) 진단시
4등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20만원 지급)
- 같은 해 상해사고로 S14.5(경부교감신경의 손상) 진단시
4등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미지급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 | 등급별 골절 및 특정의상진단비II(1-6급, 연간1회한)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골절 및 특정의상 분류표(별표21)「골절 및 특정의상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골절 및 특정의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골절 및 특정의상 등급분류기준표(별표22)「골절 및 특정의상 등급분류기준표」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등급에 따라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별 골절 및 특정의상진단비II로 지급합니다.

부상등급	지급금액	예시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1급	보험가입금액 지급	500만원
2급	보험가입금액의 2/5 지급	200만원
3급	보험가입금액의 1/5 지급	100만원
4급	보험가입금액의 1/10 지급	50만원
5급	보험가입금액의 3/50 지급	30만원
6급	보험가입금액의 1/25 지급	20만원

- ② 위 ①에서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등급별 골절 및 특정의상진단비II는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또는 특정의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 또는 특정의상을 기준으로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2.(보험금의 지급사유) ②에서 정한 “연간”에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등급이 있는 경우, 그 보험금이 지급된 등급을 제외 하고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 및 특정의상을 기준으로 등급별 골절 및 특정의상진단비II를 지급 합니다.
- ②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해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이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해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④ 위 ③의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28.(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⑤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위 ③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
지식

등급별 골절 및 특정의상진단비 II (1-6급, 연간1회한) 보장예시
[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지급금액	5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30만원	20만원

사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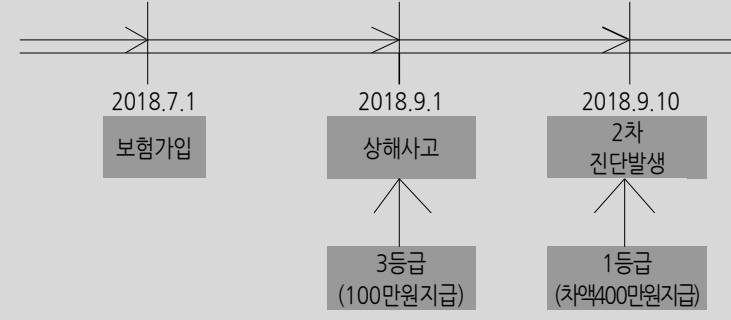
○ 하나의 상해사고로 다음과 같이 진단을 받은 경우
S42.2, S82.0

진단	진단명 및 골절등급
S42.2	상완골 상단의 골절 (3등급)
S82.0	무릎뼈의 골절 (4등급)

→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3등급 보험금 지급 (100만원 지급)

사례2)

- 상해사고로 3등급인 S02.2(비골의 골절) 진단시
3등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100만원 지급)
- 같은 상해사고로 1등급인 S06.4(경막외출혈) 2차 진단시
1등급에 해당하는 보험금과 3등급 보험금의 차액지급
(500만원 - 100만원 = 400만원)





보험
지식

사례3)

- 첫 해 상해사고로 S92.5(기타 발가락의 골절) 진단시 5등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30만원 지급)
- 다음 해 상해사고로 T02.4(양쪽 팔의 여러부위를침범한 골절) 진단시 5등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30만원 지급)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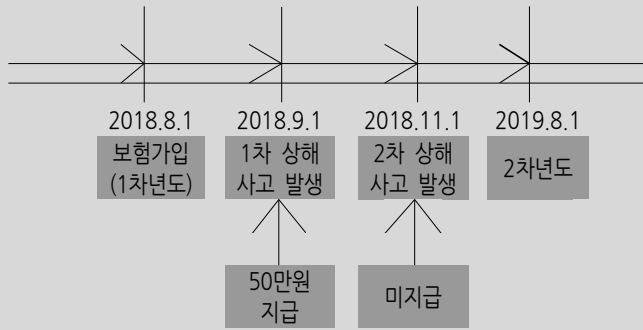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
지식

사례4)

- 첫 해 상해사고로 S22.3(늑골골절) 진단시 4등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50만원 지급)
- 같은 해 상해사고로 S14.5(경부교감신경의 손상) 진단시 4등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미지급



8 | 등급별 골절 및 특정외상수술비 I (1-6급, 연간1회한) (동일사고당1회지급)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골절 및 특정외상 분류표(별표21)「골절 및 특정외상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골절 및 특정외상으로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골절 및 특정외상 등급분류기준표(별표22)「골절 및 특정외상 등급분류기준표」 참조)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라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별 골절 및 특정외상수술비 I 로 지급합니다.

부상등급	지급금액	예시 [보험가입금액 60만원 기준]
1급	보험가입금액 지급	60만원
2급	보험가입금액의 2/3 지급	40만원
3급	보험가입금액의 1/2 지급	30만원
4급	보험가입금액의 1/3 지급	20만원
5급	보험가입금액의 1/6 지급	10만원
6급	보험가입금액의 1/6 지급	10만원

- ② 위 ①에서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등급별 골절 및 특정외상수술비 I 는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골절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등급별 골절 및 특정외상수술비 I 만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등급별 골절 및 특정외상수술비 I 는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또는 특정외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 또는 특정외상을 기준으로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2.(보험금의 지급사유) ②에서 정한 “연간”에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등급이 있는 경우, 그 보험금이 지급된 등급을 제외 하고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 및 특정외상을 기준으로 등급별 골절 및 특정외상수술비 I 를 지급합니다.

- ②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해 과거 (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이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해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④ 위 ③의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28.(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⑤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위 ③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
지식

등급별 골절 및 특정의상수술비 | (1-6급, 연간1회한) 보장예시
[가입금액 60만원기준]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지급금액	6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10만원

사례1)

- 하나의 상해사고로 다음과 같이 진단 후 수술을 받은 경우
S42.2, S82.0

진단	진단명 및 골절등급
S42.2	상완골 상단의 골절 (3등급)
S82.0	무릎뼈의 골절 (4등급)

→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3등급 보험금 지급 (30만원 지급)

사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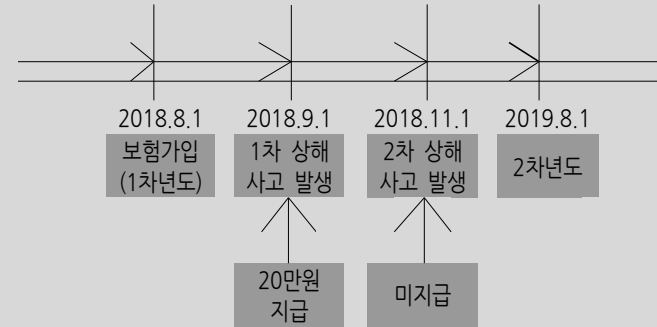
- 첫 해 상해사고로 S92.5(기타 발가락의 골절) 진단후 수술시
5등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10만원 지급)
- 다음 해 상해사고로 T02.4(양쪽 팔의 여러부위를 침범한 골절) 진단후
수술시 5등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10만원 지급)



보험
지식

사례3)

- 첫 해 상해사고로 S22.3(늑골골절) 진단후 수술시
4등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20만원 지급)
- 같은 해 상해사고로 S14.5(경부교감신경의 손상) 진단후 수술시
4등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미지급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또는 ②에서 정한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장합니다.)
 - ②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

- 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9 | 등급별 골절 및 특정의상수술비II(1-6급, 연간1회한) (동일사고당1회지급)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골절 및 특정의상 분류표(별표21)「골절 및 특정의상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골절 및 특정의상으로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골절 및 특정의상 등급분류기준표(별표22)「골절 및 특정의상 등급분류기준표」 참조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라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별 골절 및 특정의상수술비II로 지급합니다.

부상등급	지급금액	예시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1급	보험가입금액 지급	300만원
2급	보험가입금액의 1/2 지급	150만원
3급	보험가입금액의 1/3 지급	100만원
4급	보험가입금액의 1/6 지급	50만원
5급	보험가입금액의 1/15 지급	20만원
6급	보험가입금액의 1/30 지급	10만원

- ② 위 ①에서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등급별 골절 및 특정의상수술비II는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골절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등급별 골절 및 특정의상수술비II만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등급별 골절 및 특정의상수술비II는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또는 특정의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 또는 특정의상을 기준으로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2.(보험금의 지급사유) ②에서 정한 “연간”에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 등급이 있는 경우, 그 보험금이 지급된 등급을 제외 하고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 및 특정의상을 기준으로 등급별 골절 및 특정의상수술비II를 지급합니다.
- ②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해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이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해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④ 위 ③의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28.(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⑤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위 ③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등급별 골절 및 특정의상수술비II (1-6급, 연간1회한) 보장예시
[가입금액 300만원기준]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지급금액	3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20만원	10만원

사례1)

- 하나의 상해사고로 다음과 같이 진단후 수술을 받은 경우
S42.2, S82.0

진단	진단명 및 골절등급
S42.2	상완골 상단의 골절 (3등급)
S82.0	무릎뼈의 골절 (4등급)

→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3등급 보험금 지급 (100만원 지급)

사례2)

- 첫 해 상해사고로 S92.5(기타 발가락의 골절) 진단후 수술시 5등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20만원 지급)
- 다음 해 상해사고로 T02.4(양쪽 팔의 여러부위를 침범한 골절) 진단후 수술시 5등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20만원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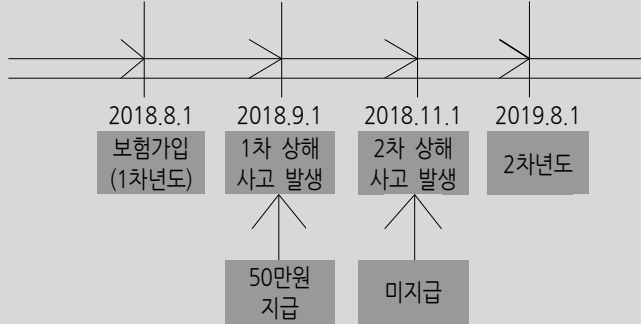




보험
지식

사례3)

- 첫 해 상해사고로 S22.3(능골골절) 진단후 수술시 4등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50만원 지급)
- 같은 해 상해사고로 S14.5(경부교감신경의 손상) 진단후 수술시 4등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미지급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또는 ②에서 정한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장합니다.)
 - ②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

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0 | 신김스치료비(상해및질병)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3. (신김스치료의 정의 및 지급률표)에서 정한 “신김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3. (신김스치료의 정의 및 지급률표)에서 정한 진료행위별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신김스치료비의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는 치료법은 제외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두가지 이상의 “신김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신체 동일부위에 두가지 이상의 “신김스치료”를 받은 경우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1회에 한하여 신김스치료비의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신김스치료비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신김스치료의 정의 및 지급률표)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있어 “신김스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아래의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진료행위명칭	진료행위코드	지급률
손가락캐스트	T6090	5%
단상지[전완으로부터 수부까지]	T6030	10%
장상지[상완으로부터 수부까지] 8자형 석고	T6020 T6120	20%
단하지[하퇴로부터족부까지]-Without Walker 단하지[하퇴로부터족부까지]-With Walker 슬개건 부하캐스트 견수상[흉부로부터 수부까지] 벨포캐스트	T6060 T6061 T6063 T6010 T6110	30%
대퇴에서 족부에 미치는 캐스트 장하지[대퇴로부터 족부까지]-Without Walker 장하지[대퇴로부터 족부까지]-With Walker	T6050 T6051 T6052	40%
Risser형 체간캐스트 Minerva형 체간캐스트 고수상[요부로부터 족부까지, 척추cast포함]	T6080 T6070 T6040	100%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신김스치료 급여인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김스치료 급여인정기준」을 따릅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① 및 ②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 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인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용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별약관

1종(연만기) 및

2종(세만기) 공통

제4장 비용손해
관련

어려운 용어는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참고	35
인용 법규는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 참고	526

1 | 자동차사고 벌금II(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다음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	보상한도
2천만원	1사고당 2천만원
3천만원	1사고당 2천만원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2호에 해당되는 사고로 받은 벌금액은 1사고당 3천만원 한도)



벌금액

보험
지식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인용
문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

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④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랙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① 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산식

$$\text{벌금}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피보험자의 벌금액이 확정된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벌금을 납부하기 전에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 ② 법원 판결문 또는 약식 명령문
 - ③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의 고의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②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을 때
 - ③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인용
문구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 | 자동차사고 벌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가 발생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2호에 해당되는 사고로 받은 벌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벌금액을 1사고당 1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보험
지식

벌금액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인용
문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

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④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① 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산식} \quad \text{벌금}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피보험자의 벌금액이 확정된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벌금을 납부하기 전에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 ② 법원 판결문 또는 약식 명령문

③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의 고의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②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을 때
 - ③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인용
문구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다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 | 자동차사고별금(대물, 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벌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보험
지식

벌금액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인용 문구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차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 인용 문구**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산식

$$\text{벌금}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벌금형 확정 이유의 아래 두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①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를 포함합니다)」에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보장하는 계약」 또한 포함됩니다.
 -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②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③ 피보험자의 벌금액이 확정된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벌금을 납부하기 전에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 ② 법원 판결문 또는 약식 명령문
 - ③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의 고의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②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을 때

③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인용
문구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Ⅲ(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에서 정한 사유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 ②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하며,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 ③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 ② 위 ①의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 ④ 위 ①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⑤ 위 ①의 『1사고』라 함은 하나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말하며,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⑥ 위 ①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의 고의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②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을 때
 - ③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보험금의 청구)

- ①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무계산서)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인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5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Ⅳ(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에서 정한 사유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 ②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하며,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 ③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④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어 제1심판결 선고된 경우
- ② 위 ①의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 ④ 위 ①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차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⑤ 위 ①의 「1사고」라 함은 하나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말하며,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⑥ 위 ①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의 고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합니다)

- ② 위 ①의 변호사선임비용은 1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①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① 내지 ④에 해당하는 경우(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부상등급	보상한도
1-3급	5천만원
4-14급	3천만원

- ③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⑤, ⑥(① 내지 ④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부상등급	보상한도
1-3급	5천만원
4-7급	3천만원
8-14급	5백만원

- ④ 위 ①, ②, 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3천만원 한도
- ③ 위 ① 및 ②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2)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④ 위 ① 및 ②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는 불송치 결정서, 약식명령 공소장, 불기소 이유고지서 또는 피의자 처분결과 통지서 등을 통해 죄목 또는 사고내용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⑤ 위 ①의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결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물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⑥ 위 ①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

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 ⑦ 위 ①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⑧ 위 ① 및 ②의 「1사고」라 함은 하나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말하며,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⑨ 위 ①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의 고의
- ④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②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을 때
 - ③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비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인용
문구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보험금의 청구)

- ①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불송치 결정서, 불기소 이유고지서 또는 피의자 처분결과 통지서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인인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경찰조사포함)
(기가입자용)(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에서 정한 사유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 ②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하며,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 ③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④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어 제1심판결 선고된 경우
 - ⑤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합니다

- ⑥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합니다)
- ② 위 ①의 변호사선임비용은 1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① 타인을 사망하게 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① 내지 ④에 해당하는 경우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천만원 한도
- ② 타인을 사망하게 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⑤, ⑥(① 내지 ④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 5천만원 한도
- ③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⑤, ⑥(① 내지 ④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부상등급	보상한도
1-3급	3천만원
4-7급	2천만원
8-14급	5백만원

- ③ 위 ① 및 ②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2』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④ 위 ① 및 ②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는 불송치 결정서, 약식명령 공소장, 불기소 이유고지서 또는 피의자 처분결과 통지서 등을 통해 죄목 또는 사고내용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⑤ 위 ①의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⑥ 위 ①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 ⑦ 위 ①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차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⑧ 위 ① 및 ②의 『1사고』라 함은 하나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말하며,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⑨ 위 ①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의 고의

- ④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②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을 때
 - ③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인용
문구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보험금의 청구)

- ①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불송치 결정서, 불기소 이유고지서 또는 피의자 처분결과 통지서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

-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8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실손) 특별약관

8-1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피해자에서 제외합니다.



용어
풀이

형사합의금

형사처벌의 감경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피해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 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1~3급 참조)을 입힌 경우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 및 제2항

인용
문구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을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인용
문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1호 내지 제12호)

인용
문구

- 1. 신호 및 지시위반
-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유턴·후진 위반
- 3.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 위반
-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7. 무면허 운전
- 8.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인용
문구

- 1. 덤프트럭
 - 2. 타이어식 기중기
 - 3. 콘크리트믹서트럭
 -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6. 타이어식 굴착기
 -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용어
풀이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①의 경우 : 보험가입금액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②의 경우

구분	42일~69일 진단시	70일~139일 진단시	140일이상 진단시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1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③의 경우 : 보험가입금액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2)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④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위 ①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⑤ 다음 ① 및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①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 ②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 ⑥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 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④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⑦ 위 ⑤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 ③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④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⑧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공탁금액의 50%를 위 ①의 금액의 50%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잔여 공탁금은 위 ①의 금액에서 가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추가로 보상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향후 무죄 선고 등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⑧의 가지급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⑩ 피보험자가 위 ⑧의 가지급 보험금 수령 후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 공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⑧에서 지급한 가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고의
- ② 계약자의 고의
-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⑤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⑥ 자가용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

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보험금의 비례분담)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②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text{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text{형사합의금} \times \frac{\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8-2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피해자에서 제외합니다.



형사합의금

용어 풀이 형사처벌의 감경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피해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 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1~3급) 참조)을 입힌 경우



인용
문구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 및 제2항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을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1호 내지 제12호)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유턴·후진 위반
3.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 위반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용어
풀이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①의 경우 : 보험가입금액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②의 경우

구분	42일~69일 진단시	70일~139일 진단시	140일이상 진단시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1천만원	5천만원	1억원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③의 경우 : 보험가입금액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2)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④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위 ①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⑤ 다음 ① 및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①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 ②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 ⑥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 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④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⑦ 위 ⑤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 ③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④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⑧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공탁금액의 50%를 위 ①의 금액의 50%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잔여 공탁금은 위 ①의 금액에서 가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추가로 보상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항후 무죄 선고 등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⑧의 가지급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⑩ 피보험자가 위 ⑧의 가지급 보험금 수령 후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 공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⑧에서 지급한 가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고의
- ② 계약자의 고의
-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⑤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인용
문구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보험금의 비례분담)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②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text{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text{형사합의금} \times \frac{\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9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Ⅷ(실손) 특별약관

9-1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Ⅷ(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 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피해자에서 제외합니다.



형사합의금

용어
풀이

형사처벌의 감경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피해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 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1~3급 참조)을 입힌 경우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 및 제2항

인용
문구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을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1호 내지 제12호)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유턴·후진 위반
3.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 위반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용어 풀이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①의 경우 : 보험가입금액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②의 경우

구분	42일~69일 진단시	70일~139일 진단시	140일이상 진단시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기준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기준	1천만원	4천만원	7천만원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2천만원	7천만원	1억원
보험가입금액 1억5천만원 기준	2천만원	8천만원	1억원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③의 경우

구분	보상한도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	3천만원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기준	5천만원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기준	7천만원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1억원
보험가입금액 1억5천만원 기준	1억원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2】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④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위 ①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⑤ 다음 ① 및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①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 ②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 ⑥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 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④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⑦ 위 ⑤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 ③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④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⑧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공탁금액의 50%를 위 ①의 금액의 50%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잔여 공탁금은 위 ①의 금액에서 가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추가로 보상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향후 무죄 선고 등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⑧의 가지급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⑩ 피보험자가 위 ⑧의 가지급 보험금 수령 후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 공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⑧에서 지급한 가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고의
- ② 계약자의 고의
-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⑤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⑥ 자가용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인용문구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보험금의 비례분담)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②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text{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text{형사합의금} \times \frac{\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9-2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Ⅷ(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피해자에서 제외합니다.



용어
풀이

형사합의금

형사처벌의 감경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피해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 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1~3급) 참조)을 입힌 경우



인용
문구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 및 제2항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을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1호 내지 제12호)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유턴·후진 위반
3.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 위반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용어
풀이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①의 경우 : 보험가입금액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②의 경우

구분	42일~69일 진단시	70일~139일 진단시	140일이상 진단시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기준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기준	1천만원	4천만원	7천만원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2천만원	7천만원	1억원
보험가입금액 1억5천만원 기준	2천만원	8천만원	1억원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③의 경우

구분	보상한도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	3천만원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기준	5천만원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기준	7천만원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1억원
보험가입금액 1억5천만원 기준	1억원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2」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④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위 ①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⑤ 다음 ① 및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①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 ②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 ⑥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 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④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⑦ 위 ⑤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 ③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④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⑧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공탁금액의 50%를 위 ①의 금액의 50%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잔여 공탁금은 위 ①의 금액에서 가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추가로 보상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향후 무죄 선고 등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⑧의 가지급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⑩ 피보험자가 위 ⑧의 가지급 보험금 수령 후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 공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⑧에서 지급한 가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고의
- ② 계약자의 고의
-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⑤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인용
문구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보험금의 비례분담)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②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

으로 지급합니다.

-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text{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text{형사합의금} \times \frac{\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0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Ⅷ(실손) 특별약관

10-1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Ⅷ(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

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피해자에서 제외합니다.



용어
풀이

형사합의금

형사처벌의 감경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피해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 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1~3급 참조)을 입힌 경우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①의 경우 : 보험가입금액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②의 경우

구분	42일~69일 진단시	70일~139일 진단시	140일~209일 진단시	210일 이상 진단시
보험가입금액 2억원 기준	2천만원	8천만원	1억원	2억원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③의 경우

구분	보상한도
보험가입금액 2억원 기준	1억원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2〕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④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위 ①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⑤ 다음 ① 및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①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 ②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 ⑥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 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④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⑦ 위 ⑤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 ③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④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⑧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공탁금액의 50%를 위 ①의 금액의 50%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잔여 공탁금은 위 ①의 금액에서 가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추가로 보상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향후 무죄 선고 등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⑧의 가지급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⑩ 피보험자가 위 ⑧의 가지급 보험금 수령 후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 공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⑧에서 지급한 가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고의
- ② 계약자의 고의
-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⑤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⑥ 자가용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보험금의 비례분담)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②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text{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text{형사합의금} \times \frac{\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0-2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Ⅷ(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피해자에서 제외합니다.



용어
풀이

형사합의금

형사처벌의 감경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피해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 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1~3급) 참조)을 입힌 경우



인용
문구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 및 제2항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을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1호 내지 제12호)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유턴·후진 위반
3.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 위반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용어 풀이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①의 경우 : 보험가입금액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②의 경우

구분	42일~69일 진단시	70일~139일 진단시	140일~209일 진단시	210일 이상 진단시
보험가입금액 2억원 기준	2천만원	8천만원	1억원	2억원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③의 경우

구분	보상한도
보험가입금액 2억원 기준	1억원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2】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④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위 ①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⑤ 다음 ① 및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①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 ②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 ⑥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 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④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⑦ 위 ⑤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 ③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④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⑧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공탁금액의 50%를 위 ㉠의 금액의 50%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잔여 공탁금은 위 ㉠의 금액에서 가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추가로 보상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향후 무죄 선고 등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⑧의 가지급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⑩ 피보험자가 위 ⑧의 가지급 보험금 수령 후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 공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⑧에서 지급한 가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고의
- ② 계약자의 고의
-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⑤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보험금의 비례분담)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②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text{형사합의금} \times \frac{\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1 | 교통사고처리지원금통합형(2억원한도)(실손) 특별약관

11-1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통합형(2억원한도)(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피해자에서 제외합니다.



형사합의금

용어
풀이

형사처벌의 감경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피해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 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1~3급) 참조)을 입힌 경우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 및 제2항

인용
문구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을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1호 내지 제12호)

인용
문구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유턴·후진 위반
3.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 위반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용어
풀이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①의 경우 : 보험가입금액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②의 경우

구분	27일이하 진단시	28~41일 진단시	42~69일 진단시	70~139일 진단시	140~209일 진단시	210일이상 진단시
보험가입금액 2억원 기준	250만원	700만원	2천만원	8천만원	1억원	2억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③의 경우 : 1억원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2)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참조)에 해당되는

-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④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위 ①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⑤ 다음 ① 및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①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 ②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 ⑥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 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④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⑦ 위 ⑤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 ③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④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⑧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공탁금액의 50%를 위 ①의 금액의 50%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잔여 공탁금은 위 ①의 금액에서 가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추가로 보상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향후 무죄 선고 등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⑧의 가지급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⑩ 피보험자가 위 ⑧의 가지급 보험금 수령 후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 공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⑧에서 지급한 가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고의
- ② 계약자의 고의
-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⑤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⑥ 자가용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인용
문구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보험금의 비례분담)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②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text{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frac{\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times \text{형사합의금}$$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1-2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통합형(2억원한도)(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피해자에서 제외합니다.



형사합의금

용어 풀이 형사처벌의 감경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피해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 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1~3급 참조)을 입힌 경우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 및 제2항

인용 문구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을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문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1호 내지 제12호)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유턴·후진 위반
3.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 위반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①의 경우 : 보험가입금액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②의 경우

구분	27일이하 진단시	28~41일 진단시	42~69일 진단시	70~139일 진단시	140~209일 진단시	210일이상 진단시
보험가입금액 2억원 기준	250만원	700만원	2천만원	8천만원	1억원	2억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③의 경우 : 1억원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2)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④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위 ①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⑤ 다음 ① 및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①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 ②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

- 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 ⑥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 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④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⑦ 위 ⑤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 ③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④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⑧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공탁금액의 50%를 위 ①의 금액의 50%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잔여 공탁금은 위 ①의 금액에서 가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추가로 보상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향후 무죄 선고 등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⑧의 가지급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⑩ 피보험자가 위 ⑧의 가지급 보험금 수령 후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 공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⑧에서 지급한 가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고의
 - ② 계약자의 고의
 -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⑤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주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인용
문구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보험금의 비례분담)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②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text{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frac{\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times \text{형사합의금}$$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절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2 | 교통사고처리지원금(기가입자용Ⅶ)(실손) 특별약관

12-1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기가입자용Ⅶ)(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피해자에서 제외합니다.



형사합의금

용어
풀이

형사처벌의 감경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피해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 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1~3급) 참조)를 입힌 경우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 및 제2항

인용
문구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을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1호 내지 제12호)

- 1. 신호 및 지시위반
-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유턴·후진 위반
- 3.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 위반
-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7. 무면허 운전
- 8.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인용
문구

- 1. 덤프트럭
 - 2. 타이어식 기중기
 - 3. 콘크리트믹서트럭
 -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6. 타이어식 굴착기
 -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용어
풀이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①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보상한도
1억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억원 한도
1억3천만원	7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억3천만원 한도
1억5천만원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억5천만원 한도
1억7천만원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억7천만원 한도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②의 경우

보험 가입금액	보상한도
1억원	42일~69일 진단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만원 한도
	70일~139일 진단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천만원 한도
	140~209일 진단시 해당없음
	210일이상 진단시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억원 한도
1억3천만원	42일~69일 진단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만원 한도
	70일~139일 진단시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천만원 한도
	140~209일 진단시 7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천만원 한도
	210일이상 진단시 7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억3천만원 한도
1억5천만원	42일~69일 진단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만원 한도
	70일~139일 진단시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천만원 한도
	140~209일 진단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천만원 한도
	210일이상 진단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억5천만원 한도
1억7천만원	42일~69일 진단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만원 한도
	70일~139일 진단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천만원 한도
	140~209일 진단시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7천만원 한도
	210일이상 진단시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억7천만원 한도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③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보상한도
1억원	해당없음
1억3천만원	7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천만원 한도
1억5천만원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천만원 한도
1억7천만원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7천만원 한도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2)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④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위 ①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⑤ 다음 ① 및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①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 ②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 ⑥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 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④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⑦ 위 ⑤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 ③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④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⑧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공탁금액의 50%를 위 ①의 금액의 50%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잔여 공탁금은 위 ①의 금액에서 가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추가로 보상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향후 무죄 선고 등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⑧의 가지급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⑩ 피보험자가 위 ⑧의 가지급 보험금 수령 후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 공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⑧에서 지급한 가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고의
- ② 계약자의 고의
-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⑤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⑥ 자가용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인용문구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보험금의 비례분담)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②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text{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text{형사합의금} \times \frac{\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됨

니다.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합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2-2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기가입자용Ⅶ)(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피해자에서 제외합니다.

형사합의금
 형사처벌의 감경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피해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 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1~3급) 참조)을 입힌 경우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 및 제2항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을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1호 내지 제12호)

- 1. 신호 및 지시위반
-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유턴·후진 위반
- 3.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 위반
-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7. 무면허 운전
- 8.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용어
풀이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①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보상한도
1억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억원 한도
1억3천만원	7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억3천만원 한도
1억5천만원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억5천만원 한도
1억7천만원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억7천만원 한도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②의 경우

보험 가입금액	보상한도	
1억원	42일~69일 진단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만원 한도
	70일~139일 진단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천만원 한도
	140~209일 진단시	해당없음
	210일이상 진단시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억원 한도
1억3천만원	42일~69일 진단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만원 한도
	70일~139일 진단시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천만원 한도
	140~209일 진단시	7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천만원 한도
	210일이상 진단시	7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억3천만원 한도
1억5천만원	42일~69일 진단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만원 한도
	70일~139일 진단시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천만원 한도
	140~209일 진단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천만원 한도
	210일이상 진단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억5천만원 한도
1억7천만원	42일~69일 진단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만원 한도
	70일~139일 진단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천만원 한도
	140~209일 진단시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7천만원 한도
	210일이상 진단시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억7천만원 한도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③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보상한도
1억원	해당없음
1억3천만원	7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천만원 한도
1억5천만원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천만원 한도
1억7천만원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7천만원 한도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제2항 단서(별표2)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④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위 ①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⑤ 다음 ① 및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①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 ②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 ⑥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 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④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⑦ 위 ⑤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 ③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④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⑧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공탁금액의 50%를 위 ①의 금액의 50%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잔여 공탁금은 위 ①의 금액에서 가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추가로 보상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향후 무죄 선고 등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⑧의 가지급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⑩ 피보험자가 위 ⑧의 가지급 보험금 수령 후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 공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⑧에서 지급한 가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고의
- ② 계약자의 고의
-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⑤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인용문구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보험금의 비례분담)

-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②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text{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text{형사합의금} \times \frac{\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3 | 교통사고처리지원금(기가입자용Ⅷ)(실손) 특별약관

13-1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기가입자용Ⅷ)(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

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피해자에서 제외합니다.



용어 풀이

형사합의금

형사처벌의 감경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피해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 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70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①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보상한도
5천만원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천만원 한도
7천만원	1억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7천만원 한도
1억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억원 한도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②의 경우

보험 가입금액	보상한도	
5천만원	70일~139일 진단시	해당없음
	140~209일 진단시	해당없음
	210일이상 진단시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억원 한도
7천만원	70일~139일 진단시	해당없음
	140~209일 진단시	해당없음
	210일이상 진단시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억원 한도
1억원	70일~139일 진단시	7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만원 한도
	140~209일 진단시	해당없음
	210일이상 진단시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억원 한도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2)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③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지급 이후 공탁금액을 위 ①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④ 다음 ① 및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②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⑤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④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금 확인서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⑥ 위 ④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③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④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⑦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금 이전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공탁금액의 50%를 위 ①의 금액의 50%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피해자의 공탁금 출금 이후 잔여 공탁금은 위 ①의 금액에서 가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추가로 보상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향후 무죄 선고 등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⑦의 가지급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⑨ 피보험자가 위 ⑦의 가지급 보험금 수령 후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 공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⑦에서 지급한 가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용
문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1호 내지 제12호)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유턴·후진 위반
3.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 위반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고의
- ② 계약자의 고의
-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비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⑤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⑥ 자가용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인용
문구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

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보험금의 비례분담)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②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text{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text{형사합의금} \times \frac{\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3-2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기가입자용Ⅷ)(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 로 「타인」(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피해자에서 제외합니다.



형사합의금

용어 풀이 형사처벌의 감경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피해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 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70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①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보상한도
5천만원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천만원 한도
7천만원	1억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7천만원 한도
1억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억원 한도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②의 경우

보험 가입금액	보상한도	
5천만원	70일~139일 진단시	해당없음
	140~209일 진단시	해당없음
	210일이상 진단시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억원 한도
7천만원	70일~139일 진단시	해당없음
	140~209일 진단시	해당없음
	210일이상 진단시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억원 한도
1억원	70일~139일 진단시	7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만원 한도
	140~209일 진단시	해당없음
	210일이상 진단시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억원 한도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2)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③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위 ①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④ 다음 ① 및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①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 ②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 ⑤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 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④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⑥ 위 ④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 ③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④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⑦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공탁금액의 50%를 위 ①의 금액의 50%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잔여 공탁금은 위 ①의 금액에서 가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추가로 보상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향후 무죄 선고 등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⑦의 가지급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위 ⑦의 가지급 보험금 수령 후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 공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⑦에서 지급한 가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용
문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1호 내지 제12호)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유턴·후진 위반
3.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 위반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고의
- ② 계약자의 고의
-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비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⑤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인용문구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보험금의 비례분담)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②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

으로 지급합니다.

-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text{형사합의금} \times \frac{\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4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 특별약관

14-1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이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부상【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을 입은 경우에 한함)을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피해자에서 제외합니다.



형사합의금

용어
풀이

형사처벌의 감경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피해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인용
문구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 ④ 위 ①에서 피해자의 진단기간은 추가 진단기간을 합산한 최종 진단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가입금액	27일이하 진단시	28일~41일 진단시
5백만원	150만원	500만원
7백만원	250만원	700만원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2」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1호 내지 제12호)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유턴·후진 위반
3.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 위반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 ③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위 ①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④ 다음 ① 및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①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 ②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 ⑤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 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④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⑥ 위 ④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 ③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④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⑦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공탁금액의 50%를 위 ①의 금액의 50%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잔여 공탁금은 위 ①의 금액에서 가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추가로 보상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향후 무죄 선고 등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⑦의 가지급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위 ⑦의 가지급 보험금 수령 후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 공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⑦에서 지급한 가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고의
- ② 계약자의 고의
-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⑤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⑥ 최초 진단 후 추가 진단을 받아 최종 진단일이 42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⑦ 자가용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인용문구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보험금의 비례분담)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②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text{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text{형사합의금} \times \frac{\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4-2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이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부상【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을 입은 경우에 한함)을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피해자에서 제외합니다.



형사합의금

용어 풀이 형사처벌의 감경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피해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인용
문구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 ④ 위 ①에서 피해자의 진단기간은 추가 진단기간을 합산한 최종 진단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가입금액	27일이하 진단시	28일~41일 진단시
5백만원	150만원	500만원
7백만원	250만원	700만원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2】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1호 내지 제12호)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유턴·후진 위반
3.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 위반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 ③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위 ①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④ 다음 ① 및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①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 ②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 ⑤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 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④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⑥ 위 ④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 ③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④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⑦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공탁금액의 50%를 위 ①의 금액의 50%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잔여 공탁금은 위 ①의 금액에서 가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추가로 보상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향후 무죄 선고 등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⑦의 가지급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위 ⑦의 가지급 보험금 수령 후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 공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⑦에서 지급한 가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고의
- ② 계약자의 고의
-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비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⑤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⑥ 최초 진단 후 추가 진단을 받아 최종 진단일이 42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인용
문구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

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보험금의 비례분담)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②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text{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text{형사합의금} \times \frac{\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5 | 면허취소보험금(영업용)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면허취소보험금으로 1사고마다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 1. 덤프트럭
- 2. 타이어식 기중기
- 3. 콘크리트믹서트럭
-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6. 타이어식 굴착기
-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의 고의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②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을 때
 - ③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6 | 면허정지일당II(영업용)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 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일당액을 면허정지일당으로 1사고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면허정지일당은 면허정지기간 동안 최고 120일을 한도로 지급하며,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면허정지일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자동차라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 ④ 위 ①에서 면허정지기간이라 함은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

면허정지기간을 감경받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를 차감한 기간을 말합니다. 단,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면허정지기간을 감경받지 못하여 면허정지 처분기간 이후에 경찰서의 행정처분조치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의 고의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②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을 때
 - ③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인용
문구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7 |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전거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을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피해자에서 제외합니다.



형사합의금
형사처벌의 감경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피해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 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1~3급) 참조을 입힌 경우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 및 제2항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을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1호 내지 제12호)**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유턴·후진 위반
 3.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 위반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전거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 에서 자전거라 함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및 제1호의 2 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하며, 그 부속품(적재물 포함)도 포함합니다. 단,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7호 가목 3)에서 정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레일에 의해 운전하는 차, 신체장애자용 휠체어 및 유아용 3륜 이상의 차는 제외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①의 경우 : 3천만원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②의 경우

42일~69일 진단시	70일~139일 진단시	140일이상 진단시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③의 경우 : 3천만원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2)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④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위 ①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⑤ 다음 ① 및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①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 ②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 ⑥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 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④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⑦ 위 ⑤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 ③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④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⑧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공탁금액의 50%를 위 ①의 금액의 50%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잔여 공탁금은 위 ①의 금액에서 가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추가로 보상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향후 무죄 선고 등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⑧의 가지급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⑩ 피보험자가 위 ⑧의 가지급 보험금 수령 후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 공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⑧에서 지급한 가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고의
 - ② 계약자의 고의
 - ③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④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⑤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⑥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정한 음주 상태 또는 제45조에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⑦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인용문구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산악지대를 오르내리는 행위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보험금의 비례분담)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②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text{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text{형사합의금} \times \frac{\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를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8 | 자전거벌금(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전거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보험지식

벌금액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② 위 ①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전거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 에서 자전거라 함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및 제1호의 2 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하며, 그 부속품(적재물 포함)도 포함합니다. 단,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7호 가목 3)에서 정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레일에 의해 운전하는 차, 신체장애자용 휠체어 및 유아용 3륜 이상의 차는 제외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 ① 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산식} \quad \text{보험금}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피보험자의 벌금액이 확정된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벌금을 납부하기 전에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 ② 법원 판결문 또는 약식 명령문
- ③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고의
 - ② 계약자의 고의
 - ③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④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⑤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⑥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정한 음주 상태 또는 제45조에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⑦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산악지대를 오르내리는 행위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 화재벌금(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벌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구분	보상한도액
형법 제170조(실화)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인용
문구

형법 제170조(실화)에서 정한 죄

과실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서 정한 죄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형법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방화
- ② 계약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방화
- ③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용어
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3. (보험금의 부담)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산식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위 ①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0 | 가족화재벌금(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벌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구분	보상한도액
형법 제170조(실화)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인용
문구

형법 제170조(실화)에서 정한 죄

과실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서 정한 죄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형법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피보험자의 범위)

-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 ②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 ③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 ④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인용
문구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② 위 ①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방화
- ② 계약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방화
- ③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용어
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4. (보험금의 분담)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산식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위 ①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보험금은 심급별로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구 분	변호사보수액	인지액 + 송달료
보상한도	1,5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공제)	500만원 한도

21 |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민사소송 법률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보험
지식

회사가 보상하는 소송사건은 대법원 법원재판 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되는 소송사건에 한합니다.

심급구분	민사사건	사건별 부호
1심	민사1심합의사건	가합
	민사1심단독사건	가단
	민사소액사건	가소
항소심	민사항소사건	나
상고심	민사상고사건	다

- ② 위 ①의 소송은 소를 직접 제기하거나 소의 제기를 당한 경우에 관계없이 1심 소송, 그 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그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각각(이하 “심급별”이라 합니다.)을 말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 ③ 위 ①의 소송은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위 ②에서 정한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합니다.
- ④ 위 ①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 직전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① 내지 ③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란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으로 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불이행/부당이득의 경우: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채무불이행/부당이득이 발생한 사건 ○ 손해배상의 경우: 해당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
연간 하나의 사건	보험기간 첫날(1회 보험료 받은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마지막날 그 시점까지 및 이후 각 1년간의 기간 중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발생한 법적 분쟁으로서 소송이 제기된 원인이 된 하나의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의 소송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에서 분류되는 소송사건 중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건 분류 번호상의 구별되는 1개의 사건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에 정한 파기환송심, 재심, 이송은 제외합니다.) 다만, 사건번호가 달리 구분되지만 이미 발생된 소송으로 인한 반소(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에 정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의 소송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동법 제412조(반소의 제기)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구분되는 사건 소송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심급별로 아래 ① 내지 ③에 대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비용(별표17-1)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비용”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②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별표17-2)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
 - ③ 대법원의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송달료(별표 17-3)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송달료(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 ② 위 ①, ①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며, 위 ①의 각 호에 대해 중국 판결 결과의 변동에 따라 미지급된 보험금을 추가 지급 또는 기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소송사기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손해
 - ② 지진, 분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 ③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에 의한 손해
 - ④ 위 ③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에 의한 손해
 - ⑤ 「민사소송법」에 정한 청구의 포기(원고가 변론에서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한 것을 말합니다), 인낙(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소의 취하, 소의 각하
 - ⑥ 특허법에 정한 특허, 저작권법에 정한 저작권, 상표법에 정한 상표권, 실용신안법에 정한 실용신안권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소송
 - ⑦ 피보험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조합 등의 대표자, 이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
 - ⑧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에 따라 제기된 소송
 -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관련된 소송
 - ⑩ 보험기간 이전에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및 구두계약(口頭契約)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⑪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련된 쟁의행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시위행위에 관련된 소송
 - ⑫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관련된 소송
 - ⑬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받

- 을 수 있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법률비용
- ⑭ 환경오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관련 분쟁, 명예훼손 이와 유사한 사건과 관련한 분쟁에 기인한 소송
- ⑮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가 민사소송 상대방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 ⑯ 석면(이를 구성물질로 하거나 유사한 물질을 포함합니다)의 발암성, 전자파(전자장)의 피해, 의약품의 지속적인 투여로 인한 피해, 의약용구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피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소송
- ⑰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도박 등 사행 행위 또는 마약 등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과 관련된 소송
- ⑱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가족 간의 민사소송



용어
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예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예시

- ① 이혼소송, 상속분쟁 등 가족간의 민사소송의 경우
- ② 보험계약일 이전에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
소의 취하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동법 제393조(항소의 취하), 동법 제425조(항소심절차에 준용)에 정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제기된 소(항소, 상고를 포함합니다.)에 대해 취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의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의 소장심사권), 동법 제399조(원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 동법 제402조(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 동법 제425조(항소심절차에 준용)에 따라 소(항소, 상고를 포함합니다.)장을 해당 재판장이 심사하여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치지 않은 경우에 취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가족	1.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2.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용어	정의
	3.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4. 피보험자의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5. 피보험자의 며느리 6. 피보험자의 사위 ※ 위에 정한 가족은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사건 당시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4. (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①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③ 위 ① 및 ②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특별약관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통약관 14.(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 ②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4.(계약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④ 위 ③.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가 최초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④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위 ③에 의한 이 특별약관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위 ③.① 및 ②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특별약관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⑦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위 ④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6. (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7. (손해의 발생과 통지)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① 사고에 의해 소송이 발생한 경우(사건의 때와 사건 관련 당사자의 성명과 주

- 소 및 피보험자의 소송 내용을 회사가 알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 ② 소송 판결 전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소의 각하, 인낙, 소송의 변경, 소송상 화해, 소송상 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 ③ 소송에 따른 판결이 내려진 경우
 - ④ 기타 회사가 손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회사는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①의 ①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위 ①, ②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8.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9. (보험금의 분담)

-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산식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위 ①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위 ①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0.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②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③ 보험금 지급을 위한 증명서류(소장, 소송 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시 해당 조서, 선임한 변호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 등)
- ④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11.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10.(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

용어
풀이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 ② 회사는 위 ①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9】(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12. (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피보험자의 판결결과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①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위 ①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13. (조사)

-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소송진행사항,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①에 협력하지 않음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위 ③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가 보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1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1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보상하는 소송사건은 대법원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되는 소송사건에 한합니다.

심급구분	행정소송사건	사건별 부호
1심	행정1심사건	구합
	행정1심재정단독사건	구단
항소심	행정항소사건	누
상고심	행정상고사건	두

- ② 위 ①의 소송은 소를 직접 제기하거나 소의 제기를 당한 경우에 관계없이 1심 소송, 그 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그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각각(이하 "심급별"이라 합니다)을 말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 ③ 위 ①의 소송은 위 ①에서 정한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합니다.
- ④ 위 ①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 이전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① 내지 ③에 따라 보상합니다.
- ⑤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보험금은 심급별로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구분	변호사보수액	인지액 + 송달료
보상한도	1,5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공제)	500만원 한도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국가기관 및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등을 말합니다.
하나의 소송	대법원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에서 분류되는 소송사건 중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건 분류 번호상의 구별되는 1개의 사건 소송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주)에 정한 파기환송심, 재심 및 행정소송법에 정한 제3자에 의한 재심은 제외합니다) 다만, 사건번호가 달리 구분되지만 이미 발생된 소송으로 인한 반소(민사소송법주) 제269조(반소)에 정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의

22 | 행정소송법률비용손해(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에서 정한 행정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행정소송 법률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	정의
	소송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동법주) 제412조(반소의 제기)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구분되는 사건 소송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주)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상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심급별로 아래 각 호에 대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비용(별표18-1)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비용”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②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별표18-2)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
 - ③ 대법원의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송달료(별표 18-3)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송달료(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 ② 위 ①, ①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며, 위 ①의 각 호에 대해 중국 판결 결과의 변동에 따라 미지급된 보험금을 추가 지급 또는 기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소송사기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손해
 - ② 지진, 분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 ③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에 의한 손해
 - ④ 위 ③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에 의한 손해
 - ⑤ 『행정소송법』(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상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을 포함합니다)에 정한 청구의 포기(원고가 변론에서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한 것을 말합니다), 인낙(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소의 취하, 소의 각하
 - ⑥ 특허법에 정한 특허, 저작권법에 정한 저작권, 상표법에 정한 상표권, 실용신

- 안법에 정한 실용신안권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소송
- ⑦ 피보험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조합 등의 대표자, 이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
 - ⑧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에 따라 제기된 소송
 -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관련된 소송
 - ⑩ 보험기간 이전에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및 구두계약(口頭契約)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⑪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련된 쟁의행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련 된 시위행위에 관련된 소송
 - ⑫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관련된 소송
 - ⑬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법률비용
 - ⑭ 환경오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관련 분쟁, 명예훼손, 이와 유사한 사건과 관련한 분쟁에 기인한 소송
 - ⑮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가 소송 상대 측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 ⑯ 석면(이를 구성물질로 하거나 유사한 물질을 포함합니다)의 발암성, 전자파(전자장)의 피해, 의약품의 지속적인 투여로 인한 피해, 의약용구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피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소송
 - ⑰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도박 등 사행 행위 또는 마약 등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과 관련된 소송
 - ⑱ ‘국민투표무효소송’ 및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 무효소송’(공직선거법 제222조), ‘당선 무효소송’(공직선거법 제223조)
 - ⑲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 ⑳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 그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국민의 구체적 권익 구제와는 관련이 없는 기관소송(지방의회 또는 교육위원회 의결무효소송, 감독 처분에 대한 이의소송 등을 말합니다)
 - ㉑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소송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
핵연료물질	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소의 취하	민사소송법주) 제266조(소의 취하), 동법주) 제393조(항소의 취하), 동법주) 제425조(항소심절차에 준용)에 정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제기된 소(항소, 상고를 포함합니다)에 대해 취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의 각하	민사소송법주) 제254조(재판장의 소장심사권), 동법주) 제399조(원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 동법주) 제402조(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 동법주) 제425조(항소심절차에 준용)에 따라 소(항소, 상고를 포함합니다)장을 해당 재판장이 심사하여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치지 않은 경우에 취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주)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상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을 말합니다.

4. (계약 후 알릴 의무)

- 1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2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3 위 1 및 2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2 회사는 위 1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특별약관의 해지)

- 1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통약관 14.(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4.(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4 위 3.1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최초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 3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5 위 3에 의한 이 특별약관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위 3.1 및 2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6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특별약관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7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위 4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6. (타인을 위한 계약)

- 1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

용어 풀이 계약자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7. (손해의 발생과 통지)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① 사고에 의해 소송이 발생한 경우(사건의 때와 사건 관련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및 피보험자의 소송 내용을 회사가 알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 ② 소송 판결 전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소의 각하, 인낙, 소송의 변경, 소송 상 화해, 소송상 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 ③ 소송에 따른 판결이 내려진 경우
 - ④ 기타 회사가 손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회사는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①.①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위 ①.②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8.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9. (보험금의 분담)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산식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위 ①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위 ①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0.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②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③ 보험금 지급을 위한 증명서류(소장, 소송 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시 해당 조서, 선임한 변호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 등)
- ④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11.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10.(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

용어 풀이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 ② 회사는 위 ①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9】(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12. (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피보험자의 판결결과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23 | (가족)과실치사상벌금(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벌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피보험자별로 아래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구분	보상한도액
형법 제266조(과실치상)에 의한 벌금	500만원 한도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에 의한 벌금	700만원 한도

2. (피보험자의 범위)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 ②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 ③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 ④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인용문구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② 위 ①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한도 내에서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①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위 ①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13. (조사)

-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소송진행사항,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①에 협력하지 않아서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위 ③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가 보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1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1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의 고의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인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의 고의
 - ②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을 때
 - ④ 피보험자가 형법 260조(폭행), 261조(특수폭행)과 경합된 사고



인용 문구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보험금의 분담)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산식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위 ①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고소장, 최종 확정판결문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4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 (실손, 형법 제 268조 관련)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 특별법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특별법 내용을 적용)이 확정된 경우(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해당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인용
문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
- ② 계약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
- ③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한 고용인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의 고의
- ④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⑤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주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⑥ 피보험자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261조(특수폭행)과 경합된 사고
- ⑦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특별법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특별법 내용을 적용)



인용
문구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보험금의 분담)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산식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위 ①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②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③ 보험금 지급을 위한 증명서류(고소장, 최종 확정판결문 등)
- ④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5 | 혼유사고처리비용(경유차량)(실손)(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운전중이던 피보험자동차(경유차량)가 혼유(混油)사고로 인하여 손상을 입고 정비를 받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비에 지출한 “실제 정비지출비용”에서 자기부담금 5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혼유사고처리비용(경유차량)으로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경유차량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경유를 주연료로 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하며, 휘발유, LPG, 등유, 전기, 알코올, 태양열, CNG, LNG 및 기타연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혼유(混油)사고

주유소에서 해당 차종에 적합한 연료 이외에 이종(異種)의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피보험자동차가 손상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정비”라 함은 연료장치(연료탱크, 연료필터, 연료고압펌프, 인젝터, 엔진 등) 중 하나 이상을 교환 또는 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실제 정비지출비용”이라 함은 ①의 혼유사고로 정비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수리비용, 대차료 및 견인비용) 중 주유소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말합니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고의
- ②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의 고의
- ④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⑤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⑥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인용
문구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다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에서 정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설업소에서의 주유로 인한 혼유사고
- ⑧ 셀프주유소에서의 혼유사고

3. (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보험의 목적인 피보험자동차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①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 회사가 위 ①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5.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①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산식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text{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 ②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산식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6.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혼유사고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정비업소 영수증 등 정비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유소 과실이 있는 경우 주유소 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대처시 대처료 영수증 등 대처 사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7.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6.(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 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 ② 회사가 위 ①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9】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8. (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①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위 ①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9.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은 『제도성 특별약관 [9. 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0.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11.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이하 “기소”라 하며, 약식기소를 포함합니다)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복운전피해위로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보복운전”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시비로 인하여 타인이 자동차를 수단으로 피보험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①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에서 정한 특수상해
 - ②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및 제264조(상습범)에서 정한 상습특수상해
 - ③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에서 정한 특수폭행
 - ④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에서 정한 상습특수폭행
 - 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에서 정한 특수협박
 - ⑥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5조(상습범)에서 정한 상습특수협박
 - ⑦ 형법 제369조(특수손괴)에서 정한 특수손괴
- ③ 위 ②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추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④ 위 ② 및 ③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용어 풀이

기소유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할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약식기소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복운전피해위로금은 하나의 “보복운전”이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② 각 호의 행위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보복운전 피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① 검찰의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공소장 또는 사건처분결과증명서, 검찰청에서 발행한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죄명, 불기소 이유 및 피의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 ②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의 고의
- ④ 피보험자가 상호보복운전으로 기소 또는 기소유예 되는 경우



용어
풀이

상호보복운전

상호간에 보복운전을 행하여 하나의 사고에 대한 사건의 당사자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7 | 보복운전피해(인적물적)위로금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복운전”의 피해자로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의 자동차 또는 부차물의 손해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하며, 약식기소를 포함합니다)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

험가입금액을 보복운전피해(인적물적)위로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위 ①의 “보복운전”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시비로 인하여 타인이 자동차를 수단으로 피보험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①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에서 정한 특수상해
- ②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및 제264조(상습범)에서 정한 상습특수상해
- ③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에서 정한 특수폭행
- ④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에서 정한 상습특수폭행
- 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에서 정한 특수협박
- ⑥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5조(상습범)에서 정한 상습특수협박
- ⑦ 형법 제369조(특수손괴)에서 정한 특수손괴

③ 위 ②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④ 위 ② 및 ③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용어
풀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할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약식기소

용어
풀이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인용
문구

- 1. 덤프트럭
- 2. 타이어식 기중기
- 3. 콘크리트믹서트럭

-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6. 타이어식 굴착기
 -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복운전피해(인적물적)위로금은 하나의 “보복운전”이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② 각 호의 행위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보복운전피해(인적물적)위로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① 검찰의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공소장 또는 사건처분결과증명서, 검찰청에서 발행한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죄명, 불기소 이유 및 피의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 ② 진단서, 소견서, 입원·통원치료확인서 또는 필요시 내원경위 및 치료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등 피보험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피해물품의 수리비견적서, 수리비영수증, 자동차보험지급결의서 등
- ④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의 고의
- ④ 피보험자가 상호보복운전으로 기소 또는 기소유예 되는 경우



상호보복운전

용어 풀이 상호간에 보복운전을 행하여 하나의 사고에 대한 사건의 당사자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8 | 버스·택시운전자폭행피해위로금(영업용)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버스 및 택시 운전중 폭행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하며, 약식기소를 포함합니다)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버스·택시운전자폭행피해위로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버스 및 택시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시비로 인하여 타인이 피보험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을 적용법조 내지 처벌죄명으로 하여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를 말합니다.



기소유예

보험 지식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할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약식기소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②에서 “버스 및 택시”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버스 및 택시에 한합니다.
 - ①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 ②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 ③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④ 위 ②에서 “버스 및 택시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피보험자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인용 문구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① 검찰의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공소장 또는 사건처분결과증명서, 검찰청에서 발행한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죄명, 불기소 이유 및 피의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 ②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의 고의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9 | 홀인원비용(갈때기홀제외)(정규홀,실손)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홀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1개월(단, 축하라운드비용의 경우 3개월)이내에 소요된 아래의 금액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홀인원비용(갈때기홀제외)으로 지급합니다.

- ①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단, 다음의 구입비용은 제외합니다.
 - ㉠ 상품권등의 물품전표
 - ㉡ 선불카드(다만, 피보험자가 홀인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특별히 작성한 것은 보상합니다.)
- ② 축하만찬 비용

③ 축하라운드 비용(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등)

2. (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골프장”이라 함은 각 홀이 서로 다른 티잉그라운드(Teeing Ground), 해저드(Hazard), 퍼팅그린(Putting Green) 및 스루더그린(Through the Green)으로 구성된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의 회원제골프장 및 정규대중골프장을 말합니다. 다만, 18홀 미만의 일반대중골프장 및 회원제골프장 또는 정규대중골프장에 부속된 18홀 미만의 대중골프장은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골프경기”라 함은 골프장에서 골프장에 속한 캐디를 보조자로 하고 본인을 제외한 동반경기자 2명 이상(골프장이 주최 또는 공동 주최한 공식 경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과 기준타수(PAR) 72이상의 18홀을 정규로 라운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우천 등의 사유로 라운드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9홀 이상을 라운드 한 경우 골프경기로 인정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홀인원(Hole in One)”이라 함은 각 홀에서 제1타에 의해 볼이 직접 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이라 함은 홀인원을 행한 경우에 동반경기자, 친구 등에 증정할 기념품의 구입대금 또는 우송비용을 말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위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프로경력 없는 자로 골프경기를 아마추어(Amateur)의 자격으로 행한 자를 말하며 골프의 경기 또는 지도를 직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합니다.
- ② 위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의 “증정용 기념품구입비용”, “축하만찬비용” 및 “축하라운드 비용”의 보상액의 합계액은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③ 위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홀인원비용(갈때기홀제외)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피보험자가 골프장의 경영자 또는 사용인(임시고용인 포함)인 경우에 그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또는 고용하고 있는 골프장에서 행한 홀인원
- ② 피보험자가 갈때기홀(그린에 볼을 올리지만 하면 볼이 홀에 들어가도록 설계한 홀을 말합니다.)에서 행한 홀인원

5. (보험금의 청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출원인 증명서(동반경기자, 동반한 캐디, 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의 공동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③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지출 명세서
- ④신분증(주민등록증 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⑤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9. 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출원비용(갈때기홀제외)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0 | 알바트로스비용(갈때기홀제외)(정규홀, 실손)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알바트로스(Albatross)를 행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알바트로스를 행한 날로부터 1개월(단, 축하라운드비용의 경우 3개월)이내에 소요된 아래의 금액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알바트로스비용(갈때기홀제외)으로 지급합니다.

- ①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단, 다음의 구입비용은 제외합니다.
 - ㉠상품권등의 물품전표
 - ㉡선불카드(다만, 피보험자가 알바트로스를 기념하기 위하여 특별히 작성한 것은 보상합니다.)
- ②축하만찬 비용
- ③축하라운드 비용(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등)

2. (용어의 정의)

- ①이 특별약관에서 “골프장”이라 함은 각 홀이 서로 다른 티잉그라운드(Teeing Ground), 해저드(Hazard), 퍼팅그린(Putting Green) 및 스루더그린(Through the Green)으로 구성된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의 회원제골프장 및 정규대중골프장을 말합니다. 다만, 18홀 미만의 일반대중골프장 및 회원제골프장 또는 정규대중골프장에 부속된 18홀 미만의 대중골프장은 제외합니다.
- ②이 특별약관에서 “골프경기”라 함은 골프장에서 골프장에 속한 캐디를 보조자로 하고 본인을 제외한 동반경기자 2명 이상(골프장이 주최 또는 공동 주최한 공식 경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과 기준타수(PAR) 72이상의 18홀을 정규로 라운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우천 등의 사유로 라운드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9홀 이상을 라운드 한 경우 골프경기로 인정합니다.
- ③이 특별약관에서 “알바트로스(Albatross)”라 함은 각 홀의 기준 타수보다 3타가 적은 타수로 볼이 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 ④이 특별약관에서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이라 함은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에 동반경기자, 친구 등에 증정할 기념품의 구입대금 또는 우송비용을 말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위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프로경력이 없는 자로 골프경기를 아마추어(Amateur)의 자격으로 행한 자를 말하며 골프의 경기 또는 지도를 직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합니다.

- ② 위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의 “증정용 기념품구입비용”, “축하만찬비용” 및 “축하라운드 비용”의 보상액의 합계액은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③ 위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알바트로스비용(갈때기홀제외)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한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피보험자가 골프장의 경영자 또는 사용자(임시고용인 포함)인 경우에 그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또는 고용하고 있는 골프장에서 행한 알바트로스
- ② 피보험자가 갈때기홀(그린에 볼을 올리지만 하면 볼이 홀에 들어가도록 설계한 홀을 말합니다)에서 행한 알바트로스
- ③ 기준타수 4타인 홀에서 제1타에 의해 볼이 홀에 들어가는 경우

5. (보험금의 청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알바트로스 증명서(동반경기자, 동반한 캐디, 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의 공동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③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지출 명세서
- ④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⑤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9. 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알바트로스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1 | 타이어파손교체비용(수리제외, 연간1회한)보장(자가용)(실손)(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가용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한합니다)를 타 이어손해 보장개시일 이후에 국내에서 운행하던 중 도로상의 위험요소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가 손해를 입어 그로 인하여 타이어를 교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도로상의 위험요소

보험
지식

움푹 패인 곳, 돌, 목재 부스러기, 금속조각, 플라스틱 또는 합성물 조각 등의 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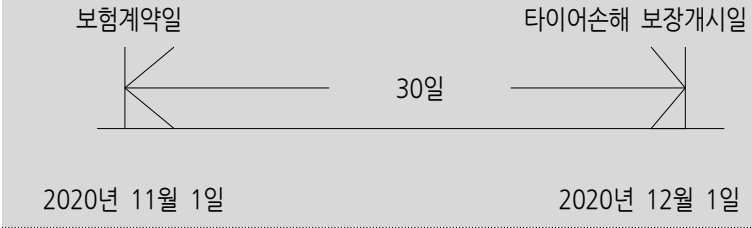
- ② 위 ①에서 타이어손해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의 경우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보험
지식

타이어손해 보장개시일(예시)



- ③ 위①의 타이어의 손해란 일반적인 펑크가 아닌 타이어가 재생 불가능한 상태로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 ④ 회사는 위①에 의한 타이어 교체 시에 차량 제작사가 신차 출고시에 장착하는 타이어 사양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 ⑤ 위①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연간 1회 하나의 타이어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타이어 교체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② 일반적인 자연 마모로 인한 정상적인 타이어 교체 주기에 따른 교체
 - ③ 차량 제작사 또는 다른 보증프로그램에서 보상되는 교체
 - ④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되는 교체
 - ⑤ 차량 제작사의 제조 결함, 차량 제작사가 광고 또는 리콜을 통해 제조 결함에 대한 교환의 책임을 알린 경우
 - ⑥ 타이어 체인에 의해 발생한 손해로 인한 교체
 - ⑦ 타이어 접지면 및 옆면의 마모, 휠 얼라이먼트 및 편마모로 인한 교체
 - ⑧ 국가, 시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포장한 도로 및 간선도로 외에서 주행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교체
 - ⑨ 밸브 혹은 림(Rim)의 누수, 타이어를 제외한 휠 또는 림(Rim) 자체의 교체 비용 및 타이어 교체시 추가로 이루어지는 휠얼라이먼트, 휠발란스, 타이어 로테이션 등의 발생 비용

- ⑩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용어
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⑪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공공기물 파손행위,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⑫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⑬ 화재, 폭발,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 연석과의 충돌에 의한 손해
- ⑭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② 회사는 아래의 차량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제조사 권장 제원상 고객의 차량에 맞지 않는 타이어 또는 휠을 장착한 차량
 - ② 픽업 및 배송, 유상운송, 운반, 견인, 도로보수, 건축, 제설 또는 기타 영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
 - ③ 경주용, 임대용, 리무진, 택시, 경찰 또는 기타 긴급용으로 사용되는 차량
 - ④ 포장도로용 승용차량 외 차량
 - ⑤ 비포장 도로용 타이어 및 휠을 장착한 차량

3.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 양식)
- ② 사고증명서(차량번호판사진, 타이어피해사진, 수리비견적서, 수리비용수증(간이 영수증제외)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4. (보험금의 분담)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산식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따른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①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②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③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 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으면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가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6.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8. (피보험자자동차의 교체)

-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회사가 정하는 방법(서면 등)으로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 ② 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9.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0.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29.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시 타이어파손교체비용(수리제외, 연간1회한)보장(자가용)(실손)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1. (보험기간 및 자동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하며, (보험가입나이+5)세와 보통약관 종료시 보험나이 중 적은 연령까지 갱신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이 아래 ① 내지 ③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중전의 계약」(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니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① 「갱신된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 ②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③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③ 회사는 위 ① 및 ②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갱신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12. (자동갱신 적용)

- ① 회사는 보험가입 후 갱신계약에 대하여 가입시점의 약관을 적용하며(단, 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 적용합니다),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해당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계약 보험료를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합니다.

13.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28.(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자에게 최고(독촉)하고 이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갱신계약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은 해지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1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때부터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③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위 ②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32.(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1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2 | 원격지사고시운반비용(자가용)(실손)(갱신형) 특별약관

1. (“원격지사고” 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원격지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해당 자동차가 가동불능상태가 되었을 때, 이를 수리하는 목적으로 사고지에서 자동차정비공장 등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로 견인차 등에 의해 운반되고, 그 이동거리가 20km를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동불능상태

“가동불능상태”란 견인차 등에 의해 운반되지 않는 경우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에서 정한 “원격지사고”라 함은 가동불능상태가 되어 견인차 등에 의해 운반된 자동차의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 및 타인 차량의 대물배상책임)에서 운반비용이 지급된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 제공하는 견인 서비스(긴급출동 서비스 등)만 이용한 경우는 원격지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긴급출동 서비스”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자동차보험사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⑤ 이 특별약관에서 “운반비용”이라 함은 실제 이동 거리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 및 다음의 특수한 작업조건으로 인한 할증 비용을 포함한 금액 중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① 시간당 50mm 이상의 심한 폭우 또는 폭설로 작업이 위험한 경우
 - ② 야간(20시 ~ 익일 06시), 휴일 또는 법정공휴일
 - ③ 10톤이상 대형차량, 냉동차, 냉장차
 - ④ 배기량 3,000cc 이상 승용차
 - ⑤ 화약류, 유류, 방사선, 고압가스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⑥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할증비용
- ⑥ 위 ②의 “운반비용”에는 다음의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대기로: 차주로부터 사고차량의 견인 요청이 있을 때 기준대기시간을 초과할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요금
 - ② 구난작업료: 구난시간(견인차량의 구난요금계산에 있어, 사고 및 고장차량에 대한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연결 직전까지 소요된 시간)동안 시간당 부과되는 비용
 - ③ 구난장비 사용료: 구난 과정에서 사용된 구난장비(크레인, 돌리 등)의 사용료
 - ④ 보관료: 피견인 차량을 견인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보관할 경우 1일 초과시 청구하는 요금
 - ⑤ 기타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용(잔존물처리비용, 안전조치비용(후방조치비용), 차선작업비용, 통행료 등)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1. (“원격지사고” 등의 정의)에서 정한 “원격지사고”로 발생한 “운반비용”에서 “이동거리가 20km이하에 해당되는 운반비용”을 차감(1사고당 1회에 한하여 차감합니다)한 금액 중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차량단독사고의 경우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은 100%로 봅니다)을 적용한 금액을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원격지사고시운반비용으로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과실비율

교통사고에서의 과실은 자동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며,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 ② 위 ①의 “이동거리가 20km이하에 해당하는 운반비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에서 규정한 20km까지의 견인운임 중 가장 작은 톤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고의
 - ② 계약자의 고의
 -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⑤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규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 45조에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 ⑥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⑦ 피보험자가 운전한 차량의 자체결함, 노후화, 정비불량에 기인하는 가동불능
 - ⑧ 자동차가 가동불능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운전을 회피하는 경우
 - 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②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되는 운반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4.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 ② 사고증명서
 - 가.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등의 사고사실확인서(자동차사고 입증서류)
 - 나. 견인업체 혹은 정비업소 영수증 등 운반비용 및 이동 거리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③ 보상처리확인서(자동차사고 발생 후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험금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손해보험사의 서류)
- ④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⑤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33 | 차대차사고 시세하락 위로금(자가용) 특별약관

5. (보험금의 분담)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산식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위 ①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은 『제도성 특별약관 [9. 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이하 「차대차사고」라 합니다)으로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가용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한합니다)가 파손되어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고, 해당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1사고마다 수리비용(단,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에 피보험자동차의 최초등록일 이후부터 사고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이하 「경과기간」이라 합니다)에 따라 아래에 정한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경과기간	보상비율
1년 이하	20%
1년 초과 ~ 2년 이하	15%
2년 초과 ~ 5년 이하	10%
5년 초과	5%

- ② 위 ①의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차대차사고」라 함은 다른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와 영상기록장치 등으로 다른 자동차와의 사고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 ④ 위 ①의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 본인이 개인 명의로 소유하거나 또는 개인 명의로 리스한 자동차로 사고발생 당시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⑤ 위 ④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은 사고발생 시점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가입한 책임보험(의무보험 및 임의보험 포함, 이하 「자동차보험」이라 합니다)에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피보험자동차 평가액 이외의 튜닝부품(사제휠 포함), 유리막코팅, 유리썸팅 등의 튜닝 금액은 제외합니다. 단, 사고발생 시점의 자동차보험에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행정안전부)」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자동차가액을 적용합니다.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수리비용은 사고 직전 상태로 원상회복(수리를 통한 기능상, 외관상,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를 말합니다)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부품비용, 유리비용, 탈착 및 교환 비용, 판금비용, 도장비용 및 공임비용을 말하며(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해당 외의 튜닝부품(사제휠 포함) 비용, 유리막코팅 비용, 유리썸팅 비용 등은 제외합니다. 단, 자동차 정비업체에 수리비용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최종 지급한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최초등록일은 피보험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상 기재된 최초등록일을 말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
 - ③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
 - ④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용어
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⑤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 ⑥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단,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⑦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 ⑧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 ⑨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 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⑩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사고
- ⑪ 피보험자동차를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인용
문구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⑫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사고가 아닌 고장 등의 사유로 수리를 받은 경우
 - ⑬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이 아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 ⑭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 ⑮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④ 및 ⑤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에 발생한 사고
- ② 피보험자동차의 도난 또는 전부손해사고



전부손해사고

용어
풀이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자동차보험회사(공제조합을 포함합니다)에서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험금의 분담)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산식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위 ①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보험금의 청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 양식)
- ②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③ 각 지자체에서 발급한 자동차등록증(단, 사고발생 당시 피보험자 본인이 개인 명의로 소유하거나 또는 개인명의로 리스한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④ 사고증명서(자동차보험회사(공제조합을 포함합니다)에서 발급한 사고처리 관련 서류,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객관적으로 사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⑤ 손해액 증빙서류(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수리비 견적서 및 수리비 지불 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 ⑥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6. (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①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③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④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위 ①에 따라 위험이 감소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지급해야할 금액이 있으면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가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7. (피보험자동차의 교체)

-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회사가 정하는 방법(서면 등)으로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 ② 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8.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4 | 운전중 포트홀 국도교통사고 피해위로금(연간1회한) (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한합니다)를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의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상에서 운전하던 중 “포트홀(pothole)”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자동차에 손해를 입어 그로 인하여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부서로부터 피해보상이 일부 지급되는 경우 피보험자의 자동차에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사고발생일로 합니다.
- 위 ①의 “실제 손해액”이라 함은 손해배상청구서 또는 국가배심신청서 등으로 입증 가능한 피보험자의 자동차에 발생한 실제 피해금액을 말하며,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부서로부터 지급되는 피해보상액은 제외됩니다.
- 위 ①의 “포트홀(pothole)”이라 함은 도로표면에 생기는 국부적인 작은 구멍을 말하며, 회사는 3. (보험금의 청구) ②를 통해 포트홀에 의한 손해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위 ①에서 정한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는 도로법 제10조 1호 및 2호에서 정한 국도를 말하며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포함합니다.
-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위 ①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의 고의
-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부서로부터 피해보상이 전부 지급되는 경우
- 도로법 제10조 3호 내지 7호에 해당하는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및 이와 유사한 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 교통사고



인용
문구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 지방도
- 시도
- 군도
- 구도

3.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부서 등에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서, 사고경위서, 국가 배상신청서 등 피해보상 신청 구비서류
-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부서에서 발행한 포트홀 교통사고 피해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객관적으로 피해보상금 수령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동차 수리견적서 및 계산 영수증
-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4. (보험금의 분담)

-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

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산식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따른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동차의 교체)

-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회사가 정하는 방법(서면 등)으로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 ② 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5 | 외제차와 사고시 자기차량수리비용(연간1회한) (자가용)(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가용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한합니다)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외제차와의 자동차사고(이륜자동차사고는 제외합니다)로 자기과실비율이 50%이하로 존재하고, 50만원이상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이하 “외제차사고”라 합니다)에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자가용 자동차에 발생한 전손 또는 분손에 대한 수리비용 중 피보험자의 책임액을 연간1회에 한하여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사고발생일로 합니다.
- ② 위 ①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내지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피보험자의 책임액’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자가용 자동차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수리비 중 과실비율에 따른 과실상계 후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수리비를 말합니다.



인용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외제차

용어 풀이 외제차란 외국 자동차 제조회사에 의해 대한민국이 아닌 곳에서 제조되어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의한 자동차를 말하며, 다음의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1. 외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외국 자동차 제조회사(해당 회사의 대한민국 내 자회사, 법인 포함)가 대한민국내에서 제조(또는 조립) 완료한 자동차
2. 국내에 본점 소재지를 둔 국내 자동차제조회사(해당 회사의 외국소재 자회사, 법인 포함)가 대한민국이 아닌 곳에서 제조(또는 조립) 완료한 자동차
3. 위 1. 의 외국 자동차 제조회사와 2. 의 국내 자동차제조회사가 기술 제휴(공동설계, 공동판매)하여 제조 (또는 조립)한 자동차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사고’라 함은 하나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말하며, ‘사고’로 다수의 외제차에 대하여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각각의 대물배상책임 금액을 합쳐서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과실비율

용어 풀이 교통사고에서의 과실은 자동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며,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사고
- ②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③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④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⑤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⑥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⑦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⑧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인용

문구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4.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 ② 사고내용(차량 정보등을 포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③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④ 자동차 수리견적서 및 계산 영수증
-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 (보험금의 분담)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산식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따른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피보험자자동차의 교체)

-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회사가 정하는 방법(서면 등)으로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 ② 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6 | 낙하물 및 로드킬사고 차량손해 위로금 (연간1회한, 자가용 운전자용)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가용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한합니다)를 운전하던 중 국내의 도로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되어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고 수리비용을 지불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낙하물 및 로드킬사고 차량손해 위로금(연간1회한, 자가용 운전자용)으로 지급합니다.
 - ① 도로상의 다른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낙하물과의 직접적인 충돌, 접촉으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단, 영상기록 및 사진 등으로 다른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한 사고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 ② 동물(단, 인간을 제외한 포유류 및 조류 동물에 한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과의 직접적인 충돌, 접촉으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단, 영상기록 및 사진 등으로 동물과의 사고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낙하물 및 로드킬사고 차량손해 위로금(연간1회한, 자가용 운전자용)은 연간 1회한으로 보장합니다.
- ③ 위 ②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④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⑤ 위 ①에서 “낙하물”이라 함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단, 엔진 내부나 연료

탱크 등에 이물질로 삽입되어 자동차에 손상을 주는 물체는 제외합니다.

⑥ 위 ① 내지 ④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인용
문구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⑦ 위 ①의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⑧ 위 ①에서 도로는 도로법 제10조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도로를 말하며,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포함합니다. 이 때, 동법 제2조에서 정한 도로의 부속물(주차장, 휴게시설, 통행로 징수시설 등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인용
문구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수리비용은 사고 직전 상태로 원상회복(수리를 통한 기능상, 외관상,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를 말합니다)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부품비용, 유리비용, 탈착 및 교환 비용, 판금비용, 도장비용 및 공임비용을 말하며(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해당 외의 튜닝부품(사제휠 포함) 비용, 유리막코팅 비용, 유리썬팅 비용 등은 제외합니다. 단, 자동차 정비업체에 수리비용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최종 지급한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③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⑥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⑦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사고가 아닌 고장 등의 사유로 수리를 받은 경우
- ⑧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인용
문구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①,②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동물과의 충돌, 접촉을 피하기 위해 피보험자동차의 방향을 틀거나 피보험자동차를 정차하는 과정에서 다른 물체와 충돌한 사고
 - ② 피보험자동차의 차체에 동물의 사체, 혈액 등이 묻은 단순 오염으로 세척 또는 광택 작업만 한 경우
 - ③ 피보험자동차의 내부(자동차의 엔진룸, 트렁크를 포함합니다)에 있던 동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

- ④ 동물과의 충돌, 접촉에 대한 영상기록 및 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거나 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영상기록 및 사진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4.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낙하물이나 동물과의 충돌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기록이나 사진)
- ③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보험회사(공제조합을 포함합니다)에서 발급한 사고처리 관련서류 등 객관적으로 낙하물이나 동물과의 충돌 사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④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⑤ 손해액 증빙서류(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수리비 견적서 및 수리비 지불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 ⑥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5. (피보험자동차의 교체)

-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회사가 정하는 방법(서면 등)으로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 ② 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

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7 |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 구내에 있는 6대가전제품에 고장(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② 위 ①의 ‘6대가전제품’이라 함은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을 말하며,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제품에 한합니다.
- ③ 위 ①의 ‘고장’이라 함은 해당제품이 전기적·기계적인 원인으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 ④ 위 ①의 ‘수리’는 해당제품의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하여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며, 수리비는 부품비와 인건비 및 운반비(수리를 목적으로 AS지정점의 직원에 의하여 제품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개인운반이 가능한 소형제품은 제외)를 말합니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아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본인, 배우자, 동거친족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②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 ③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AS지정점이 없는 제품의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손해
 - ⑤ 패임, 착색, 광택저하, 긁힘, 녹 등과 같이 제품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외부적 손상에 대한 손해
 - ⑥ 제품의 조립이나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절단, 톱질, 깎기 등을 포함)
 - ⑦ 도난, 분실 또는 망실로 인한 손해
 - ⑧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

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 ⑨ 제품 고유의 결함, 설계결함 또는 법적조치로 인하여 제품의 리콜이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손해
- ⑩ 제조사의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손해.
- ⑪ 기록저장매체의 손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나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손해
- ⑫ 제조업자(제조업자가 지정한 수리업체를 포함)가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결함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 모든 비용손해
- ⑬ 태풍, 홍수, 지진, 분화, 낙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⑭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손해
- ⑮ 제품에 대한 청소나 주기적 점검, 관리에서 발생한 비용 손해
- ⑯ 필터, 전구(진공관 포함), 벨트, 잉크 등 교환이 필요한 소모품의 교환 비용
- ⑰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유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으로 인한 손해. 단,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함으로써 유상수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⑱ 6대가전제품의 임의 분해 및 개조로 인한 손해
- ⑲ 전기적·기계적 원인이 아닌 물리적 파손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

용어
풀이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② 회사는 아래의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재판매, 직업적 혹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구매 또는 사용중인 물품
 - ② 골동품, 수집품, 재조립품, 재제작품
 - ③ 렌트나 리스중인 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하에 있는 대여 또는 보관 물품
 - ④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예시

예시

- ① 가전제품에 제품보증서에서 정한 유상수리 대상 고장이 발생한 경우
- ② 국내 AS지정점이 아닌 사설수리시설에서 수리한 경우
- ③ 부품단종 등으로 국내 AS지정점에서 수리를 받지 못한 경우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 2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② 하나의 제품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1사고당 보험금은 수리제품의 권장 소비자가격, 보험가입금액, 실제수리비 중 최저금액으로 합니다.
- ③ 회사는 위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해당보험년도(보험계약일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에 보상하는 보험금 총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④ 동일한 6대가전제품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 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① 다른 계약이 이 특별약관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 하는 경우:



산식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text{이 특별약관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② 다른 계약이 이 특별약관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 하는 경우:



산식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4. (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6대가전제품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① 6대가전제품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② 6대가전제품을 양도할 때
 - ③ 6대가전제품 또는 6대가전제품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 ④ 6대가전제품 또는 6대가전제품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

- 이 증가할 때
- ⑤ 6대가전제품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 ⑥ 6대가전제품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⑦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위 ①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경우 변경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특별약관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통약관 14.(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4.(계약 후 알릴 의무) ①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④ 위 ③.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가 최초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④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

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위 ③에 의한 이 특별약관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위 ③.① 및 ②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특별약관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⑦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위 ④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6. (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

용어 풀이 계약자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7. (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6대가전제품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①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가 위 ①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위 ①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8.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

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9. (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10. (보험금의 지급)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 ②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③ 해당 제품의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작성한 수리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④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른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위 ②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9】(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11.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12.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3.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

38 | 신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특별약관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 ②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①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위 ①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14. (6대가전제품에 대한 조사)

회사는 6대가전제품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6대가전제품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1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6대가전제품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1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 구내에 있는 신6대가전제품에 고장(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② 위 ①의 ‘신6대가전제품’이라 함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를 말하며,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제품에 한합니다.
- ③ 위 ①의 ‘고장’이라 함은 해당제품이 전기적·기계적인 원인으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 ④ 위 ①의 ‘수리’는 해당제품의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하여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며, 수리비는 부품비와 인건비 및 운반비(수리를 목적으로 AS지정점의 직원에 의하여 제품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개인운반이 가능한 소형제품은 제외)를 말합니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아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본인, 배우자, 동거친족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②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 ③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AS지정점이 없는 제품의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손해
 - ⑤ 패임, 착색, 광택저하, 긁힘, 녹 등과 같이 제품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외부적 손상에 대한 손해
 - ⑥ 제품의 조립이나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절단, 톱질, 깎기 등을 포함)
 - ⑦ 도난, 분실 또는 망실로 인한 손해
 - ⑧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 ⑨ 제품 고유의 결함, 설계결함 또는 법적조치로 인하여 제품의 리콜이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손해
 - ⑩ 제조사의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손해.

- ⑪ 기록저장매체의 손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나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손해
- ⑫ 제조업자(제조업자가 지정한 수리업체를 포함)가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결함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 모든 비용손해
- ⑬ 태풍, 홍수, 지진, 분화, 낙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⑭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손해
- ⑮ 제품에 대한 청소나 주기적 점검, 관리에서 발생한 비용 손해
- ⑯ 필터, 전구(진공관 포함), 벨트, 잉크 등 교환이 필요한 소모품의 교환 비용
- ⑰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유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으로 인한 손해. 단,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함으로써 유상수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⑱ 신6대가전제품의 임의 분해 및 개조로 인한 손해
- ⑲ 전기적·기계적 원인이 아닌 물리적 파손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

용어 풀이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② 회사는 아래의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재판매, 직업적 혹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구매 또는 사용중인 물품
 - ② 골동품, 수집품, 재조립품, 재제작품
 - ③ 렌트나 리스중인 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하에 있는 대여 또는 보관 물품
 - ④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예시

- 예시**
- ① 가전제품에 제품보증서에서 정한 유상수리 대상 고장이 발생한 경우
 - ② 국내 AS지정점이 아닌 사설수리시설에서 수리한 경우
 - ③ 부품단종 등으로 국내 AS지정점에서 수리를 받지 못한 경우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 2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② 하나의 제품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1사고당 보험금은 수리제품의 권장

소비자가격, 보험가입금액, 실제수리비 중 최저금액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위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해당보험년도(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에 보상하는 보험금 총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④ 동일한 신6대가전제품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① 다른 계약이 이 특별약관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 하는 경우:



산식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text{이 특별약관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② 다른 계약이 이 특별약관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 하는 경우:



산식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4. (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신6대가전제품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① 신6대가전제품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② 신6대가전제품을 양도할 때
 - ③ 신6대가전제품 또는 신6대가전제품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 ④ 신6대가전제품 또는 신6대가전제품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증가할 때
 - ⑤ 신6대가전제품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 ⑥ 신6대가전제품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⑦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위 ①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경우 변경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특별약관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통약관 14.(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4.(계약 후 알릴 의무) ①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④ 위 ③.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가 최초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④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위 ③에 의한 이 특별약관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위 ③.① 및 ②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특별

- 관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⑦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위 ④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6. (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

용어 풀이 계약자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7. (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신6대가전제품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①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가 위 ①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위 ①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8.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9. (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10. (보험금의 지급)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 ②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③ 해당 제품의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작성한 수리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④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른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위 ②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9】(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11.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12.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3. (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 ②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①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

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위 ①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14. (신6대가전제품에 대한 조사)

회사는 신6대가전제품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신6대가전제품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1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신6대가전제품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절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1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9 |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 구내에 있는 12대가전제품에 고장(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② 위 ①의 ‘12대가전제품’이라 함은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

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를 말하며,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제품에 한합니다.

- ③ 위 ①의 '고장'이라 함은 해당제품이 전기적·기계적인 원인으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 ④ 위 ①의 '수리'는 해당제품의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하여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며, 수리비는 부품비와 인건비 및 운반비(수리를 목적으로 AS지정점의 직원에 의하여 제품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개인운반이 가능한 소형제품은 제외)를 말합니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아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본인, 배우자, 동거친족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②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 ③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AS지정점이 없는 제품의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손해
 - ⑤ 패임, 착색, 광택저하, 굽힘, 녹 등과 같이 제품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외부적 손상에 대한 손해
 - ⑥ 제품의 조립이나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절단, 톱질, 깎기 등을 포함)
 - ⑦ 도난, 분실 또는 망실로 인한 손해
 - ⑧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 ⑨ 제품 고유의 결함, 설계결함 또는 법적조치로 인하여 제품의 리콜이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손해
 - ⑩ 제조사의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손해.
 - ⑪ 기록저장매체의 손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나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손해
 - ⑫ 제조업자(제조업자가 지정한 수리업체를 포함)가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결함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 모든 비용손해
 - ⑬ 태풍, 홍수, 지진, 분화, 낙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⑭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손해
 - ⑮ 제품에 대한 청소나 주기적 점검, 관리에서 발생한 비용 손해
 - ⑯ 필터, 전구(진공관 포함), 벨트, 잉크 등 교환이 필요한 소모품의 교환 비용
 - ⑰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유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으로 인한 손해. 단,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함으로써 유상수리

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⑱ 12대가전제품의 임의 분해 및 개조로 인한 손해
- ⑲ 전기적·기계적 원인이 아닌 물리적 파손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

용어 풀이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② 회사는 아래의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재판매, 직업적 혹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구매 또는 사용중인 물품
 - ② 골동품, 수집품, 재조립품, 재제작품
 - ③ 렌트나 리스중인 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하에 있는 대여 또는 보관 물품
 - ④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예시

예시

- ① 가전제품에 제품보증서에서 정한 유상수리 대상 고장이 발생한 경우
- ② 국내 AS지정점이 아닌 사설수리시설에서 수리한 경우
- ③ 부품단종 등으로 국내 AS지정점에서 수리를 받지 못한 경우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 2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② 하나의 제품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1사고당 보험금은 수리제품의 권장 소비자가격, 보험가입금액, 실제수리비 중 최저금액으로 합니다.
- ③ 회사는 위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해당보험년도(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에 보상하는 보험금 총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④ 동일한 12대가전제품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① 다른 계약이 이 특별약관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 하는 경우: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text{이 특별약관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② 다른 계약이 이 특별약관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 하는 경우: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4. (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12대가전제품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① 12대가전제품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② 12대가전제품을 양도할 때
 - ③ 12대가전제품 또는 12대가전제품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 ④ 12대가전제품 또는 12대가전제품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증가할 때
 - ⑤ 12대가전제품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 ⑥ 12대가전제품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⑦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위 ①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경우 변경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특별약관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통약관 14.(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4.(계약 후 알릴 의무) ①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④ 위 ③.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가 최초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④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위 ③에 의한 이 특별약관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위 ③.① 및 ②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특별약관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⑦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위 ④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6. (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

- 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

용어 풀이 계약자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7. (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12대가전제품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①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가 위 ①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위 ①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8.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9. (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10. (보험금의 지급)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 ②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③ 해당 제품의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작성한 수리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④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른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급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위 ②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9】(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11.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12.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3. (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 ②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①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위 ①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14. (12대가전제품에 대한 조사)

회사는 12대가전제품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12대가전제품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15. (특별약관의 소멸)

- 12대가전제품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1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0 | 신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II(실손)(컴퓨터 등)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 구내에 있는 신6대가전제품II에 고장(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위 ①의 ‘신6대가전제품II(이하, 부보가전제품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정수기, 오븐, 컴퓨터(노트북 포함), 안마의자, 커피머신, 전기레인지를 말하며,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제품에 한합니다.
- 위 ①의 ‘고장’이라 함은 해당제품이 전기적·기계적인 원인으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 위 ①의 ‘수리’는 해당제품의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하여 수리비

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며, 수리비는 부품비와 인건비 및 운반비(수리를 목적으로 AS지정점의 직원에 의하여 제품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개인운반이 가능한 소형제품은 제외)를 말합니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아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본인, 배우자, 동거친족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AS지정점이 없는 제품의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손해
 - 패임, 착색, 광택저하, 긁힘, 녹 등과 같이 제품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외부적 손상에 대한 손해
 - 제품의 조립이나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절단, 톱질, 깎기 등을 포함)
 - 도난, 분실 또는 망실로 인한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 제품 고유의 결함, 설계결함 또는 법적조치로 인하여 제품의 리콜이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손해
 - 제조사의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손해.
 - 기록저장매체의 손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나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손해
 - 제조업자(제조업자가 지정한 수리업체를 포함)가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결함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 모든 비용손해
 - 태풍, 홍수, 지진, 분화, 낙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제품에 대한 청소나 주기적 점검, 관리에서 발생한 비용 손해
 - 필터, 전구(진공관 포함), 벨트, 잉크 등 교환이 필요한 소모품의 교환 비용
 -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유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으로 인한 손해. 단,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함으로써 유상수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부보가전제품의 임의 분해 및 개조로 인한 손해
 - 전기적·기계적 원인이 아닌 물리적 파손으로 인한 손해



용어
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의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재판매, 직업적 혹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구매 또는 사용중인 물품
- ② 골동품, 수집품, 재조립품, 재제작품
- ③ 렌트나 리스중인 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하에 있는 대여 또는 보관 물품
- ④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
- ⑤ 완제품이 아닌 조립식 전자제품
(예를들어, 조립식 컴퓨터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⑥ 테블릿 전자제품



예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예시

- ① 가전제품에 제품보증서에서 정한 유상수리 대상 고장이 발생한 경우
- ② 국내 AS지정점이 아닌 사설수리시설에서 수리한 경우
- ③ 부품단종 등으로 국내 AS지정점에서 수리를 받지 못한 경우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 2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② 하나의 제품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1사고당 보험금은 수리제품의 권장 소비자가격, 보험가입금액, 실제수리비 중 최저금액으로 합니다.
- ③ 회사는 위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해당보험년도(보험계약일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에 보상하는 보험금 총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④ 부보가전제품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① 다른 계약이 이 특별약관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산식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text{이 특별약관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② 다른 계약이 이 특별약관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산식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4.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 ②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③ 해당 제품의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작성한 수리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④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

5. (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부보가전제품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① 부보가전제품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② 부보가전제품을 양도할 때
 - ③ 부보가전제품 또는 부보가전제품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 ④ 부보가전제품 또는 부보가전제품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증가할 때
 - ⑤ 부보가전제품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 ⑥ 부보가전제품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⑦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위 ①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경우 변경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특별약관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통약관 14.(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5.(계약 후 알릴 의무) ①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④ 위 ③.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가 최초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④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위 ③에 의한 이 특별약관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위 ③.① 및 ②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특별약관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⑦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위 ④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7. (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

용어
풀이

계약자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8. (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부보가전제품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①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가 위 ①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위 ①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9.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10. (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11. (보험금의 지급)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 ②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③ 해당 제품의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작성한 수리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④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른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위 ②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12.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13.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4. (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 ②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①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위 ①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15. (부보가전제품에 대한 조사)

회사는 부보가전제품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부보가전제품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1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부보가전제품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합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1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1 | 신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컴퓨터 등)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 구내에 있는

신12대가전제품에 고장(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② 위 ①의 '신12대가전제품(이하, 부보가전제품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정수기, 오븐, 컴퓨터(노트북 포함), 안마의자, 커피머신, 전기레인지어를 말하며,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전용제품에 한합니다.
- ③ 위 ①의 '고장'이라 함은 해당제품이 전기적·기계적인 원인으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 ④ 위 ①의 '수리'는 해당제품의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하여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며, 수리비는 부품비와 인건비 및 운반비(수리를 목적으로 AS지정점의 직원에 의하여 제품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개인운반이 가능한 소형제품은 제외)를 말합니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아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본인, 배우자, 동거친족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②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 ③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AS지정점이 없는 제품의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손해
 - ⑤ 패임, 착색, 광택저하, 긁힘, 녹 등과 같이 제품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외부적 손상에 대한 손해
 - ⑥ 제품의 조립이나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절단, 톱질, 깎기 등을 포함)
 - ⑦ 도난, 분실 또는 망실로 인한 손해
 - ⑧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 ⑨ 제품 고유의 결함, 설계결함 또는 법적조치로 인하여 제품의 리콜이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손해
 - ⑩ 제조사의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손해.
 - ⑪ 기록저장매체의 손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나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손해
 - ⑫ 제조업자(제조업자가 지정한 수리업체를 포함)가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결함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 모든 비용손해
 - ⑬ 태풍, 홍수, 지진, 분화, 낙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⑭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⑮ 제품에 대한 청소나 주기적 점검, 관리에서 발생한 비용 손해
- ⑯ 필터, 전구(진공관 포함), 벨트, 잉크 등 교환이 필요한 소모품의 교환 비용
- ⑰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유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으로 인한 손해. 단,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함으로써 유상수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⑱ 부보가전제품의 임의 분해 및 개조로 인한 손해
- ⑲ 전기적·기계적 원인이 아닌 물리적 파손으로 인한 손해



용어
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② 회사는 아래의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재판매, 직업적 혹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구매 또는 사용중인 물품
 - ② 골동품, 수집품, 재조립품, 재제작품
 - ③ 렌트나 리스중인 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하에 있는 대여 또는 보관 물품
 - ④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
 - ⑤ 완제품이 아닌 조립식 전자제품
(예를들어, 조립식 컴퓨터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⑥ 테블릿 전자제품



예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예시

- ① 가전제품에 제품보증서에서 정한 유상수리 대상 고장이 발생한 경우
- ② 국내 AS지정점이 아닌 사설수리시설에서 수리한 경우
- ③ 부품단종 등으로 국내 AS지정점에서 수리를 받지 못한 경우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 2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② 하나의 제품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1사고당 보험금은 수리제품의 권장 소비자가격, 보험가입금액, 실제수리비 중 최저금액으로 합니다.

- ③ 회사는 위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해당보험년도(보험계약일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에 보상하는 보험금 총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④ 부보가전제품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① 다른 계약이 이 특별약관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산식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text{이 특별약관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 ② 다른 계약이 이 특별약관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산식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4.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 ②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③ 해당 제품의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작성한 수리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④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

5. (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부보가전제품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① 부보가전제품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② 부보가전제품을 양도할 때

- ③ 부보가전제품 또는 부보가전제품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 ④ 부보가전제품 또는 부보가전제품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증가할 때
- ⑤ 부보가전제품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 ⑥ 부보가전제품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⑦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위 ①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경우 변경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특별약관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통약관 14.(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5.(계약 후 알릴 의무) ①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④ 위 ③.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가 최초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④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위 ③에 의한 이 특별약관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위 ③.① 및 ②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특별약관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⑦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위 ④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7. (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

용어 풀이 계약자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8. (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부보가전제품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①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가 위 ①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위 ①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9.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10. (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11. (보험금의 지급)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 ②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③ 해당 제품의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작성한 수리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④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른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급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위 ②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12.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13.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2 | 18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특별약관

14. (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 ②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①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위 ①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15. (부보가전제품에 대한 조사)

회사는 부보가전제품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부보가전제품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1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부보가전제품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1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 구내에 있는 18대가전제품에 고장(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② 위 ①의 ‘18대가전제품(이하, 부보가전제품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정수기, 오븐, 컴퓨터(노트북 포함), 안마의자, 커피머신, 전기레인지 등을 말하며,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에 한합니다.
- ③ 위 ①의 ‘고장’이라 함은 해당제품이 전기적·기계적인 원인으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 ④ 위 ①의 ‘수리’는 해당제품의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하여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며, 수리비는 부품비와 인건비 및 운반비(수리를 목적으로 AS지정점의 직원에 의하여 제품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개인운반이 가능한 소형제품은 제외)를 말합니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아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본인, 배우자, 동거친족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②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 ③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AS지정점이 없는 제품의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손해
 - ⑤ 패임, 착색, 광택저하, 긁힘, 녹 등과 같이 제품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외부적 손상에 대한 손해
 - ⑥ 제품의 조립이나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절단, 톱질, 깎기 등을 포함)
 - ⑦ 도난, 분실 또는 망실로 인한 손해
 - ⑧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 ⑨ 제품 고유의 결함, 설계결함 또는 법적조치로 인하여 제품의 리콜이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손해
- ⑩ 제조사의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손해.
- ⑪ 기록저장매체의 손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나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손해
- ⑫ 제조업자(제조업자가 지정한 수리업체를 포함)가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결함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 모든 비용손해
- ⑬ 태풍, 홍수, 지진, 분화, 낙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⑭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⑮ 제품에 대한 청소나 주기적 점검, 관리에서 발생한 비용 손해
- ⑯ 필터, 전구(진공관 포함), 벨트, 잉크 등 교환이 필요한 소모품의 교환 비용
- ⑰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유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으로 인한 손해. 단,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함으로써 유상수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⑱ 부보가전제품의 임의 분해 및 개조로 인한 손해
- ⑲ 전기적·기계적 원인이 아닌 물리적 파손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② 회사는 아래의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재판매, 직업적 혹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구매 또는 사용중인 물품
 - ② 골동품, 수집품, 재조립품, 재제작품
 - ③ 렌트나 리스중인 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하에 있는 대여 또는 보관 물품
 - ④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
 - ⑤ 완제품이 아닌 조립식 전자제품
(예를들어, 조립식 컴퓨터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⑥ 테블릿 전자제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예시

예시

- ① 가전제품에 제품보증서에서 정한 유상수리 대상 고장이 발생한 경우
- ② 국내 AS지정점이 아닌 사설수리시설에서 수리한 경우
- ③ 부품단종 등으로 국내 AS지정점에서 수리를 받지 못한 경우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 2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② 하나의 제품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1사고당 보험금은 수리제품의 권장 소비자가격, 보험가입금액, 실제수리비 중 최저금액으로 합니다.
- ③ 회사는 위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해당보험년도(보험계약일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에 보상하는 보험금 총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④ 부보가전제품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① 다른 계약이 이 특별약관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산식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text{이 특별약관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 ② 다른 계약이 이 특별약관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산식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4. (보험금 청구서 구비서류)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 ②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③ 해당 제품의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작성한 수리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④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

5. (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부보가전제품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① 부보가전제품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② 부보가전제품을 양도할 때
 - ③ 부보가전제품 또는 부보가전제품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 ④ 부보가전제품 또는 부보가전제품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증가할 때
 - ⑤ 부보가전제품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 ⑥ 부보가전제품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⑦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위 ①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경우 변경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특별약관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통약관 14.(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5.(계약 후 알릴 의무) ①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④ 위 ③.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가 최초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④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위 ③에 의한 이 특별약관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위 ③.① 및 ②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특별약관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⑦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위 ④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7. (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8. (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부보가전제품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①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가 위 ①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위 ①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9.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10. (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11. (보험금의 지급)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 ②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③ 해당 제품의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작성한 수리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④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른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위 ②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12.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13.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4. (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 ②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①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위 ①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15. (부보가전제품에 대한 조사)

회사는 부보가전제품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부보가전제품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1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부보가전제품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1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3 | 주택화재임시거주비(1일이상)(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한 물건」(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한하며, 이하 “보험목적”이라 합니다)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로 인한 아래의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보험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임시거주비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주택화재임시거주비(1일이상)으로 보상합니다. 단, 보험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①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 ②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 ③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① 및 ②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 ② 회사는 폭발, 파열로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보험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임시거주비도 보상합니다.



용어 풀이

폭발, 파열
폭발,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2. (보험목적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목적”이라 함은 보험에 가입한 물건(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한합니다) 중 건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재도구, 시설 및 기계장치, 집기비품 및 공기구와 원부재료를 포함하여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의 재고품 또는 상품, 교본, 글그림, 골동품, 조각품, 예술품, 희귀품 등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보험목적에 아래에 열거된 사유로 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② 화재(보험목적의 주택인 경우 폭발, 파열을 포함합니다)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 ③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④ 화재(보험목적의 주택인 경우 폭발, 파열을 포함합니다)로 기인되지 않은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로 생긴 손해
 - ⑤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기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보험목적의 주택인 경우 폭발, 파열을 포함합니다)손해는 보상합니다.
 - ⑥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보험목적의 주택인 경우 폭발, 파열을 포함합니다)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 ⑦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⑧ 위 ⑦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용어 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4.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약정복구기간 : 회사와 피보험자가 약정한 최대 복구기간으로, 보험목적의 손해를 입었던 때로부터 90일간을 말합니다.
- ② 추정복구기간 : 보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③ 복구기간 :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보험목적의 손해를 입은 때부터 지체없이 이를 복구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법령의 규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 목적을 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정복구기간을 복구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복구기간은 추정복구기간이나 약정복구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목적에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① 및 ②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는 1사고마다 손해발생 후 1일당 10만원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목적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가족을 위해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 동안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에서 실제로 지출한 숙박비 및 식대를 임시거주비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은 추정복구기간과 약정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 ③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① 다른 계약이 이 특별약관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 하는 경우:



산식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text{이 특별약관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 ② 다른 계약이 이 특별약관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 하는 경우:



산식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6. (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①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② 보험 목적을 양도할 때
 - ③ 보험목적 또는 보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 ④ 보험목적 또는 보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증가할 때
 - ⑤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에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 ⑥ 보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⑦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위 ①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경우 변경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특별약관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통약관 14.(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6.(계약 후 알릴 의무) ①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④ 위 ③.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가 최초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④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위 ③에 의한 이 특별약관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위 ③.① 및 ②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특별약관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⑦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위 ④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8. (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

용어 풀이
계약자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9. (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보험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①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가 위 ①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위 ①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10.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11. (보험금의 지급)

- ① 회사는 아래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 ①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②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③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 ② 위 ①에 의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회사가 위 ①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9】(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12.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13.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4. (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 ②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①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위 ①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15. (보험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목적에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1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절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1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26-1.(보험료 납입면제) 및 12.(보험수익자의 지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44 | 전기통신금융사기(메신저피싱포함)피해보장(피해환급금 제외)(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전기통신금융사기(메신저피싱포함)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기피해가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실제 금전손실액을 전기통신금융사기(메신저피싱포함)피해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제 금전손실액

용어 풀이

범행계좌로 이체된 금전손실액 원금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급되는 피해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전기통신금융사기(메신저피싱포함)”이라 함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 아래에서 정한 범죄행위가 해당됩니다.
 - ① 보이스피싱 : 사기범이 피보험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세금 환급, 대금 연체(신용카드, 이동통신이용료 등), 카드 도용, 카드 발급, 출석요구, 거짓 납치사고, 범죄 연루 등을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대출 상담, 대출 알선을 가장하여 대출수수료 입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
 - ② 피싱(Phishing) :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보낸 것으로 가장한 이메일, 메시지를 피보험자에게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사이트로 접속되게 한 뒤, 피보험자가 입력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또는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탈취한 후 피보험자의 금융계좌에 접속해서 돈을 인출하는 수법

- ③ 파밍(Pharming) : 피해자의 PC나 스마트폰을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피보험자가 정상적인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금융회사 앱(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더라도 가짜사이트로 접속되게 한 뒤, 피보험자가 입력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탈취한 후 피해자의 금융계좌에 접속해서 돈을 인출하는 수법
- ④ 메모리해킹(Memory Hacking) : 피해자 PC나 스마트폰의 메모리에 상주하면서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시켜, 피보험자가 PC나 스마트폰으로 정상적인 금융사이트에 접속해서 입력한 보안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수법
- ⑤ 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 : 사기범이 피보험자의 메신저에 메시지를 보내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



메신저

네이트온, 카카오톡, 라인 등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메시지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SMS, MMS)는 메신저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

별도의 다른 장비의 사용이나 프로그램의 설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메신저피싱 사례

사기범 A는 B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B의 지인인 C에게 메신저를 통해서 송금을 요구하였고, C는 사기범 A에게 금전을 직접 송금하여 금전피해액이 발생함.

이러한 상황에서 C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였고, 보험회사는 금전손실액원금에서 피해환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C에게 지급함.

- ③ “전기통신금융사기(메신저피싱포함)”에는 아래의 범죄행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① 스미싱(Smishing) :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송부한 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피보험자가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 소액결제되거나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
 - ②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범죄이나, 앞서 언급한 금융사기수법으로 분류되지

- 않는 범죄행위
- ④ “실제 금전손실액”이라 함은 법원의 판결, 경찰 조사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입증 가능한 범행계좌로 이체된 금전손실액 원금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의해 지급되는 피해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단,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 유출로 인한 2차적인 손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⑤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 ⑥ “피해환급금”이라 함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후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동법 제10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이들이 미리 알고 있었거나 제3자와의 공모 또는 단독으로 행한 범죄행위 또는 불성실 행위
 - ②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③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친족에 의한 사고
 - ④ 1. (보험금의 지급사유)②에 명시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 이외의 일체의 비용 또는 손해
 - ⑤ 대한민국 외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로 인한 금전적 손해
 - ⑥ 대한민국 외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금전적 손해
 - ⑦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⑧ 구두 또는 문서 등에 의한 비방, 중상에 따른 인격권 침해
 - ⑨ 영업비밀, 저작권, 특허권 또는 이와 유사한 지적재산권 침해
 - ⑩ 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적인 상해, 질병 또는 장애, 정신적 쇼크,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 장애
 - ⑪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하여 발생한 손해
 - ⑫ 불특정다수가 사용가능한 공용 PC에서 발생한 손해
 - ⑬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⑭ 피보험자의 사업 또는 업무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⑮ 차압, 구류,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
- ⑯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금융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보상, 환급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그 해당 금액
- ⑰ 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고 발생시 해당 금융기관 등에서 보상되는 손해
-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의 경우,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②에서 명시된
 - ① 내지 ④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불특정다수가 사용가능한 공용 PC에서 발생한 손해
 - ② 피보험자의 사업 또는 업무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③ 재화,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적 피해
 - ④ 개인용 컴퓨터(PC) 이외의 메인프레임(Main-frame), 서버(server) 등의 컴퓨터에서 발생한 해킹(Hacking)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 및 법인계좌에서 발생한 손해

3. (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①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③ 위 ① 및 ②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특별약관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14.(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 알린 때
- ②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4.(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④ 위 ③.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가 최초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④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위 ③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위 ③.① 및 ②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⑦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위 ④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5. (보험금 등 청구서 구비서류)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 ② 피해자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③ 경찰서에서 발행한 피해신고확인서(단, 피해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④ 지급정지요청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 사본. 단, 지급정지금액이 없는 경우 피해구제신청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사본 및 지급정지금액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⑤ 금융감독원의 ‘피해환급금 결정통지서’ 또는 객관적으로 피해환급금 수령을 증

- 명할 수 있는 서류
- ⑥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6. (보험금의 분담)

-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산식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위 ①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위 ①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피보험자의 판결결과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①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위 ①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8.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

- 로 봅니다.
-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④ 위 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32.(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5 | 임대인의 (화재)임대료손실(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임대해준 「보험에 가입한 물건」(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한하며, 이하 “보험목적”이라 합니다)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로 인한 아래의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임차인이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료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보험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임대료 손실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임대인의 (화재)임대료손실보험금으로 보상합니다. 단, 보험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①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 ②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 ② 회사는 폭발, 파열로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보험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임대료손실도 보상합니다.
- ③ 위 ①에서 “임대료”라 함은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와 보험목적 을 임차한 임차인 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를 말하며 아래

의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사용요금 및 소모성 관리비

② 권리금, 사례금 및 이와 유사한 비용

- ④ 위 ①에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임차인이 보험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임대료의 감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보험 목적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폭발, 파열

용어 풀이

폭발,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2. (보험목적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목적”이라 함은 보험에 가입한 물건(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한합니다) 중 건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재도구, 시설 및 기계장치, 집기비품 및 공기구와 원부재료를 포함하여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의 재고품 또는 상품, 교본, 글그림, 골동품, 조각품, 예술품, 희귀품 등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험목적에 아래에 열거된 사유로 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② 화재(보험목적의 주택인 경우 폭발,파열 포함)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 ③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④ 화재(보험목적의 주택인 경우 폭발,파열 포함)로 기인되지 않은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로 생긴 손해
- ⑤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기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주택의 경우에는 폭발, 파열 포함)손해는 보상합니다.
- ⑥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주택의 경우에는 폭발, 파열 포함)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 ⑥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⑦ 위 ⑥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핵연료물질

용어 풀이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4.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약정복구기간 : 회사와 피보험자가 약정한 최대 복구기간으로, 보험목적의 손해를 입었던 때로부터 90일간을 말합니다.
- ② 추정복구기간 : 보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③ 복구기간 :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보험목적에 손해를 입은 때로부터 지체없이 이를 복구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법령의 규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 목적을 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정복구기간을 복구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복구기간은 추정복구기간이나 약정복구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입은 임대료 손실액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임대료 월환산액 × 복구기간 일수 ÷ 30일

산식


- ② 위 ①에서 “임대료 월 환산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 ① 월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 0.9%
 -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③ 위 ①에서 “복구기간”은 추정복구기간과 약정복구기간 내 복구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 ④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

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입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① 다른 계약이 이 특별약관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 하는 경우:

산식  손해액 × $\frac{\text{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text{이 특별약관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② 다른 계약이 이 특별약관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 하는 경우:

산식  손해액 × $\frac{\text{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6. (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①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② 보험 목적을 양도할 때
 - ③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에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 ④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에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증가할 때
 - ⑤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에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 ⑥ 보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⑦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위 ①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경우 변경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특별약관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통약관 14.(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6.(계약 후 알릴 의무) ①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④ 위 ③.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가 최초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④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위 ③에 의한 이 특별약관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위 ③.① 및 ②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특별약관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⑦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위 ④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8. (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

용어 풀이 계약자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9. (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보험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①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가 위 ①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위 ①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10.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11. (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12. (보험금의 지급)

- ① 회사는 아래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 ①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②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③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 ② 위 ①에 의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급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회사가 위 ①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9】(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13.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14.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5. (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 ②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①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위 ①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16. (보험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목적에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1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1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26-1.(보험료 납입면제) 및 12.(보험수익자의 지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46 | PM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동승자제외) (영업목적 제외)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퍼스널모빌리티(이하 “PM”이라 합니다)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상해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PM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전하던 PM의 동승자는 피해자에서 제외합니다.



형사합의금

형사처벌의 감경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피해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 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을 입힌 경우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 및 제2항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을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1호 내지 제12호)

- 1. 신호 및 지시위반
-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유턴·후진 위반
- 3.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 위반
-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7. 무면허 운전
- 8.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 ② 위 ①에서 『PM을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장치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PM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2인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는 조향장치 또는 제동장치를 직접적으로 조작한 1인에 한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PM』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단,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의2에서 정한 전기자전거 및 전기자동차, 어린이용 장난감, 전동 휠체어 등은 제외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PM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①의 경우 : 3천만원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②의 경우

42일~69일 진단시	70일~139일 진단시	140일이상 진단시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③의 경우 : 3천만원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2)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PM을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상해 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④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위 ①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⑤ 다음 ① 및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①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 ②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 ⑥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 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④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⑦ 위 ⑤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 ③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④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⑧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공탁금액의 50%를 위 ①의 금액의 50%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잔여 공탁금은 위 ①의 금액에서 가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추가로 보상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향후 무죄 선고 등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⑧의 가지급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⑩ 피보험자가 위 ⑧의 가지급 보험금 수령 후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 공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⑧에서 지급한 가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고의

- ② 계약자의 고의
-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④ 피보험자가 PM을 경비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⑤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⑥ PM을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⑦ 불법개조 등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PM을 운전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인용문구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보험금의 비례분담)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PM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②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text{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text{형사합의금} \times \frac{\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별약관

1종(연만기) 및

2종(세만기) 공통

제5장 재물손해
관련

어려운 용어는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참고	35
인용 법규는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 참고	526

1 | 골프용품손해(실손)(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골프시설(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골프연습장, 탈의실 등 그 외 부속시설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 휴식을 포함합니다)중에 생긴 아래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골프채, 골프가방, 그 밖의 골프용구 또는 피복류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하 “보험의 목적” 이라 합니다)에 생긴 화재(낙뢰를 포함합니다), 도난 손해
- ② 우연한 사고로 골프채가 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파손됨으로써 생긴 손해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 ① 손해발생 당시 보험목적의 시가(감가상각 등을 반영한 금액)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 ② 손해가 발생된 보험목적물 수선하게 될 때에는 손해 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시키는데 필요한 수선비를 손해액으로 하여 보상합니다.
-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명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①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text{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 ②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 ③ 회사는 위 ①에 정한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손해에 상당하는 현물의 보상으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얻어 도난당한 보험목적물 발견 회수하는 데에 지출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 ⑤ 회사가 도난에 의한 골프용품손해를 보상하여 드렸을 때에는 도난당한 보험목적에 대하여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그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도난품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 ⑥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목적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위 ① 또는 ②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① 보험의 목적의 사용과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이하는 세대를 같이하다)의 고의로 인한 손해
- ② 보험의 목적에 존재하고 있는 흠, 마멸, 부식, 녹 또는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 ③ 분실
- ④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4. (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①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②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③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 ④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증가할 때
- ⑤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 ⑥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됨을 알았을 때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위 ①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경우 변경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특별약관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통약관 14.(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 ②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4.(계약 후 알릴 의무)①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④ 위 ③.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가 최초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 ③ 최초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④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위 ③에 의한 이 특별약관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위 ③.① 및 ②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특별약관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⑦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위 ④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6. (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

용어 풀이

계약자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7. (특별약관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8. (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①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 회사가 위 ①의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위 ①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그곳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9.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10. (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11.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 ②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③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12.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11.(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 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가 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 ② 회사가 위 ①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9』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13.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14. (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15. (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위 ①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위 ①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16. (잔존물)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17.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9. 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9.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합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2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12.(보험수익자의 지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 화재손해(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또한 보험의 목적이 전용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경우에는 폭발, 파열도 포함합니다)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①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 ②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 ③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① 및 ②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폭발, 파열

용어 풀이

폭발,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 ② 회사는 위 ①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① 잔존물 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실는 비용. 다만, 위 ①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③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④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17.(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 ⑤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청소비용

용어 풀이

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 ②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단, 전시용자동차는 제외합니다.
- ④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위 ①의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 ①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 ②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귀중품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5]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 1]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① 건물인 경우 :

- ㉓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 ㉔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 ㉕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의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② 건물 이외의 경우 :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비품)

6] 주택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아래의 물건을 말합니다.

①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또는 그 수용가재

- ㉓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 ㉔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건물
- ㉕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로서 각 호, 실이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 다만 아파트에는 단지 내 상가를 제외한 구내의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함.

② 주택병용 건물로서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및 그 수용가재

- ㉓ 고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 ㉔ 치료(안수, 침구(침질, 뜰질), 접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② 화재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 ③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④ 화재에 기인되지 않은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로 생긴 손해
- ⑤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기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합니다.

- ⑥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 ⑦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⑧ 위 ⑦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 ⑩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보험의 목적이 주택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합니다.



핵연료물질

용어 풀이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

용어 풀이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3. (손해의 통지 및 조사)

- 1]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1]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3] 회사가 위 1]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는 위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4.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 ②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③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5.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4.(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자기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위 ①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9】(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지급보험금

용어
풀이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6.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②의 ① 잔존물 제거비용은 각각 7.(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②의 비용손해 중 ② 손해방지비용, ③ 대위권 보전비용 및 ④ 잔존물 보전비용은 7.(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②의 비용손해 중 ⑤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지급한도 예시

예시

(1) 이 계약의 보험가액 4억 원, 보험가입금액 4억 원, 손해액 4억 원, 잔존물 제거비용 5천만 원을 가정하는 경우, 이 계약의 보험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손해액(4억 원) + 잔존물 제거비용(손해액의 10%한도인 4천만 원)

⇒ 4억 원(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2) 이 계약의 보험가액 4억 원, 보험가입금액 4억 원, 손해액 4억 원, 손해방지비용 1천만 원, 잔존물 보전비용 1천만 원을 가정하는 경우, 이 계약의 보험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손해액(4억 원) + 손해방지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2천만 원)

⇒ 4억 2천만 원(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

7.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가 지급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①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산식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text{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 ②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산식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위 ① 또는 ②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보험금의 분담 예시

예시

이 계약(A)의 가입금액 6억 원, 이 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B)의 가입금액 6억 원, 보험가액 10억 원, 손해액 8억 원 가정하는 경

우, 이 계약(A)의 보험금의 분담액은 다음과 같다.

(1)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이 동일한 경우 ((A),(B)계약 모두 실손보상 가정)

$$8\text{억} \times \frac{6\text{억}}{6\text{억} + 6\text{억}} = 4\text{억 원}$$

(2)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A) 실손보상, (B) 비례보상 가정)

①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이 계약(A)의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6억 원 한도 내에서 6억 원 실손보상

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다른 계약(B)의 보험금 :

$$8\text{억} \times \frac{6\text{억}}{10\text{억} * 80\%} = 6\text{억 원}$$

(※비례보상에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경우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대비 가입금액의 비율로 비례보상 계산)

③ 계약(A)의 최종 보험금 분담액 :

$$8\text{억} \times \frac{6\text{억}}{6\text{억} + 6\text{억}} = 4\text{억 원}$$

8. (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①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②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③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 ④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 ⑤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 ⑥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⑦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위 ①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경우 변경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특별약관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14.(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 ②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8.(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④ 위 ③.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가 최초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④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위 ③에 의한 이 특별약관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위 ③.① 및 ②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특별약관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⑦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위 ④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이 여러 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10. (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

용어 풀이 계약자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11. (특별약관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2.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13. (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14.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15.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6. (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①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위 ①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⑤ 회사는 위 ①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를 허락한 자(이하 '임차인등')에 대한 것으로서, 임차인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7. (잔존물)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18. (보험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19.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미만인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으며, 보험가입금액 이상인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장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④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인 때에는 각각 위 ①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위 ②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인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소멸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 ②를 적용합니다.

2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26-1.(보험료 납입면제) 및 12.(보험수익자의 지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침강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태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목적이 둘 이상인 때에는 각각 위 ① 및 ②를 적용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5장 재물손해관련』 2.화재손해(실손) 특별약관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및 『제 5장 재물손해관련』 2.화재손해(실손)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26-1.(보험료 납입면제) 및 12.(보험수익자의 지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 |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목적에 붕괴, 침강 및 사태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붕괴

용어
풀이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

4 | 도난손해(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험목적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에 가입한 동산 일체를 말합니다. 단, 『제5장 재물손해관련 2.화재손해(실손) 특별약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④의 물건은 보험증권 또는 청약서의 귀중품명세서에 명시하여야 보험목적이 됩니다.
- ③ 회사는 도난당한 보험목적은 찾은 경우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보상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도난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합니다.
-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명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①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 하는 경우:



산식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text{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 ②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 하는 경우:



산식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text{다른계약이 없는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보험목적에 생긴 아래에 열거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 ②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

거나 가담한 도난

- ③ 전쟁,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으로 생긴 도난
- ④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 ⑤ 보험목적이 건물구내 밖에 있는 동안 생긴 도난
- ⑥ 보험목적물의 수용장소를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사이에 생긴 도난
- ⑦ 보험사고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알지 못한 도난

4. (손해의 발생과 통지)

- ① 보험목적에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 및 그 가족, 감수인(監守人) 또는 고용인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피보험자는 위 ①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아래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관할경찰서의 도난신고 접수확인서. 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
 - ② 그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5. (도난품의 귀속)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도난당한 보험목적에 대하여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6. (보험금의 지급)

- ① 회사는 아래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 ①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②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③ 관할경찰서의 도난신고 접수확인서. 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
 - ④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 ② 위 ①에 의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회사가 위 ①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9】(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

을 계산)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5장 재물손해관련』 2.화재손해(실손) 특별약관』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및 『제 5장 재물손해관련』 2.화재손해(실손)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26-1.(보험료 납입면제) 및 12.(보험수익자의 지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5 | 주택급배수시설누출손해(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의 구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시설”이라 합니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건물은 재조달가액 기준, 가재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재조달가액

용어
풀이

보험의 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

- ② 이 특별약관에서 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③ 아래의 물건은 ①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 ② 귀중품,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보석, 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 ③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금속으로 만든 틀), 목형(나무로 만든 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 ④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재고자산 포함)
 - ⑤ 차량(자동 2륜차 및 자동 3륜차를 포함합니다), 선박, 항공기
 - ⑥ 컴퓨터 시스템 기록 또는 제작 및 복제비용
 - ⑦ 총포류, 탄약, 폭발물
 - ⑧ 동물, 식물, 농작물
- ④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또는 그 수용가 재를 말합니다
 - ①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 ②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 건물
 - ③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용도 부분 포함)로서 각 호, 실이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 ⑤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①의 보험목적에 포함됩니다.
 - ① 건물인 경우
 - 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 나.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 다.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 ② 가재인 경우 :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비품 등)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② 지진 또는 분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③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④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⑤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단, 급배수시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⑥ 자연발열, 자연발화, 마모, 내재적 결함, 재질 변경, 녹 및 부식, 누설, 쥐, 곤충, 해충, 기후-온도 조건의 변화, 통상적인 해수면의 변화, 기타 점진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으로 생긴 손해
- ⑦ 법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위나 명령에 의한 몰수, 국유화, 징발, 파괴 또는 손상으로 생긴 손해
- ⑧ 공공설비(전기, 가스, 통신, 수도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공급불능, 불량으로 발생한 손해
- ⑨ 도난, 망실 또는 분실 손해
- ⑩ 외부적 힘에 의하지 않은 부속설비 및 가재에 생긴 손해
- ⑪ 피보험자나 고용인의 잘못된 운영이나 잘못된 기술로 인하여 전기, 기계장비에 생긴 손해
- ⑫ 가재 또는 유리(건물에 부착된 유리 제외)의 파손손해
- ⑬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자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 ⑭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용어
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단,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

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명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①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산식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text{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②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산식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위 ① 또는 ②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예시

보험금의 분담 예시

이 계약(A)의 가입금액 6억 원, 이 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B)의 가입금액 6억 원, 보험가액 10억 원, 손해액 8억 원 가정하는 경우, 이 계약(A)의 보험금의 분담액은 다음과 같다.

(1)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이 동일한 경우 ((A),(B)계약 모두 실손보상 가정)

$$8\text{억} \times \frac{6\text{억}}{6\text{억} + 6\text{억}} = 4\text{억 원}$$

(2)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A) 실손보상, (B) 비례보상 가정)

- ①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이 계약(A)의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6억 원 한도 내에서 6억 원 실손보상
- 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다른 계약(B)의 보험금 :

$$8\text{억} \times \frac{6\text{억}}{10\text{억} * 80\%} = 6\text{억 원}$$

(※비례보상에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경우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대비 가입금액의 비율로 비례보상 계산)

③ 계약(A)의 최종 보험금 분담액 :

$$8억 \times \frac{6억}{6억 + 6억} = 4억 원$$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5장 재물손해관련』 2.화재손해(실손) 특별약관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및 『제 5장 재물손해관련』 2.화재손해(실손)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26-1.(보험료 납입면제) 및 12.(보험수익자의 지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6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동산은 제외합니다)에 대하여는 아래의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①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②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보험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 ②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 ③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 ④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오므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목적인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⑤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 ⑥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목적인 네온사인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 생긴 손해

3.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5장 재물손해관련』 2.화재손해(실손) 특별약관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및 『제 5장 재물손해관련』 2.화재손해(실손)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26-1.(보험료 납입면제) 및 12.(보험수익자의 지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 |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의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①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 ② 위 ①과 관련하여 재해방지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2.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의한 보험금은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액에서 해당 물건 가액의 2% 해당액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뺀 잔액을 『[제5장 재물손해관련] 2.화재손해(실손) 특별약관』의 7.(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보험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 ②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 ③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 ④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목적 인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⑤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 ⑥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목적인 네온사인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 생긴 손해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5장 재물손해관련] 2.화재손해(실손) 특별약관』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및 『[제 5장 재물손해관련] 2.화재손해(실손)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26-1.(보험료 납입면제) 및 12.(보험수익자의 지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8 | 주택(화재)건물재조달차액지원(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장 재물손해관련 특별약관] 2.화재손해(실손) 특별약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위험으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험목적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목적”이라 함은 보험에 가입한 물건(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 한합니다) 중 건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재도구, 시설 및 기계장치, 집기비품 및 공기구와 원부재료를 포함하여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의 재고품 또는 상품, 교본, 글그림, 골동품, 조각품, 예술품, 희귀품 등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제5장 재물손해관련 특별약관] 2.화재손해(실손) 특별약관』 2.(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손해 및 아래에 열거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축, 수리, 철거 등 관계 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 ②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4. (손해액의 조사결정)


- ①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목적의 「재조달가액」

(보험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합니다.)과 「보험가액」(재조달가액에서 기간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에 따라 계산하며, 「각각의 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액」(이하 '재조달차액'이라 합니다)을 보상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보험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③ 위 ①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손해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5.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 ① 손해가 발생한 보험목적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② 손해가 발생한 보험목적과 용도 및 성능이 같다고 인정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조달차액
 - ③ 손해가 발생한 보험목적의 실제 수리 또는 복구에 들어간 비용이 그 보험목적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을 넘는 금액
-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각각 지급할 금액의 합계액이 재조달차액을 넘는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명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①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 하는 경우:

산식  손해액 ×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text{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 ②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 하는 경우:

산식  손해액 ×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text{다른계약이 없는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목적에 계약을 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위 ① 또는 ②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절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5장 재물손해관련』 2.화재손해(실손) 특별약관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및 『제 5장 재물손해관련』 2.화재손해(실손)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26-1.(보험료 납입면제) 및 12.(보험수익자의 지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별약관

1종(연만기) 및

2종(세만기) 공통

제6장 배상책임
관련

어려운 용어는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참고	35
인용 법규는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 참고	526

1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II(실손)(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대인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 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단, 이 특별약관의 보장대상 주택은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에 한합니다.
-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 ③ 위 ① 및 ②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 ④ 피보험자의 주거 이동 또는 주택에 대한 소유변동 등으로 위 ①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통보된 주택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⑤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⑫에도 불구하고, ④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통보하지 않아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 또는 소유하게 된 주택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거주 및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주택의 사용용도 등이 달라져 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그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대인배상책임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대물배상책임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일으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2. (피보험자의 범위)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 ②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 ③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 ④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② 위 ①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3. (누수사고의 정의)

이 특약에서 ‘누수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의 주택 내 각종 급배수 설비(배관, 수관, 수조, 오수관, 우수관, 싱크대배관, 보일러배관, 난방배관 등 건물 내 설치된 모든 급배수 설비를 지칭합니다)를 비롯한 주택 건물, 부대설비의 노후화, 하자, 결함 및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수침손해 또는 오염손해를 끼치게 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화재사고 발생시 스프링클러(Sprinkler) 작동, 소방수 피해 등의 소방피해는 누수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 피보험자가 14.(손해방지 의무) ①.①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 피보험자가 14.(손해방지 의무) ①.②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 피보험자가 15.(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② 및 ③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④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 ⑤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⑥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⑦ 위 ⑥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⑧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⑨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⑩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⑪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 ⑫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 ⑬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애로 인한 배상책임

- ⑭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⑮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 ⑯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 ⑰ 항공기, 선박, 차량 (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자전거 등)을 제외합니다), 총기 (공기총을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⑱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⑲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용어 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용어 풀이

차량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 세그웨이류,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개인형이동장치(시속25킬로미터 미만의 속도제한 및 중량 30킬로그램 미만) 역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됩니다.

6. (의무보험과의 관계)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18.(보험금의 분담)을 따릅니다.
- ② 위 ①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가입했다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위 ①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7.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금은 대인배상책임은 없는 것으로 하고, 대물배상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① 4.(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은 누수사고와 누수 이외의 사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하나의 사고를 원인으로 누수사고와 누수 이외의 사고의 결과로 인한 배상책임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는 '누수사고'로 봅니다.
- ② 4.(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②의 ㉠, ㉡ 또는 ㉢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 ③ 4.(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②의 ㉣ 또는 ㉤의 비용 : 이 비용과 위 ①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8. (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①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③ 위 ① 및 ②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9. (특별약관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14.(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 ②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8.(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④ 위 ③.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가 최초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④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위 ③에 의한 특별약관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위 ③.① 및 ②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특별약관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⑦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위 ④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10. (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

용어 풀이

계약자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11. (특별약관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을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2. (양도)

보험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13. (손해의 발생과 통지)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②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③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①의 ① 내지 ③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위 ①.③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및 ②의 ㉔ 또는 ㉕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14. (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①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 ②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 ③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 ① 위 ①.①의 경우에는 노력을 하였다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 ② 위 ①.②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③ 위 ①.③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15.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시

회사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위 ①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② 및 ③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6.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 ②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③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④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17.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16.(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자기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 ② 회사는 위 ①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9】(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18. (보험금의 분담)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산식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위 ①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위 ①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9. (사기에 의한 계약)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 (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 ②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①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위 ①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1. (조사)

-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22.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위 ①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험지식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 ③ 회사가 위 ①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위 ①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 ②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 ⑤ 회사가 위 ①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23.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9. 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2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2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신체	신체라 함은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신체장해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재물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②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③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사고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1회의사고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서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기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기중책임)은 제외합니다.

2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II(실손)(화재배상책임가입자용)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대인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 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단, 이 특별약관의 보장대상 주택은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에 한합니다.
-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 ③ 위 ① 및 ②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 ④ 피보험자의 주거 이동 또는 주택에 대한 소유변동 등으로 위 ①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통보된 주택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⑤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⑫에도 불구하고, ④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통보하지 않아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 또는 소유하게 된 주택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거주 및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주택의 사용용도 등이 달라져 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그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용어
풀이

대인배상책임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대물배상책임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일으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2. (피보험자의 범위)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 ②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 ③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 ④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인용
문구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② 위 ①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3. (누수사고의 정의)

이 특약에서 ‘누수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의 주택 내 각종 급배수 설비(배관, 수관, 수조, 오수관, 우수관, 싱크대배관, 보일러배관, 난방배관 등 건물 내 설치된 모든 급배수 설비를 지칭합니다)를 비롯한 주택 건물, 부대설비의 노후화, 하자, 결함 및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수침손해 또는 오염손해를 끼치게 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화재사고 발생시 스프링클러(Sprinkler) 작동, 소방수 피해 등의 소방피해는 누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 피보험자가 14.(손해방지 의무) ①.①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 피보험자가 14.(손해방지 의무) ①.②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㉔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㉕ 피보험자가 15.(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② 및 ③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④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 ⑤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⑥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⑦ 위 ⑥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⑧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⑨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⑩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⑪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 ⑫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 ⑬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애로 인한 배상책임
- ⑭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⑮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 ⑯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 ⑰ 항공기, 선박, 차량 (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자전거 등)을 제외합니다), 항공기(공기충을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⑱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⑲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⑳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배상책임



용어 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용어 풀이

차량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 세그웨이류,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개인형이동장치(시속25킬로미터 미만의 속도제한 및 중량 30킬로그램 미만) 역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됩니다.

6. (의무보험과의 관계)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18.(보험금의 분담)을 따릅니다.
- ② 위 ①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가입했다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위 ①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7.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금은 대인배상책임은 없는 것으로 하고, 대물배상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① 4.(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은 누수사고와 누수 이외의 사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하나의 사고를 원인으로 누수사고와 누수 이외의 사고의 결과로 인한 배상책임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는 '누수사고'로 봅니다.

- ② 4.(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②의 가, 나 또는 마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 ③ 4.(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②의 바 또는 자의 비용 : 이 비용과 위 ①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8. (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①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③ 위 ① 및 ②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9. (특별약관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14.(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 ②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8.(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④ 위 ③.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가 최초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④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위 ③에 의한 특별약관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위 ③.① 및 ②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특별약관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⑦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위 ④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10. (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

용어
풀이

계약자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11. (특별약관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을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2. (양도)

보험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13. (손해의 발생과 통지)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②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③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①의 ① 내지 ③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위 ①.③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및 ②의 ㉔ 또는 ㉕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14. (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①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 ②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 ③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 ① 위 ①.①의 경우에는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 ② 위 ①.②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③ 위 ①.③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

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15.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시

회사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위 ①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② 및 ③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6.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 ②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③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④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17.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16.(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 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 ② 회사는 위 ①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9】(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18. (보험금의 분담)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text{산식} \quad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위 ①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위 ①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9. (사기에 의한 계약)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 (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

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 ②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①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위 ①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1. (조사)

-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22.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위 ①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 ③ 회사가 위 ①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위 ①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 ②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 ⑤ 회사가 위 ①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23.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9. 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2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2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신체	신체라 함은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신체장해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재물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②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③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사고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1회의사고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3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물(보험증권상의 소재지의 보장지역(면적)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애」(이하 “신체장애”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 피보험자가 10.(손해방지 의무) ①.①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 피보험자가 10.(손해방지 의무) ①.②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 피보험자가 11.(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② 및 ③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④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

- 에 대하여 적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⑤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⑥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⑦ 위 ⑥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⑧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⑨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⑩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⑪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⑫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 ⑬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배상책임
 - 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⑮ 화재(폭발포함)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4. (손해의 발생과 통지)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②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③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①의 ① 내지 ③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위 ①.③의 통지를 게

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및 ②의 ㉔ 또는 ㉕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5.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 ②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③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④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6.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5.(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위 ①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9】(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지급보험금

용어 풀이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7.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 ①의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①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 다만

-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 ②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 【별표24】(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의 부상등급별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정하는 금액
- ③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에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때에는 1인당 【별표23】(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의 후유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의 한도)에 정하는 금액
- ④ 부상자가 치료중에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①과 ②의 금액을 더한 금액
- ⑤ 부상한 자에게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위 ②와 ③의 금액을 더한 금액
- ⑥ 위 ③의 금액을 지급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①의 금액에서 위 ③의 후유장애보험금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나머지 금액
- ⑦ 재물손해의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8. (의무보험과의 관계)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9.(보험금의 분담)을 따릅니다.
- ② 위 ①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가입했다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위 ①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9. (보험금의 분담)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산식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 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위 ①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위 ①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0. (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①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 ②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 ③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 ① 위 ①.①의 경우에는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 ② 위 ①.②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③ 위 ①.③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11.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위 ①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② 및 ③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2.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위 ①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보험
지식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 ③ 회사가 위 ①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위 ①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 ②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 ⑤ 회사가 위 ①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 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13. (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 ②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①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위 ①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14. (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①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②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③ 위 ① 및 ②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위 ①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경우 변경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 (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를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16. (조사)

-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17. (특별약관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14.(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 ②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14.(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④ 위 ③.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가 최초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④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위 ③에 의한 이 특별약관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위 ③.① 및 ②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특별약관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⑦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위 ④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이 여러 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18. (특별약관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9.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2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26-1.(보험료 납입면제) 및 12.(보험수익자의 지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신체	신체라 함은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신체장해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재물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②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③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사고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1회의사고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서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4 | 임차자(화재, 폭발, 파열, 소요, 노동쟁의)배상책임 (비례보상)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 폭발, 파열, 소요, 노동쟁의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임차자)와 동거하는 친족, 동숙자, 일시방문자나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동숙자가 고용한 자는 피보험자로 봅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 피보험자가 13.(손해방지 의무) ①, ①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 피보험자가 13.(손해방지 의무) ①, ②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 피보험자가 14.(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② 및 ③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임차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④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⑤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⑥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⑦ 위 ⑥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⑧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⑨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⑩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⑪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⑫ 임차자가 관리하는 기간에 발생한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 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일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⑬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⑭ 자연소모, 녹, 쥐가 쓸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⑮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⑯ 피보험자가 노동쟁의의 당사자인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측에 속하는 자가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⑰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보험목적에 압수, 징발 또는 파괴명령을 내림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용어 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5. (의무보험과의 관계)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17.(보험금의 부담)을 따릅니다.
- ② 위 ①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가입했다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위 ①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6.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① 3.(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의 손해배상금 :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과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건물의 가액」(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이 같을 때 : 손해액 전액
 - ㉡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



산식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text{보험가액}}$$

- ㉢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크거나 같을 때 :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 ② 3.(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②의 ㉠, ㉡ 또는 ㉢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 ③ 3.(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②의 ㉣ 또는 ㉤의 비용 : 이 비용과 위 ①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물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화재보험의 보험가입금액과 이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6.(보험금의 부담)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7. (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

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①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②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③ 위 ① 및 ②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위 ①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경우 변경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특별약관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통약관 14.(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 ②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7.(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④ 위 ③.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가 최초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④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

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위 ③에 의한 이 특별약관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위 ③.① 및 ②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특별약관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⑦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위 ④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이 여러 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9. (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

용어 풀이 계약자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10. (특별약관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을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1. (양도)

보험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12. (손해의 발생과 통지)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②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③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①의 ① 내지 ③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위 ①.③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3.(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및 ②의 ㉔ 또는 ㉕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13. (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①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 ②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 ③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3.(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 ① 위 ①.①의 경우에는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 ② 위 ①.②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③ 위 ①.③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14.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위 ①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② 및 ③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5.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 ②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③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④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16.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15.(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 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위 ①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9】(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17. (보험금의 분담)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산식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위 ①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위 ①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8.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9. (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 ②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①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위 ①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0. (조사)

-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위 1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21.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위 1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보험 지식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 회사가 위 1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위 1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 회사가 위 1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22. (특별약관의 소멸)

-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 위 1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2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26-1.(보험료납입면제) 및 12.(보험수익자의 지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신체	신체라 함은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신체장해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재물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②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③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사고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1회의사고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5 | 임대인배상책임II(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부동산에 한합니다. 이하 “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② 위 ①의 “우연한 사고”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과실에 기인한 사고에 한하며, 이하 “사고”라 합니다.
- ③ 위 ①의 “대인배상책임”이라 함은 타인의 신체의 장애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 ④ 위 ①의 “대물배상책임”이라 함은 타인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2.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누수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의 주택 내 각종 급배수 설비(배관, 수관, 수조, 오수관, 우수관, 싱크대배관, 보일러배관, 난방배관 등 건물 내 설치된 모든 급배수 설비를 지칭합니다)를 비롯한 주택 건물, 부대설비의 노후화, 하자, 결함 및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수침손해 또는 오염손해를 끼치게 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화재사고 발생시 스프링클러(Sprinkler) 작동, 소방수 피해 등의 소방피해는 누수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 피보험자가 13.(손해방지 의무) ①.①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 피보험자가 13.(손해방지 의무) ①.②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 피보험자가 14.(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② 및 ③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④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⑥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⑦ 위 ⑥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⑧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⑨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⑩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⑪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 ⑫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 ⑬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애로 인한 배상책임
- ⑭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 ⑮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 ⑯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자전거 등)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을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⑰ 보험목적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⑱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용어
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5. (의무보험과의 관계)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17.(보험금의 부담)을 따릅니다.
- ② 위 ①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가입했다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위 ①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6.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금은 대인배상책임은 없는 것으로 하고, 대물배상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① 3.(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은 누수사고와 누수 이외의 사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하나의 사고를 원인으로 누수사고와 누수 이외의 사고의 결과로 인한 배상책임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는 ‘누수사고’로 봅니다.
- ② 3.(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②의 ㉓, ㉔ 또는 ㉕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 ③ 3.(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②의 ㉖ 또는 ㉗의 비용 : 이 비용과 위 ①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7. (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①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② 보험목적에 양도할 때
- ③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에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 ④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에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증가할 때
- ⑤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에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 ⑥ 보험목적에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⑦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위 ①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경우 변경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특별약관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통약관 14.(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 ②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7.(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④ 위 ③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가 최초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④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

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위 ③에 의한 이 특별약관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위 ③.① 및 ②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특별약관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⑦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위 ④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9. (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

용어 풀이 계약자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10. (특별약관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1. (양도)

보험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12. (손해의 발생과 통지)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②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③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①의 ① 내지 ③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위 ①.③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3.(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및 ②의 ㉔ 또는 ㉕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13. (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①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 ②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 ③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3.(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 ① 위 ①.①의 경우에는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 ② 위 ①.②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③ 위 ①.③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14.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

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위 ①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② 및 ③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5.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 ②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③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④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16.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15.(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위 ①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9】(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17. (보험금의 분담)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

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산식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위 ①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위 ①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8.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9. (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 ②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①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위 ①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0. (조사)

-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

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21.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위 ①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보험 지식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 ③ 회사가 위 ①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위 ①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 ②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 ⑤ 회사가 위 ①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22.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2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26-1.(보험료납입면제) 및 12.(보험수익자의 지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신체	신체라 함은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신체장해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재물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②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③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사고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1회의사고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서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기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기중책임)은 제외합니다.

6 | 골프활동중배상책임(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골프시설(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골프연습장, 탈의실 등 그 외 부속시설을 포함합니다)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 휴식 포함)중에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 피보험자가 12.(손해방지 의무) ①.①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 피보험자가 12.(손해방지 의무) ①.②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 피보험자가 13.(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② 및 ③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④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

- 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⑤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⑥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⑦ 위 ⑥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⑧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⑨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⑩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⑪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용어 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4. (의무보험과의 관계)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16.(보험금의 분담)을 따릅니다.
- ② 위 ①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계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가입했다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위 ①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5.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금은 2만원으로 합니다.

- ① 2.(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② 2.(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②의 ㉠, ㉡ 또는 ㉤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③ 2.(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②의 ㉔ 또는 ㉕의 비용 : 이 비용과 위 ①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6. (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①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③ 위 ① 및 ②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7. (특별약관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14.(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 ②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6.(계약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④ 위 ③.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가 최초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④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

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위 ③에 의한 특별약관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위 ③.① 및 ②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특별약관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8. (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

용어
풀이

계약자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9. (특별약관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0. (양도)

보험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를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11. (손해의 발생과 통지)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②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③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①의 ① 내지 ③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위 ①.③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및 ②의 ㉔ 또는 ㉕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12. (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①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 ②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 ③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 ① 위 ①.①의 경우에는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 ② 위 ①.②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③ 위 ①.③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13.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위 ①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② 및 ③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4.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 ②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③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④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15.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14.(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 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

용어
풀이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 ② 회사는 위 ①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9】(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16. (보험금의 분담)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산식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위 ①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위 ①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7.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8. (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 ②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①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위 ①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19. (조사)

-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위 ①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험 지식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 ③ 회사가 위 ①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위 ①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 ②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 ⑤ 회사가 위 ①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입료나 가입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 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21.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2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26-1.(보험료 납입면제) 및 12.(보험수익자의 지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신체	신체라 함은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신체장해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재물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②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③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사고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1회의사고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서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제도성
특별약관

어려운 용어는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참고	35
인용 법규는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 참고	526

1 | 보험료자동납입 특별약관

1. (보험료 납입)

- ①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합니다.
- ② 위 ①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 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 18.(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위 보통약관은 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및 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3. (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쇄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 | 선지급서비스 특별약관

1. (적용대상)

- ① 「이 선지급서비스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을 부가하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이어야 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2개월 이전까지로 합니다.
- ③ 보통약관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이하 “사망보장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2.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의료법 제3조에 정한 국내의 종합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실시한 진단결과 여명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회사의 신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 사망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여명

용어 풀이

피보험자의 남은 예상 생존기간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지급일에 감액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이 있어도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 사망보장 특별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아도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사망보장 특별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청구가 있어도 이를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사망보장 특별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그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명기간 상당분의 이자 및 보험료를, 또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에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 합계를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⑥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액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의 사망보장 특별약관의 사망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보험금의 지정대리 청구인)

- ①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하거나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이 7.(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별약관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

인용
문구

- 4.(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의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정한 다음의 자
- ①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②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위 ①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계약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의 고의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2.(지급사유)의 ①에 해당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 (특별약관의 보험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7. (보험금의 청구)

- ①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 청구인은 1.(적용대상)에 정한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④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경우)
 - ⑤ 기타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8. (보험금의 지급)

- ① 회사는 위 7.(보험금의 청구)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규정에 따라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가 회사로부터의 사실 조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회답 또는 동의를 거부한 때에는 그 회답 또는 동의를 얻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지정한 의사에 의한 피보험자의 진단을 요구한 경우에도 진단을 받지 않은 때에는 진단을 받고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위 ①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9】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및 사망을 보장하는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3 |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1. (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보험계약을 말하며,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효력발생일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25.(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합니다),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④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하는 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위 ①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이륜자동차로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포함합니다.
- ③ 위 ②의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①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 ②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 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 ③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 ④ 위 ②의 자동차관리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 및 도로교통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이 이후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⑤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사고처리 확인원 등으로 결정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의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 1) 승용자동차
- 2) 승합자동차
- 3) 화물자동차
- 4) 특수자동차
-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퍼스널모빌리티(세그웨이,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는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됩니다.

3.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보통약관과 동시에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위 보통약관은 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및 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4 |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2. (특별약관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講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 ② 1.(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3.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4.(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위 보통약관은 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및 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을 말합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①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②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1.(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4.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①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 ②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인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6.(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1.(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1.(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④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 ⑤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5 | 단체취급 특별약관

1. (적용범위)

- ① 이 특별약관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단체취급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대상 단체는 각목과 같습니다.

- ①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 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③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② 계약자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 내지 단체의 소속원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보험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단체에 소속된 피보험자수가 최초 계약시 5인 이상(이하 “피보험자단체”라 합니다)이거나 단체에 소속된 계약자수가 최초 계약시 5인 이상(이하 “계약자단체”라 합니다)이어야 합니다. 또한, 단체 소속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자의 선정)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 또는 위 1.(적용범위)의 ②에서 정한 계약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3. (피보험자의 추가, 감소 또는 교체)

- ① 단체취급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추가,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2.(대표자의 선정)에서 정한 대표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회사의 보장은 회사가 승인한 이후부터 시작되며 회사가 승인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위의 서면이 회사에 접수된 때를 승인한 때로 봅니다.
 - ① 피보험자단체에 대한 단체취급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시에 해당 피보험자의 계약을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추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이 때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변경된 보험료를 받고, 추가 또는 환급되는 책임준비금은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 추가나 교체시에 회사가 받아야 할 책임준비금차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보장은 책임준비금을 정산한 후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날로부터 시작합니다.
 - ② 피보험자단체에 대한 단체취급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추가 또는 교체될 경우에 암과 같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보장에 있어서는, 피보험자 추가시에는 책임준비금을 정산한 후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적용되며, 피보험자 교체시에는 회사의 승인일로부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적용됩니다.
 - ② 계약자단체에 대한 단체취급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수의 감소시에 해당 피보험자의 계약을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 ③ 위 ①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새로이 추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경우 추가 또는 교체 후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내용 및 회사 승낙기준 등은 추가 또는 교체 전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적용보험료)

- ① 계약자수 또는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취급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수가 감소하여 5인 미만이 된 때에는 위 ①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후 피보험자수가 증가하여 5인이상이 된 때에는 다시 위 ①을 적용합니다.

5. (보험료 납입)

- ① 보험료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와 회사가 정한 날에 대표자가 보험계약자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일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여이체 및 자동이체로 보험

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일괄납입으로 봅니다.

- ② 회사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이거나 계약자단체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별로 납입증명서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6.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단,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단체구성원) 이외의 자(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로 지정되는 계약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피보험자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등 제출)
- ② 위 ①,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인용 문구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은 해당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이탈하였을 때
 - ②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② 위 ①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단체취급보험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8. (적용특칙)

이 특별약관에서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비운전자 자동차

부상치료비(1-7급)) 21.(계약의 무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별로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9. (준용규칙)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6 | 전자서명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전자서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사전동의서를 통한 동의)를 받은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

2. (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보통약관을 말하며,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합니다)으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인용 문구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 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3. (약관교부 등의 특례)

- ①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 등(이하 “보험계약 안내자료”라 합니다)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② 계약자가 보험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령을 원하지 않거나,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약한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4. (보험계약자의 알릴 의무)

- ① 계약자가 3.(약관교부 등의 특례)의 ①에서 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할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위의 ①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③ 위의 ① 또는 ②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교부함으로써 회사의 보험계약 안내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7 |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전중 사고 보험금 추가지급 특별약관

1. (적용 대상)

- ① 이 특별약관은 아래 ①, ②에서 정한 해당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이하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전중 사고 보험금 추가지급 대상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해당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전중 사고 보험금 추가지급 대상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①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 ② 신주말운전중 교통상해사망
- ② 이 특별약관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보험금은 위 ①에서 정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전중 사고 보험금 추가지급 대상계약」에 한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은 위 ①에서 정한 해당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전중 사고 보험금 추가지급 대상계약」의 해지 및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2.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

이 특별약관에 대한 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 회사는 청약한 이후의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부터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전중 사고 보험금 추가지급」을 적용합니다.

3.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동차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최초 출고시 아래의 경고장치가 장착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 ① 차선이탈 경고장치 : 자동차가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주행하는 차로를 벗어나는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를 말하며, 자동차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차로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차선유지지원장치(LKAS: Lane Keeping Assist System)를 포함합니다. 단,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경우는 이 특별약관의 차선이탈경고 장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② 전방충돌 경고장치 : 전방 주행중인 차량과 운전중 차량의 거리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전방충돌경고장치(FCW : Forward Collision Warning)를 말하며, 전방의 보행자 또는 물체를 인식하여 스스로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도록 제동하는 자동비상제동장치(AEB(PED+CCR) : Autonomous Emergency Braking(보행자+후면추돌)와 AEB(CCR) : Autonomous Emergency Braking(후면추돌))를 포함합니다. 단,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경우는 이 특별약관의 전방충돌 경고장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보험금의 적용)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위 3.(첨단안전장치 장착 자동차의 정의)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용 승용자동차를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위 1.(적용 대상)의 ① 내지 ③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담보별 가입금액에 아래에서 정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가용 승용자동차 보험금 추가지급계수를 더하여 보험금에 적용합니다.

첨단안전장치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가용 승용자동차 보험금 추가지급계수
차선이탈 경고장치	4%
전방충돌 경고장치	3%



산식

보험사고시 보험가입금액
=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 (1+첨단안전장치 장착 자가용
승용자동차 보험금 추가지급계수)

② 2가지 이상의 「첨단안전장치」가 3.(첨단안전장치 장착 자동차의 정의)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추가지급율을 더하여 적용합니다.

5.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 ① 피보험자는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동차를 운전시 첨단안전장치 경고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하며,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위한 경고효과를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도록 경고등, 신호음, 진동의 크기나 주기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 위 ①의 사항 확인을 위해 회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야 합니다.

6.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사고시 차량이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된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차량번호, 차명코드가 포함된 자동차보험 가입서류, 첨단안전장치 특약을 가입한 자동차보험증서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인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8 |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1. (특약의 적용범위)

- ① 이 특약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講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이하 “전환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인용
문구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 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보험료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로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 ②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예시

〈이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1〉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2〉

전환대상계약의 보험수익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피보험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피보험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3〉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는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장애인)인 경우
 ⇒ 현재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수익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 ② 전환대상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③ 2.(제출서류) ①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3.(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④ 이 특약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 ① 이 특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1.(특약의 적용범위) ①②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①의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①에 따라 회사에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위 ①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변경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 ①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예시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이 특약을 청약하기 전(2019년 1월 15일~ 2019년 5월 31일)에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고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2019년6월1일~2019년12월31일) 납입된 보험료만 2019년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4. (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대상계약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2.(제출서류) ①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특약의 적용범위) ①②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되었으나

- 1) 2019년 12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우, 이 전환대상계약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2) 2020년 6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우,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납입된 보험료만 2020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고 해당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④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약이 부가된 이후 4.(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1.(특약의 적용범위) ①②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이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해당 전환대상계약에는 이 특약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2.(제출서류) ①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1.(특약의 적용범위) ①②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전환 취소)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준용규정)

-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대상계약 약관, 소득세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9 | 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1. (적용대상)

- ① 이 특별약관은 「손해의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이 계약의 다른 특별약관 중 갱신형 특별약관」(이하 “갱신형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적용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중 갱신형으로 보장되는 담보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통약관에서 별도로 규정된 내용을 따릅니다.



용어

풀이

갱신형

일정 기간을 주기로 보험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보험계약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보장내용별로 갱신 주기를 기재하여 드립니다.

예시) 3년/10년/20년/30년만기 자동갱신

2. (보험기간 및 자동갱신)

- ①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각각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② 갱신형 특별약관이 아래 ① 내지 ③의 조건을 충족하고 그 갱신형 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중전의 갱신형 특별약

관(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니다)과 동일한 내용으로 「그 갱신형 특별약관의 만기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① 「갱신될 갱신형 특별약관」(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 ②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③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③ 위 ①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잔여보험기간이 위 ①의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보장기간으로 하여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담보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보장기간으로 하여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⑤ 회사는 위 ②, ③ 및 ④에 의하여 갱신형 특별약관이 갱신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3. (자동갱신 적용)

- ①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에 대하여 가입시점의 약관을 적용하며(단, 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②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해당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계약 보험료를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합니다.

4.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28.(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자에게 최고(독촉)하고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갱신계약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은 해지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갱신형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0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약관

10-1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약관

1. (특별약관의 적용범위 및 효력)

이 특별약관은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DB손해보험(주)(구. 동부화재해상보험(주))의 장기보험(이하 “당사”라 합니다)에 아래 열거한 특별약관(이하 “해당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중 한 가지 이상을 가입한 계약 중 2.(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해당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추후 “해당 특별약관”의 대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 당사에 다수의 “해당 특별약관”(추가된 “해당 특별약관” 포함)을 가입하여 그 중 두 가지 이상의 “해당 특별약관”(추가된 “해당 특별약관” 포함)이 유효한 경우에는 한 개의 “해당 특별약관”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실손)(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실손)(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실손)(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실손)(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실손)(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실손)(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Ⅷ(실손)(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자가용운전자 중상해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자가용운전자 중상해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실손)(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자가용운전자 중상해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실손)(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자가용운전자 중상해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실손)(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자가용운전자 중상해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실손)(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자가용운전자 중상해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실손)(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자가용운전자 중상해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실손)(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통합형Ⅰ(실손)(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통합형Ⅱ(실손)(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통합형Ⅲ(실손)(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통합형(2억원한도)(실손)(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내 자동차사고”로 「어린이」(13세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자녀는 피해자에서 제외합니다.



형사합의금

용어 풀이 형사처벌의 감경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피해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16829호, 2019.12.24. 일부개정)의 시행일(2020.3.25.)」 이후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내 자동차사고”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③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④ 위 ① 및 ③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 ⑤ 위 ①에서 피해자의 진단기간은 추가 진단기간을 합산한 최종 진단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 ① 2.(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당사에서 2.(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별도의 특별약관(제도성 특별약관은 제외, 이하 “특정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특정 특별약관”에서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특별약관”의 보상한도를 초과한 형사합의금에 한하여 500만원한도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② 2.(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 자동차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2」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참조) 11호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④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

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1호 내지 제12호)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유턴·후진 위반
3.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 위반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③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위 ㉠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④ 다음 ① 및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2.(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

- 로 장애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 ②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5. 2.(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 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④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 위 4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애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 ③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④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7.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공탁금액의 50%를 위 1의 금액의 50%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잔여 공탁금은 위 1의 금액에서 가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추가로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가 향후 무죄 선고 등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7의 가지급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9. 피보험자가 위 7의 가지급 보험금 수령 후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 공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7에서 지급한 가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보험금의 비례분담)

1. 2.(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및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①에 따른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2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

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2.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frac{\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times \text{형사합의금}$$

5.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0-2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약관

1. (특별약관의 적용범위 및 효력)

이 특별약관은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DB손해보험(주)(구. 동부화재해상보험(주))의 장기보험(이하 “당사”라 합니다)에 아래 열거한 특별약관(이하 “해당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중 한 가지 이상을 가입한 계약 중 2.(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해당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추후 “해당 특별약관”의 대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 당사에 다수의 “해당 특별약관”(추가된 “해당 특별약관” 포함)을 가입하여 그 중 두 가지 이상의 “해당 특별약관”(추가된 “해당 특별약관” 포함)이 유효한 경우에는 한 개의 “해당 특별약관”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실손)(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실손)(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실손)(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V(실손)(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VI(실손)(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VII(실손)(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VIII(실손)(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영업용운전자 중상해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영업용운전자 중상해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II(실손)(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영업용운전자 중상해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III(실손)(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영업용운전자 중상해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IV(실손)(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영업용운전자 중상해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V(실손)(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영업용운전자 중상해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VI(실손)(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영업용운전자 중상해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VII(실손)(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통합형 I(실손)(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통합형 II(실손)(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통합형 III(실손)(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통합형(2억원한도)(실손)(비갱신형/갱신형/확정갱신형) 특별약관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내 자동차사고”로 「어린이」(13세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자녀는 피해자에서 제외합니다.



형사합의금

용어
풀이

형사처벌의 감경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피해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16829호, 2019.12.24. 일부개정)의 시행일(2020.3.25.) 이후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내 자동차사고”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③ 위 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④ 위 ① 및 ③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 ⑤ 위 ①에서 피해자의 진단기간은 추가 진단기간을 합산한 최종 진단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 ① 2.(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500만원을 한도

로 합니다. (단, 당사에서 2.(보험금의 지급사유) ①를 포함하는 별도의 특별약관(제도성 특별약관은 제외, 이하 “특정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특정 특별약관”에서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특별약관”의 보상한도를 초과한 형사합의금에 한하여 500만원한도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② 2.(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 자동차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2)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참조 11호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④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1호 내지 제12호)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유턴·후진 위반
3.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 위반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 ③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위 ①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④ 다음 ① 및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2.(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①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 ②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 ⑤ 2.(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 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④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⑥ 위 ④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 ③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④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⑦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도 회사는 공탁금액의 50%를 위 ①의 금액의 50%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잔여 공탁금은 위 ①의 금액에서 가지급한 보험

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추가로 보상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향후 무죄 선고 등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⑦의 가지급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위 ⑦의 가지급 보험금 수령 후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 공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⑦에서 지급한 가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보험금의 비례분담)

- ① 2.(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및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①에 따른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②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text{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frac{\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times \text{형사합의금}$$

5.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1 | 장기보장성보험 적립부분 만기유지 특별약관

1. (특별약관의 체결 및 적용계약)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보통약관을 말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사항이 모두 충족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만기유지환급금을 적용합니다.
 - ① 보험계약이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3호의 ‘순수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인 경우
 - ② 계약체결시점에 산출한 보험계약의 “제1회 적립보험료로 산출한 예상만기환급금”이 “총납입예상적립보험료”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 ③ 보험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입이 완료되고 보험기간 종료시점까지 유지된 보험계약
 - ③ 위②,②의 “제1회 적립보험료로 산출한 예상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제1회 적립보험료로 산출한 적립부분 순보험료(제1회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보험료예상납입해당일에 이 보험계약의 보장부분 적용이율(단, 금리확정형인 경우 적립부분 적용이율)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④ 위②,②의 “총납입예상적립보험료”라 함은 제1회 적립보험료 기준으로 적립보험료 납입기간과 납입주기를 곱한 적립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 ⑤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에서 “적립보험료”는 태아보장기간이 끝난 이후의 적립보험료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보험료예상납입해당일 계산 예시

‘보험기간시작일’ 및 ‘납입주기에 따른 보험기간시작일과 동일한 일’을 말하며, 해당년월에 보험료예상납입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보험료예상납입해당일로 합니다.

예시) 납입주기 : 월납
 보험기간시작일 : 2022년 1월 31일
 ⇒ 2회 보험료예상납입해당일 : 2022년 2월 28일

총납입예상적립보험료

예시) 100세만기 20년납, 납입주기 월납, 적립보험료 10,000원
 ⇒ $20 \times 12 \times 10,000 = 2,400,000$ 원

2. (“만기유지환급금”의 정의 및 지급)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만기유지환급금”이라 함은 “총납입적립보험료”에 1원을 더한 금액에서 “적용이율로 부리한 예상만기환급금”과 “공시이율로 부리한 예상만기환급금”

- 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③ 위①의 “총납입적립보험료”라 함은 납입기간 동안 납입한 적립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 ④ 위①의 “적용이율로 부리한 예상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보험료예상납입해당일에 보장부분 적용이율(단, 금리확정형인 경우 적립부분 적용이율)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⑤ 위①의 “공시이율로 부리한 예상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보험료예상납입해당일에 공시이율(단, 금리확정형인 경우 적립부분 적용이율)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⑥ 만기유지환급금이 0원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만기유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만기유지환급금이 0원보다 큰 경우 일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계산한 만기유지환급금을 이 보험계약의 만기환급금에 더하여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만기유지환급금 지급 예시

예시1) “총납입예상적립보험료” 10,100원,
 “제1회 적립보험료로 산출한 예상만기환급금” 10,110원
 - 만기환급금 금액과 관계 없이 만기유지환급금 적용계약 아님
 : (총납입예상적립보험료 < “제1회 적립보험료로 산출한 예상만기환급금”)

※ 예시2)내지 예시4)는 만기유지환급금 적용계약 가정
 예시2) “총납입적립보험료” 10,100원, “적용이율로 부리한 예상만기환급금” 10,093원, “공시이율로 부리한 예상만기환급금” 10,090원 가정할 때
 - 만기유지환급금 : $(10,100\text{원} + 1\text{원}) - \text{Max}(10,093\text{원}, 10,090\text{원}) = 8\text{원}$
 → 만기유지환급금 = 10원(일의자리 올림)

예시3) “총납입적립보험료” 10,100원, “적용이율로 부리한 예상만기환급금” 10,093원, “공시이율로 부리한 예상만기환급금” 10,095원 가정할 때
 - 만기유지환급금 : $(10,100\text{원} + 1\text{원}) - \text{Max}(10,093\text{원}, 10,095\text{원}) = 6\text{원}$
 → 만기유지환급금 = 10원(일의자리 올림)

예시4) “총납입적립보험료” 10,100원, “적용이율로 부리한 예상만기환급금” 10,093원, “공시이율로 부리한 예상만기환급금” 10,105원 가정할 때
 - 만기유지환급금 : (10,100원+1원) - Max(10,093원, 10,105원) = -4원
 → 0원
 → 만기유지환급금 = 0

- ⑥ 위 ① 내지 ⑤에도 불구하고 만기유지환급금은 “총납입평균적립보험료”에 1원을 더한 금액에서 “적용이율로 부리한 평균적립 만기환급금”을 차감한 금액(0원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0원으로 하며, 0원보다 큰 경우 일의 자리에서 올림)을 한도로 합니다.
- ⑦ 위⑥의 “총납입평균적립보험료”라 함은 납입기간 동안 납입한 “평균적립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 ⑧ 위⑦의 “평균적립보험료”라 함은 납입방법에 따른 보험가입 후 1년간 납입한 적립보험료의 평균보험료를 말합니다.
- ⑨ 위⑥의 “적용이율로 부리한 평균적립 만기환급금”이라 함은 평균적립보험료로 산출한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예상납입해당일에 이 계약의 보장부분 적용이율(단, 금리확정형인 경우 적립부분 적용이율)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금액을 말합니다.

3. (만기유지환급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만기유지환급금은 보험계약 종료시점에 1.(특별약관의 체결 및 적용계약)의 ②에 해당되는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보험계약 종료시점까지 총납입적립보험료가 완납되지 않은 경우 만기유지환급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1.(특별약관의 체결 및 적용계약)의 ②에 해당되는 유효한 계약이 보험기간 중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납입한 적립보험료에 한하여 2.(“만기유지환급금”의 정의 및 지급)을 따릅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1】 장애분류표

① 총칙

1. 장애의 정의

- 1) '장애'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애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애지급률의 20%를 장애지급률로 한다.
- 5) 위 4)에 따라 장애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 1) 하나의 장애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애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애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3) 하나의 장애가 다른 장애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애로 둘 이상의 파생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애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애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애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5) 장애진단서에는 ① 장애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애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애의 경우 ① 개호(장애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장애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15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애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를 남긴 때	10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애를 남긴 때	5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시력장애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 주1) 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 5) 안구(눈동자) 운동장애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애 정도를 평가한다.
 -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애' 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경우
 -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해진단시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8) '뚜렷한 시야 장애'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시야장애 평가 시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물(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애

를 포함하여 장애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애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45
3) 한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15
5) 한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6) 한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애를 남긴 때	10

나. 장애판정기준

- 1) 청력장애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 10 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애 상태를 재평가 하여야 한다.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애를 평가한다.

다. 깃바퀴의 결손

- 1) '깃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깃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한다.
- 2) 깃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애로만 평가한다.

라. 평형기능의 장애

- 1) '평형기능에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애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항목	내용	점수
검사소견	양측 전정기능 소실	14
	양측 전정기능 감소	10
	일측 전정기능 소실	4
치료병력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6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4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2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0
기능장애소견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다가 쓰러지는 경우	20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12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8

- 2) 평형기능의 장애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애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 가) 뇌영상검사(CT, MRI)
 -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

3. 코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애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소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애의 지급률과 추상장애의 지급률을 합산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80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60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40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나. 장애의 평가기준

- 1) 씹어먹는 기능의 장애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구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운동 제한이나 저작운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뚜렷한 개구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1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이상인 경우
 - 라)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약간의 개구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밥,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우
 -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2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이상인 경우
 - 라)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시 간헐적으로 흡인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 5) 개구장애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대 개구상태에서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가운데 앞니(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가능한 인접 치아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경우
 - 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

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미만인 경우
-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미만인 경우
 -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 10) 말하는 기능의 장애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 11)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애(실어증, 구음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애는 신경계정신행동 장애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하나만 인정한다.
- 12)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한다.
- 13)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 레진, 인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유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으로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애로 평가한다.
-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의 파손은 후유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추상(추한 모습)장애'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4) 다발성 반흔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 라) 코의 1/2 이상 결손
- 2) 머리
 -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나)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 라) 코의 1/4 이상 결손
- 2) 머리
 - 가)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 나)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cm(1/2 크기는 40cm², 1/4 크기는 20cm²), 6~11세의 경우는 6×8cm(1/2 크기는 24cm², 1/4 크기는 12cm²), 6세 미만의 경우는 4×6cm(1/2 크기는 12cm², 1/4 크기는 6cm²)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애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애	20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애	15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애	10

나. 장애판정기준

-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애로 평가한다.
- 2) 척추(등뼈)의 기형장애는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나) 척추(등뼈)의 기형장애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인접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척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 다)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남 후에 평가한다.
-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애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6) 심한 운동장애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된 상태
- 7) 뚜렷한 운동장애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된 상태
다)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 개 대후두공의 기저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의 거리(BDI :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라)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과 치상돌기의 전면과의 거리(ADI: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 8) 약간의 운동장애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된 상태
-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

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
-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애'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애가 있는 경우
-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애'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안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애'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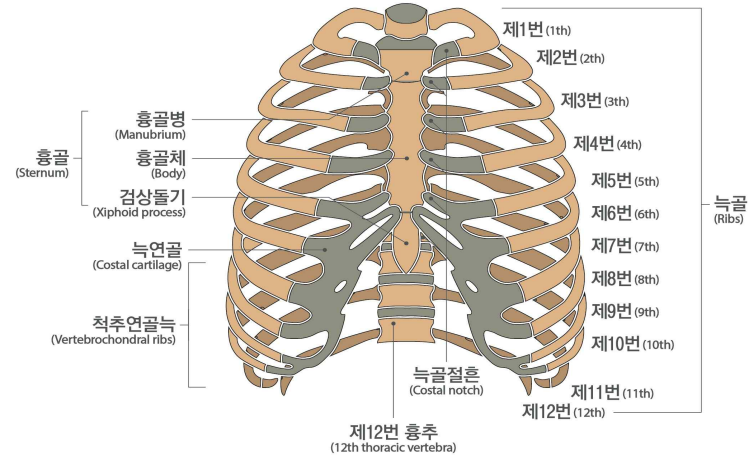
7. 체간골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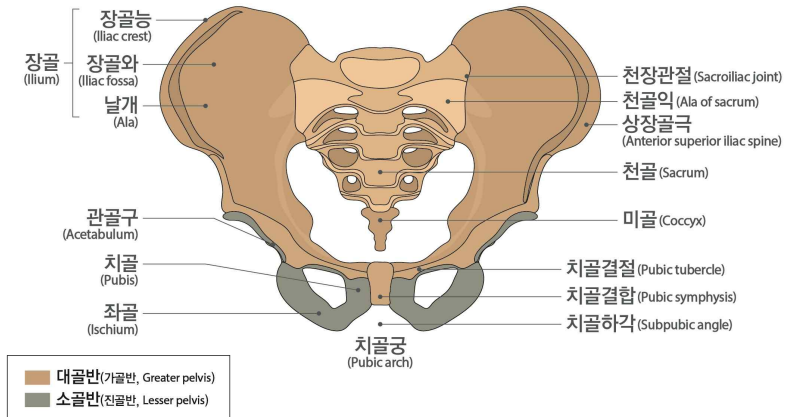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나. 장애판정기준

-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된 각(角) 변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
- 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4)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취급한다. 다발성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角)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각(角)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가슴뼈 >



< 골반뼈 >

8. 팔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20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애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애를 평가한다.
-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애(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장애로 평가하지 않는다.
-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다.
-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로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팔의 관절기능장애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애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관절기능장애를 표시할 경우 장애부위의 장애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애상태를 명확히 한다. 단, 관절기능장애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완전 강직(관절굳음)
 -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애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애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9. 다리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20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30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5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애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애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애(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장애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장애 평가는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애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 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나) 관절기능장애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다)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라)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 11) 동요장애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 12)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5)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애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애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10. 손가락의 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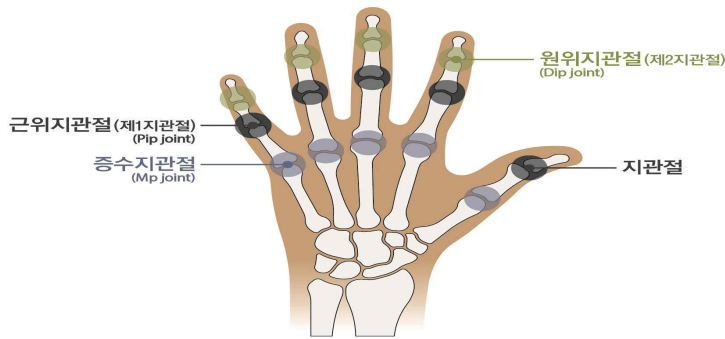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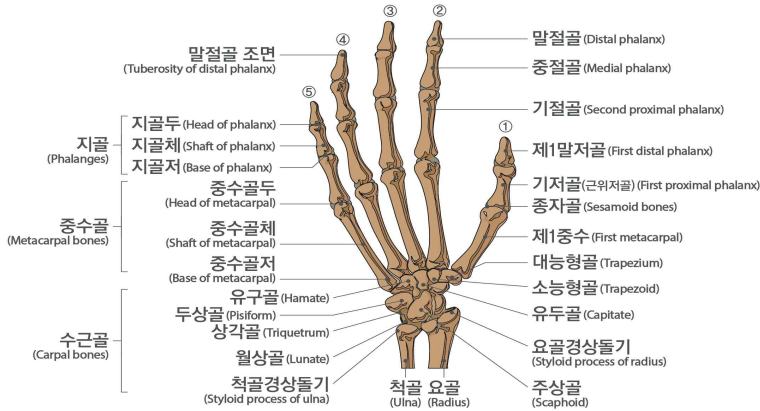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한손의 5개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10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30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5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애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애(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장애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 7) ‘손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8) 한 손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애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애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손가락 >

11. 발가락의 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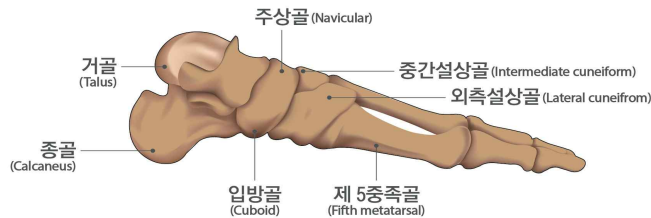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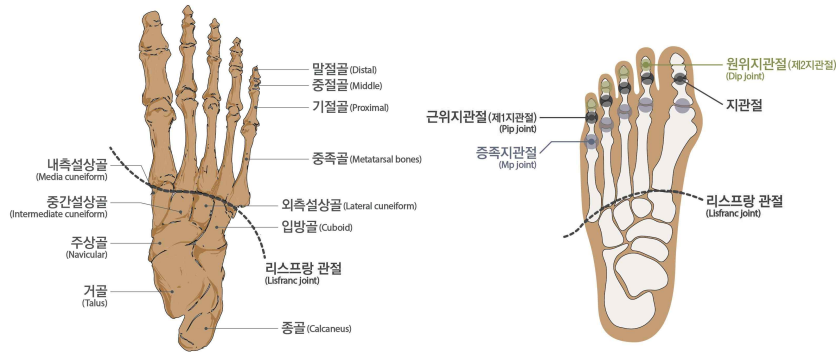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8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3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애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애(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장애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4)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5)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 6) '발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7) 한 발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애평가기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기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발가락 >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100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75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50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30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5

나. 장애의 판정기준

-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심장 이식을 한 경우를 말한다.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소장을 3/4 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상태
 - 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 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애로 영구적으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우
 - 요도괄약근 등의 기능장애로 영구적으로 인공요도괄약근을 설치한 경우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

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 나)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다)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기 기능(1초간 노력성 호기량, 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
- 6) 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애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애를 말하며, 노화에 의한 기능장애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기를 절제, 적출한 경우는 장애로 보지 않는다.
- 7) 상기 흉복부 및 비뇨생식기계 장애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애상태에 대해서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을 때 ADLs 장애 지급률을 준용한다.
- 8) 상기 장애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애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애를 남긴 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75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50
5)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25
6)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애를 남긴 때	10
7)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8)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9)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10)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11)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2)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3)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나. 장애판정기준

1) 신경계

- 가) “신경계에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 나) 위 가)의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 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다.
- 다) 신경계의 장애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애(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애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라)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애 평가를 유보한다.
- 마) 장애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 가) 정신행동장애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 나) 정신행동장애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와의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다)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라) ‘정신행동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4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마)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주)} 상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5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주) 능력장애측정기준의 항목 : ㉠ 적절한 음식섭취, ㉡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㉞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 바)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6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사)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7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 치료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 차) 정신행동장애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한다.
- 카) 정신행동장애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한다. 다만,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은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 타) 각종 기질성 정신장애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 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증, 조울증(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치매

- 가) "치매"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 나) 치매의 장애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 등)를 기초로 진단되어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 다) 치매의 장애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간질)

- 가) "뇌전증(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 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

식장애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 나)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간질제(항전간제)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간질을 말하며,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라)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마)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바)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 사)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애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강해평가표

유형	제한정도	지급률(%)
이동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	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20
	-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10
	-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20
음식물 섭취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	5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	20
배변·배뇨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15

유형	제한정도	지급률(%)
	-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 배변 상태	10
	-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	
목욕	-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
	-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옷입고 벗기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	5
	- 상·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별표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 (차마의 통행)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제1항, 제22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23조 (끼어들기의 금지)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 (갓길 통행금지 등)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 (철길 건널목의 통과)에 따른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 (차마의 통행)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歩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차마의 통행)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상기 외 법령의 변경으로 추가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3】 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중대한 특정상해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분	대상상병	분류번호
뇌손상	두개내 손상	S06
내장손상	심장의 손상	S26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 기관의 손상	S27
	복강내 기관의 손상	S36
	비뇨 및 골반 기관의 손상	S37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4-1】 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치아파절제외)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상병	분류번호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치아의 파절 제외)	S02 (S02.5는 제외)
2. 머리의 으깬손상	S07
3.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S09.9
4. 목의 골절	S12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2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2
8. 아래팔의 골절	S52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10. 대퇴골의 골절	S72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13. 여러 신체 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08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17.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골절	T14.2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4-2】 부목치료 대상 수가코드

약관에 규정하는 부목(Splint Cast)치료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내용	수가코드
부목-장상지[상완으로부터 수부까지]	T6151
부목-단상지[전완으로부터 수부까지]	T6152
부목-장하지[대퇴로부터 족부까지]	T6153
부목-단상지[하퇴로부터 족부까지]	T6154
부목-수지부	T6155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수술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수가코드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4-3】 골절철심제거술 대상 수가코드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철심제거술로 분류되는 치료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9장(처치 및 수술료)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내용	수가코드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주 : 골에 삽입한 금속핀이나 금속정 등을 간단히 제거한 경우 근막절개 하에 실시한 경우8)에는 770.08점을 산정하고, 근막절개 없이 실시한 경우9)에는 501.67점을 산정한다.	N0978 N0979
가. 골반골, 대퇴골	N0972
나. 상완골, 견갑골	N0973
다. 전완골, 하퇴골 (1) 요골과 척골중하나, 경골과 비골중 하나 (2) 요척골 동시, 경비골 동시	N0977 N0974
라. 쇄골, 슬개골, 수근골, 족근골	N0975
마. 중수골, 중족골, 지골	N0976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의료행위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수가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5】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아래의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되며 법령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부상 등급	상해내용
1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텐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척추(등골뼈)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화상·좌창·과사상처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심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척추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부상 등급	상해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목뼈 골절(치통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목뼈고정기(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0.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넓적다리뼈 윗목부 분쇄 골절, 돌기 아랫부분 분쇄 골절, 관절용기 분쇄 골절, 정강이뼈(경골) 관절용기 분쇄 골절 또는 정강이뼈 먼쪽 관절 내 분쇄 골절 12.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팔다리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외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 8. 척추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어깨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부상 등급	상해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손목 부위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 골절(넓적다리뼈머리 골절은 제외한다) 14.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무릎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발목관절의 손상으로 발목뼈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위팔뼈목 골절 9. 위팔뼈 몸통 분쇄성 골절 10. 위팔뼈 위관절용기 또는 위팔뼈 먼쪽 부위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작은 머리 골절에 적용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노뼈 먼쪽 부위 골절과 자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12. 자뼈 몸쪽 부위 골절과 노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3.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부상 등급	상해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4. 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 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손목뼈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엉치뼈 골절 및 꼬리뼈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9. 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무릎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목말뼈 또는 발꿈치뼈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팔다리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상처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 퍼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겹보임[복시(複視)]으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몸통 또는 하부 몸통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위팔뼈 몸통 골절 7.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노뼈 붓돌기 골절 10. 노뼈 먼쪽부위 관절 내 골절

부상 등급	상해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손목 손바뼈 골절 12. 손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5. 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넓적다리뼈 또는 몸쪽 정강이뼈의 견열골절 18.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무릎뼈 골절 21. 발목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발목뼈 골절(목말뼈 및 발꿈치뼈는 제외한다) 24. 발목발허리(리스프랑)관절 손상 25. 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6개 이상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팔다리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심장 타박

부상 등급	상해내용
	5. 폐타박상(한쪽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혈액가슴증) 또는 기흉(공기가슴증)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어깨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손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어깨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위팔뼈 대결절 견열 골절 13. 위팔뼈 먼쪽 부위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노뼈 몸통 또는 먼쪽 부위 관절외 골절 18. 노뼈목 골절 19. 자뼈 팔꿈치머리 부위 골절 20. 자뼈 몸통 골절(몸쪽 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손목손허리뼈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무릎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무릎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반달모양)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발목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먼쪽 정강이뼈·종아리뼈 분리 28. 2개 이하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0.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3개 이상 5개 이하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부상 등급	상해내용
7급	1. 다발성 얼굴 머리뼈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얼굴 머리뼈 골절 2. 겹보임을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빗장뼈) 골절 6. 어깨뼈(어깨뼈가시, 어깨뼈몸통, 가슴우리 탈구, 어깨뼈목, 봉우리돌기 및 부리돌기 포함) 골절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안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자뼈 붓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손배뼈 외 손목뼈 골절 15. 손목 부위 손배뼈·반달뼈 사이 인대 파열 16. 손목손허리뼈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손허리뼈 골절 18. 손허리손가락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종아리뼈 몸통 골절 또는 뼈머리 골절 23.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발목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부상 등급	상해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턱뼈, 아래턱뼈, 이틀뼈 등의 얼굴 머리뼈 골절 외상성 시신경병증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복합 고막 파열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개 이상의 다발성 갈비뼈 골절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가로돌기) 또는 후궁 골절 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위팔뼈 위관절염기 또는 위팔뼈 먼쪽 부위 관절 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작은 머리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손허리뼈 골절 손가락뼈의 몸쪽 손가락뼈 사이 또는 먼쪽 손가락뼈 사이 골절 탈구 다발성 손가락뼈 골절 무지 손허리손가락관절 측부인대 파열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엉치뼈 골절 및 꼬리뼈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무릎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손발가락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팔다리의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팔다리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팔다리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팔다리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개 이하의 단순 갈비뼈 골절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부상 등급	상해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복장뼈(흉골) 골절 추간판 탈출증 흉쇄관절 탈구 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손가락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손가락관절 탈구 무릎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개 이하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손가락·발가락 평근힘줄 1개의 파열로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팔다리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3cm 이상 얼굴 부위 찢김상처(열상) 안검과 누소관 찢김상처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각막, 공막 등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어깨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외상성 상부관절외손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손발가락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다리 3대 관절의 혈관절증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뇌진탕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손가락뼈 골절 또는 손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부상 등급	상해내용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얼굴 부위 찢김상처 3. 척추 염좌 4.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5. 팔다리의 찢김상처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팔다리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1. 결막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손발가락 관절 염좌 3. 팔다리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영역별 세부지침

영역	내용
공통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에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한다. 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 피판술이나 피부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얼굴 부위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손 부위, 발 부위에 국한된 손상에 대해서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머리	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머리뼈안의 출혈(경막상·하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혈액낭종, 거미막 낭종, 머리뼈 골절(머리뼈 기저부 골절을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 타박상을 말한다. 나. 4급 이하(4급에서 14급까지를 말한다)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점 이상 12점 이하, 경도는 13점 이상 15점 이하를 말한다. 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ma)는 고도,

영역	내용
	<p>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본다.</p> <p>사. 두피 타박상, 찢김상처(열창)는 14급으로 본다.</p> <p>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용한다.</p> <p>자.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부상 및 질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에 적용한다.</p>
흉·복부	<p>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h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장막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의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p>
척추	<p>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p> <p>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p> <p>다. 척추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로 본다.</p> <p>라. 마미증후군은 척추손상으로 본다.</p>
팔·다리	<p>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팔다리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p> <p>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p> <p>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p> <p>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p> <p>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p>

영역	내용
	<p>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p> <p>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p> <p>아. 관절 분리절단의 경우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p> <p>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으로 본다.</p> <p>차.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12급)로 본다.</p> <p>카. 팔다리 관절의 인공관절 치환 후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p> <p>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팔다리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p> <p>파. 수술을 시행한 팔다리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p> <p>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p> <p>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선모양)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p> <p>너. 손발가락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p> <p>더. "근육(근), 힘줄(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p> <p>러. 팔다리뼈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팔다리뼈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로 본다. 다만, 개방정복(피부와 근육 절개 후 골절된 뼈를 바로잡는 시술을 말한다)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p> <p>머. 팔다리뼈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p> <p>버.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p> <p>서.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개 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다.</p>

영역	내용
팔	<p>가.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p> <p>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p> <p>다. 6급의 어깨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동시 확인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p> <p>라.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p>
다리	<p>가. 양측 두덩뼈가지(치골지) 골절, 두덩뼈(치골) 위아래 가지 골절 등에 서는 병급하지 않는다.</p> <p>나. 엉치뼈 골절, 꼬리뼈 골절은 골반뼈 골절로 본다.</p> <p>다. 무릎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p> <p>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발목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으로 본다.</p> <p>마. 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종아리뼈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으로 본다.</p> <p>바. 정강이뼈 후과의 단독 골절 시 발목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본다.</p> <p>사. 엉덩관절이란 넓적다리뼈머리와 골반뼈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p> <p>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고리를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p> <p>자. "다리의 3대 관절"이란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p> <p>차. 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완전파열(또는 이에 준하는 파열)로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한 파열에 적용한다.</p> <p>카.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두덩뼈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p>

【별표6】 5대골절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5대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상병	분류번호
1. 머리의 으깬손상	S07
2. 목의 골절	S12
3.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S22.0, S22.1
4.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5. 대퇴골의 골절	S72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7】 화상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화상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상병	분류번호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T20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	T21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T22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T23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T24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T25
7.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T26
8. 기도의 화상 및 부식	T27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T28
10.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T29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T30
12. 포함된 신체 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T31
13. 포함된 신체 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T32
14. 방사선에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장애	L59

-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분류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1. 응급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뇌척수막염,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증상
-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라. 출혈 : 혈관손상
-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로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 관련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9】 안면·두개골 특정골절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안면·두개골 특정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상병	분류번호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치아의 파절 제외)	S02 (S02.5는 제외)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0】 뇌·내장손상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내장손상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분	대상상병	분류번호
뇌손상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1. 두개원개의 골절	S02.0
	2. 두개저의 골절	S02.1
	3. 안와 바닥의 골절	S02.3
	4.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S02.7
	5. 기타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2.8
	6.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S02.9
	[두개내 손상]	
	1. 미만성 뇌 손상	S06.2
	2. 경막외출혈	S06.4
	3. 외상성 경막하 출혈	S06.5
	4.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S06.6
	5. 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두개내 손상	S06.7
	6. 기타 두개내 손상	S06.8
7. 상세불명의 두개내 손상	S06.9	
[머리의 으깬손상]		
1. 두개골의 으깬손상	S07.1	
2. 머리의 기타 부분의 으깬손상	S07.8	
[머리부분의 외상성 절단]		
1. 머리의 기타 부분의 외상성 절단	S08.8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1. 달리 분류되지 않은 머리의 혈관 손상	S09.0	
2. 머리의 다발손상	S09.7	

구분	대상상병	분류번호
내장손상	[심장의 손상]	
	1.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	S26.0
	2. 심장의 기타 손상	S26.8
	3. 심장의 상세불명 손상	S26.9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 기관의 손상]	
	1. 폐의 기타 손상	S27.3
	2. 기관지의 손상	S27.4
	3. 흉부기관의 손상	S27.5
	4. 흉막의 손상	S27.6
	5. 흉곽내 기관의 다발손상	S27.7
	6. 기타 명시된 흉곽내 기관의 손상	S27.8
	7. 상세불명의 흉곽내 기관의 손상	S27.9
	[흉부의 으깬손상 및 흉부 부분의 외상성 절단]	S28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29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혈관의 손상]	S35
	[복강내 기관의 손상]	
	1. 비장의 손상	S36.0
	2. 간 또는 담낭의 손상	S36.1
	3. 췌장의 손상	S36.2
	4. 위의 손상	S36.3
	5. 소장외의 손상	S36.4
	6. 결장의 손상	S36.5
	7. 직장의 손상	S36.6
	8. 다발성 복강내 기관의 손상	S36.7
	9. 기타 복강내 기관의 손상	S36.8
	[비뇨 및 골반기관의 손상]	
	1. 신장의 손상	S37.0
2. 요관의 손상	S37.1	
3. 방광의 손상	S37.2	
4. 요도의 손상	S37.3	

구분	대상상병	분류번호
	5. 난소의 손상	S37.4
	6. 난관의 손상	S37.5
	7. 자궁의 손상	S37.6
	8. 다발성 골반기관의 손상	S37.7
	9. 기타 골반기관의 손상	S37.8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으깬손상 및 외상성 절단]	S38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1. 골반기관을 동반한 복강내 기관의 손상	S39.6

-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위의 분류표에서 3단위 항목표로 표시된 분류번호에 대해서는 3단위 항목표에 포함된 4단위 항목의 상병을 모두 보상하며, 4단위 항목표로 표시된 분류번호는 그 분류번호에 해당되는 상병만을 보상합니다.
-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1】 탈구, 관절 및 인접근육의 염좌 및 과긴장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탈구, 관절 및 인접근육의 염좌 및 과긴장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상병	분류번호
머리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03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13
흉곽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23
흉부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29.0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33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43
팔꿈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53
손목 및 손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63
고관절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73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76.1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83
아킬레스힘줄의 손상	S86.0
발목 및 발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93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탈구, 염좌 및 긴장	T03
몸통의 상세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T09.2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상세불명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T11.2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상세불명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T13.2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T14.3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T14.6
외상성 근육허혈	T79.6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2】 골절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상병	분류번호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2
2. 머리의 으깬손상	S07
3.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S09.9
4. 목의 골절	S12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2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2
8. 아래팔의 골절	S52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10. 대퇴골의 골절	S72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13. 여러 신체 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08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17.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골절	T14.2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3】 1-5종수술 분류표

1. 일반적인 상해 및 질병 치료목적의 수술

구분	수술명	수술 종류
피부, 유방의 수술	1. 피부이식수술(25cm ² 이상인 경우, 피판수술(피판분리수술, Z flap, W flap 제외)	3
	2. 피부이식수술(25cm ² 미만인 경우)	1
	3. 유방절단수술(切斷術, Mastectomy)	3
	4. 기타 유방수술[농양(고름집)의 절개 및 배액은 제외]	1
근골(筋骨)의 수술 [발정술(拔釘術)등 내고정물 제거술은 제외함] [치(齒)·치은·치근(齒根)·치조골(齒槽骨)의 처치, 임플란트(Implant) 등 치과 처치 및 수술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	5. 골(骨) 이식수술	2
	6. 두개골(頭蓋骨, cranium) 관혈수술 [비골(鼻骨) · 비중격(鼻中隔) · 상악골(上顎骨) · 하악골(下顎骨) · 악관절(顎關節)은 제외]	3
	7. 비골(鼻骨) 수술 [비중격 만곡증(彎曲症)수술은 제외]	1
	8. 상악골(上顎骨), 하악골(下顎骨), 악관절(顎關節) 관혈수술	2
	9. 척추골(脊椎骨), 골반골(骨盤骨), 추간판 관혈수술	3
	10. 쇄골(鎖骨), 견갑골(肩胛骨), 늑골(肋骨), 흉골(胸骨) 관혈수술	2
	11. 사지(四肢) 절단수술 [다지증에 대한 절단수술은 제외]	-
	11-1. 손가락, 발가락 절단수술 [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 것]	1
	11-2. 기타 사지(四肢)절단수술	3
	12. 절단(切斷)된 사지(四肢)재접합수술(再接合手術) [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 것]	3
	13. 사지골(四肢骨),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
13-1. 손가락, 발가락의 골 및 관절 관혈수술	1	
13-2. 기타 사지골(四肢骨),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2	
14. 근(筋), 건(腱), 인대(靭帶), 연골(軟骨) 관혈수술	1	

구분	수술명	수술 종류
호흡기계, 흉부(胸部)의 수술	15. 만성부비강염(慢性副鼻腔炎) 근본수술(根本手術)	1
	16. 후두(喉頭) 관혈적 절제수술	3
	17.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수술	1
	18. 기관(氣管), 기관지(氣管支), 폐(肺), 흉막(胸膜) 관혈수술 [개흉술(開胸術, Thoracotomy)을 수반하는 것]	4
	19. 폐장(肺臟) 이식수술[수용자(受容者)에 한함]	5
20. 흉곽(胸郭) 형성수술(形成手術)	3	
21. 종격종양(縱隔腫瘍), 흉선 절제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4	
순환기계, 비장(脾腸)의 수술	22. 혈관관혈수술[하지정맥류 및 손가락·발가락은 제외]	3
	23. 하지 정맥류(靜脈瘤) 근본수술 및 손가락·발가락 혈관관혈수술	1
	24. 대동맥(大動脈), 대정맥(大靜脈), 폐동맥(肺動脈), 관동맥(冠動脈) 관혈수술[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5
	25. 심장막(心臟膜)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4
	26. 심장내(心臟內)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5
	27. 심장 이식수술 [수용자에 한함]	5
	28. 체내용(體內用) 인공심박조율기(人工心搏調律機, Artificial pacemaker) 매입술(埋入術)	3
	29. 비장(脾腸) 절제수술	3
	30. 이하선 절제수술	3
소화기계의 수술	31-1. 악하선, 설하선 절제수술	2
	31-2. 기타 타액선 절제수술(타석제거는 제외)	1
	32. 식도(食道) 이단술(離斷術) [개흉술, 개복술(開腹術, Laparotomy)을 수반하는 것]	4
	33. 위 절제수술(胃 切除手術, Gastrectomy)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4
	34. 기타의 위·식도 관혈수술 [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3
	35. 간장(肝臟), 췌장(膵臟)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4
	36. 담낭(膽囊), 담도(膽道)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3

구분	수술명	수술 종류
소화기계의 수술	37. 간장 이식수술 [수용자에 한함,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5
	38. 췌장 이식수술 [개복술을 수반해야 하며 수용자에 한함] (단, 랑게르한스 소도(Islet of Langerhans)세포 이식수술은 제외)	5
	39. 탈장(脫腸) 근본수술	1
	40. 전신성 복막염(全身性腹膜炎, Generalized peritonitis) 수술	2
	41. 충수(蟲垂)절제술(충수염관련 충수주위 농양수술, 국한성 복막염 수술 포함), 맹장봉축술(盲腸縫縮術)	2
	42. 직장탈(直腸脫) 근본수술	1
	43. 소장(小腸), 결장(結腸), 직장(直腸), 장간막(腸間膜)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단, 직장탈근본수술은 제외)	4
비뇨기계, 생식기계의 수술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제외함]	44. 신장(腎臟), 방광(膀胱), 신우(腎盂), 요관(尿管)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경요도적 조작 및 방광류·요실금 교정수술은 제외]	4
	45. 요도 관혈수술 [경요도적 조작은 제외]	2
	46. 방광류 교정수술	1
	47. 신장(腎臟) 이식수술(移植手術) [수용자에 한함]	5
	48. 음경(陰莖) 절단수술 [포경수술 및 음경이물제거수술은 제외]	3
	49. 고환(辜丸), 부고환(副辜丸), 정관(精管), 정색(精索), 정낭(精囊)관혈수술, 전립선(前立腺)관혈수술	2
	50. 음낭관혈수술	1
	51. 자궁, 난소, 난관 관혈수술 [단, 제왕절개만출술 및 경질적인 조작은 제외]	2
52. 경질적 자궁, 난소, 난관 수술	1	
53. 질탈(陰脫)근본수술	1	

구분	수술명	수술 종류
내분비계의 수술	54. 뇌하수체종양(腦下垂體腫瘍) 절제수술	5
	55. 갑상선(甲狀腺)·부갑상선(副甲狀腺) 관혈수술	3
	56. 부신(副腎) 절제수술	4
신경계의 수술	57. 두개내(頭蓋內) 관혈수술 [개두술(開頭術, Craniotomy)을 수반하는 것]	5
	58. 신경(神經) 관혈수술	2
	59. 관혈적 척수종양(脊髓腫瘍) 절제수술	4
	60. 척수경막내외(脊髓硬膜內外) 관혈수술	3
시각기의 수술 [약물주입술은 제외]	61. 안검하수증(眼檢下垂症)수술 [안검내반증 제외]	1
	62. 누소관(淚小管)형성수술 [누관튜브삽입술 포함]	1
	63. 누낭비강(淚囊鼻腔) 관혈수술	2
	64. 결막낭(結膜囊) 형성수술	2
	65. 각막, 결막, 공막 봉합수술	1
	66. 각막, 공막 이식수술	2
	67. 전방(前房), 홍채(虹彩), 유리체(琉璃體) 관혈수술	2
	68. 녹내장(綠內障) 관혈수술	3
	69. 백내장(白內障), 수정체(水晶體) 관혈수술	1
	70. 망막박리(網膜剝離) 수술	2
	71.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시력회복 및 시력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1
	72. 냉동응고(冷凍凝固)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2
	73. 안구적출술, 조직충전술(組織充填術)	3
	74. 안와내종양절제수술	3
	75. 관혈적 안와내(眼窩內) 이물제거수술(異物除去手術)	1
	76. 안근(眼筋)관혈수술	1
청각기(聽覺器)의 수술	77. 관혈적 고막(鼓膜) 성형술 [고막 패치술은 제외]	2
	78. 유양동 절제술(乳樣洞切除術, mastoidectomy)	2
	79. 중이(中耳) 관혈수술 [중이내 튜브유치술 제외]	2
	80. 중이내(中耳內) 튜브유치술 [고막 패치술은 제외]	1
	81. 내이(內耳) 관혈수술	3

구분	수술명	수술 종류
상기 이외의 수술 [검사, 처치, 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음]	82. 상기 이외의 개두술(開頭術)	3
	83. 상기 이외의 개흉술(開胸術)	3
	84. 상기 이외의 개복술(開腹術)	2
	85.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破碎石術, E.S.W.L) [체외충격파치료술(E.S.W.T)은 제외]	2
	86.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 터 (Catheter)·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
	86-1. 뇌, 심장	3
86-2. 후두, 흉부장기[심장 제외], 복부장기[비뇨, 생 식기 제외], 척추, 사지관절[손가락, 발가락은 제외]	2	
86-3. 비뇨, 생식기 및 손가락, 발가락	1	

주) 상기 1~85항의 수술 중 내시경(Fiberscope)을 이용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등에 의한 경피적(經皮的, Percutaneous) 수술은 86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복강경·흉강경에 의한 수술은 해당부위(1~85항)의 수술로 적용합니다.

2. 악성신생물 치료목적의 수술

수술명	수술종류
1. 관혈적 악성신생물(惡性新生物) 근치수술(根治手術, Radical curative surgery). 단, 기타피부암(C44) 제외 [내시경 수술, 카테터·고주파 전극 등의 경피적 수술 등은 제외]	5
1-1. 기타피부암(C44)	3
2. 내시경 수술	3
3. 상기 이외의 기타 악성신생물수술	3

주) 1. 제자리암·경계성종양에 대한 수술은 '1. 일반 질병 및 재해치료 목적의 수술' 항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카테터(Catheter)를 이용한 흡인·천자·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수술은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에 준하여 5종 수술로 인정합니다.

3. 악성신생물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

방사선 조사 분류항목	수술종류
1. 악성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5,000Rad 이상의 조사(照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악성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定位的放射線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를 포함함]	3
2.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 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3

[1-5종 수술분류표 사용 지침]

- '수술'이라 함은 의료법 제5조(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규정한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행위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술'은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神經遮斷, Nerve Block)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 '관혈(觀血)' 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본(根本)' 혹은 '근치(根治)' 수술이라 함은 일회의 수술로 해당 질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수술을 말합니다.
-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이라 함은 관혈적 방법을 통해 악성신생물의 원발 병소를 완전히 절제, 적제, 적출하고 혹은 광청술을 함께 실시한 경우입니다.

5. '1-5종 수술분류표' 상에 열거되지 않은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에 대한 인정 및 적용 기준 :
 '1-5종 수술분류표'에서의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은 상기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여야 하고 약물투여치료, 방사선조사치료 또는 기타의 보존적 치료로 분류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 1) '1-5종 수술분류표' 상의 수술 이외에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치료한 경우 '1-5종 수술분류표' 상의 동일부위 수술로 봅니다.
 - 2) 단, 이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이 본질적으로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인 경우에는 '1-5종 수술분류표' 중 '1. 일반적인 상해 및 질병치료 목적의 수술' 86항(악성신생물의 경우는 '2. 악성신생물 치료목적의 수술' 2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6. '악성 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선형 가속기(LINAC)에서 발생하는 가는 방사선(Pencil beam)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악성 신생물을 향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동시에 악성신생물의 움직임을 병변 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7.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나이프 (Gammaknife)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정위 좌표계를 이용하여 코발트 60 방사성 동위원소 (Co-60) 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두개강 내의 신생물을 향해 집중 조사함으로 두개(頭蓋)를 열지 않고도 수술적 제거와 같은 효과를 내는 치료를 말합니다.

【별표14】관절증(엉덩, 무릎)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관절증(엉덩, 무릎)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상병	분류번호
1. 고관절증	
양쪽 원발성 고관절증	M16.0
기타 원발성 고관절증	M16.1
형성이상으로 인한 양쪽 고관절증	M16.2
기타 형성이상성 고관절증	M16.3
양쪽 외상후 고관절증	M16.4
기타 외상후 고관절증	M16.5
2. 무릎관절증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M17.0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M17.1
양쪽 외상후 무릎관절증	M17.2
기타 외상후 무릎관절증	M17.3

1. 엉덩관절증 중 M16.6, M16.7, M16.9 및 무릎관절증 중 M17.4, M17.5, M17.9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4.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5.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5】추간판탈출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추간판탈출증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 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상병	분류번호
1. 경추간판장애	M50
2. 기타 추간판장애	M51

-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6】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급여) 대상 수가코드

약관에 규정하는 신경차단술로 분류되는 치료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6장(마취료)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내용	수가코드
거미막하 신경차단술	LA210
경막외 신경차단술	
가. 일회성 차단	
(1) 경추 및 흉추	LA321
(2) 요추 및 천추	LA322
나. 지속적 차단	
(1) 피하터널식 카테터 삽입에 의한 방법	LA222, LA223
(2) 피하매몰 저장기펌프 삽입술에 의한 방법	LA224, LA225
(3) 기타(비터널식카테터)에 의한 방법	LA226, LA227
다. 경막외패치술 [혈액채취료 포함]	LA228
경막외 저장기펌프 제거술	LA330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	
가. 삼차신경절, 상악신경, 하악신경	LA340
나. 삼차신경의 분지	LA341
다. 안면신경	LA232
라. 설인신경	LA233
마. 접구개신경절	LA23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가. 대소후두신경	LA241
나. 상후두신경	LA242
다. 후두신경	LA243
라. 횡격막신경	LA244
마. 척추부신경	LA245
바. 액와신경	LA346
사. 액와하부신경	LA347

내용	수가코드
아. 건갑신경	LA247
자. 늑간신경	LA248
차. 장골서혜신경	LA249
카. 장골하복신경	LA270
타. 음부신경	LA271
파. 좌골신경	LA272
하. 폐쇄신경	LA273
거. 대퇴신경	LA274
너. 외측대퇴피신경	LA275
더. 상박신경총	LA276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가. 경신경총	LA251
나. 방척추신경	LA352
다. 미골신경	LA353
라. 선택적 신경근	LA354
마. 척추후근신경절	LA355
바. 척수회백신경교통지	LA356
사. 요천골신경총	LA253
아. 척수신경 후지	LA357
자. 후지내측지	LA358
차. 추간관절차단	LA359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	
가. 간단한 것	LA261
나. 복잡한 것	
(1) 흉부교감신경절	LA361
(2) 요부교감신경절	LA362
(3) 복강신경총	LA264
(4) 하장간막신경총	LA265
(5) 상하복신경총	LA366
(6) 외톨이신경절	LA367

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의료행위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수가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7-1】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비용

소송목적의 값	변호사 비용
300만원까지	30만원
300만원 초과 ~ 2,000만원까지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x 10%]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까지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8%]
5,000만원 초과 ~ 1억원까지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6%]
1억초과 ~ 1억5천만원까지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4%]
1억5천만원초과 ~ 2억원까지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2%]
2억원 초과 ~ 5억원까지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
5억원 초과 ~	[1,3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 (단, 1,500만원을 한도로 함)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2020.12.28. 개정)」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

【별표17-2】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

소송목적의 값	인지액 한도
1천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0.5%
1천만원 ~ 1억미만	5,000원 + 소송목적의 값 x 0.45%
1억 ~ 10억미만	55,000원 + 소송목적의 값 x 0.40%
10억이상	555,000원 + 소송목적의 값 x 0.35%

항소심의 경우 상기한도의 1.5배, 상고심의 경우 2.0배를 적용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릅니다.

【별표17-3】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송달료(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심급별	송달료 한도
1심 민사소액/민사단독/민사합의	104,000원 / 156,000원 / 156,000원
항소심/상고심	124,800원 / 83,200원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2021.9.1 적용)」 및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릅니다.

【별표18-1】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비용

소송목적의 값	변호사 비용
300만원까지	30만원
300만원 초과 ~ 2,000만원까지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x 10%]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까지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8%]
5,000만원 초과 ~ 1억원까지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6%]
1억초과 ~ 1억5천만원까지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4%]
1억5천만원초과 ~ 2억원까지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2%]
2억원 초과 ~ 5억원까지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
5억원 초과 ~	[1,3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 (단, 1,500만원을 한도로 함)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2020.12.28. 개정)」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릅니다.

【별표18-2】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

소송목적의 값	인지액 한도
1천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0.5%
1천만원 ~ 1억미만	5,000원 + 소송목적의 값 x 0.45%
1억 ~ 10억미만	55,000원 + 소송목적의 값 x 0.40%
10억이상	555,000원 + 소송목적의 값 x 0.35%

항소심의 경우 상기한도의 1.5배, 상고심의 경우 2.0배를 적용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릅니다.

【별표18-3】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송달료(행정소송법률비용손해)

심급별	송달료 한도
행정1심사건 / 행정1심재정단독사건	104,000원
행정항소사건	104,000원
행정상고사건	83,200원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2021.9.1 적용)」 및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릅니다.

【별표19】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분	기간	지급이자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및 (계약의 소멸)의 책임준비금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8.0%)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공시이율 ^{주6)} 의 50% 1년초과기간 : 공시이율 ^{주6)} 의 40%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만기환급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합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보통약관 8.(보험금의 지급절차)의 ②, ① 내지 ⑥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20】 인공관절치환수술 대상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인공관절치환수술 대상질환으로 분류되는 상병 및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 및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상병 및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 상병 및 질병	분류번호
감염성 관절병증	M00~M03
염증성 다발관절병증	M05~M14
[J99.0* : 류마티스폐질환(M05.1+)]	J99.0*
다발관절증	M15
고관절증	M16
무릎관절증	M17
기타 관절증	M19
사지의 기타 후천변형	M21
무릎뼈의 장애	M22
무릎의 내부장애	M23
기타 특정 관절장애	M24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관절장애	M25
강직척추염	M45
유타르막염 및 힘줄유타르막염	M65
유타르막 및 힘줄의 자연파열	M66
유타르막 및 힘줄의 기타 장애	M67
사용, 과용 및 압박에 관련된 연조직장애	M70
기타 유타르막염	M71
섬유모세포장애	M72
어깨병변	M75
발을 제외한 다리의 골부착부병증	M76
기타 골부착부병증	M77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장애	M79

대상 상병 및 질병	분류번호
골밀도 및 구조장애	M80~M85
기타 골병증	M86~M90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I형	G90.5
연골병증	M91~M94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기타 후천성 변형	M95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처치후 근골격장애	M9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생체역학적 병변	M99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2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43
대퇴골의 골절	S72
고관절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73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83
내부 정형외과적 인공삽입장치, 삽입물 및 이식편의 합병증	T84
기타 내부 인공삽입장치, 삽입물 및 이식편의 합병증	T85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21】 골절 및 특정외상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 및 특정외상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대상상병	분류번호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2
경 막외출혈	S06.4
외상성 경막하출혈	S06.5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S06.6
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두개내손상	S06.7
머리의 으깬손상	S07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S09.9
목의 골절	S12
목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S14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2
흉부의 으깬손상 및 흉부 부분의 외상성 절단	S28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2
어깨 및 위팔의 외상성 절단	S48
아래팔의 골절	S52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대퇴골의 골절	S72
엉덩이 및 대퇴의 외상성 절단	S78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08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T14.2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M80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표22】 골절 및 특정외상 등급분류기준표

같은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또는 특정외상 발생시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 또는 특정외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등급	머리	목	몸통	팔	다리	기타
1	S02.0, S02.7, S02.9, S06.4- S06.7	S12.2, S12.7, S12.9, S14.1	S28.1	-	-	T02.6, T02.8
2	S02.8, T02.0	S12.0, S12.1, S12.8, S14.0, S14.2, S14.3, S14.6	S22.0, S22.4, S22.5, S32.3, S32.4, S32.5, S32.8	S42.3, S42.4, S42.7, S42.9, S48.0, T02.2	S72.0- S72.3, S72.7- S72.9, S78.0, S78.1, S78.9, S82.2, T02.3, T02.5	T02.7, T02.9, T14.2
3	S02.1, S02.2, S02.3, S02.4, S02.6, S07.0, S07.1, S07.8, S07.9, S09.9	-	S22.1, S22.2, S22.8, S22.9, S32.0, S32.1, S32.7, T02.1, T08.0, T08.1	S42.2, S42.8, S48.9, S52.0, S52.2, S52.6- S52.9, S62.4, T10.0, T10.1	S72.4, S82.1, S82.3, S82.7- S82.9, S92.7, T12.0, T12.1	-
4	-	S14.5	S22.3,	S42.0,	S82.0,	-

등급	머리	목	몸통	팔	다리	기타
			S28.0, S32.2	S42.1, S48.1, S52.1, S52.3, S52.4, S52.5, S62.0- S62.3, S62.8	S82.4- S82.6, S92.0- S92.3, S92.9	
5		S14.4	-	S62.5, S62.6, S62.7, T02.4	S92.4 S92.5	
6		S02.5				M80.0, M80.1, M80.2, M80.3, M80.4, M80.5, M80.8, M80.9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및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및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 및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및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및 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23】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의 후유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의 한도

후유장애 등급	한도 금액		후유장애 내용
	대인 1억원 기준	대인 1억5천만원 기준	
1급	1억원	1억 5천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9천만원	1억 3,5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8천만원	1억2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7천만원	1억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후유장애 등급	한도 금액		후유장애 내용
	대인 1억원 기준	대인 1억5천만원 기준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6천만원	9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5천만원	7천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4천만원	6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후유장애 등급	한도 금액		후유장애 내용
	대인 1억원 기준	대인 1억5천만원 기준	
			<p>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p> <p>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p> <p>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p> <p>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p>8. 한쪽 발을 죽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p> <p>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p> <p>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p> <p>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p>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p> <p>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p>
8급	3천만원	4천500만원	<p>1.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p> <p>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p> <p>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p> <p>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p>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p> <p>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p>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p>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p> <p>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p> <p>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p> <p>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p>
9급	2천250만원	3천800만원	<p>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6 이하로 된 사람</p> <p>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p> <p>3. 두 눈에 반맹증·시아합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p> <p>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p> <p>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p> <p>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p> <p>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p>

후유장애 등급	한도 금액		후유장애 내용
	대인 1억원 기준	대인 1억5천만원 기준	
			<p>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p> <p>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p> <p>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p> <p>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p> <p>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p>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p> <p>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p>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p> <p>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p> <p>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p>
10급	1천880만원	2천700만원	<p>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p> <p>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p> <p>3. 14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p> <p>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p> <p>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p> <p>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p> <p>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p>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p> <p>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p> <p>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p>

후유장애 등급	한도 금액		후유장애 내용
	대인 1억원 기준	대인 1억5천만원 기준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1천500만원	2천3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12급	1천250만원	1천900만원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후유장애 등급	한도 금액		후유장애 내용
	대인 1억원 기준	대인 1억5천만원 기준	
			12.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1천만원	1천5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630만원	1천만원	1. 한쪽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비고

1. 후유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후유장애에 해당하는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고,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 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 나. 전간(癲癇)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 다. 사지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痲痺)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별표24】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의 부상등급별 보험금액의 한도

부상 등급	한도 금액		부상 내용
	대인 1억원 기준	대인 1억5천만원 기준	
1급	2천만원	3천만원	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각종 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4. 외상성 두개강 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부상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 또는 경막하 수종, 수혈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부상 6. 고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부상(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좌창·과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심한 부상(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부상을 말한다)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부상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골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2급	1천만원	1천500만원	1. 상박골 분쇄성 골절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각종 신경증상이 없는 부상 또는 경추 탈구(아탈구를 포함한다), 골절 등으로 경추보조기(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부상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부상(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골반골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부상 5. 슬관절 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부상 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부상 8. 천장골 간 관절 탈구 9. 슬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부상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부상 등급	한도 금액		부상 내용
	대인 1억원 기준	대인 1억5천만원 기준	
3급	1천만원	1천200만원	1. 상박골 경부 골절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부상 3.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부상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6. 대퇴골 간부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 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부상 8. 경골 과부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경골극 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족근 골척골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족근중족(Lisfranc)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복강 내 출혈로 수술한 부상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부상 13. 중증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쪽 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부상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안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부상 17.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4급	900만원	1천만원	1. 대퇴골 과부(원위부,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 골절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 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 인대 파열 5. 견갑 관절부위의 회선근개 골절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부상 등급	한도 금액		부상 내용
	대인 1억원 기준	대인 1억5천 만원기준	
			8. 화상, 좌창, 과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부상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부상 10. 대퇴 시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부상 11. 슬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후십자인대, 내외측 반월상 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5급	900만원	900만원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나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부상 3. 족중골 골절 4. 상박골 간부 골절 5. 요골 원위부(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골 원위 골단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6. 척골 근위부 골절 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부상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부상 8. 족배부 근건 파열창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건 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부상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부상 13. 거골 골절(경부는 제외한다)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않은 소아의 경·비골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 16.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7.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6급	500만원	700만원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부상 등급	한도 금액		부상 내용
	대인 1억원 기준	대인 1억5천 만원기준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5. 치골·좌골·장골·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 골절로 수술한 부상 6. 치골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10. 척골 주두부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혈액 농중,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부상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17.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7급	500만원	500만원	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2. 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상박골 상과부골골 골절 4. 고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 파열 7. 족관절 탈구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10.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8급	240만원	300만원	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2. 쇄골 골절 3. 주관절 탈구 4. 견갑골(견갑골극 또는 체부, 흉곽 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부상 등급	한도 금액		부상 내용
	대인 1억원 기준	대인 1억5천 만원기준	
			및 오혜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주관절 내 상박골 소두 골절 7. 비골(다리)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손상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9. 다발성 늑골 골절 10.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손상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13.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부상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15.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9급	240만원	240만원	1. 척추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요골 골두골 골절 3. 완관절 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5. 손바닥뼈 골절 6. 수근 골절(주상골은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종골은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족관절부 염좌, 경·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 파열 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흉홍, 기흉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1. 척추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 근육 등을 포함한다) 손상이 동반된 부상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이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수근간 관절 탈구 및 하 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부상 등급	한도 금액		부상 내용
	대인 1억원 기준	대인 1억5천 만원기준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15.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6.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0급	160만원	200만원	1. 외상성 슬관절 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지골 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 간 관절 탈구 4.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절 및 완관절을 말한다) 염좌 5. 척골·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비골(코) 골절, 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6. 손가락 신전근건 파열 7.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1급	160만원	160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손가락 골절·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2급	80만원	120만원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3급	80만원	80만원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4급	80만원	80만원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7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비고

1.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두 가지 이상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으로부터 하위 3등급(예: 부상 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부상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 보철이 필요한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 등급별 해당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별표25】 외상성머리손상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외상성머리손상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상병	분류번호
1. 머리의 열린상처	S01
2. 두개원개의 골절	S02.0
3. 두개저의 골절	S02.1
4. 안와바닥의 골절	S02.3
5.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S02.7
6. 기타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2.8
7.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S02.9
8.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S04.0
9. 동안신경의 손상	S04.1
10. 외상성 뇌부종	S06.1
11. 미만성 뇌손상	S06.2
12. 초점성 뇌손상	S06.3
13. 경막외출혈	S06.4
14. 외상성 경막하출혈	S06.5
15.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S06.6
16. 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두개내손상	S06.7
17. 머리의 으깬손상	S07
18. 머리의 다발손상	S09.7
19. 머리의 기타 명시된 손상	S09.8
20. 목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을 동반한 뇌 및 뇌신경의 손상	T06.0
21. 머리의 열린상처 후유증	T90.1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26】 주요상해뇌출혈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주요상해뇌출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1. 경막외출혈	S06.4
2. 외상성 경막하출혈	S06.5
3.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S06.6

-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27】 척추골절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척추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상병	분류번호
1. 목의 골절	S12
2. 흉추의 골절	S22.0
3. 흉추의 다발골절	S22.1
4.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5.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08

-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28】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 시술 코드	수술 시술 종류
간 이식	1. 간 이식	A010	8
폐 이식	2. 폐 이식	A020	8
심장 이식	3. 심장 이식	A030	8
장 이식	4. 췌장 이식	A040	8
소장 이식	5. 소장 이식	A050	8
조혈모세포 이식	6. 조혈모세포 이식, 동종이식	A061	8
	7. 조혈모세포 이식, 자가이식	A062	8
신장 이식	8. 신장 이식	A070	8
체외순환막형 산화요법 (ECMO), 개심술미동반	9.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개심술 미동반	A080	5
기관절개술	10.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장애의 경우), 인공호흡기 장기 사용	A091	1
	11.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장애의 경우), 인공호흡기 단기 사용	A092	1
	12.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장애의 경우), 인공호흡기 미사용	A093	1
	13.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장애 제외), 인공호흡기 장기 사용	A094	1
	14.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장애 제외), 인공호흡기 단기 사용	A095	1
	15.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장애 제외), 인공호흡기 미사용	A096	1
사지 이식	16. 사지 이식	A100	8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 시술 코드	수술 시술 종류
뇌동맥류 수술	17. 복잡 뇌동맥류 수술(뇌졸중 동반)	B011	8
	18. 단순 뇌동맥류 수술(뇌졸중 동반)	B012	8
	19. 복잡 뇌동맥류 수술(뇌졸중 미동반)	B013	8
	20. 단순 뇌동맥류 수술(뇌졸중 미동반)	B014	8
	21. 뇌동맥류 색전술(뇌졸중 동반)	B015	6
	22. 뇌동맥류 색전술(뇌졸중 미동반)	B016	6
	23. 뇌동맥류 복합 수술(뇌졸중 동반)	B017	8
	24. 뇌동맥류 복합 색전술(뇌졸중 동반)	B018	6
뇌혈관수술	25. 두개내 혈관 수술(뇌졸중 동반)	B021	8
	26. 두개내 혈관 수술(뇌졸중 미동반)	B022	8
	27. 뇌신경계 혈관기형 및 동정맥류 색전술 (뇌졸중 동반)	B023	6
	28. 뇌신경계 혈관기형 및 동정맥류 색전술 (뇌졸중 미동반)	B024	6
	29. 경피적 뇌혈관 수술 (협착·폐쇄 및 혈전제거 동시의 경우)	B025	6
	30. 경피적 뇌혈관 수술(협착 및 폐쇄의 경우)	B026	6
	31. 경피적 뇌혈관 수술(혈전제거의 경우)	B027	6
혈중제거술 및 기타개두술 (외상제외)	32. 혈중제거술(외상 제외)	B031	8
	33. 두개내 감압술(외상 제외)	B032	8
	34. 두개골 성형술(외상 제외)	B033	8
두개의 혈관수술	35. 두개의 혈관수술(뇌졸중 동반)	B041	4
	36. 두개의 혈관수술(뇌졸중 미동반)	B042	4
	37. 경피적 두개의 혈관수술	B043	4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 시술 코드	수술 시술 종류
뇌기저부 수술	38. 뇌기저부 수술	B050	8
뇌종양 절제술	39. 복잡 천막상부 종양절제술	B061	8
	40. 단순 천막상부 종양절제술	B062	8
	41. 복잡 천막하부 종양절제술	B063	8
	42. 단순 천막하부 종양절제술	B064	8
	43. 경피적 뇌신경계 종양 수술	B065	6
	44. 경비적 뇌하수체 종양 절제술	B066	8
신경계 신경자극기 설치술	45. 신경계 신경자극기 설치술	B070	7
뇌전증 수술	46. 뇌전증 수술(전극삽입술 시행)	B081	7
	47. 뇌전증 수술(전극삽입술 미시행)	B082	7
정위수술	48. 중추신경계 정위수술(뇌종양 및 기타 병소발생술)	B091	6
	49. 중추신경계 정위수술(두개내출혈)	B092	6
	50. 뇌정위 방사선 수술(두개내출혈 및 뇌혈관기형)	B093	6
	51. 뇌정위 방사선 수술(양성 뇌종양)	B094	6
	52. 뇌정위 방사선 수술(기타)	B095	6
	53. 중추신경계 체부 정위 방사선 수술	B096	6
뇌신경수술	54. 뇌신경 수술	B100	6
뇌척수액 우회로 조성술	55. 뇌척수액 우회로조성술	B110	4
외상개두술	56. 혈종제거술(외상관련), 경막외 출혈	B121	7
	57. 혈종제거술(외상관련), 경막하 출혈	B122	7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 시술 코드	수술 시술 종류
	58. 혈종제거술(외상관련), 기타 뇌내 출혈	B123	7
	59. 두개내 감압술(외상관련)	B124	8
	60. 두개골 성형술(외상관련)	B125	8
기타개두술	61. 기타 개두술	B130	7
천두술	62. 천두술(경막하 또는 경막외)	B141	4
	63. 천두술(뇌내)	B142	4
	64. 천두술(기타)	B143	4
척추강내 병소절제술	65. 척수내 종양절제술	B151	6
	66. 척추강내 병소절제술(척수병증 동반)	B152	6
	67. 척추강내 병소절제술(척수병증 미동반)	B153	6
	68. 척추강내 병소절제술(척추고정술 동반)	B154	6
척추변형 척추고정술	69. 청소년기 척추변형 척추고정술	B161	5
	70. 성인기 척추변형 척추고정술(감압술 동반)	B162	5
	71. 성인기 척추변형 척추고정술(감압술 미동반)	B163	5
기타 척추 수술	72. 척추고정술(척수병증 동반)	B171	4
	73. 척추고정술(척수병증 미동반)	B172	4
	74. 척추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척수병증 동반)	B173	2
	75. 척추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척수병증 미동반)	B174	2
	76. 기타 척추 수술(척수병증 동반)	B175	1
	77. 기타 척추 수술(척수병증 미동반)	B176	1
	78. 척추 중재시술(뼈에 시행한 경우)	B181	1
척추 중재시술	79. 척추 중재시술(신경에 시행한 경우)	B182	1
	80. 척추신경자극기 및 약물주입 펌프의 설치술 또는 교환술	B191	3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 시술 코드	수술 시술 종류
약물주입 펌프이식술	81. 척수신경자극기 및 약물주입 펌프의 시험적 거치술 또는 제거술	B192	1
기타 신경계수술	82. 주요 말초 및 뇌 신경 수술	B201	1
	83. 기타 말초 및 뇌 신경 수술	B202	1
	84. 수근관 이완술	B203	1
	85. 기타 근육, 건 및 인대 이완술	B204	1
	86. 기타 신경계 수술	B205	1
복잡 척추수술	87. 복잡 척추고정술	B211	4
	88. 복잡 척추후궁절제술	B212	2
안부 관통상 수술	89. 복잡 안부 관통상 수술	C011	1
	90. 전안부 관통상 수술(수정체 수술 동반)	C012	1
	91. 전안부 관통상 수술(수정체 수술 미동반)	C013	1
	92. 후안부 관통상 수술	C014	1
안와 수술	93. 복잡 안와 수술, 한쪽	C021	2
	94. 복잡 안와 수술, 양쪽	C022	2
	95. 단순 안와 수술	C023	2
안구 수술 (종양 수술포함)	96. 안구 수술(종양 수술 포함)	C030	2
망막 및 유리체 수술	97. 망막 및 유리체 수술 (망막주위막 제거술 동반, 수정체 수술 동반)	C043	2
	98. 망막 및 유리체 수술 (망막주위막 제거술 동반, 수정체 수술 미동반)	C044	2
	99. 망막 및 유리체 수술 (망막주위막 제거술 미동반, 수정체 수술 동반)	C045	2
	100. 망막 및 유리체 수술 (망막주위막 제거술 미동반, 수정체 수술 미동반)	C046	2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 시술 코드	수술 시술 종류
안구 표면재건술	101. 주요 각막이식수술	C051	2
	102. 기타 각막이식수술	C052	2
	103. 공막 및 각막윤부이식수술	C053	2
수정체 소절개 수술 (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104. 주요 수정체 소절개 수술 (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한쪽	C061	1
	105. 기타 수정체 소절개 수술 (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한쪽	C062	1
	106. 주요 수정체 소절개 수술 (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쪽	C063	1
	107. 기타 수정체 소절개 수술 (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쪽	C064	1
수정체 대절개 수술 (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108. 주요 수정체 대절개 수술 (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한쪽	C071	1
	109. 기타 수정체 대절개 수술 (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한쪽	C072	1
	110. 수정체 대절개 수술 (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쪽	C073	1
후발성 백내장 수술	111. 후발성 백내장 수술	C080	1
녹내장 수술	112. 복잡 녹내장 수술(수정체 수술 동반)	C091	2
	113. 복잡 녹내장 수술(수정체 수술 미동반)	C092	2
	114. 단순 녹내장 수술(수정체 수술 동반)	C093	2
	115. 단순 녹내장 수술(수정체 수술 미동반)	C094	2
기타 안구내 수술	116. 기타 주요 안구내 수술	C101	1
	117. 기타 단순 안구내 수술	C102	1
사시 수술	118. 복잡 사시 수술	C111	1
	119. 단순 사시 수술	C112	1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 시술 코드	수술 시술 종류
안검 수술	120. 복잡 안검 수술, 제1형	C121	1
	121. 복잡 안검 수술, 제2형	C122	1
	122. 복잡 안검 수술, 제3형	C123	1
	123. 주요 안검 수술, 제1형	C124	1
	124. 주요 안검 수술, 제2형	C125	1
	125. 주요 안검 수술, 제3형	C126	1
	126. 기타 안검 수술	C127	1
눈물길 수술	127. 복잡 눈물길 수술	C131	1
	128. 주요 눈물길 수술, 한쪽	C132	1
	129. 주요 눈물길 수술, 양쪽	C133	1
	130. 기타 눈물길 수술(경비내시경 포함), 단안	C135	1
	131. 기타 눈물길 수술(경비내시경 포함), 양안	C136	1
결막 수술	132. 결막낭 재건술	C141	1
	133. 복잡 결막 수술	C142	1
	134. 단순 결막 수술	C143	1
기타 안구외 수술	135. 기타 안구외 수술	C150	1
내이 수술	136. 귀 이식술	D011	5
	137. 주요 내이 수술	D012	3
	138. 단순 내이 수술	D013	2
중이 및 유양돌기 수술	139. 고실유양돌기 수술	D021	2
	140. 유양돌기 수술	D022	2
	141. 고실 수술	D023	2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 시술 코드	수술 시술 종류
외이 및 귀 수술	142. 이소골 재건술	D024	2
	143. 등골수술	D025	2
	144. 환기관삽입 고막절개술	D026	2
	145. 주요 외이 및 귀 수술	D031	1
귀 및 코의 악성종양 수술	146. 단순 외이 및 귀 수술	D032	1
	147. 귀 및 두개저 악성종양 수술	D041	7
부비동개방 수술	148. 비강, 부비동, 비인강 악성종양	D042	7
	149. 부비동 개방 수술(한 개, 한쪽)	D051	1
	150. 부비동 개방 수술(한 개, 양쪽)	D052	1
	151. 부비동 개방 수술(여러 개, 한쪽)	D053	1
내시경을 이용한 부비동 수술	152. 부비동 개방 수술(여러 개, 양쪽)	D054	1
	153. 내시경을 이용한 부비동 수술(한 개, 한쪽)	D061	1
	154. 내시경을 이용한 부비동 수술(한 개, 양쪽)	D062	1
	155. 내시경을 이용한 부비동 수술(여러 개, 한쪽)	D065	1
	156. 복잡 내시경을 이용한 부비동 수술(여러 개, 한쪽)	D066	1
	157. 내시경을 이용한 부비동 수술(여러 개, 양쪽)	D067	1
	158. 복잡 내시경을 이용한 부비동 수술(여러 개, 양쪽)	D068	1
	159. 주요 코 수술	D081	1
코 수술	160. 비중격 및 비갑개수술	D082	1
	161. 단순 코 수술	D083	1
구강 및 타액선 악성종양 수술	162. 구강 및 타액선 악성종양 수술	D090	7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 시술 코드	수술 시술 종류
후두 및 인두 악성종양 수술	163. 주요 후두 및 인두 악성종양 수술 (경동맥소체 포함)	D101	7
	164. 단순 후두 및 인두 악성종양 수술	D102	7
경부림프절 절제술	165. 경부림프절절제술, 한쪽	D111	4
	166. 경부림프절절제술, 양쪽	D112	4
안면골 수술	167. 악관절 수술	D121	2
	168. 주요 안면골 수술	D122	2
	169. 단순 안면골 수술	D123	2
두경부 재건술	170. 두경부 재건술	D130	2
타액선 수술	171. 이하선수술	D141	2
	172. 악하선 및 설하선 수술	D142	2
	173. 기타 타액선 수술	D143	1
	174. 타석제거술	D144	1
경부 수술	175. 경부 수술	D150	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176. 주요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D161	1
	177. 단순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D162	1
구강, 인후두 수술	178. 주요 구강 및 인두, 후두 수술	D171	1
	179. 단순 구강 및 인두, 후두 수술	D172	1
기타 이비인후, 구강 질환 수술	180. 기타 이비인후, 구강질환 수술	D200	1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 시술 코드	수술 시술 종류
주요 흉부 수술	181. 기관 및 기관지 수술	E011	7
	182. 주요 폐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E012	7
	183. 주요 폐 수술(악성종양 제외)	E013	7
	184. 기타 폐 수술	E014	7
	185. 종격동 수술	E015	7
	186. 주요 흉곽 수술	E016	7
	187. 기타 흉곽 수술	E017	3
	188. 흉강경을 이용한 주요 수술	E018	7
	189. 흉강경을 이용한 기타 수술	E019	7
기관지경 및 방사선하 수술	190. 기관지경 및 방사선하 수술	E020	2
기타 호흡기계 수술	191. 수면무호흡증후군 수술	E032	1
	192. 호흡기계 기타 단순 수술	E033	1
	193. 기타 호흡기계 수술	E034	1
폐농양 배액술	194. 폐농양 배액술	E520	1
흉막삼출 배액술	195. 흉막삼출 배액술	E530	1
자동체내제 세동기 시술	196. 자동체내제세동기 설치술 또는 제거술	F011	5
	197. 자동체내제세동기 교정술	F012	5
심장판막 수술(심도 자술 사용)	198. 대동맥판 수술(심도자술 사용)	F021	8
	199. 승모판 또는 삼첨판 수술(심도자술 사용)	F022	8
	200. 폐동맥판 수술(심도자술 사용)	F023	8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 시술 코드	수술 시술 종류
심장판막 수술 (심도자술 미사용)	201. 대동맥판 수술(심도자술 미사용)	F031	8
	202. 승모판 또는 삼첨판 수술(심도자술 미사용)	F032	8
	203. 폐동맥판 수술(심도자술 미사용)	F033	8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	204.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 (심도자술 사용, 인공심장폐장치 사용)	F041	8
	205.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 (심도자술 미사용, 인공심장폐장치 사용)	F042	8
	206.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 (심도자술 사용, 인공심장폐장치 미사용)	F043	8
	207.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 (심도자술 미사용, 인공심장폐장치 미사용)	F044	8
기타 심흉부 수술	208. 기타 심흉부 수술(인공심장폐장치 사용)	F053	7
	209. 기타 심흉부 수술(인공심장폐장치 미사용)	F054	5
주요 혈관복구 수술 (인공심장폐 장치 사용)	210. 파열 동맥류 또는 대동맥 축착 교정술 (인공심장폐장치 사용)	F061	8
	211. 비파열 동맥류 또는 대동맥 축착 교정술 (인공심장폐장치 사용)	F062	8
	212. 기타 주요 혈관복구 수술 (인공심장폐장치 사용)	F063	8
주요 혈관복구 수술(인공 심장폐장치 미사용)	213. 파열 동맥류 또는 대동맥 축착 교정술 (인공심장폐장치 미사용)	F071	8
	214. 비파열 동맥류 또는 대동맥 축착 교정술 (인공심장폐장치 미사용)	F072	8
	215. 기타 주요 혈관복구 수술 (인공심장폐장치 미사용)	F073	7
대동맥 경피적	216. 복부대동맥 및 장골동맥류 경피적 수술 (파열 미동반)	F081	4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 시술 코드	수술 시술 종류
수술	217. 복부대동맥 및 장골동맥류 경피적 수술 (파열 동반)	F082	4
	218. 흉부대동맥류 경피적 수술	F083	4
	219. 대동맥바리 경피적 수술	F084	4
정맥 및 대정맥 경피적 수술	220. 심부정맥혈전증 경피적 수술	F091	4
	221. 대정맥 필터설치를 위한 경피적 수술	F092	4
경도관 심장결손 폐쇄술	222. 경도관 심방중격결손 폐쇄술	F101	4
	223. 경도관 동맥관개존증 폐쇄술	F102	4
	224. 기타 경도관 심장 결손 폐쇄술	F103	4
급성 심근 경색증의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심각한 합병증 동반)	225. 급성 심근경색증의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 (심각한 합병증 동반, 단일혈관)	F111	4
	226. 급성 심근경색증의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 (심각한 합병증 동반, 다발혈관)	F112	4
급성 심근 경색증의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심각한 합병증 미동반)	227. 급성 심근경색증의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 (심각한 합병증 미동반, 단일혈관)	F121	4
	228. 급성 심근경색증의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 (심각한 합병증 미동반, 다발혈관)	F122	4
급성 심근 경색증이 아닌 기타 경피적 관상동맥	229. 급성 심근경색증이 아닌 기타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단일혈관, 만성폐쇄성병변의 경우 제외)	F133	4
	230. 급성 심근경색증이 아닌 기타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단일혈관, 만성폐쇄성병변의 경우 포함)	F134	4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 시술 코드	수술 시술 종류
수술	231. 급성 심근경색증이 아닌 기타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다발혈관, 만성폐쇄성병변의 경우 제외)	F135	4
	232. 급성 심근경색증이 아닌 기타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다발혈관, 만성폐쇄성병변의 경우 포함)	F136	4
부정맥의 경피적 수술(3차원 지도화 기능 포함)	233. 심실빈맥 전극도자 절제술 (3차원 지도화 기능 포함)	F141	4
	234. 심방세동 전극도자 절제술 (3차원 지도화 기능 포함)	F142	4
	235. 발작성 심실상빈맥 및 심방조동 전극도자 절제술(3차원 지도화 기능 포함)	F143	4
부정맥의 경피적 수술 (3차원 지도화 기능 미포함)	236. 심실빈맥 전극도자 절제술 (3차원 지도화 기능 미포함)	F151	4
	237. 심방세동 전극도자 절제술 (3차원 지도화 기능 미포함)	F152	4
	238. 발작성 심실상빈맥 및 심방조동 전극도자 절제술(3차원 지도화 기능 미포함)	F153	4
경피적 풍선 판막성형술	239. 경피적 승모판 풍선 판막성형술	F161	4
	240. 경피적 대동맥 또는 폐동맥 풍선 판막성형술	F162	4
혈관 기형의 경피적 수술	241. 동정맥 기형의 경피적 색전술(두경부 제외)	F181	4
	242. 관상동맥 및 폐동맥 기형의 경피적 색전술 (두경부 제외)	F182	4
말초동맥의 경피적 수술	243. 말초동맥 색전증 및 혈전증의 경피적 수술	F192	4
	244. 말초동맥 동맥류 및 박리의 경피적 수술	F193	4
	245. 말초동맥 만성 폐쇄성 질환의 경피적 수술, 여러 개	F194	4
	246. 말초동맥 만성 폐쇄성 질환의 경피적 수술, 한 개	F195	4
기타 경피적 심혈관 수술	247. 기타 경피적 심혈관 수술	F200	4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 시술 코드	수술 시술 종류
체내 심박조율기 설치술(급성 심근경색증, 심부전, 쇼크의 경우)	248. 영구적 심박조율기 설치술	F211	5
	249. 영구적 심박조율기 교환술	F212	5
	250. 심박조율기 제거 및 전환술	F213	1
기타 혈관 복구 수술	251. 기타 혈관 복구 수술	F220	2
순환 장애 절단술 (수족부 제외)	252. 순환 장애 절단술(수족부 제외)	F230	7
순환 장애 수족부 절단술	253. 순환 장애 수족부 절단술	F240	3
정맥 결찰 및 스트리핑	254. 정맥류 광범위 절제술(여러 개)	F253	1
	255. 정맥류 광범위 절제술(한 개)	F254	1
	256. 정맥류 국소 절제술	F252	1
기타 순환기계 수술	257. 기타 순환기계 수술	F260	1
식도 수술	258. 식도 악성종양 근치 수술 및 식도 재건술	G011	7
	259. 기타 주요 식도 수술	G012	5
	260. 기타 단순 식도 수술	G013	4
직장절제술 (림프절절제 동반)	261. 복강경을 이용한 직장절제술(림프절절제 동반)	G021	7
	262. 개복에 의한 직장절제술(림프절절제 동반)	G022	7
직장절제술 (림프절절제 미동반)	263. 복강경을 이용한 직장절제술(림프절절제 미동반)	G031	7
	264. 개복에 의한 직장절제술(림프절절제 미동반)	G032	7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 시술 코드	수술 시술 종류
경향문 및 경천골 접근 직장절제술	265. 경향문 및 경천골 접근 직장절제술 (악성종양의 경우)	G041	7
	266. 경향문 및 경천골 접근 직장절제술 (악성종양 제외)	G042	7
주요십이지장 수술	267. 주요 십이지장 수술	G050	7
식도정맥류 수술	268. 식도 정맥류 수술	G060	5
위전절제술	269. 복강경을 이용한 위전절제술	G071	7
	270. 개복에 의한 위전절제술	G072	7
위아전 절제술	271. 복강경을 이용한 위아전절제술	G081	7
	272. 개복에 의한 위아전절제술	G082	7
기타 위절제술	273.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위절제술	G091	5
	274. 개복에 의한 기타 위절제술	G092	5
	275.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설상절제술	G093	5
	276. 개복에 의한 기타 설상절제술	G094	5
소화성 궤양 수술	277. 복강경을 이용한 소화성 궤양 수술	G101	4
	278. 개복에 의한 소화성 궤양 수술	G102	4
기타 위 및 식도 수술	279.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위 및 식도 수술	G111	4
	280. 개복에 의한 기타 위 및 식도 수술	G112	4
결장 및 직장 전 절제술	281. 복강경을 이용한 결장 및 직장 전 절제술	G121	7
	282. 개복에 의한 결장 및 직장 전 절제술	G122	7
결장절제술 (림프절절제 동반)	283. 복강경을 이용한 결장절제술(림프절절제 동반)	G131	7
	284. 개복에 의한 결장절제술(림프절절제 동반)	G132	7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 시술 코드	수술 시술 종류
결장절제술 (림프절절제 미동반)	285. 복강경을 이용한 결장절제술(림프절절제 미동반)	G141	5
	286. 개복에 의한 결장절제술(림프절절제 미동반)	G142	5
기타 대장 수술	287.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대장 수술	G151	4
	288. 개복에 의한 기타 대장 수술	G152	4
소장 및 장간막 수술	289. 복강경을 이용한 주요 소장 및 장간막 수술	G171	5
	290. 개복에 의한 주요 소장 및 장간막 수술	G172	5
	291. 장폐색 수술 및 기타 장 수술	G173	3
장루 수술	292. 장루 수술	G180	3
횡격막 탈장 수술	293. 횡격막 탈장 수술	G190	4
탈장 수술, 서혜 및 대퇴부 제외	294. 복강경을 이용한 탈장 수술, 서혜 및 대퇴부 제외(장절제 동반)	G201	1
	295. 개복에 의한 탈장 수술, 서혜 및 대퇴부 제외 (장절제 동반)	G202	1
	296. 복강경을 이용한 탈장 수술, 서혜 및 대퇴부 제외(장절제 미동반)	G203	1
	297. 개복에 의한 탈장 수술, 서혜 및 대퇴부 제외 (장절제 미동반)	G204	1
총수절제술	298. 복강경을 이용한 총수절제술(복잡 주진단의 경우)	G211	3
	299. 복강경을 이용한 총수절제술 (복잡 주진단이 아닌 경우)	G212	3
	300. 개복에 의한 총수절제술(복잡 주진단의 경우)	G213	3
	301. 개복에 의한 총수절제술(복잡 주진단이 아닌 경우)	G214	3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 시술 코드	수술 시술 종류
재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302. 복강경을 이용한 재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한쪽	G221	1
	303. 복강경을 이용한 재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양쪽	G222	1
	304. 개복에 의한 재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한쪽	G223	1
	305. 개복에 의한 재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양쪽	G224	1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절제 동반)	306.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절제 동반)	G230	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장절제 미동반)	307.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장절제 미동반), 한쪽	G241	1
	308.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장절제 미동반), 양쪽	G242	1
개복에 의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장절제 미동반)	309. 개복에 의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장절제 미동반, 복잡 주진단의 경우), 한쪽	G251	1
	310. 개복에 의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장절제 미동반, 복잡 주진단이 아닌 경우), 한쪽	G252	1
	311. 개복에 의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장절제 미동반), 양쪽	G253	1
복수 항문 수술	312. 복수 항문 수술	G260	1
치핵 수술	313. 주요 치핵 수술	G271	1
	314. 단순 치핵 수술	G272	1
항문 주위	315. 주요 항문 주위 농양 수술	G281	1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 시술 코드	수술 시술 종류
농양 수술	316. 단순 항문 주위 농양 수술	G282	1
치루 수술	317. 주요 치루 수술	G291	1
	318. 단순 치루 수술	G292	1
치열 수술 및 항문협착증 수술	319. 치열 수술 및 항문협착증 수술	G300	1
경항문 및 질접근 수술	320. 직장 질루 수술	G311	1
	321. 직장 탈출증 수술 및 괄약근성형술 (직장류교정술 포함)	G312	1
화농성 한선염 수술	322. 화농성한선염 수술	G320	1
기타 소화기계 수술	323. 기타 소화기계 수술	G332	1
소화기계 질환의 혈관색전술	324. 소화기계 질환의 혈관색전술	G340	3
위내시경 시술	325. 위내시경 시술(주요 소화기 질환의 경우)	G503	1
	326. 위내시경 시술(주요 소화기 질환이 아닌 경우)	G504	1
	327. 위내시경 시술, 당일퇴원	G505	1
결장경 시술	328. 결장경 시술(주요 소화기 질환의 경우)	G523	1
	329. 결장경 시술(주요 소화기 질환이 아닌 경우)	G524	1
구불결장경 시술	330. 결장경 시술, 당일퇴원	G525	1
	331. 구불결장경 시술	G531	1
	332. 구불결장경 시술, 당일퇴원	G532	1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 시술 코드	수술 시술 종류
소화기 내시경 시술, 화학요법을 동반한 경우, 재원기간 2일 이상	333. 소화기 내시경 시술, 화학요법을 동반한 경우, 재원기간 2일 이상	G540	1
소장내시경 시술	334. 소장내시경 시술	G550	1
소화관 협착을 위한 방사선하 시술	335. 소화관 협착을 위한 방사선하 시술	G560	2
소화기계 질환의 경피적 배액술	336. 소화기계 질환의 경피적 배액술	G570	2
간담도췌장 복합수술	337. 간담도췌장 복합수술	H010	7
간담도 복합수술	338. 주요 간담도 복합수술	H021	7
	339. 기타 간담도 복합수술	H022	5
담도췌장 복합수술	340. 담도췌장 복합수술	H030	7
간 절제술	341. 복강경을 이용한 주요 간 절제술	H041	7
	342. 개복에 의한 주요 간 절제술	H042	7
	343.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간 절제술	H043	5
	344. 개복에 의한 기타 간 절제술	H044	5
간 수술	345. 복강경을 이용한 간 수술	H051	4
	346. 개복에 의한 간 수술	H052	4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 시술 코드	수술 시술 종류
간담도계 질환 치료를 위한 단락술	347. 간담도계 질환 치료를 위한 단락술	H060	4
담도 절제술 (림프절 절제 동반)	348. 복강경을 이용한 담도 절제술(림프절 절제 동반)	H071	7
	349. 개복에 의한 담도 절제술(림프절 절제 동반)	H072	7
담도 절제술 (림프절 절제 미동반)	350. 복강경을 이용한 담도 절제술 (림프절 절제 미동반)	H081	5
	351. 개복에 의한 담도 절제술(림프절 절제 미동반)	H082	5
주요 담도 수술	352. 복강경을 이용한 주요 담도 수술	H091	5
	353. 개복에 의한 주요 담도 수술	H092	5
담낭절제술	354.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 (총수담관탐구술 및 경피적담낭조루술 동반)	H101	4
	355. 개복에 의한 담낭절제술 (총수담관탐구술 및 경피적담낭조루술 동반)	H102	4
	356.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 (총수담관탐구술 동반)	H103	4
	357. 개복에 의한 담낭절제술 (총수담관탐구술 동반)	H104	4
	358.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 (경피적담낭조루술 동반)	H105	4
	359. 개복에 의한 담낭절제술 (경피적담낭조루술 동반)	H106	4
	360.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 (총수담관탐구술 및 경피적담낭조루술 미동반)	H107	4
	361. 개복에 의한 담낭절제술 (총수담관탐구술 및 경피적담낭조루술 미동반)	H108	4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 시술 코드	수술 시술 종류
췌장절제술	362. 복강경을 이용한 췌장절제술	H111	7
	363. 개복에 의한 췌장절제술	H112	7
췌장 수술	364. 복강경을 이용한 췌장 수술	H121	4
	365. 개복에 의한 췌장 수술	H122	4
기타 간담도 및 췌장 시술	366. 역행성담췌관내시경 시술	H142	3
	367. 담석 제거를 위한 체외충격파쇄석술	H143	1
	368. 기타 간담도 및 췌장 수술	H144	3
	369. 경피적 담관경 시술	H145	3
	370. 경피적 담관 시술	H146	3
간담도 및 췌장의 경피적 시술	371. 경피적 혈관 시술(간의 악성종양 제외)	H152	3
	372. 담도협착을 위한 경피적 시술	H154	3
	373. 담석제거를 위한 경피적 시술	H155	3
	374. 경피적 혈관 시술(간의 악성종양의 경우), 소작술 동반	H156	6
	375. 경피적 혈관 시술(간의 악성종양의 경우), 소작술 미동반	H157	6
출혈성 정맥류에 대한 내시경 시술	376. 출혈성 정맥류에 대한 내시경 시술	H500	1
간암의 경피적 치료술	377. 간암의 경피적 치료술	H510	6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 시술 코드	수술 시술 종류
간담도 및 췌장 질환의 경피적 배액술	378. 간담도 및 췌장 질환의 경피적 배액술	H520	3
	양쪽 또는 복수 주요 관절 수술	379. 양쪽 또는 복수 주요 관절 수술(치환술의 경우)	I011
고관절 재치환술 및 치환술	380. 양쪽 또는 복수 주요 관절 수술(치환술 제외)	I012	3
	381. 고관절 전재치환술	I021	4
	382. 고관절 전치환술	I022	4
슬관절 재치환술 및 치환술	383. 고관절 부분치환술	I023	4
	384. 슬관절 전재치환술	I031	3
	385. 슬관절 전치환술	I032	3
	386. 슬관절 부분치환술	I033	3
기타 관절 재치환술 및 치환술	387. 기타 관절 전재치환술	I041	2
	388. 기타 관절 전치환술	I042	2
	389. 기타 관절 부분치환술	I043	2
	390. 인공관절삽입물 제거술	I044	2
혈관부착 골피부판 이식 및 사지 재접합술	391. 혈관부착 골피부판 이식 및 사지 재접합술	I050	4
척추강내 병소절제술	392. 척수내 종양절제술	I061	6
	393. 척추강내 병소절제술(척수병증 동반)	I062	6
	394. 척추강내 병소절제술(척수병증 미동반)	I063	6
	395. 척추강내 병소절제술(척추고정술 동반)	I064	6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 시술 코드	수술 시술 종류
척추변형 척추고정술	396. 청소년기 척추변형 척추고정술	I071	5
	397. 성인기 척추변형 척추고정술(감압술 동반)	I072	5
	398. 성인기 척추변형 척추고정술(감압술 미동반)	I073	5
기타 척추 수술	399. 척추고정술(척수병증 동반)	I081	4
	400. 척추고정술(척수병증 미동반)	I082	4
	401. 척추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척수병증 동반)	I083	2
	402. 척추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척수병증 미동반)	I084	2
	403. 기타 척추 수술(척수병증 동반)	I085	1
	404. 기타 척추 수술(척수병증 미동반)	I086	1
	405. 척추 중재시술(뼈에 시행한 경우)	I091	1
406. 척추 중재시술(신경에 시행한 경우)	I092	1	
신경절술 및 척추강내 약물주입 펌프이식술	407. 척추신경자극기 및 약물주입 펌프의 설치술 또는 교환술	I101	3
	408. 척추신경자극기 및 약물주입 펌프의 시험적 거치술 또는 제거술	I102	1
절단술	409. 주요 절단술	I111	7
	410. 기타 절단술	I112	3
골종양의 절제술	411. 골악성종양의 광범위 절제술(재건술 동반)	I121	7
	412. 골악성종양의 광범위 절제술(골반골, 대퇴골, 하퇴골)	I122	7
	413. 골악성종양의 광범위 절제술(기타)	I123	7
	414. 골양성종양의 소파술 또는 절제술	I124	2
골수염 및 농양 수술	415. 골수염 및 농양 수술(골반골, 대퇴골, 하퇴골, 상완골, 전완골, 쇄골)	I131	2
	416. 골수염 및 농양 수술(기타)	I132	1
	417. 근농양 배농술	I133	1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 시술 코드	수술 시술 종류
고관절 및 대퇴부 수술	418. 양쪽 또는 복수 고관절 및 대퇴부 수술	I141	3
	419. 한쪽 고관절 및 대퇴부 수술	I142	2
상완골, 경골 및 비골 수술	420. 상완골, 경골 및 비골 수술	I160	2
단단성형술	421. 단단성형술(수족지 제외)	I171	2
	422. 단단성형술(수족지)	I172	2
견부 수술	423. 회전근개 수술	I181	1
	424. 관절와순 수술	I182	1
	425. 복수 진단 견부 수술	I183	1
	426. 기타 견부 수술	I184	1
슬부 수술	427. 십자인대 수술	I191	1
	428. 반달연골 수술, 양쪽	I192	1
	429. 반달연골 수술, 한쪽	I193	1
	430. 기타 슬관절 수술	I194	1
주관절 및 전완부 수술	431. 주관절 및 전완부 수술	I200	1
족부 및 족관절 수술	432. 족부 및 족관절 힘줄인대 수술	I211	1
	433. 족관절 골연골 병변 수술	I212	1
	434. 기타 족부 및 족관절 수술	I213	1
체내고정 장치 제거술	435. 체내고정장치 제거술	I220	1
완관절 및 수부 수술	436. 주요 완관절 및 수부 수술	I251	1
	437. 단순 완관절 및 수부 수술	I252	1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 시술 코드	수술 시술 종류
미세혈관 조직이식 또는 피부이식	438. 미세혈관 조직이식	I261	3
	439. 기타 피판술	I262	2
	440. 피부 및 지방 이식술	I263	2
연조직 수술	441. 복잡한 연조직 수술	I271	1
	442. 주요 연조직 수술	I272	1
	443. 단순 연조직 수술	I273	1
기타 골절 수술	444. 골반 및 비구 골절 수술	I281	3
	445. 대퇴부 골절 수술	I282	3
	446. 슬관절 및 하퇴골 골절 수술	I283	3
	447. 족관절 및 족부 골절 수술	I284	2
	448. 견부 및 상완골 골절 수술	I285	3
	449. 전완부 골절 수술	I286	2
	450. 수부 골절 수술	I287	1
기타 결합조직 수술	451. 기타 결합조직 수술	I290	1
복잡 인공관절 치환술	452. 복잡 양쪽 또는 복수 인공관절치환술	I301	4
	453. 복잡 인공관절전치환술, 주요(고관절, 슬관절)	I302	4
	454. 복잡 인공관절전치환술, 기타(견관절, 주관절, 족관절)	I303	2
	455. 복잡 인공관절전치환술, 주요(고관절, 슬관절)	I304	4
	456. 복잡 인공관절전치환술, 기타(견관절, 주관절, 족관절)	I305	2
	457. 복잡 인공관절부분치환술	I306	3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 시술 코드	수술 시술 종류
복잡 척추 수술	458. 복잡 척추고정술	I311	4
	459. 복잡 척추후궁절제술	I312	2
복잡 관절 수술	460. 복잡 사지골절정복술	I321	2
	461. 복잡 관절고정술	I322	2
	462. 복잡 사지관절절제술	I323	1
	463. 복잡 가관절수술	I324	2
	464. 복잡 반월판연골절제술	I325	1
복잡 근골격계 염증성 질환 수술	465. 복잡 화농성관절염절개술	I331	1
	466. 복잡 골수염 및 농양수술	I332	1
근골격계 질환의 경피적 배액술	467. 근골격계 질환의 경피적 배액술	I500	1
피부, 피하조직 및 유방 질환에 대한 미세혈관 조직이식	468. 피부, 피하조직 및 유방 질환에 대한 미세혈관 조직이식	J010	3
피판술, 피부이식술 및 변연절제술 (피부궤양, 봉소염의 경우)	469. 피판술(피부궤양, 봉소염의 경우)	J021	2
	470. 피부 이식술(피부궤양, 봉소염의 경우)	J022	2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 시술 코드	수술 시술 종류
피판술, 피부이식술 및 변연절제술 (피부궤양, 봉소염 제외)	471. 피판술(피부궤양, 봉소염 제외)	J031	2
	472. 피부 이식술(피부궤양, 봉소염 제외)	J032	2
기타 피부, 피하조직 수술	473. 피부 및 연조직 악성종양 적제술	J041	4
	474. 피부 및 연조직 수술	J042	1
	475. 기타 피부, 피하조직수술	J043	1
유방재건술	476. 자가조직을 이용한 유방재건술	J051	3
	477.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재건술	J052	3
주요 유방 수술	478. 근치 유방절제술	J061	7
	479. 유방절제술(악성종양의 경우)	J062	7
	480. 유방절제술(악성종양 제외)	J063	2
단순 유방 수술	481. 진공흡입보조장치를 이용한 단순 유방 수술	J071	1
	482. 절개에 의한 단순 유방 수술	J072	1
액와 수술	483. 액와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J081	4
	484. 액와 수술(악성종양 제외)	J082	1
기타 유방 및 액와 수술	485. 기타 유방 및 액와 수술	J090	1
항문 주위 및 모소 수술	486. 항문 주위 및 모소 수술	J100	1
	487. 교감신경절제술	J110	2
내분비, 영양 및 대사장애 절단술	488. 내분비, 영양 및 대사장애 절단술(수족부 제외)	K011	7
	489. 내분비, 영양 및 대사장애 수족부 절단술	K012	3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 시술 코드	수술 시술 종류
뇌하수체 수술	490. 천막상부 종양 절제술	K021	8
	491. 복잡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절제술	K023	8
	492. 단순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절제술	K024	8
부신 수술	493. 복강경을 이용한 부신수술	K031	4
	494. 개복에 의한 부신수술	K032	4
내분비, 영양 및 대사장애 피부이식 및 상처변연 절제술	495. 내분비, 영양 및 대사장애 유리 피판술	K041	2
	496. 내분비, 영양 및 대사장애 기타 피판술	K042	2
	497. 내분비, 영양 및 대사장애 피부 이식술	K043	2
부갑상선 수술	498. 내시경을 이용한 부갑상선 수술	K051	2
	499. 절개에 의한 부갑상선 수술	K052	2
주요 갑상선 악성 종양 수술	500. 주요 갑상선 악성 종양 수술(양쪽)	K063	4
	501. 주요 갑상선 악성 종양 수술(한쪽)	K064	4
주요 갑상선 악성 종양 제외 수술	502. 주요 갑상선 악성 종양 제외 수술(양쪽)	K075	2
	503. 주요 갑상선 악성 종양 제외 수술(한쪽)	K076	2
기타 갑상선 수술	504. 기타 갑상선 수술	K080	1
기타 내분비, 영양 및 대사장애 수술	505. 복강경을 이용한 비만대사수술	K091	1
	506. 개복에 의한 비만대사수술	K092	1
	507. 기타 내분비, 영양 및 대사장애 수술	K490	1
복막투석 도관 삽입술	508. 복막투석 도관 삽입술	L010	2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 시술 코드	수술 시술 종류
신장 및 비뇨기계 신생물 수술	509. 주요 신장, 신우 및 요관 신생물 수술	L021	7
	510. 기타 신장, 신우 및 요관 신생물 수술	L022	7
	511. 주요 방광 및 골반 신생물 수술	L023	7
	512. 기타 방광, 골반 및 요도 신생물 수술	L024	5
	513. 경요도 요관 및 방광 신생물 수술	L025	4
	514. 전립선 신생물 수술	L026	4
	515. 복강경을 이용한 신장 및 비뇨기계 신생물 수술	L027	7
신장 및 신우 수술	516. 복강경을 이용한 신장 및 신우 수술	L031	4
	517. 개복에 의한 신장 및 신우 수술	L032	4
	518. 경피적 신장 및 신우 수술, 한쪽	L033	3
	519. 경피적 신장 및 신우 수술, 양쪽	L034	3
요관 수술	520. 요관 수술	L040	2
방광 수술	521. 개복에 의한 방광 수술	L051	4
	522. 경피적 방광 수술	L052	2
	523. 경요도 방광 수술	L053	1
전립선 수술	524. 전립선 수술	L060	2
요도 수술	525. 주요 요도 수술	L071	1
	526. 요도경하 요도 수술	L072	1
	527. 기타 요도 수술	L073	1
	528. 복잡 요실금 수술	L074	1
	529. 단순 요실금 수술	L075	1
요로 결석 수술	530. 복강경을 이용한 요로 결석 수술	L081	4
	531. 신장, 신우 및 요관 결석 수술	L082	4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 시술 코드	수술 시술 종류
	532. 경요도적 요관 결석 수술	L083	2
	533. 방광 및 요도 결석 수술	L084	4
	534. 연성내시경하 수술	L085	2
요로결석 제거를 위한 체외충격 파쇄석술	535. 요로결석 제거를 위한 체외충격파쇄석술, 복잡	L091	1
	536. 요로결석 제거를 위한 체외충격파쇄석술, 단순	L092	1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의 신경 자극기 설치술	537.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의 신경 자극기 설치술	L101	3
	538.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의 시험적 거치술	L102	1
요로 질환 수술	539. 경요도 요로 질환 수술	L111	1
	540. 외상 및 감염성 요로 질환 수술	L112	1
기타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의 경피적 시술	541. 기타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의 경피적 시술	L120	2
	542. 혈액투석을 위한 단락 또는 동정맥루 조성술	L131	2
기타 신장 및 비뇨기계 시술	543. 혈액투석 동정맥루의 경피적 수술, 복잡	L132	2
	544. 혈액투석 동정맥루의 경피적 수술, 단순	L133	2
	545. 기타 신장 및 비뇨기계 시술	L134	1
방광요도경 시술	546. 방광요도경 시술	L510	1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의 경피적 배액술	547.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의 경피적 배액술	L520	1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 시술 코드	수술 시술 종류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의 경피적 경화술	548.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의 경피적 경화술	L530	1
남성 골반 수술	549. 남성 골반 수술	M010	1
전립선 적출술	550. 주요 전립선 적출술	M021	4
	551. 기타 전립선 적출술	M022	3
기타 전립선 수술	552. 기타 전립선 수술	M030	1
	553. 복잡 음경 수술	M041	1
음경 수술	554. 단순 음경 수술	M042	1
	555. 페이로니 병 수술	M043	1
포경 수술	556. 포경 수술	M050	1
요도 수술	557. 주요 요도 수술	M061	1
	558. 단순 요도 수술	M062	1
음낭 수술	559. 복잡 음낭 수술	M071	1
	560. 단순 음낭 수술	M072	1
고환 수술	561.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 고환 수술	M081	4
	562. 개복에 의한 복잡 고환 수술	M082	4
	563. 단순 고환 수술	M083	1
기타 고환 수술 및 생식기 적출술	564. 복강경을 이용한 정계정맥류	M091	4
	565. 개복에 의한 정계정맥류	M092	4
	566. 고환 및 생식기 적출술	M093	7
기타 남성생식기 계 시술	567. 기타 남성생식기계 시술(악성종양의 경우)	M101	4
	568. 기타 남성생식기계 시술(악성종양 제외)	M102	1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 시술 코드	수술 시술 종류
방광요도경 시술	569. 방광요도경 시술	M500	1
자궁 수술 (악성종양의 경우)	570.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N011	7
	571. 개복에 의한 자궁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N012	7
주요 자궁절제술 (악성종양 제외)	572. 복강경을 이용한 주요 자궁절제술(악성종양 제외)	N021	2
	573. 개복에 의한 주요 자궁 절제술(악성종양 제외)	N022	2
단순 자궁 수술(악성 종양 제외)	574. 복강경을 이용한 단순 자궁 수술(악성종양 제외)	N031	2
	575. 개복에 의한 단순 자궁 수술(악성종양 제외)	N032	2
난소 및 부속기 수술 (악성종양의 경우)	576. 복강경을 이용한 난소 및 부속기 수술 (악성종양의 경우)	N041	7
	577. 개복에 의한 난소 및 부속기 수술 (악성종양의 경우)	N042	7
난소 수술 (악성종양 제외)	578. 복강경을 이용한 난소 수술(악성종양 제외)	N051	2
	579. 개복에 의한 난소 수술(악성종양 제외)	N052	2
부속기 수술 (악성종양 제외)	580. 복강경을 이용한 부속기 수술(악성종양 제외)	N061	2
	581. 개복에 의한 부속기 수술(악성종양 제외)	N062	2
자궁경부, 질 및 외음부 수술 (악성종양의 경우)	582.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경부, 질 및 외음부 수술 (악성종양의 경우)	N071	6
	583. 개복에 의한 자궁경부, 질 및 외음부 수술 (악성종양의 경우)	N072	6
자궁경부, 질 및 외음부 수술	584.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경부, 질 및 외음부 수술 (악성종양 제외)	N081	1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 시술 코드	수술 시술 종류
(악성종양 제외)	585. 자궁경부, 질 및 외음부 수술(악성종양 제외)	N082	1
기타 골반 수술 복원술	586.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골반 수술	N091	1
	587. 개복에 의한 기타 골반 수술	N092	1
주요 여성생식 기계 복원술	588. 복강경을 이용한 주요 여성생식기계 복원술	N101	1
	589. 개복에 의한 주요 여성생식기계 복원술	N102	1
기타 여성생식 기계 복원술	590. 기타 여성생식기계 복원술	N110	1
복강경 수술 및 기타 난관 결찰술	591. 복강경 수술	N121	1
자궁경 수술	592. 자궁경 수술	N130	1
자궁소파술	593. 치료적 자궁소파술	N141	1
기타 여성생식기 계 수술	594.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여성생식기계 수술	N161	1
	595. 개복에 의한 기타 여성생식기계 수술	N162	1
여성생식기계 경피적 혈관 수술	596. 여성생식기계 경피적 혈관 수술	N180	2
제왕절개 분만(단태아)	597. 일반 제왕절개분만(단태아)	O011	1
	598. 고위험 제왕절개분만(단태아)	O012	1
	599. 질식분만 시도 후 제왕절개분만(단태아)	O013	1
제왕절개 분만(다태아)	600. 질식분만 시도 후 제왕절개분만(다태아)	O022	1
	601. 일반 제왕절개분만(다태아)	O023	1
	602. 고위험 제왕절개분만(다태아)	O024	1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 시술 코드	수술 시술 종류
자궁외 임신 주요 수술	603.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외 임신 주요 수술	O081	4
	604. 개복에 의한 자궁외 임신 주요 수술	O082	4
자궁외 임신 기타 수술	605.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외 임신 기타 수술	O091	4
	606. 개복에 의한 자궁외 임신 기타 수술	O092	4
자궁경관 봉축술	607. 치료적 자궁경관봉축술	O102	1
분만 및 유산 후 관련 장애 (수술시행)	608. 분만 및 유산 후 관련 장애(수술시행)	O110	1
자궁소파술 및 흡인소파술	609. 자궁소파술 및 흡인소파술	O120	1
분만 및 유산 관련 자궁적출술	610. 분만 및 유산 관련 자궁적출술	O130	2
비장 절제술	611. 성인의 복강경을 이용한 비장 절제술	Q012	4
	612. 성인의 개복에 의한 비장 절제술	Q013	4
림프종 및 백혈병(주요 수술 시행)	613. 림프종 및 백혈병(주요 수술 시행)	R010	4
기타 신생물 질환(주요 수술 시행)	614. 기타 신생물 질환(주요 수술 시행)	R020	4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개두술	615.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개두술	W010	8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 시술 코드	수술 시술 종류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근골격계 주요 수술	616.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근골격계 주요 수술	W02 0	5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복부 수술	617.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복부 수술	W03 0	6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기타 수술	618.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기타 수술	W04 0	4
하지 손상의 미세혈관 조직이식 및 피부이식	619. 하지 손상의 미세혈관 조직이식	X011	3
	620. 하지 손상의 국소 피판 및 피부이식	X012	2
수부 손상의 미세혈관 조직이식 및 피부이식	621. 수부 손상의 미세혈관 조직이식	X021	3
	622. 수부 손상의 국소 피판 및 피부이식	X022	2
기타 손상의 미세혈관 조직이식 및 피부이식	623. 기타 손상의 미세혈관 조직이식 및 피부이식	X030	3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 시술 코드	수술 시술 종류
하지 손상의 기타 수술	624. 하지 손상의 골 및 관절 수술	X041	2
	625. 하지 손상의 기타 수술	X042	1
수부 손상의 기타 수술	626. 수부 손상의 골 및 관절 수술	X051	2
	627. 수부 손상의 기타 수술	X052	1
기타 손상의 수술	628. 기타 손상의 수술	X060	1
중증 화상 (피부 이식 동반)	629. 중증 화상(피부 이식 동반)	Y010	5
중등도 화상 (피부이식 혹은 흡입손상을 동반)	630. 중등도 화상(피부이식 혹은 흡입손상 동반)	Y020	2

주1) 상기의 「수술시술코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수술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하고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분류체계에 따라 부여된 「ADRG(Adjacent DRG)」중 회사가 정한 코드를 말합니다.

주2) 이 특별약관은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에서 분류된 「ADRG」중 다음의 「ADRG」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ADRG」에서 주진단 범주(MDC)에 해당하는 첫번째 자리(알파벳)를 제외하고 2,3번째 자리에 해당하는 숫자가 “60” ~ “99”에 해당하는 경우



예시

「ADRG」가 “B601”의 경우 첫번째 자리(알파벳(B))를 제외하고 2,3번째 자리에 해당하는 숫자가 “60”이므로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② 아래 표에 기재된 「ADRG」

수술 시술 코드	수술 및 시술명
B501	치료적 성분채집술
B502	신경계 면역요법
B510	뇌전증의 지속적 비디오 뇌파검사 감시
B520	자기뇌파검사 지도화
D070	코성형술
D180	구순열 및 구개열 수술
D191	치조골 수술
D192	구강내 점막수술
D193	단순 혀 수술
D300	발치
D502	치아 보존치료
E031	호흡기 질환을 위한 진단적 시술
E501	침습적 인공호흡기 96시간 이상(신대체요법 동반)
E502	침습적 인공호흡기 96시간 이상(신대체요법 미동반)
E511	침습적 인공호흡기 96시간 미만(신대체요법 동반)
E512	침습적 인공호흡기 96시간 미만(신대체요법 미동반)
E540	경기관지 폐생검
E550	폐흉부질환의 침습인 생검
F051	심장 중격결손증 수술
F052	기타 복잡 심장 기형 교정술
F171	선천성 심장병 협착 질환의 경피적 혈관성형술(스텐트 사용)
F172	경피적 심장내 혈관성형술(스텐트 사용)
F173	순환기계의 경피적 풍선 혈관성형술
F501	심장 전기 생리 검사

수술 시술 코드	수술 및 시술명
F502	심장질환을 위한 심도지술 및 혈관조영술
F503	진단적 관상동맥 조영술
F504	심근생검
F505	심낭천자
G161	선천성 거대결장 및 장무공증 수술
G162	주요 직장항문 기형 수술
G163	기타 직장항문 기형 수술
G331	소화기계 질환을 위한 진단적 시술
H131	간담도 진단적 시술(악성종양의 경우)
H132	간담도 진단적 시술(악성종양 제외)
H530	진단적 역행성담체관내시경
I230	관절경검사
I240	생검을 포함한 골과 관절의 진단적 수술
I510	근골격계 질환의 침생검
J053	유두 및 유륜재건술
J500	유방 질환의 침습인생검
K500	갑상선 질환의 침습인생검
L113	선천성 요로 질환 수술
L500	요관경검사
M094	정관 수술
M510	전립선 생검
N122	복강경 검사 및 기타 난관 결찰술
N142	진단적 자궁소파술
N151	복강경을 이용한 여성생식기계 질환을 위한 진단적 수술

수술 시술 코드	수술 및 시술명
N152	개복에 의한 여성생식기계 질환을 위한 진단적 수술
N170	방사선원삽입요법(악성종양의 경우)
O041	일반 질식분만(초산)
O042	고위험 질식분만(초산)
O051	일반 질식분만(경산)
O052	고위험 질식분만(경산)
O061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일반 질식분만
O062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고위험 질식분만
O073	질식분만(복합 수술 동반)
O101	예방적 자궁경관봉쇄술
O141	분만 및 유산 관련 경피적 혈관 수술
O142	산욕기 관련 기타 경피적 혈관 수술
P010	입원후 5일 미만에, 사망하거나 전원된 신생아(중요 수술 시행)
P020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심흉복부/혈관 수술
P030	신생아, 입원시 체중 < 750g(중요 수술 시행)
P040	신생아, 입원시 체중 750-999g(중요 수술 시행)
P050	신생아, 입원시 체중 1000-1249g(중요 수술 시행)
P060	신생아, 입원시 체중 1250-1499g(중요 수술 시행)
P070	신생아, 입원시 체중 1500-1999g(중요 수술 시행)
P080	신생아, 입원시 체중 2000-2499g(중요 수술 시행)
P090	신생아, 입원시 체중 > 2499g(중요 수술 시행)
Q011	소아의 비장 절제술
Q020	기타 혈액 및 조혈기관 수술
R030	림프종 및 백혈병(기타 수술 시행)

수술 시술 코드	수술 및 시술명
R040	기타 신생물 질환(기타 수술 시행)
R500	치료적 성분채집술
T011	패혈증 수술(합병증 동반)
T012	패혈증 수술(합병증 미동반)
T013	외상 후 감염 수술
T014	수술 후 감염 수술
T015	기타 감염 질환 수술
U010	정신장애 치료목적의 수술
W050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복부 혈관색전술
Y030	기타 화상(피부이식 동반)
Z010	기타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수술

③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에서 규정한 “Error DRG” 및 “960 DRG”

- Error DRG : 961, 962, 963, 990, 999

※ “Error DRG”라 함은 “주진단 범주(MDC)”와 일치하지 않는 수술 등을 뜻합니다.



예시

거미막하출혈로 진단받고 경피적 심장판막성형술을 받은 경우는 주진단 범주(MDC)와 수술이 일치하지 않아 Error DRG가 생성되어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960 DRG”라 함은 “Error DRG”는 아니지만 입원 2일 이내에 조기 사망한 환자(신생아 제외)를 뜻합니다. 다만, 통원일 또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진료비세 부내역서 등에서 확인되는 「수술시술코드」는 보장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시술코드 및 ADRG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발·관리하는 KDRG 버전 4.4(2021.1.1 기준)에서 정의된 ADRG코드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호, 2021.1.22.)에서 정의된 수가코드,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에서 정의된 분류번호 기준이며, 향후 ADRG코드 및 수가코드, 분류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ADRG코드 및 수가코드, 분류번호에 준하여 수술시술코드 및 ADRG를 결정합니다.

【별표29】 척추상해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척추상해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상병	분류번호
목의 골절	S12
흉추의 골절	S22.0
흉추의 다발골절	S22.1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13
흉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S23.0
흉추의 탈구	S23.1
흉추의 염좌 및 긴장	S23.3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33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S14.0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14.1
경추 신경근의 손상	S14.2
상완신경총의 손상	S14.3
흉수의 진탕 및 부종	S24.0
흉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24.1
흉추 신경근의 손상	S24.2
요수의 진탕 및 부종	S34.0
요수의 기타 손상	S34.1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 손상	S34.2
말총의 손상	S34.3
요천수신경총의 손상	S34.4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침범한 탈구, 염좌 및 긴장	T03.8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08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30】 급여 창상병합술 대상 수가코드

약관에 규정하는 창상병합술로 분류되는 치료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9장(처치 및 수술료)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내용	수가코드
창상병합술	
가. 안면 또는 경부	
(1) 단순병합	
(가) 표재성인 것	
3) 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S0027
4) 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S0028
5) 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S0029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병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52.00점을 가산하며, 창상병합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52.00점을 추가 가산한다.	S0030
(나) 근육에 달하는 것	
1) 길이 1.5cm 미만	S0031
2) 길이 1.5cm 이상~3.0cm 미만	S0032
3) 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S0037
4) 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S0038
5) 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S0039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병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52.00점을 가산하며, 창상병합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52.00점을 추가 가산한다.	S0040
(2) 변연절제를 포함	
(가) 표재성인 것	

내용	수가코드
3) 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SA027
4) 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SA028
5) 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SA029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병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63.81점을 가산하며, 창상병합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63.81점을 추가 가산한다.	SA030
(나) 근육에 달하는 것	
1) 길이 1.5cm 미만	SA031
2) 길이 1.5cm 이상~3.0cm 미만	SA032
3) 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SA037
4) 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SA038
5) 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SA039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병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63.81점을 가산하며, 창상병합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63.81점을 추가 가산한다.	SA040
가. 안면과 경부 이외	
(1) 단순병합	
(가) 표재성인 것	
3) 길이 5.0cm 이상~10.0cm 미만	SB029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병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78.50점을 가산하며, 창상병합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78.50점을 추가 가산한다.	SB030
(나) 근육에 달하는 것	
1) 길이 2.5cm 미만	SB031
2) 길이 2.5cm 이상~5.0cm 미만	SB032
3) 길이 5.0cm 이상~10.0cm 미만	SB039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병합술을 시행할 경우	

내용	수가코드
소정점수에 78.50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78.50점을 추가 가산한다.	SB040
(2) 변연절제를 포함 (가) 표재성인 것 3) 길이 5.0cm 이상~10.0cm 미만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103.14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103.14점을 추가 가산한다.	SC029 SC030
(나) 근육에 달하는 것 1) 길이 2.5cm 미만 2) 길이 2.5cm 이상~5.0cm 미만 3) 길이 5.0cm 이상~10.0cm 미만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103.14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103.14점을 추가 가산한다.	SC031 SC032 SC039 SC040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의료행위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수가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31】 급여 안면부창상봉합술(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 대상 수가코드

약관에 규정하는 창상봉합술로 분류되는 치료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9장(처치 및 수술료)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내용	수가코드
창상봉합술 가. 안면 또는 경부 (1) 단순봉합 (가) 표재성인 것 3) 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4) 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5) 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52.00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52.00점을 추가 가산한다.	S0027 S0028 S0029 S0030
(나) 근육에 달하는 것 1) 길이 1.5cm 미만 2) 길이 1.5cm 이상~3.0cm 미만 3) 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4) 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5) 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52.00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52.00점을 추가 가산한다.	S0031 S0032 S0037 S0038 S0039 S0040

내용	수가코드
(2) 변연절제를 포함	
(가) 표재성인 것	
3) 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SA027
4) 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SA028
5) 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SA029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63.81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63.81점을 추가 가산한다.	SA030
(나) 근육에 달하는 것	
1) 길이 1.5cm 미만	SA031
2) 길이 1.5cm 이상~3.0cm 미만	SA032
3) 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SA037
4) 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SA038
5) 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SA039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63.81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63.81점을 추가 가산한다.	SA040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의료행위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수가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32】 급여 상해 CT검사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여 상해 CT검사”로 분류되는 치료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3장(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내용	수가코드
일반 전산화단층촬영진단	
주 : 1. 생검 또는 중재적시술시 이용된 CT 유도 비용은 각 항목의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흉부 및 복부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기타의 경우)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중재적 시술시 이용한 CT 유도 비용은 제2회 시술부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HA851 HA801 HA805 HA809 HA813 HA853 HA834 HA835 HA856 HA857 HA858 HA859
가. 두부	
(1)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HA451
(2)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포함]	HA461
(3) 특수검사	
(가)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HA511
(나) 삼차원 CT	HA521
(다) CT 혈관조영	HA531
(라) Cine CT	HA551
(마) 뇌조 CT	HA561
(4) 제한적 CT	HA441

내용	수가코드
나. 안면 및 두개기저	
(1) 안와	
(가)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HA401
(나)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포함]	HA402
(다) 특수검사	
1)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HA501
2) 삼차원 CT	HA502
3) CT 혈관조영	HA503
(라) 제한적 CT	HA404
(2) 부비동	
(가)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HA405
(나)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포함]	HA406
(다) 특수검사	
1)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HA504
2) 삼차원 CT	HA505
3) CT 혈관조영	HA506
(라) 제한적 CT	HA408
(3) 측두골	
(가)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HA409
(나)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포함]	HA410
(다) 특수검사	
1)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HA507
2) 삼차원 CT	HA508
3) CT 혈관조영	HA509
(라) 제한적 CT	HA412
(4) 기타	
(가)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HA413
(나)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포함]	HA414
(다) 특수검사	
1)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HA591
2) 삼차원 CT	HA592

내용	수가코드
3) CT 혈관조영	HA593
4) 뇌조 CT	HA594
(라) 제한적 CT	HA416
다. 경부	
(1)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HA453
(2)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포함]	HA463
(3) 특수검사	
(가)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HA513
(나) 삼차원 CT	HA523
(다) CT 혈관조영	HA533
(4) 제한적 CT	HA443
라. 흉부	
(1)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가) 고해상력	HA424
(나) 기타의 경우	HA434
(2)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포함]	HA464
(3) 특수검사	
(가)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HA514
(나) 삼차원 CT	HA524
(다) CT 혈관조영	HA534
(라) Cine CT	HA554
(4) 제한적 CT	HA444
마. 복부	
(1)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가) 요로결석 의심	HA425
(나) 기타의 경우	HA435
(2)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포함]	HA465
(3) 특수검사	
(가)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HA515
(나) 삼차원 CT	HA525
(다) CT 혈관조영	HA535

내용	수가코드
(4) 제한적 CT	HA445
바. 척추	
(1)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HA456
주: “경추, 흉추, 요추 부위”를 동시 촬영하거나 “경추, 요추”를 동시 촬영한 경우에는 1,117.99점을 산정한다.	HA459
(2)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포함]	HA466
주: “경추, 흉추, 요추 부위”를 동시 촬영하거나 “경추, 요추”를 동시 촬영한 경우에는 1,614.14점을 산정한다.	HA469
(3) 특수검사	
주: “경추, 흉추, 요추 부위”를 동시 촬영하거나 “경추, 요추”를 동시 촬영한 경우에는 1,790.76점을 산정한다.	HA519
	HA529
	HA539
	HA549
(가)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HA516
(나) 삼차원 CT	HA526
(다) CT 혈관조영	HA536
(라) 관절 관 또는 강내조영촬영	HA546
(4) 제한적 CT	HA446
주: “경추, 흉추, 요추 부위”를 동시 촬영하거나 “경추, 요추”를 동시 촬영한 경우에는	HA449
사. 상지	
(1)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HA457
(2)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포함]	HA467
(3) 특수검사	
(가)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HA517
(나) 삼차원 CT	HA527
(다) CT 혈관조영	HA537
(라) 관절강내조영촬영	HA547
(마) Cine CT	HA557

내용	수가코드
(4) 제한적 CT	HA447
아. 하지	
(1)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HA458
(2)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포함]	HA468
(3) 특수검사	
(가)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HA518
(나) 삼차원 CT	HA528
(다) CT 혈관조영	HA538
(라) 관절강내조영촬영	HA548
(마) Cine CT	HA558
(4) 제한적 CT	HA448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가. 일반	HA496
나. 3차원 CT, 관절강내조영촬영	HA497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의료행위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수가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

【법규1】 개인정보 보호법	527	【법규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553
【법규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528	【법규25】 형법	554
【법규3】 국민건강보험법	529	【법규26】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557
【법규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529	【법규27】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7
【법규5】 도로교통법	530	【법규28】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62
【법규6】 민법	530	【법규29】 한의약육성법	563
【법규7】 상법	531	【법규30】 약사법	563
【법규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31	【법규3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563
【법규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34	【법규32】 소비자기본법	564
【법규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5	【법규33】 공직선거법	564
【법규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37	【법규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565
【법규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537	【법규35】 보험업감독규정	566
【법규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38	【법규36】 보험업법	566
【법규14】 의료급여법 시행령	539	【법규37】 보험업법 시행령	567
【법규15】 의료법	539	【법규3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568
【법규16】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	542	【법규3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	568
【법규17】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542	【법규4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569
【법규1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543	【법규41】 산업안전보건법	569
【법규1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545	【법규42】 도로법	569
【법규2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546	【법규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570
【법규2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548	【법규44】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571
【법규22】 전자서명법	552	【법규4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571
【법규23】 지역보건법	552	【법규4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72
		【법규4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72
		【법규4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74
		【법규4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577
		【법규5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578

※ 위의 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법규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삭제 <2013. 8. 6.>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법규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
 - 나.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거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

보를 수집할 수 있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방법 중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별 업무, 업종의 특성 및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개인정보 보호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법규3】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요양기관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
1. 제2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및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법규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등급판정기준 등)

-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 장기요양 5등급 :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6.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신의 기능 저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법규5】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규6】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법규7】 상법**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법규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특수강간 등)

- ① 흥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②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

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의2(예비, 음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규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준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意的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 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②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준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③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제2조제1호의4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등급제업무·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 9의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9의4. 다음 각 목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가. 양 목적 간의 관련성
 - 나.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우

다.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라. 해당 개인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

10.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려거나 공시할 수 있다.
-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⑪ 개인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①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를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3.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법규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① 삭제 <2015.9.11.>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④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정보 제공 동意的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意的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 ⑤ 제4항의 방식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意的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 또는 업종의 특성
 - 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나.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 다.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3.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신용정보주체의 수
- ⑥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⑦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으로 확인하고, 확인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⑧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
1.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유지할 수 없는지 여부
 2.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제공·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의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신용정보주체가 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신청한 상거래관계에서 제공하기로 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 등을 체결한 제3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3.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 ⑨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필수적 동의 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서 양식을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주체가 각 동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⑩ 법 제32조제6항제4호에서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3. 행정기관이 인가·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4.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5.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어음·수표 소지인이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자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6. 「민법」 제450조에 따라 지명채권을 양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 가.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그 지명채권의 원인이 되는 상거래관계가 설정될 당시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해당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 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7. 삭제 <2020. 8. 4.>
- ⑪ 법 제32조제6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매매에 따른 위험 관리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에 제공하는 경우
 2. 「상법」 제719조에 따른 책임보험계약의 제3자에 대한 정보를 보험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3. 「상법」 제726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계약의 제3자의 정보를 보험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 ⑫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7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하는 경우에 그 제공의 이유 및 그 알리거나 공시하는 자별로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 ⑬ 법 제3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⑭ 법 제32조제8항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체계를 말한다.

【법규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규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

-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등”이라 한다) 관리기관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등의 입주기업체 소속원을 포함한다]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

로 본다.

- 1)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연구기관 등 공법인
 - 2) 회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등의 관리기관
-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래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
-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법규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전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 ①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다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법규14】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1. 삭제 <2005.7.5.>
 - 2. 삭제 <2005.7.5.>
- ② 삭제 <2005.7.5.>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기금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외에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이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라 한다)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별표 1 제1호 라목·마목, 같은 표 제2호마목·바목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매 30일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1중수급권자 : 2만원
 - 2. 2중수급권자 : 20만원
- ⑥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서 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초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 1. 1중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
 - 2. 2중수급권자: 연간 80만원.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 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으로 한다.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규15】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 의원
 - 다. 한의원
 -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신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 병원
 - 다. 한방 병원
 -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정신 병원
 - 바. 종합 병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 의료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의2(병원등)

병원·치과 병원·한방 병원 및 요양 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 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 병상(요양 병원만 해당하며,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의3(종합 병원)

- ① 종합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것
 -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

- 합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는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 전문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⑦ 전문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업무)

- 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 ③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방법, 게시 장소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④ 삭제 <2020. 3. 4.>
- 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생,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 ⑥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기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 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학·치과의사학·한의사학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 ⑦ 그 밖에 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규16】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

[별표 3] <개정 2021.6.30.>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관련)

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1.~11.	(생략)						
11의2 탕전실	1(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1.~19.	(생략)						
20. 그 밖의 시설	가.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시설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과 엘리베이터(계단과 엘리베이터는 2층 이상인 건물만 해당하고, 층간 경사로를 갖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 탕전실은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할 수 있다. 라.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식장의 운영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법규17】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 4] <개정 2019.9.27.>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2. 중환자실

-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라. 병상 1개당 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 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법규1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별표 1] <개정 2021. 8. 27.>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초소형	일반형			
승용 자동차	배기량이 25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승합 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화물 자동차	배기량이 25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수 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이륜 자동차	배기량이 50cc 미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 초과 260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260cc(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승용 자동차	일반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승용겸화물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다목적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기타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
승합 자동차	일반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특수형	특정한 용도(장의·현찰·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
화물 자동차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 자동차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용도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용도용인 것
이륜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자동차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수형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타형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 비교

1.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 (소형·경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초소형화물차 및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 1)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 2)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칸막이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 3)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나.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 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2. 위 표 제1호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 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 나.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 다. 이륜자동차의 최고정격출력(maximum continuous rated power)은 구동전동기의 최대의 부하(負荷, load)상태에서 측정된 출력을 말한다.

【법규1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제3조(책임보험금 등)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② 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한 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 ③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말한다.

【법규2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개정 2021. 4. 13>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礙人)

-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礙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礙人)

-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礙人)

-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礙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礙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장애인(自閉性障礙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礙人)

다음 각 목의 장애·질환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가.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 및 재발성 우울장애
- 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9. 신장장애인(腎臟障礙人)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礙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礙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礙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礙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礙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腦電症障礙人)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법규2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1】 <개정 2021.4.13.>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

-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 있는 사람
-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5)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

- 가. 청력을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생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아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5)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또는 기면증으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한 경우로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 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간경변증, 간세포암증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 2) 간경변증, 간세포암증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p>사람</p> <p>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p> <p>13. 안면장애인</p> <p>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p> <p>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p> <p>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p> <p>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p> <p>1)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p> <p>2)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에 백반증(白斑症)이 있는 사람</p> <p>3) 노출된 안면부의 3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p> <p>14. 장루·요루장애인</p> <p>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p> <p>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p> <p>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p> <p>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p> <p>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p> <p>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p> <p>2) 방광루를 가진 사람</p> <p>15. 뇌전증장애인</p> <p>가. 성인 뇌전증</p> <p>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p> <p>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p> <p>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p> <p>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p>
--

<p>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p> <p>나. 소아청소년 뇌전증</p> <p>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p> <p>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p> <p>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p> <p>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p> <p>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p> <p>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p> <p>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p> <p>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p>
--

【법규22】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가. 서명자의 신원
 -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3. "전자서명생성정보"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4. "전자서명수단"이란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수단을 말한다.
5. "전자서명인증"이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7. "전자서명인증업무"란 전자서명인증,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록의 관리 등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8. "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9. "가입자"란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10. "이용자"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법규23】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 ②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보건의료원)

보건소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법규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폭행 등)**

- ① 삭제 <2016.1.6.>
-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집단적 폭행 등)

- ① 삭제 <2016.1.6.>
- ② 삭제 <2006.3.24.>
- ③ 삭제 <2016.1.6.>
-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또는 제369조제1항(특수손괴)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제2항(강요)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

-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에 따른 죄 중 다음 각 목의 죄
 - 가.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의 죄
 - 나.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5조(예비, 음모)의 죄
 - 다. 「형법」 제34장 상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4조(업무방해),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
 - 라.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제1항(해상강도)·제2항(해상강도상해 또는 치상), 제341조(상습범),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
 2.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을 포함한다)
- ③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규25】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9조(상해치사)

-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결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제266조(과실치상)**

-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장 협박의 죄**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2장 손괴의 죄

제369조(특수손괴)

-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규26】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해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화재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특약부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3. "특수건물"이란 국유건물·공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호텔·숙박업소·다중이용업소·운수시설·공장·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제 1항

-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보험금액)

- ① 제5조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화재보험: 특수건물의 시가(時價)에 해당하는 금액
 2.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명마다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나.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명마다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다.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화재 1건마다 1억원 이상으로서 국민의 안전 및 특수건물의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결정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법규27】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건물)

-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 관저(官邸)와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을 제외한다.
 - 1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 한다) 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은 제외한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6.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7. 「방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은 제외한다.
1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4.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다만, 아파트(제12조에 따른 아파트는 제외한다)·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상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7.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역사 및 역 시설.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역사 및 역 시설은 제외한다.
18.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 ② 제1항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건물의 층수 계산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르되,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한 계단실 또는 물탱크실인 경우에는 층수로 산입하지 아니하며, 지하층은 이를 층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보험금액)

-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별표 1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생긴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4.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1건마다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②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당한 피해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당한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손해액의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 ①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손해보험회사는 법 제9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보험금의 지급청구인과 수령인의 주소 및 성명
 2. 청구액과 지급액
 3. 피해자의 주소 및 성명

[별표 1] <개정 2021. 1. 5.>

부상등급 및 보험금액(제5조제1항제2호 관련)

등급	보험금액	부상 내용
1급	3천만원	1. 엉덩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각종 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4. 외상성 머리뼈안 출혈로 머리뼈 절개수술을 시행한 부상 5. 머리뼈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 또는 경막밑 수종, 수혈액 낭종, 거미막밑 출혈 등으로 머리뼈 절개수술을 시행한 부상 6. 고도의 뇌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부상(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넓적다리뼈 몸통의 분쇄성 골절 8. 정강이뼈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좌창·괴사상처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심한 부상(면적의 9퍼센트 이상의 부상을 말한다) 10. 팔다리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피부의 혈행을 보존한 채로 이식하는 수술을 말한다)을 시행한 부상 11. 위팔뼈목 골절과 몸통 분쇄 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위팔뼈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2급	1,500만원	1. 위팔뼈 분쇄성 골절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각종 신경증상이 없는 부상 또는 목뼈 탈구(불완전탈구를 포함한다), 골절 등으로 목뼈고정기(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부상 3.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부상(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뼈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골반뼈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부상 5. 무릎관절 탈구

		6. 발목관절 부위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부상 7. 자뼈 몸통 골절과 노뼈 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부상 8. 엉치엉덩관절 탈구 9. 무릎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가 전부 파열된 부상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3급	1,200만원	1. 위팔뼈목 골절 2. 위팔뼈 관절용기 골절과 팔꿈치관절 탈구가 동반된 부상 3. 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부상 4. 손목 손배뼈 골절 5. 노뼈 신경손상을 동반한 위팔뼈 몸통 골절 6. 넓적다리뼈 몸통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 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부상 8. 정강이뼈 관절용기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정강이뼈 용기사이결절 골절로 개방정복(피부와 근육 절개 후 골절된 뼈를 바로잡는 시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발목뼈 척골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발목발허리(Lisfranc: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 및 탈구 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 파열과 정강이뼈 용기사이결절 골절 등이 복합된 속무릎장애(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복강 내 출혈로 수술한 부상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부상 13. 중증도의 뇌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 찢김상처(열창)로 양쪽 안구가 파열되어 두 눈 적출술을 시행한 부상 15. 목뼈고리(목뼈의 추골 뒷부분인 추골을 말한다)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p>요도성형술을 시행한 부상</p> <p>17. 넓적다리뼈 관절염기 분쇄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p> <p>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p>
4급	1천만원	<p>1. 넓적다리뼈 관절염기(먼쪽부위,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 골절</p> <p>2. 정강이뼈 몸통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정강이뼈 관절염기 골절</p> <p>3. 목말뼈목 골절</p> <p>4. 슬개 인대 파열</p> <p>5. 어깨관절 부위의 돌림근띠(회전근개라고도 하며, 어깨관절을 감싸면서 어깨관절을 돌리는 네 근육을 말한다) 골절</p> <p>6. 위팔뼈 가쪽위관절염기가 어긋나는 골절</p> <p>7.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p> <p>8. 화상, 좌창, 괴사상처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부상</p> <p>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개방성 공막 찢김상처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부상</p> <p>10. 넓적다리 네갈래근, 두갈래근 파열로 개방정복을 시행한 부상</p> <p>11. 무릎관절부위의 내외측부 인대, 전·후십자인대,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p> <p>12. 개방정복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이뼈·종아리뼈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p> <p>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p>
5급	900만원	<p>1. 골반뼈의 중복 골절(말게뉴 골절 등을 포함한다)</p> <p>2. 발목관절부위의 안쪽·바깥쪽 복사 골절이 동반된 부상</p> <p>3. 발뒤꿈치뼈 골절</p> <p>4. 위팔뼈 몸통 골절</p> <p>5. 노뼈 먼쪽부위(콜리스골절(팔목 바로 위 노뼈가 부러져 손바닥이 등쪽이나 바깥쪽으로 돌아간 상태를 말한다), 스미스골절(콜리스골절의 반대로서 팔목 바로 위 노뼈가 부러져 뺨조각이 손바닥쪽으로 어긋난 상태를 말한다), 손목 관절면, 노뼈 먼쪽 뼈끝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p> <p>6. 자뼈 몸쪽부위 골절</p>

		<p>7.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혈액가슴증, 공기가슴증이 동반된 부상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액가슴증,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부상</p> <p>8. 발등 근육힘줄 파열창</p> <p>9. 손바닥 근육힘줄 파열창(위팔의 깊게 찢긴 상처(심부 열창)로 인한 삼각근, 이두근 근육힘줄 파열을 포함한다)</p> <p>10. 아킬레스힘줄 파열</p> <p>11. 소아의 위팔뼈 몸통 골절(분쇄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부상</p> <p>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부상</p> <p>13. 목말뼈 골절(목부위는 제외한다)</p> <p>14. 개방정복을 시행하지 않은 소아의 정강이뼈·종아리뼈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p> <p>15. 개방정복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이뼈 분쇄 골절</p> <p>16.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p> <p>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부상</p>
6급	700만원	<p>1. 소아의 다리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p> <p>2. 넓적다리뼈 대전자부 절편 골절</p> <p>3. 넓적다리뼈 소전자부 절편 골절</p> <p>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p> <p>5. 두덩뼈·궁둥뼈·엉덩뼈·엉치뼈의 단일 골절 또는 꼬리뼈 골절로 수술한 부상</p> <p>6. 두덩뼈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두덩뼈 골절</p> <p>7. 단순 손목뼈 골절</p> <p>8. 노뼈 몸통 골절(먼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p> <p>9. 자뼈 몸통 골절(몸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p> <p>10. 자뼈 팔꿈치 머리 부위 골절</p> <p>11. 다발성 손바닥뼈 골절</p> <p>12.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p> <p>13. 외상성 경막밑 수종, 수혈액 낭종, 거미막밑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천공술(원형절제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p> <p>14. 갈비뼈 골절이 없이 혈액가슴증 또는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부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5. 위팔뼈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16. 넓적다리뼈 또는 넓적다리뼈 관절용기 찢김 골절 17.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7급	5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아의 팔 장관골 골절 2. 발목관절 안쪽 복사뼈 또는 바깥쪽 복사뼈 골절 3. 위팔뼈 위관절용기 굽힘골절 4. 엉덩관절 탈구 5. 어깨 관절 탈구 6. 봉우리빗장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봉우리빗장 인대 파열 7. 발목관절 탈구 8. 천장관절 분리 또는 두덩뼈 결합부 분리 9. 다발성 얼굴 머리뼈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얼굴 머리뼈 골절 10.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8급	3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팔뼈 결절부위 평골절 또는 위팔뼈 대결절 찢김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2. 쇄골(빗장뼈)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3. 팔꿈치관절 탈구 4. 어깨뼈(어깨뼈가시 또는 체부, 흉곽 내 탈구, 어깨뼈목, 복사, 견봉돌기 및 어깨뼈부리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5. 봉우리빗장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팔꿈치관절 안 위팔뼈 작은 머리 골절 7. 종아리뼈 골절, 종아리뼈 몸쪽부위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손상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9. 다발성 갈비뼈 골절 10. 뇌 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11. 얼굴부위 찢김상처,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손상 12. 위턱뼈, 아래턱뼈, 이틀뼈, 얼굴 머리뼈 골절 13.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부상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5.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9급	24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척추골의 가시돌기, 가로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노뼈 뼈머리 골절 3. 손목관절 내 반달뼈(월상골) 앞쪽 이탈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5. 손바닥뼈 골절 6. 손목 골절(손바뼈는 제외한다) 7. 발목뼈 골절(목말뼈 · 발꿈치뼈는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발목관절부위 뺨, 정강이뼈 · 종아리뼈 분리,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힘줄의 부분 파열 10. 갈비뼈, 복강뼈(흉골), 갈비연골(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액가슴증,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1. 척추체간 관절부위가 빠져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 근육 등을 포함한다) 손상이 동반된 부상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이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3. 손목관절 탈구(노뼈, 손목뼈 관절 탈구, 손목뼈사이 관절 탈구 및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고리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15. 무릎관절부위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6.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0급	2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상성 무릎관절 안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허리손가락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 간 관절 탈구 4. 팔부위 각 관절부(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뺨 5. 자뼈 · 노뼈 붓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코뼈 골절, 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6. 손가락 평근힘줄 파열

		7.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1급	160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뺨 2. 손가락 골절·탈구 및 뺨 3. 코뼈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2급	120만원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3급	80만원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4급	50만원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7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비고

1.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중 2가지 이상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으로부터 하위 3등급 사이(예: 부상 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 까지) 사이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부상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 보철이 필요한 부상이 중복된 경우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 등급별로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법규28】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손해액)

-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
 2. 남자 평균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
- ②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신체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을 치료하는 데에 드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 ③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손해액은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④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
 2. 제1호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

【법규29】 한의약육성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 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가공·제조·조제·수입·판매·감정·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한약제제,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제조·유통·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법규30】 약사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4. (생략)
5.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6.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생략)

【법규3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 ②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受理)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再開)
 2. 영업 내용의 변경
 3. 다중이용업주의 변경 또는 다중이용업주 주소의 변경
 4. 다중이용업소 상호 또는 주소의 변경

【법규32】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 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 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법규33】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當選人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제223조(당선소송)

-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52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제1항·제2항, 제188조(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제1항 내지 제4항, 제189조(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배분과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제2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소청인인 경우에는 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선인(제219조제2항 후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 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 일 이내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 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국회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의장중 1인을 피고로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퇴·사망하거나 제1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을,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을 피고로 한다.

【법규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애의 측정)

- ① 비장애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1.10.>
- ②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0.15.>
-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 3. 28., 2019.10.15.>
 - 1. 강직, 오그라들,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애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 2. 운동기능장애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법규35】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영 제6조의2제3항제1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2.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7. 제7-49조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단체

【법규36】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18. (생략)
19. "전문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본다.
 - 가. 국가
 - 나. 한국은행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라. 주권상장법인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 "일반보험계약자"란 전문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한다.

【법규37】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 ① 법 제2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주권상장법인
 3. 제2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4. 제3항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자
- ② 법 제2조제1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보험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은행법」에 따른 은행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1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
- ③ 법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법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3. 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라 한다),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

- 라 한다)
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1. 삭제 <2014.12.30.>
 1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4.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1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2호와 제13호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16.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 가. 외국 정부
 - 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 다. 외국 중앙은행
 - 라.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18.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법규3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8. "안전진단"이라 함은 제4조의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측정·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검사장비 및 검사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2. 관리주체가 법인 또는 단체이거나 관리주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자, 설치업자 또는 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4.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에 설치검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법규3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9.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3.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14.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1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해당 건축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을 하는 자가 야영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
17.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1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20.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법규4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안전성 평가 등)

-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하거나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향상계획에는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규41】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규42】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 다. 통행로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47조, 제113조 및 제115조제1호에서 같다)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를 지정·고시한다.

【법규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무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법규44】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25조(장기이식의료기관)**

- ① 장기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 ②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장기 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할 수 없다. 다만, 이식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장기 등을 적출할 수 있다.

제47조(벌칙)

-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사 또는 진료담당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뇌사조사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뇌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뇌사판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규4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써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아니할 것
 -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법규4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규4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동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 나. 마버그열
 - 다. 라싸열
 -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 바. 리프트밸리열
 - 사. 두창
 - 아. 페스트
 - 자. 탄저
 - 차. 보툴리눔독소증
 - 카. 야토병
 -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네. 신종인플루엔자
 - 더. 디프테리아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가. 결핵(結核)
 - 나. 수두(水痘)
 - 다. 홍역(紅疫)

- 라. 콜레라
 - 마. 장티푸스
 - 바. 파라티푸스
 - 사. 세균성이질
 -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자. A형간염
 - 차. 백일해(百日咳)
 - 카.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 타. 풍진(風疹)
 - 파. 폴리오
 - 하. 수막구균 감염증
 -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너. 폐렴구균 감염증
 - 더. 한센병
 - 러. 성홍열
 -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군중(CRE) 감염증
 - 서. E형간염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가. 파상풍(破傷風)
 - 나. B형간염
 - 다. 일본뇌염
 - 라. C형간염
 - 마. 말라리아
 - 바. 레지오넬라증
 - 사. 비브리오패혈증
 - 아. 발진티푸스
 - 자. 발진열(發疹熱)
 - 차. 찻찻가무시증
 - 카. 렙토스피라증
 - 타. 브루셀라증
 - 파. 공수병(恐水病)
 - 하. 신증후군출혈열(腎症候群出血熱)
 -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더. 황열
 - 러. 덩기열
 - 머. 규열(Q熱)
 - 버. 웨스트나일열
 - 서. 라임병
 - 어. 진드기매개뇌염
 - 저. 유비저(類鼻疽)
 - 처. 치쿤구니야열
 -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 가. 인플루엔자
 - 나. 매독(梅毒)
 - 다. 회충증
 - 라. 편충증
 - 마. 요충증
 - 바. 간흡충증
 - 사. 폐흡충증
 - 아. 장흡충증
 - 자. 수족구병
 - 차. 임질
 -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 타. 연성하감
 - 파. 성기단순포진
 - 하. 첨규콘딜롬
 -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머. 장관감염증
 -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6.~20. (생략)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 ①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 및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감염병환자 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4.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②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환자 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의 진단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규4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금융상품판매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다만,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판매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것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
 - 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3. “금융상품판매업자”란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하 “금융관계법률”이라 한다)에서 금융상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직접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 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4. “금융상품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이하 “금융상품자문”이라 한다)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거나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

- 입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연을 하는 것
- 나. 그 밖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가 해당 법률에 따라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자문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금융상품자문업자”란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자문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자문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6.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중소기업은행법」 제3조제3항,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제8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농협은행, 수협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또는 같은 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제1항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금융회사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제9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 다. 「보험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 라. 「보험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험대리점
 - 마. 「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
 - 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 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인
 -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에 받는 것(이하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

- 의 거래상대방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업무의 상대방인 전문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한다.
9.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 가. 국가
 - 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증권상장법인(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할 때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마.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0.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제46조(청약의 철회)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에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의 철회할 수 있다.
 1.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에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3.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용역(이하 이 조에서 “금전·재화등”이라 한다)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 ②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1.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을 발송한 때
2. 대출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하고, 다음 각 목의 금전·재화등(이미 제공된 용역은 제외하며,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환한 때
 - 가.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등
 - 나.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 다.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③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재화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장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전·재화등, 이자 및 수수료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 ④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 철회권의 행사 및 그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규4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1. 시설 및 장비

가. 공통 기준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안구만을 이식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수술실: 심전도 모니터, 혈압 모니터 및 산소포화도 측정기
- 2) 회복실: 인공호흡기 및 감시장비
- 3) 중환자실: 인공호흡기 및 감시장비
- 4) 진단검사의학검사시설
- 5) 영상의학검사시설
- 6) 삭제 <2013.12.17>
- 7) 해부병리검사시설

나. 장기별 기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둘 이상의 장기를 이식하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1) 신장 및 췌장: 투석실 및 혈액투석기
 - 2) 간장: 인공심폐기, 고속주입기 및 자가수혈장치
 - 3) 심장 및 폐: 인공심폐기
 - 4) 골수 및 말초혈: 무균입원실
 - 5) 안구: 안구 처리·보관시설, 경면현미경, 진단검사의학시설 및 수술실
 - 6) 척도: 무균분리시설
 - 7) 소장: 내시경, 내시경적 생검시설(生檢施設), 고속주입기 및 자가수혈장치
 - 8) 손·팔 또는 발·다리: 재활치료실 또는 물리치료실, 미세현미경
- ※ 비고: 안구만을 이식하려는 경우에는 5)에 따른 진단검사의학시설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인력

가. 공통 기준

- 1)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및 내과(감염 전문 및 호흡기 전문) 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2) 1)에도 불구하고 안구만을 이식하려는 경우에는 진단검사의학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만을 각각 1명만 둘 수 있고, 골수 또는 말초혈만을 이식하려는 경우에는

진단검사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내과(감염 전문)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만을 각각 1명만 둘 수 있다. 다만, 안구만을 이식하려는 경우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진단검사의학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단검사의학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3) 장기등의 적출·이식을 위한 상담·연락 업무 등을 담당하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안구만을 이식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장기별 기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전문과목의 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둘 이상의 장기를 이식하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인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외과,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및 내과(골수, 말초혈, 손·팔 또는 발·다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의는 국내 또는 국외의 이식의료기관에서 장기이식훈련과정을 6개월 이상 수료한 사람이어야 한다.

- 1) 신장: 외과 또는 비뇨의학과, 내과(신장 전문)
- 2) 간장: 외과, 내과(소화기 전문)
- 3) 췌장 및 척도: 외과, 내과(내분비 전문)
- 4) 심장: 흉부외과, 내과(순환기 전문)
- 5) 폐: 흉부외과, 내과(호흡기 전문)
- 6) 골수 및 말초혈: 내과(혈액종양 전문)
- 7) 안구: 안과
- 8) 소장: 외과, 내과(소화기 전문)
- 9) 손·팔 또는 발·다리: 정형외과 또는 성형외과, 외과 또는 내과

【법규5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중증질환심의위원회)

- ①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둔다.
(이하 생략)

제9조(비급여대상)

-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이하 생략)

[별표 2] <개정 2021. 10. 1.>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나.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탈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노생식기 질환
 - 라. 단순 코골음
 - 마.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phimosis)
 - 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가. 쌍꺼풀수술(이중꺼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치과교정. 다만, 선천성 기형으로 저하된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치과교정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의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턱얼굴(악안면) 교정술
 - 마.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 바.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사. 질병 치료에 아닌 단순히 키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상당하는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3. 다음 각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입자들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제외)
 - 나. 예방접종(파상풍·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 다.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다만,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체 치석제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불소부분도포,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등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을 위한 진료. 다만, 18세 이하인 사람의 치아 중 치아우식증(충치)이 생기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인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에 대한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은 제외한다.
 - 마. 멸미 예방, 금연 등을 위한 진료
 - 바. 유전성질환 등 태아 또는 배아의 이상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유전학적 검사
 - 사.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 아. 기타 가목 내지 마목에 상당하는 예방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방진료
 4.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가. 가입자등이 다음 표에 따른 요양기관으로서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1개의 입원실에 1인(“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병원의 경우 3인 이하)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하 “상급병상”이라 한다)을 이용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 다만, 격리치료 대상인 환자가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

MEMO

MEMO